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21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국가로 이끄는 규제혁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Regulatory Reform Committe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디지털 사회가 일상화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종래 시장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기존 규제들이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사회의 역동성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핵심규제 개선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에 중점을 두고 2021년 규제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19년 1월부터 도입하여 지난해까지 총 632건의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셔클)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OTA) △대출 비교 플랫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그간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어려웠던 서비스들을 허용하여 기업에게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 4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6,3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주원료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판로·입지·시설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일반대학의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허용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여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셋째,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면책 완화를 통해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국민신청제 등 국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주사기(LDS) 대량생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넷째,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가 제안한 총 1,129건의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기존규제 69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등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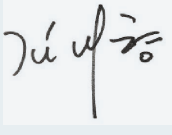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결과, OECD가 발표한 「2021 규제정책 전망」에서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 등 3개 분야에서 2~7위를 기록하여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는, 규제혁신을 위한 우리의 도전적인 제도설계와 끊임없는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와 일상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성과 실험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규제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플랫폼이 신산업 발전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개선은 과감히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답답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규제혁신에 적극 동참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형



사진으로 말하다





● ● 창업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카이스트


Listen to voices of sta
창업기업 규제혁신
2021. 7.6(Tue.) 15:00-16:30
KAIST 학술문화관(창업원)



1



2


3

1 ____ 창업원 방문 및 창업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카이스트
2 ____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3 ____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촉진
국무총리 -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4


착용형 보행보조로봇
ANGEL LEGS
엔젤렉스M
ANGEL ROBOTICS
6


전북
친환경
규제특구
LNG트랙터
LNG
5

4 ____ 제2차 경제계 간담회 무역협회

5 ____ 친환경자동차 자유특구 현장방문 새만금

6 ____ 창업원 방문 및 창업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카이스트




지역의 확실한 변화, 규제자유특구가 열어갑니다.
제자유특구위원회
2021.07.01(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
이련주 위원







7 ____ 규제특구위원회 새만금 컨벤션
8 ____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식
9 ____ 친환경자동차 자유특구 현장방문


규제샌드박스
| 일시 | 2021.12.29(수
국무조



10

10 ____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CONTENTS

PART 1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22
2. 규제개혁위원회 23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3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28
   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28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29
   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32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35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35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5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36
   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36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36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36

PART 2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40
1.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40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42
1. 규제샌드박스 42
   가. 규제샌드박스 개요 42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44
   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 47
   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55
2. 입법방식의 유연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62
   가. 추진개요 62
   나. 추진성과 및 주요사례 62
   다. 향후 계획 64

3.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65
가. 개요 65
나.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66
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68
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73
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73
나. 주요 규제혁신 사례 73

제3절 민생규제 혁신 77
1. 규제챌린지 추진 77
2.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82
3. 공장입지 규제개선 85
4.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88
5.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92

제4절 공직사회 혁신 98
1. 적극행정 추진 98
가. 2021년 추진성과 98
나. 향후 계획 101
2. 규제입증책임 전환 102
가. 개요 102
나. 추진현황 102
다. 향후 계획 103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04
1. 국무총리 주재 현장대화 104
가.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104
나.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106
다.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107
라.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109
2. 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112
가.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 112
나. 2021 규제혁신포럼 115
다. 규제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 116
라.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을 위한 기업·전문가 간담회 117
3. 기업·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118

CONTENTS

PART 3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34
1. 입법연혁 134
2. 2021년 개정사항 135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 136
1. 개요 136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136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137
4. 2021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138
5. 주요 개선사례 139
6. 향후 운영 계획 145

제3절 **일몰규제 정비** 146
1. 규제일몰제 개요 146
2. 2021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147
3. 주요 정비 사례 148
4. 향후 계획 151

제4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152
1. 개요 152
2. 등록 대상 및 단위 152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154
1. 개요 154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157

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62
1. 개요 162
2. 2021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162
3. 국제회의 참석 164

PART 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68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168
2. 2021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169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71
1. 기획재정부 171
2. 금융위원회 175
3. 금융감독원 220
4. 공정거래위원회 223
5. 국세청 231
6. 관세청 233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237
1. 산업통상자원부 237
2. 중소벤처기업부 274
3. 특허청 277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78
1. 국토교통부 278
2. 해양수산부 369
3. 해양경찰청 404

제5절 **농림·산림 분야** 406
1. 농림축산식품부 406
2. 산림청 415
3. 농촌진흥청 421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42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4
2. 방송통신위원회 436
3. 원자력안전위원회 438

CONTENTS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44
1. 고용노동부 444
2. 환경부 465
3. 기상청 508

제8절 교육·문화 분야 513
1. 교육부 513
2. 문화체육관광부 527
3. 문화재청 533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37
1. 보건복지부 537
2. 여성가족부 558
3. 식품의약품안전처 561
4. 질병관리청 587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591
1. 외교부 591
2. 국가보훈처 592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602
1. 행정안전부 602
2. 법무부 615
3. 인사혁신처 622
4. 경찰청 627
5. 소방청 629
6. 국민권익위원회 643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46

제12절 규제영향분석 652
1. 제도 개요 652
2. 작성항목 및 요소 653
3. 작성대상 및 절차 654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656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663

PART 5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21년 규제혁신 평가 668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668
2. 2021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669
3. 부처별 평가결과(직제순) 670
4. 분야별 평가결과 671

제2절 2022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673
1. 기본방향 673
2. 세부 추진방향 673

PART 6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678
가. 본 위원회 개최 일지 678
나.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680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681
가. 행정규제기본법 681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693
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701
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704
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09
바.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11
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713

PART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REGULATORY REFORM BOOK

1. 개요 22
2. 규제개혁위원회 23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28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35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36

PART 01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문재인 정부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가 중요 정책의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주요 안건을 논의·발표하고 있으며,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비용분석위원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 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 규제개혁기획단 - 덩어리규제 개혁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 기업 현장 규제애로 개선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애로 해소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 규제신고센터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민원 처리

2 규제개혁위원회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21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6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명단(2021년 12월 기준)

구분	성명	현직
위 원 장 (2)	김 부 겸	• 국무총리
	김 지 형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정부위원 (7)	홍 남 기	• 기획재정부 장관
	전 해 철	• 행정안전부 장관
	문 승 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 칠 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윤 철	• 국무조정실장
	조 성 욱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 강 섭	• 법제처장
민간위원 (16)	김 윤 정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준 기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소 라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 순 애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안 소 은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 여 송	•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 세 영	•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이 언 주	• MBC 미래정책실장
	이 원 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지 혜	•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철 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현 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은 미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정 지 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 병 환	•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위원

(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21년 본회의 운영실적

2021년에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총 22회(468회~489회) 개최되었으며, 18개 부처의 총 52개 안건을 논의(의결 39건, 보고 13건)하였다. 39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총 49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7건, 부대권고 6건, 개선권고 23건, 철회권고 3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집필자 • 김수정 사무관
Tel. 044-200-2443, crystalkim@opm.go.kr

(1)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1.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8인, 정부위원 4~5인 등 12~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21년 12월 기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경제	민간위원	이 정 희(위원장) 최 병 환 김 윤 정 김 준 기 이 언 주 이 원 우 이 지 혜 정 은 미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조달청 • 농촌진흥청 • 특허청 • 행복도시건설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수산부 • 공정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관세청 • 통계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구분	분과위원		소관부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박 소 라(위원장) 박 순 애 안 소 은 이 현 주 윤 여 송 이 세 영 이 철 수 정 지 연	• 교육부 • 통일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국가보훈처 • 법제처 • 인사혁신처 • 검찰청 • 방위사업청 • 소방청 • 기상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 국민권익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병무청 • 경찰청 • 문화재청 • 질병관리청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4)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5)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9) '21년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경제분과위는 총 1회(529회) 개최되었으며, 1개 부처의 총 1개 안건을 처리(의결 1건)하였다. 1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건이었다. 한편, 행정사회분과위는 상정된 안건이 없어 개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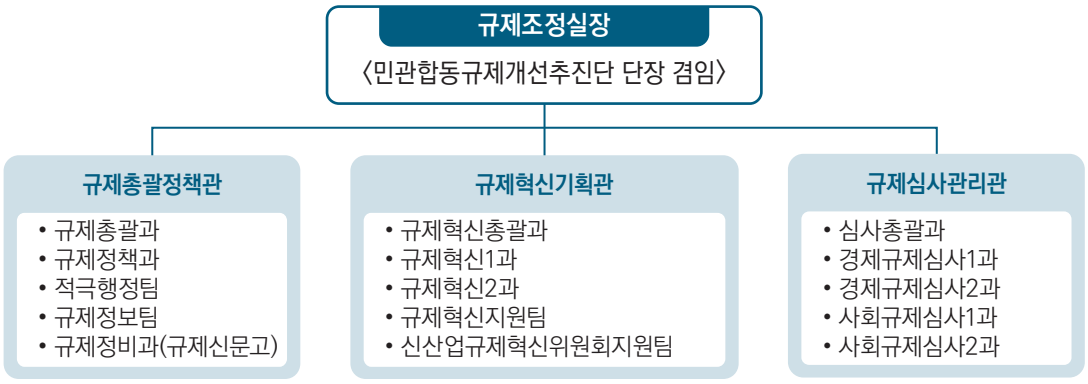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2021년 12월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5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집필자 • 김현정 사무관
Tel. 044-200-2665, hj730@opm.go.kr

(1) 설치배경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16년 2월부터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운영되었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적용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체계화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확대·재편('17년 6월)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신산업 규제는 기존의 규제개혁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관(官)'이 아닌 '민(民)' 주도 규제 시스템 확립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 도입 △국제수준에서 규제 최소성 달성이라는 「규제개혁 패러다임 3대 원칙」 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첫째, 민간주도의 규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120명의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1]를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

구성하였다. 특히 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기술과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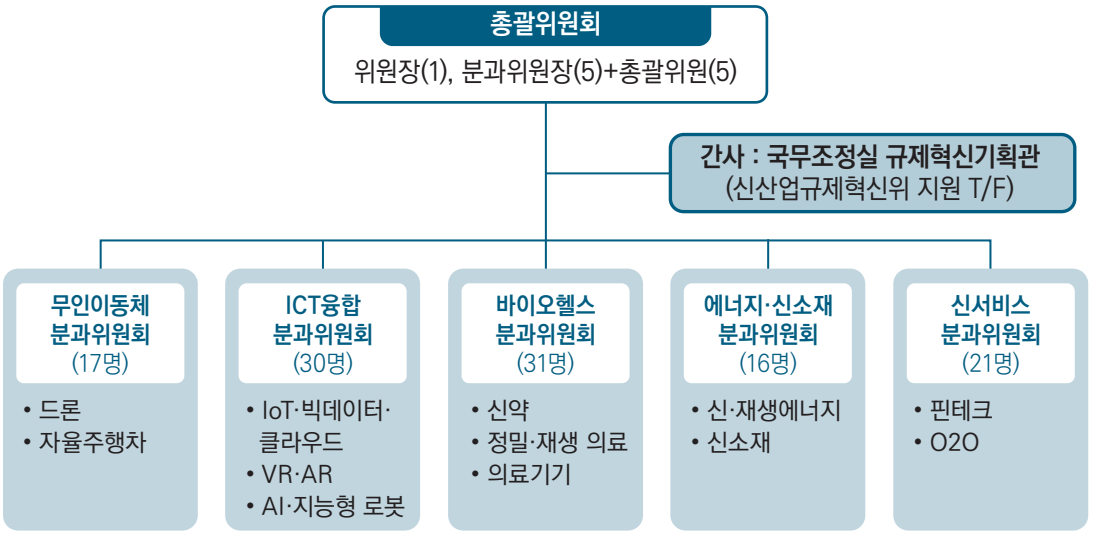
둘째,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생명·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규제심사 원칙으로, 이러한 심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적시에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셋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국내 규제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규제는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하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산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는 총괄위원회와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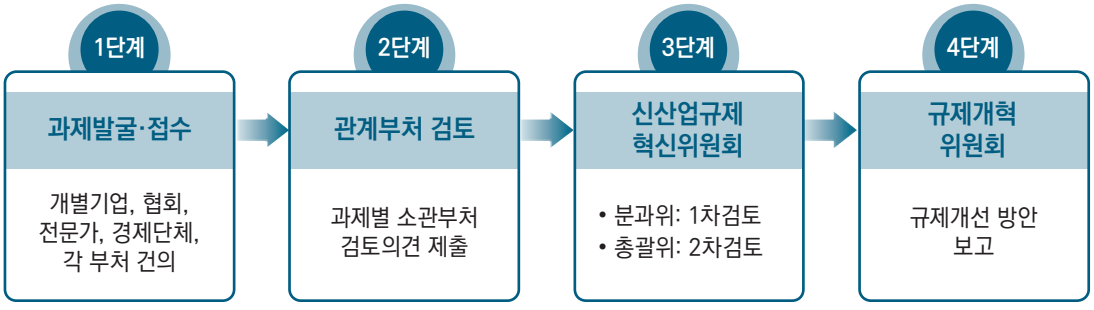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구성



신산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 내에 세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는 드론, 자율주행차, △ICT 융합 분과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는 신약개발, 정밀·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분과위원회는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검토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분과위원회의 검토 단계로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주도의 원칙 하에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2단계는 총괄위원회의 검토 단계이다.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혁신 검토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조정하는데, 특히 여러 분과위원회에 중첩되는 과제들을 검토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개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 2회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되며, 이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공개된다.

(다) 2021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개최실적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1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애로 과제를 발굴한 후, 총 34회[2]의 분과위원회 회의 및 국무조정실 주관 수차례의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3건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과제 발굴은 현장성과 시의적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산업 관련 업계·협회

2) 2021년 분과위(32회): '21.3.3~'21.10.20, 총괄위(2회): '21.5.25 / 11.8

등과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 건의도 수집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확대하여 경제단체, 업종단체와 소통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안건 토론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 풀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발굴된 건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업계 건의자, 민간위원이 함께 안건의 심층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해결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당초 소관부처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용 또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소재 분과(17건), 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융합(12건), 의료기기, 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분과(28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과(6건)에서 총 63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2021년 6월과 11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집필자 • 김재연 사무관
Tel. 02-6050-3292, kjy1980@korea.kr

(1) 추진단 설치배경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사항 발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귀를 더 크게 열고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니라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하였다. 추진단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으로 폐지되었으나 업계의 여망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 **추진단 설치 근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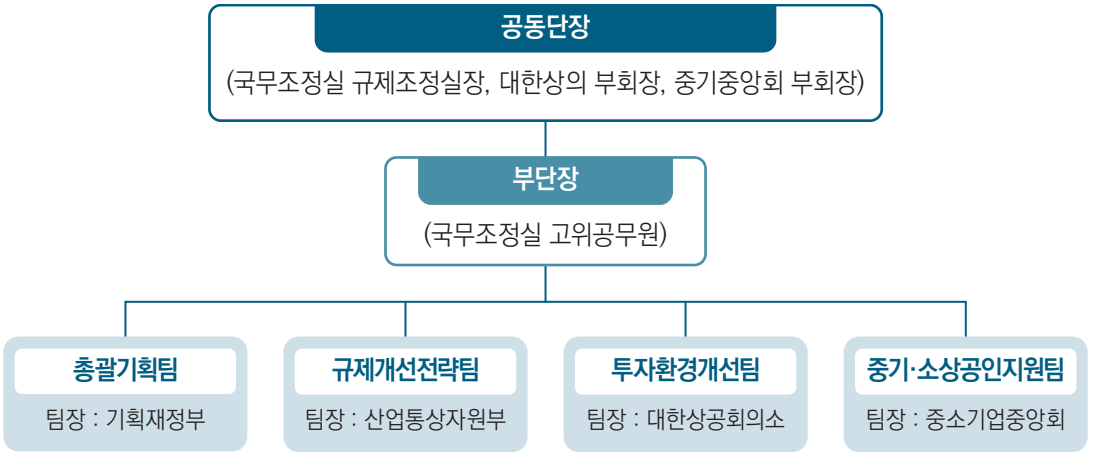
(2)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및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 23명(정부 12명, 민간 11명, 단장·부단장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 사무실은 기업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리 잡았다.

추진단 조직도



(3)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 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함으로써 건의자에게 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처리 절차



(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단은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여 소통의 장소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나) 관계 부처 협의·조정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이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추진한다.

(다) 규제 개선 및 보고·발표

개선된 과제는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하며,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한다.

(라) 이행 점검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 제고도 도모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 손민정 사무관
Tel. 044-200-2428, minjeong@opm.go.kr
집필자 • 윤나라 사무관
Tel. 044-200-2452, nemo1934@korea.kr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체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규제개선위원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7~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기획, 과제 이행 및 점검, 규제심사 업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등으로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등 일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소관 규제의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 민자영 사무관
Tel. 044-200-2634, jymin@korea.kr

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다.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REGULATORY REFORM BOOK

PART

02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40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42
제3절 민생규제 혁신 77
제4절 공직사회 혁신 98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04

PART 02

규제개혁 추진 주요 성과

제1절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집필자 • 강보람 서기관
Tel. 044-200-2397, gelsomino@opm.go.kr

1 2021 규제개혁 추진방향

2021년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①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②핵심분야 규제 개선 ③범정부 적극행정 확산을 집중 추진하였다.

첫째,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그간 성과를 내 온 규제혁신 플랫폼이 신산업·국정 성과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를 '19년 1월부터 운영하여 '21년 228건을 승인함에 따라, 총 632건을 승인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최초 지정('19.7) 이후 '21년 5차·6차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에 총 29개가 지정되었으며, 지역전략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그간 수립한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 로봇, 인공지능)에 이어 자율운항선박 로드맵을 신규 수립('21.10)하여 분야를 확대하였고,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21.12)을 시작으로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재설계해나갈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은 기존의 규정 단위 전환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등과 연계한 신산업 핵심분야별 전환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네거티브 전환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국무총리가 직접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4차로 회의)을 통해 규제 쟁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과 업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둘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각 핵심분야별 규제를 개선하였다. 신산업 5대 분야(DNA 생태계 확대, 비대면 산업 육성,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확대,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DNA(Data-Network-AI) 산업에서 디지털 뉴딜 성과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지능형 로봇 분야 등 개선, 비대면 산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원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VR·AR 활용 개선 등 분야별로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였으며,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 분과 등에서 총 63건의 현장애로를 해소하였다.('21.6, '21.11)

코로나19 등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21.5, 7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21.9, 27건)을 마련하였다. 제조업 기업 활동 지원 및 투자확대를 위해 입주업종·공장용지·건물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공장입지 규제 개선방안('21.7, 11건)도 추진하였다. 또한 규제챌린지 방식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해외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게임 셧다운제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지역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규제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총 56건의 규제건의 과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1년에는 현장체감도가 높은 주요사례(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사진 제출 생략,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등을 포함하여 약 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셋째,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위해 면책, 인센티브 등의 적극행정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였다.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를 맞아 확실한 국민체감을 목표로 국민참여를 확대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및 사전컨설팅시 면책보장, 면책기준 완화, 법령의견 제시, 인센티브 등 기존에 도입한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응·민생 지원 등 정책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핵심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하였다.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1 규제샌드박스

집필자 • 김청윤 사무관
Tel. 044-200-2451, luckykcy22@op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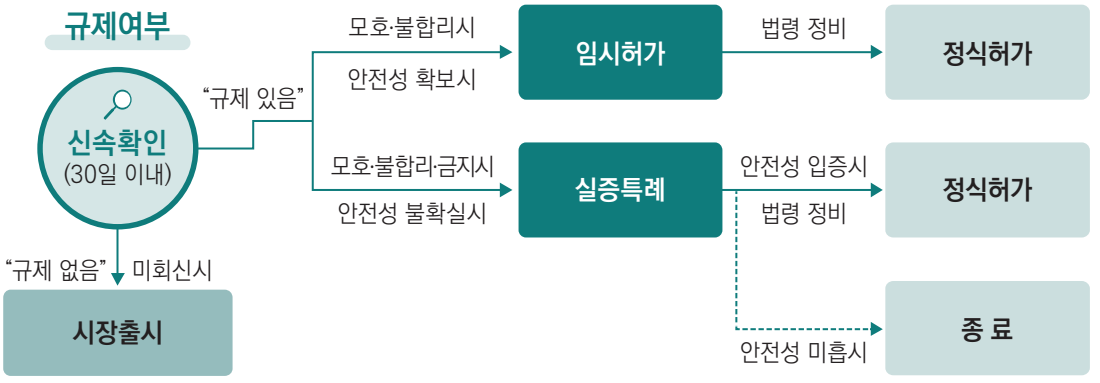
가. 규제샌드박스 개요

(1) 개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영국에서는 주로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신산업 전분야로 확대하여 도입하는 한편, 본래의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외에도 규제 유무를 확인해주는 '신속확인' 제도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임시허가'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개념도



아울러,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고,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다.

(2) 법적 근거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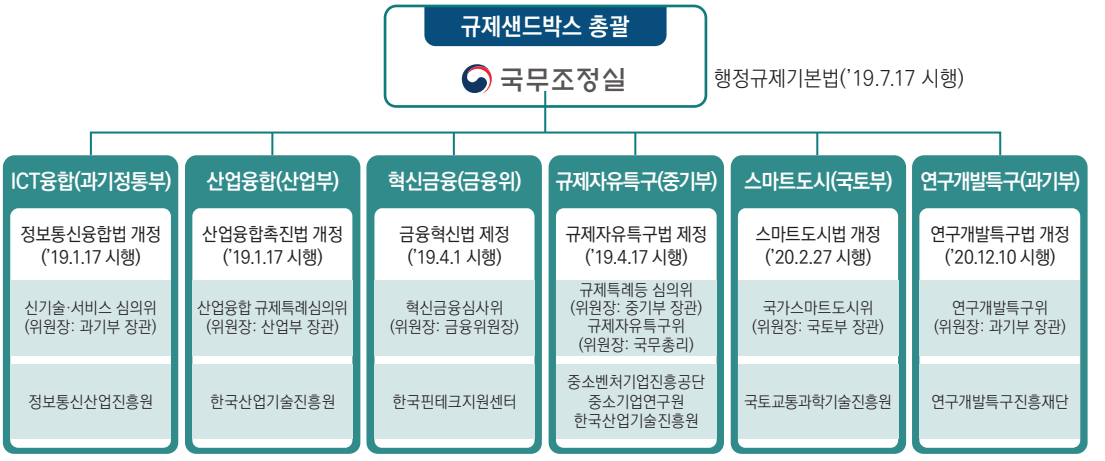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월 ICT융합·산업융합 분야, 2019년 4월 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까지 총 4개 신산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스마트도시('20년 2월)와 연구개발특구('20년 12월) 분야가 추가되어 현재 총 6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19.1.17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27 시행)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2.10 시행)

규제샌드박스는 제도의 기획과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6개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6개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다.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추가로 두고 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는 신청과제 접수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할 전담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추진 체계



나.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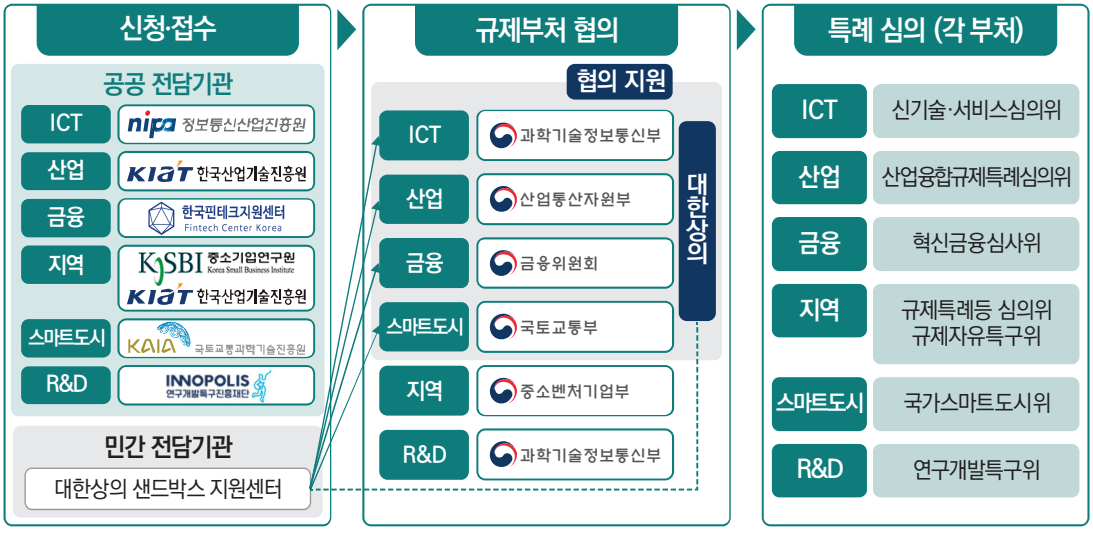
제도 운영 중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네 차례('19년 4월, '19년 7월, '20년 1월, '21년 2월)에 걸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제도 도입 1주년과 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는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부각되었다.

(1) 1주년 계기 제도 발전방안('20년 1월)의 주요 내용

(가) 접수 단계: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운영('20년 5월)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하였고, 이후 2020년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설치·운영을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2020년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20년 5월12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10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그 중 137건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승인으로 이어졌으며, 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며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나) 심사단계: 신속처리 제도(fast-track) 및 부가조건 완화 제도 도입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승인 절차		자료보완 법률자문	사업내용 검토·정리	관계부처 협의·조정	심의·의결 [분과위/특례위]
일반	(3개월)	15일	30일	20~30일	15일/7일
신속처리	유사(2개월)	8일	15일	15일 이내	7일/7일
	동일(1개월)	8일	15일	7일 이내	생략/서면(즉시)

또한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제부처에 부가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재의결이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다) 시장진출단계: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확보 지원, 자금 및 사업재편 지원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특례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2) 2주년 계기 제도 발전방안('21.2.2)의 주요 내용

(가) 제도 내실화

① **사업중단 불안 해소:** 승인기업의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으나,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하였다.

②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도록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수시로 협의하여 규제법령을 적극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신규 도입을 추진하여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나) 제도 운용의 효율성 강화

① **신속확인 강화:** 신속확인은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담당 규제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담당 공무원 면책 등 부여)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기업들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③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을 단축(예: 6개월)하여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탄력적 운영을 강화하였다.

(다) 기업지원 강화

① **보증대상 확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하였다.

② **투자확대 유도:** 디지털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연 8백억 규모, 총 4천억 원 조성 예정)의 투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성과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1) 승인현황

(가) 총괄

2021년에 228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되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2021년 12월 말까지 승인과제는 총 632건이 되었다.

(나)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가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허가가 89건, 적극해석 등이 41건이었다. 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실증특례가 전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로는 산업융합 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금융,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순이었다.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2021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현황

(단위: 건)

분야	승인 합계	'19	'20	'21	실증특례	'19	'20	'21	임시허가	'19	'20	'21	적극해석 등	'19	'20	'21
계	632	195	209	228	502	148	171	183	89	31	25	33	41	16	13	12
ICT융합 /과기부	135	40	46	49	73	20	23	30	46	16	17	13	16	4	6	6
산업융합 /산업부	198	39	63	96	149	22	53	74	33	5	8	20	16	12	2	2
혁신금융 /금융위	185	77	58	50	185	77	58	50	-	-	-	-	-	-	-	-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75	39	26	10	65	29	26	10	10	10	-	-	-	-	-	-
스마트도시 /국토부	34	-	16	18	28	-	11	17	-	-	-	-	6		5	1
연구개발특구 /과기부	5	-	-	5	2	-	-	2	-	-	-	-	3			3

(라)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식약처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부처들이 전체 승인과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부처별 승인현황

합계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식약처	행안부	경찰청	기타
781개	181(23%)	122(16%)	101(13%)	68(9%)	55(7%)	31(4%)	31(4%)	192(24%)

※ 총 35개 부처(지자체 9개 포함, 산업부는 국가기술표준원 포함), 총 781개 규제(중복가능)

(마) 업종별 승인현황

업종별로는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승인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승인현황

합계	금융	제조	서비스	통신	모빌리티	의료	전기·전자	에너지	물류	기타
632건	186(30%)	137(22%)	71(11%)	64(10%)	50(8%)	32(5%)	21(3%)	9(1%)	8(1%)	54(9%)

(바)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해 승인받았다. 중소기업이 승인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합계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공공기관, 지자체 등)
632건	408건(65%)	189건(30%)	35건(5%)

(2) 규제정비 현황

2021년까지 승인된 과제 총 632건 중 20%에 해당하는 132건*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통한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효과성 등이 입증된 후, 규제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다. 이로써 특례 승인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을 통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택시발전법」 개정('21.7월)을 통한 앱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서비스 등이 있다.

* 규제법령 개정 94건, 적극해석 등 38건

규제정비 완료과제 현황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수)	정비시점
1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적극해석	'21.12월
2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적극해석	'21.12월
3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적극해석	'21.12월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수)	정비시점
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실증특례	'21.12월
5	유무선 융합 인터넷전화 서비스	적극해석	'21.12월
6	교통 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적극해석	'21.12월
7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 조난 신호기	실증특례	'21.11월
8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	적극해석	'21.11월
9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	'21.11월
10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임시허가	'21.9월
11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해석	'21.9월
12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해석	'21.9월
13~20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8건)	'21.8월
21~23	앱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	실증특례(3건)	'21.7월
24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실증특례	'21.7월
25	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21.6월
26	직접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21.6월
27~29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	실증특례(3건)	'21.4월
30~33	선결제 택시·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4건)	'21.4월
34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해석	'21.4월
35	서냉슬래그 아스팔트혼합물 박리방지제	적극해석	'21.3월
36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21.1월
37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분석 플랫폼	적극해석	'21.1월
38~45	민간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실증특례(8건)	'20.12월
46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20.12월
47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해석	'20.12월
48~57	공유주방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10건)	'20.12월
58	해양유출기름 회수로봇	적극해석	'20.12월
59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적극해석	'20.10월
60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적극해석	'20.10월
61	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에듀테크	적극해석	'20.10월
62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적극해석	'20.10월
63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적극해석	'20.10월
64~65	모바일 환전(송금) 서비스	실증특례(2건)	'20.9월
66~67	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 현금인출	실증특례(2건)	'20.9월
68~69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	실증특례(2건)	'20.9월
70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판매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71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해석	'20.9월
72~75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4건)	'20.6월
7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실증특례	'20.5월

연번	과제명	유형(과제수)	정비시점
77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적극해석	'20.4월
78	온라인 주류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서비스	적극해석	'20.4월
79	소수력발전시스템	적극해석	'20.4월
80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20.3월
81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해석	'20.3월
82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해석	'20.3월
83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실증특례	'20.3월
84~98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15건)	'20.3월
99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해석	'20.2월
100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실증특례	'20.2월
101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	'20.2월
102~109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실증특례(8건)	'20.2월
110~111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실증특례(2건)	'20.2월
112~114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실증특례(3건)	'20.2월
115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20.1월
116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19.12월
117~118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2건)	'19.11월
119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해석	'19.11월
120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	적극해석	'19.10월
121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적극해석	'19.10월
122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해석	'19.9월
123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19.7월
124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적극해석	'19.7월
125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	적극해석	'19.7월
126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해석	'19.5월
127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이력 서비스	적극해석	'19.5월
128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19.3월
129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해석	'19.2월
130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해석	'19.2월
131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해석	'19.2월
132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해석	'19.2월

(3) 신속확인

규제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다면 제품·서비스 등을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총 94건의 "규제없음"이 확인되었다.

분야	"규제없음" 회신 주요 사례
ICT융합	• **(앱을 활용한 동물병원 진료견적 서비스)** 동물병원 수의사가 앱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진료비용, 진료절차, 진료항목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 동일한 진료항목과 내용으로 진료비 견적을 제공할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
산업융합	• **(고소작업차와 로봇을 이용한 건물 외벽청소 서비스)** 고소작업차로 접근할 수 있는 중저층 건물 유리창 외벽청소 로봇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문의 → 청소용 로봇은 자율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격 제한이 없다고 회신
혁신금융	• **(신용카드 결제처리 클라우드 단말서버 플랫폼)** 신용카드가맹점에 설치되지 않아 가맹점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결제 서버도 단말기 등록대상인지 문의 → 해당 서버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회신
스마트도시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제공 서비스)** 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지도 데이터나 문화재청이 보유한 저작물의 영리적 사용이 제한되는지 문의 → 규제가 없어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확인·승인을 거쳐 사업 가능하다고 회신

(4)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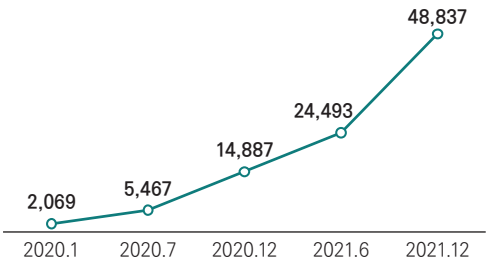
(가) 투자유치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 원, 혁신금융 분야 2조 1,498억 원 등 현재까지 총 4조 8,83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① **분야별 투자유치* 현황**('21.12월말, 누계)
* 벤처투자(VC) 및 기업 자체 투자 합계

분야	투자유치 금액
ICT융합	1,076억 원
산업융합	2,550억 원
혁신금융	2조 1,498억 원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 원
스마트도시	141억 원
합계	**4조 8,837억 원**

② **기간별 투자유치 현황**(단위: 억 원, 누계)



분야	투자유치 주요 사례
ICT융합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146억 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
산업융합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209억 원)** 220V 콘센트에 요금부과 기능을 더해 아파트, 빌딩 등의 주차장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혁신금융	•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8,542억 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에서 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
규제자유특구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1조 6,591억 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준·절차 등을 마련
스마트도시	• **(세종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56억 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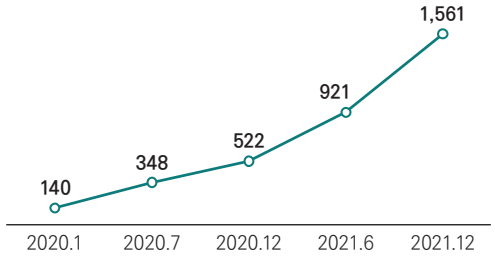
(나) 매출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융합 분야 789억 원, ICT융합 분야 688억 원을 비롯하여 매출이 총 1,561억 원 증가하였다.

① **분야별 매출 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분야	매출증가 금액
ICT융합	688억 원
산업융합	789억 원
규제자유특구	21억 원
스마트도시	63억 원
합계	**1,561억 원**

② **기간별 매출증가 현황**(단위: 억 원, 누계)



분야	매출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270억 원)**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발송
산업융합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199억 원)** 통신케이블을 활용하여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 설치
규제자유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16억 원)** 각종 전자증명서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전자지갑 서비스 'B PASS (비패스) 앱' 등 개발
스마트도시	• **(인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53억 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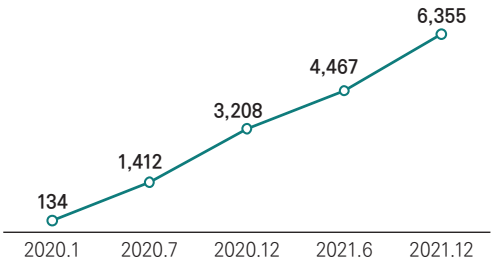
(다) 고용증가

승인기업에서 6,355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의미한다.

① **분야별 고용증가 현황**('21.12월말, 누계)

분야	증가 인원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스마트도시	208명
합계	**6,355명**

② **기간별 고용증가 현황**(단위: 명,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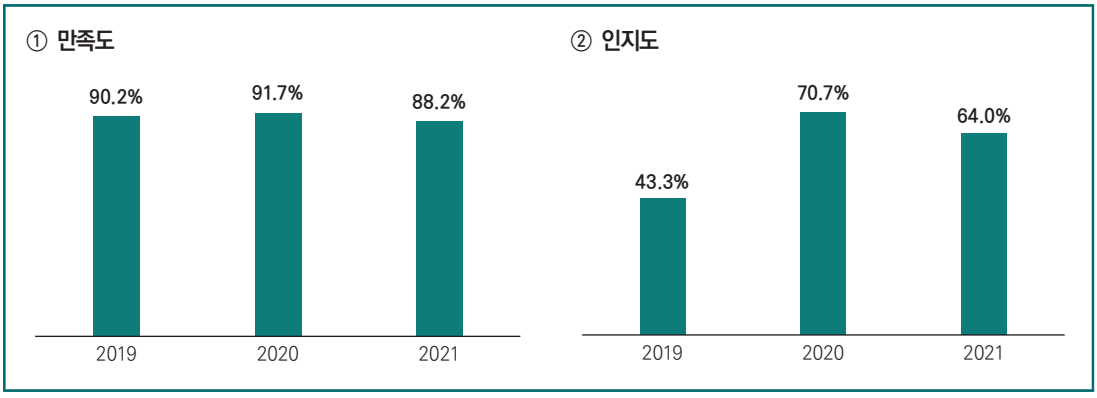
분야	고용증가 주요 사례
ICT융합	•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395명)**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 구직자에게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고 택시가맹본부가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
혁신금융	• **(KB 알뜰폰, 188명)**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 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이용
규제자유특구	•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439명)** 혈액 등 인체유래물 은행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임상검체를 신속하게 제공

(5) 기업 만족도·인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설문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받은 기업의 만족도는 8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64.0%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필요사항으로는 심사 신속화, 규제법령 조속 개정 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설문조사로 확인된 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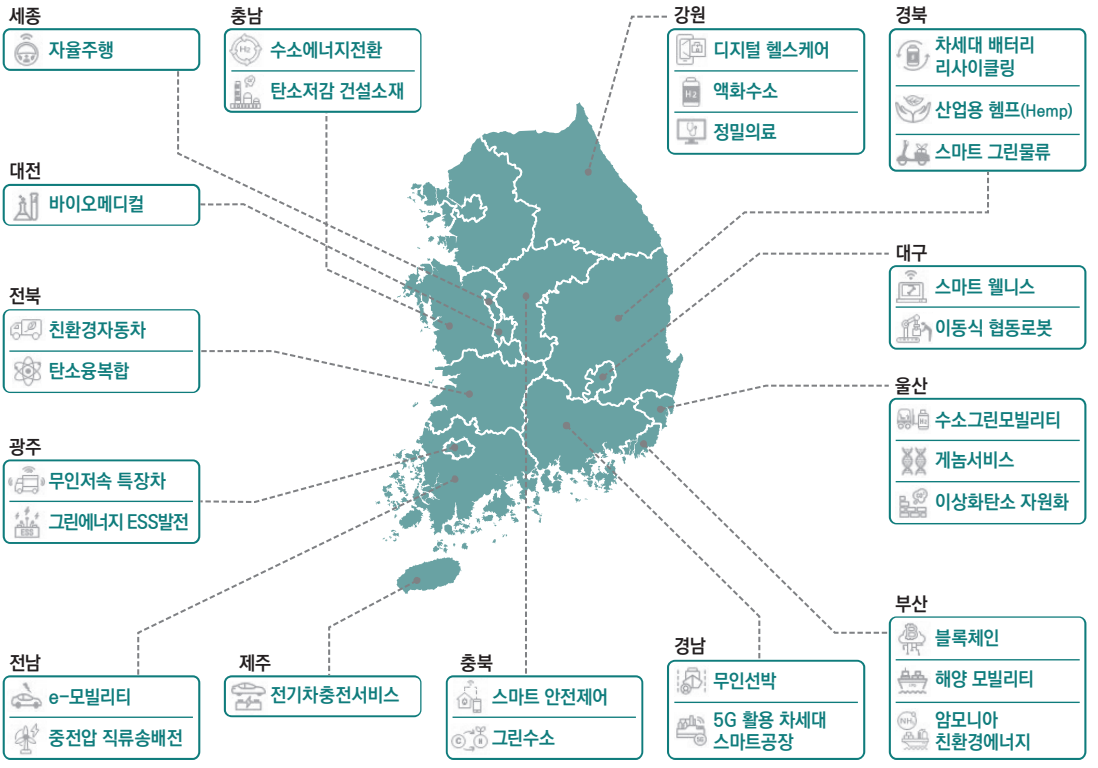
2021년에는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제5차, 제6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제5차, 제6차 특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분야 발굴에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4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로써 2019년 7월 최초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래 총 6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29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각 지역은 강점이 있는 지역전략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구분	특구명
제1차 특구 ('19.7.23 / 7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2차 특구 ('19.11.12 / 7개)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 모빌리티 △(전북)친환경 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
제3차 특구 ('20.7.6 / 7개)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 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 △(경북)산업용 헴프

구분	특구명
제4차 특구 ('20.11.13 / 3개)	△(광주)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제5차 특구 ('21.7.1 / 4개)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제6차 특구 ('21.11.4 / 1개)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2)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3년 만에 투자유치 2조 3,572억 원, 고용창출 2,409명, 기업이전 205개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도 현재까지 4차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투자협약을 축하하고 특구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전남 e-모빌리티 특구('20.6) △강원 액화수소 특구('20.10)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20.11)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21.7)

규제자유특구 주요 운영성과

구분	운영성과 주요 사례
투자유치 (2조 3,572억 원)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포스코케미칼, GS건설㈜는 각각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과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에 총 9,500억 원 투자
고용창출 (2,409명)	•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 238명의 고용증가를 보이며 한국 GM공장 폐쇄 후 악화되었던 지역일자리 회복에 기여
기업이전 (205개)	• **(세종 자율주행 특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엔지니어 출신들이 세운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특구로 이전
매출증가 (21억 원)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비피앤솔루션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콜드체인 물류유통 플랫폼을 판매하여 8.4억 원의 매출 창출

참고 규제샌드박스 주요 사례

주요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사례(40건)

분야	과제명(유형)	주요 내용	진행상황
ICT 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	•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물품구매, 선거 등)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허용	시장 출시 ('20.6~)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고지 (임시허가)	• 종이 우편을 통해 보내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서비스 허용(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암호정보로 일괄 전환·활용 허용)	시장 출시 ('19.2~)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실증특례)	• 빛이 비추는 범위 내에서 여러 IT기기를 무선충전할 수 있도록 900Mhz 주파수 사용 허용	실증 진행중 ('20.8~)
	220V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일반 220V콘센트에 과금단자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및 과금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1)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 (실증특례)	• 다수의 요식업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사업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12)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 인접지역에서 같은 방향의 목적지를 호출하는 승객을 연결하는 동승 중개 허용(승객 요청기반)	법령 개정 완료 ('22.1)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플랫폼 (실증특례)	•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개인간 자동차 대여사업를 위한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 허용	실증 진행중 ('21.9~)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플랫폼 (실증특례)	•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여 리모델링한 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2.1~)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 심전도 워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이상징후 시 내원 안내하는 원격 서비스 허용	유권해석 변경하여 허용('20.2)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실증특례)	•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재활 지시에 따라 재활로봇으로 훈련을 하고, 앱의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와 상담하는 서비스(최초 처방 내에서) 제공	실증 준비중
	안면인식 방식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실증특례)	• 기존 내장칩 등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 외에 반려견 영상을 촬영하고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2.1~)
산업 융합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	•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공원 주행 등을 허용하여 배달 등 사업 실시	실증 진행중 ('20.3~)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국회, 양재, 탄천 등)	법령 개정 완료 ('19.6)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	• 충전 직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 허용	실증 준비중
	주유소 내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 (실증특례)	• 주유소 내에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여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 생산 후, 전기차 충전에 사용	실증 진행중 ('21.12~)

분야	과제명(유형)	주요 내용	진행상황
	자동차 SW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	• 정비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자동차 SW 업데이트 허용	시장 출시 ('21.8~)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허용	시장 출시 ('20.9~)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실증특례)	•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용 자가채취 패드를 활용하여 병원방문 없이 비대면 검사 및 상담 허용	실증 진행중 ('21.8~)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와 유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제품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4)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만·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12)
	공유 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	• 1개 사업장 내 다수 미용사가 직원이 아닌 '원장'으로서 각각 영업하는 것을 허용	실증 진행중 ('20.8~)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실증특례)	•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 검사 결과에 따라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0.6~)
혁신 금융	금융기관 대출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 여러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주는 서비스 허용	법령 개정 완료 ('21.3)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 (네이버페이 등)	실증 진행중 ('21.4~)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실증특례)	• 실물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0.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실증특례)	• 인증 한번만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2.1~)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실증특례)	• 투자자가 미국상장 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로 (0.1주씩)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1.11~)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카드 결제 (실증특례)	• 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앱으로 구현(NFC 기능 이용)하여 별도 카드단말기 없이 카드 결제 허용	실증 진행중 ('20.7~)
	배달 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실증특례)	• 소상공인의 배달 매출을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고, 나중에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중개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1.11~)
	보험캘린더 서비스 (실증특례)	• 최초 보험가입시 포괄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재가입시 캘린더에 일정을 기입하듯 간소화된 절차로 보험가입하는 서비스 허용	실증 진행중 ('20.7~)
스마트 도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실증특례)	• 일정 생활반경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DRT)를 신도심 등에서 허용	실증 진행중 ('21.4~)

분야	과제명(유형)	주요 내용	진행상황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비대면 주문 등 서비스 (실증특례)	• 건축물 평면도를 활용을 허용하여 시각장애인을 건물의 정확한 입구까지 안내해주고, 주문 등을 지원하는 앱 개발	실증 진행중 ('20.12~)
연구개발특구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특례)	•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을 허용하여 불법 드론을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하는 통합시스템 도입	실증 준비중
규제자유특구	(경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재사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응용제품을 제작·판매하도록 허용	실증 진행중 ('20.7~)
	(제주)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 (실증특례→임시허가)	• 개인이 보유한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유 플랫폼 구축	실증('20.8~'21.12)후 임시허가 전환('22.1)
	(경남) 무인 자율운항 선박 (실증특례)	• 선박직원(해기사)이 탑승하지 않은 선박의 해안정찰, 조사, 통신 등을 업무수행 실증 허용	실증 진행중 ('20.9~)
	(대전)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을 위한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특례)	• 의료·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임상 검체를 신속하게 수집·분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	실증 진행중 ('20.7~)
	(대구) 제조공정과 연동한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동 실증 (실증특례)	• 제조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동과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 허용	실증 진행중 ('21.10~)
	(강원) 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및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특례)	•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현재 운영이 불가한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적인 밸류체인 구축 및 실증 허용	실증 준비중
	(전북) 탄소소재로 고압·대용량 수소운송 (실증특례)	• 탄소섬유를 적용한 탄소복합재 수소이송튜브트레일러를 통해 현행 허용기준보다 높은 압력의 수소운송 실증 허용	실증 진행중 ('21.10~)

주요 철회·부결·검토중 사례(13건)

신청과제명	주요 신청내용	상태	사유
①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임시허가 신청)	가상자산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부결** ('21.12월)	이용자 피해 발생, 외환거래 모니터링 곤란, 자금세탁 우려
주류 비대면 판매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후 주류 비대면 판매	**철회** ('21.11월)	국민·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확대로 오남용 우려
모바일 앱 기반 이동식 주유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주유소 外 장소에서 이동식 주유서비스 제공	**철회** ('21.4월)	유증기 등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 우려
자가유래 자연살해 세포(NK cell) 면역세포 치료제 (임시허가 신청)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임상 1~3상 혹은 1~2상)를 위한 조건부 허가절차 완화	**부결** (19.11월)	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임시허가 부적절
천연물 이용 여드름 피부개선 화장품 (임시허가 신청)	여드름 화장품에 대해 '세정용' 외 예방·개선용을 허용	**부결** (19.7월)	여드름은 '질병'으로 개선용 화장품 판매시 소비자 혼란
② 심각한 이해갈등이 있는 경우			
내국인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 신청)	내국인 대상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 허용	**검토 중** ('20.4월~)	의사협회 반대,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
의약품 비대면 배송 (실증특례 신청)	앱 기반 비대면 상담·복약지도 후 처방약·일반약 배송	**검토 중** ('20.5월~)	약사협회 반대, 오남용·오투약 및 배송과정 중 변질 등 우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실증특례 신청)	약국 앞 화상판매기를 통해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 판매	**재심의 결정** ('21.12월)	약사협회 반대, 공공심야약국 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 성과 등 감안 후 검토 필요
얼굴 인식 기반 안경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신청)	앱을 통한 가상피팅한 안경을 제작하여 온라인 배송·판매	**철회** ('21.12월)	안경사협회 반대, 한걸음 모델 합의(안전성 연구 후 검토) 감안
카풀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카풀 허용시간 확대(5~10시, 18~22시)로 앱 기반 장거리 카풀 제공	**부결** ('21.12월)	택시업계 반대, 카풀 허용시간 사회적 대타협(7~9시, 18~20시) 및 국회 입법권 존중
택시 소화물 배송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해 소형화물을 배송	**재심의 결정** ('21.12월)	용달업계·퀵서비스업계 반대, 화물·여객 운수업 구분체계 혼란 우려
③ 사업자 자격 문제, 혁신성 부족 등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통합 포탈 대출상담 등 (실증특례 신청)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원칙 완화 요청	**부결** (19.6월)	사업자 서비스 운영능력 부족(재무상태 부실 등)
계좌 일임형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부결** ('19.6월)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과 동일(단순 진입요건 완화 요청)

2 입법방식의 유연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집필자 • 김청윤 사무관
Tel. 044-200-2451, luckykcy22@opm.go.kr

가. 추진개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한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 분야의 '선허용-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시하였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앞서 서술된 규제샌드박스 외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전환은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정의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사후평가·관리의 네가지 유형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화하여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①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한정적인 열거를 통해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②개념정의의 확대는 요건이나 개념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방식, ③분류체계 유연화는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식, ④사후 평가·관리는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나. 추진성과 및 주요사례

국무조정실은 2018년 1·2차에 걸쳐 중앙정부의 법령을 대상으로 103건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3차로 132건의 과제를 발표하였고,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142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2020년 5월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정 206건에 '유연한 입법 방식'을 적용하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공고히 하였다.

◇ **중앙정부 법령 1차**('18.1):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방법 다양화 등 **38건**
◇ **중앙정부 법령 2차**('18.10):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 시설물 점검시 드론 활용 허용 등 **65건**
◇ **중앙정부 법령 3차**('19.4):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 확대**,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 확대 등 **132건**
◇ **지자체 자치법규**('19.9):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업종 포함(부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대상 확대(삼척) 등 **142건**
◇ **공공기관 규정**('20.5):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용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 등 **206건**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 리스트: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상 산업 네거티브화

기존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산업이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농업·임업, 어업 제조업 등 16가지로 열거되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들과 분류가 어려운 신산업에 대한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19.4)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등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한 전 산업을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신기술 기반 사업,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신유형 산업 출현에 대비하여 군산, 울산 등 7개 고용위기 지역의 정부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 개념정의 확대: 선박 연료 공급업의 개념 확대

기존에는 항만운송사업 중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석유를 제외한 LNG,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공급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18.6)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료유 이외에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연간 4.5억불의 시장이 창출되고, 기존 선박연료 대비 약 9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3) 분류체계 유연화: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에는 자동차의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초소형 자동차 및 원형 핸들방식의 삼륜·사륜형 전기차 등은 현행 차종분류체계에 속하지 않아 시장진입 등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6)을 통해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도입하여 차종 구분을 유연화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트위지 등)가 국내에 도입되어 '21년 기준 9개 모델(7개 업체) 3,500여대가 판매·등록되었다. 또한, '25년까지 7,200여억 원의 초소형 자동차 관련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5,1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사후 평가·관리: 단순공정 수산물 HACCP 인증 사후평가 전환

기존에는 식품 공정이 동일하더라도 어류, 패류, 연체류 등 각각에 대해서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요구하여 사업자의 금전적·시간적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8.9)을 통해 식품유형 및 공정이 동일한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HACCP 시스템에 변경 품목을 추가하고, 지방청은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인증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업체 및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 향후 계획

5차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계획 발표가 규제 공급자(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과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업 등 수요자의 관심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령 등 개정이 용이한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국무조정실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기업인, 관련 전문가,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신산업·신기술 핵심 분야 및 중점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사후관리·평가 등 파급효과가 큰 입법 방식을 단계적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3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집필자 • 공도연 사무관
Tel. 044-200-2912, kdy5142@opm.go.kr

가. 개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신산업이 기존의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신산업에 적용할 인증기준이나 안전기준 등이 없거나 기존의 기준이 신산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등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거나 개선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 없이 신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규제개선을 검토하는 경우 제품의 출시 지연, 사회적 갈등 표면화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다. 우선 '미래예측'을 통해서 해당 산업의 발전양상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한다.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수개월 간의 산·학·연·관 합동연구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와 규제이슈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연도별 규제개선 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로드맵을 만든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정(Rolling Plan)하여 그동안의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년 9월)」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로드맵('18년 11월)을 시작으로 드론('19년 10월), 수소차·전기차('20년 4월), 가상·증강현실('20년 8월), 로봇('20년 10월), 인공지능('20년 12월)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21년 10월) 로드맵을 신규 수립하였고, 최초 수립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21년 12월)을 수립하였다.

나.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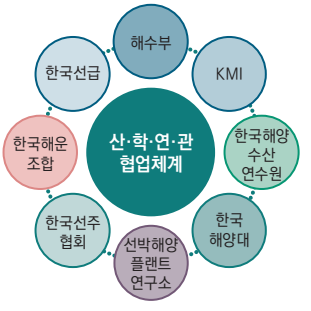
자율운항선박은 인적 해양사고 75% 절감, 물류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통해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신산업 분야이다. 세계 각국에서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K-조선 재도약 전략」('21년 9월)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기술 상용화에 맞춰 관련 규제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 로드맵 구축 과정

자율운항선박 로드맵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회를 2020년 5월부터 구성하여 4개월간 로드맵 연구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기술발전 단계를 고려한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민간기업 수요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 활성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였다. 해수부·고용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11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향후 기술발전 방향에 맞추어 검토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최종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로드맵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21.10.14)를 통해 발표되었다.

자율운항선박 산·학·연·관 협의회

산	한국선급, SK 해운, 삼성중공업,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 등
학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고려대 등
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3) 기술발전 단계 예측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자율운항선박 등급을 고려하되, 운항방식·정비방식·운항해역의 3대 변수를 조합하여 현실 적용가능성이 높은 3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자율운항선박 기술발전 3단계(세부 7단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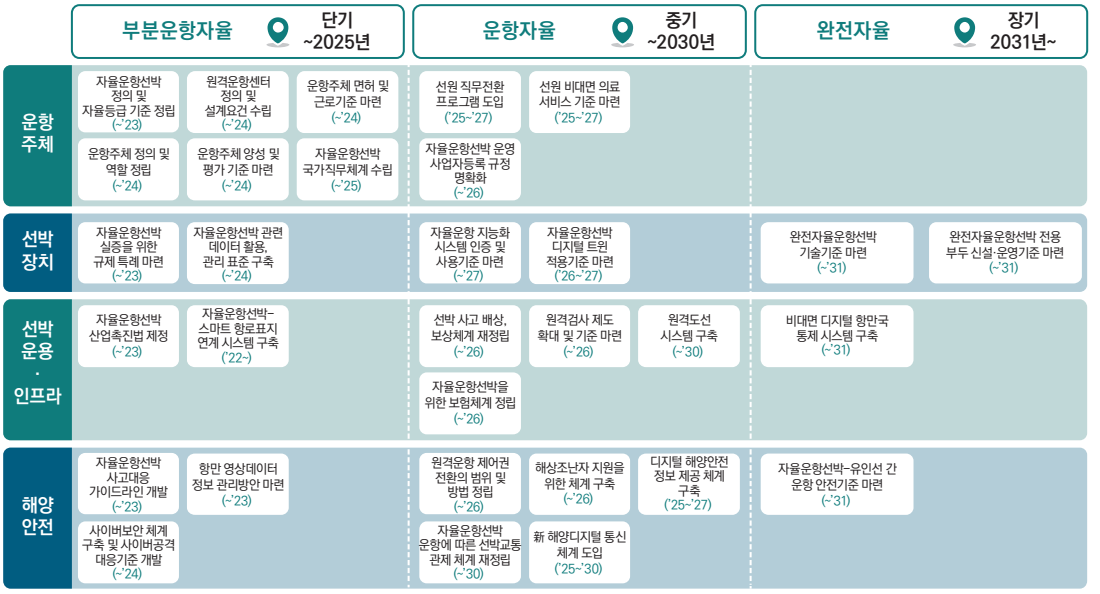
기술 단계	부분운항자율 (~2025)			운항자율 (2026~2030)			완전자율 (2031~)
	Lv2-① ▶ Lv2-② ▶ Lv2-③			Lv3-① ▶ Lv3-② ▶ Lv3-③			Lv4
운항방식	선원(원격운항자에 의한 운항 지원)			시스템(원격운항자에 의한 관리)			시스템
정비방식	선원정비		원격지원정비				원격정비
운항해역	대양	연안	항내	대양	연안	항내	모든 해역
시스템 기능	경제운항, 충돌회피, 지능형 항로 의사 결정						
	선박 원격운항, 선원 지원						
	선박 원격 유지보수 및 정비						
	선박 이·접안 기능 및 도선 지원						

(4) 로드맵 세부내용

자율운항선박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영역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①운항주체, ②선박장치, ③선박운용·인프라, ④해양안전 총 4개 영역 31개의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운항주체(9건) → 자율운항선박 정의 및 자율등급 기준 정립, 운항주체 정의 및 역할 정립 등
- 선박장치(6건) →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마련,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인증 및 사용기준 마련 등
- 선박운용·인프라(7건) → 원격검사 제도 확대 및 기준 마련,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 등
- 해양안전(9건) →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대응기준 개발, 항만 영상데이터 정보 관리방안 마련 등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전체과제는 다음과 같다.



(5)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육성기반 구축과 해운물류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등 미래선박 분야에서 조선강국 입지를 견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약 42만명 고용 증대, 약 56조 원의 조선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등이 기대된다. 향후 원활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산·학·연·관 법·제도 정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및 시장변화 등을 파악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1) 추진배경

신산업 분야는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빠르게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의 주기적인 개정(Rolling Plan)을 통해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로드맵 수립 이후 실제 기술발전 및 시장형성 상황을 반영하고, 이에 다른 새로운 규제이슈를 포함시켜 각 분야별 로드맵 2.0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수립된 자율주행차 로드맵을

전면 보완하여 2021년 12월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Lv.3(레벨3) 자율차가 2022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관련 서비스시장이 성장하는 등 자율주행 시대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 로드맵(2018.11)을 통해 마련된 Lv.3 자율차 상용화 기반위에서 2027년 Lv.4 자율차 상용화 및 자율차를 활용한 다양한 여객·물류 등 서비스 활성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수립을 추진하였다.

자율주행 기술단계(Lv.)

*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

레벨 구분	Lv.0	Lv.1	Lv.2	Lv.3	Lv.4	Lv.5
명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운전 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을 상시 잡고 있어야 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 필요 X,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작동구간 내 불필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구간	전 구간
예시	사각지대 경고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	조향 및 감가속 동시작동	고속도로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2) 기존 로드맵 성과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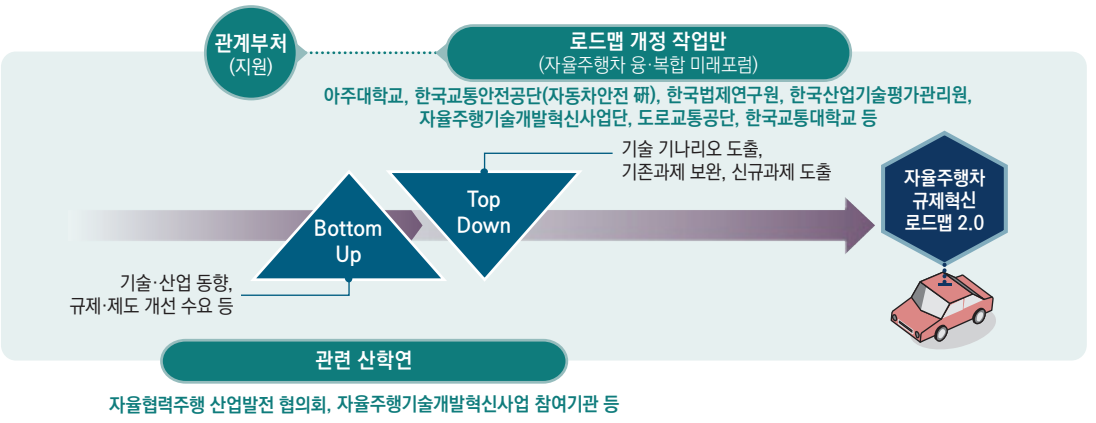
1차 자율주행차 로드맵(2018.11 수립) 과제 30개 중 단기(~'20년) 및 중기(~'25년) 과제 15개를 전부 또는 일부완료하였다. Lv.3 자율차 관련 안전기준 정비 등 선제적으로 자율차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규제사항을 정비하면서 Lv.3 자율차 상용화라는 1차 로드맵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였다. 로드맵 과제 외에도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을 위한 「자율차법」 제정,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확대, 범부처 자율차 연구개발 사업 착수 등 자율주행 기반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는 Lv.3 자율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2년이 도래하면서 자율차 기술·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규제이슈를 반영한 로드맵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변화,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을 추진하였다. 기존 로드맵 과제 30개중 전부완료 과제 10개를 종료하고, 신규로 20개 과제를 추가하여 40개 과제로 로드맵 2.0을 마련하였다.

(3) 로드맵 구축 과정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업 체계를 2021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였다. 산·학·연·관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규제사항 및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발굴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시점에 맞는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해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존과제를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였다. 도출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성·규제 난이도·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하여 과제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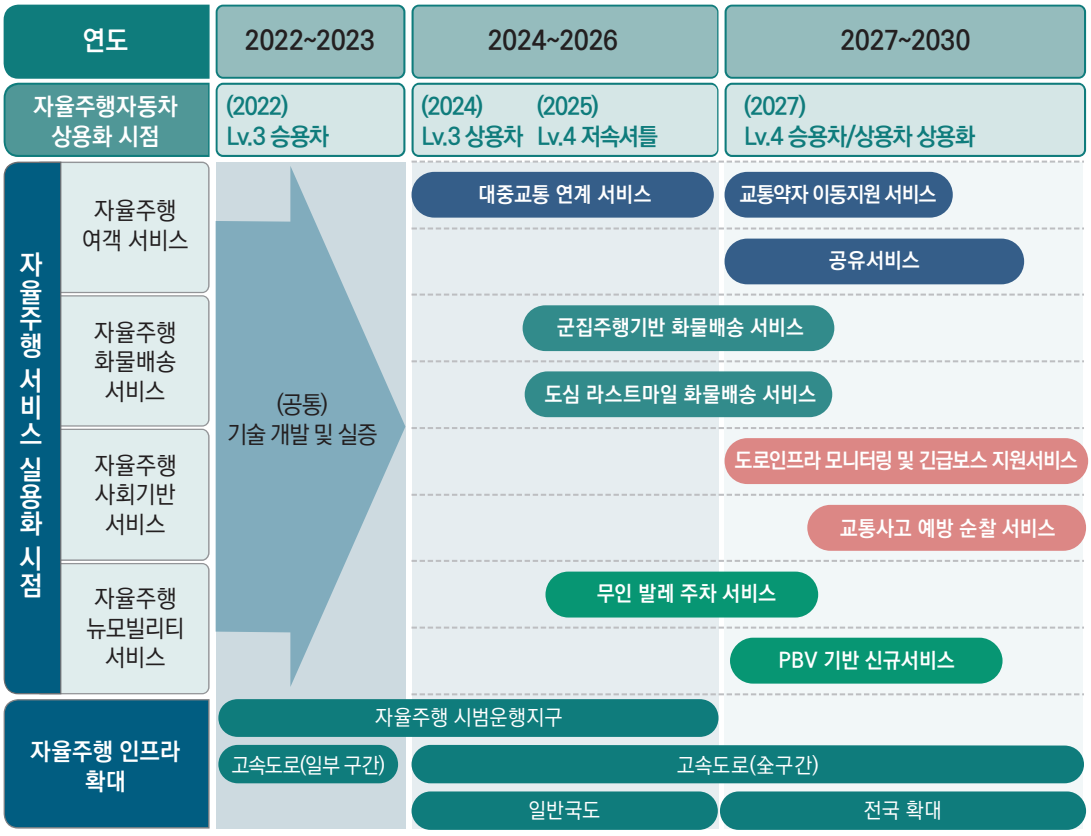


국토부·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는 발굴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현재 제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였다. 마련된 로드맵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산·학·연·관 간담회(2021.12.15)를 통한 논의·보완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2021.12.23)를 통해 발표되었다.

(4) 기술발전 단계 예측(미래 시나리오 2.0)

기술발전 단계는 ①자율주행 자동차, ②자율주행 서비스, ③자율주행 인프라 영역에서 3단계로 미래 기술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①자율주행 자동차는 2022년 Lv.3 승용차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Lv.4 승용·상용차의 상용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②자율주행 서비스는 규제특례 기반의

시범·실증을 시작으로, 향후 차량공유, 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Lv.4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③자율주행 인프라의 경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밀도로지도·C-ITS 등 자율운행 인프라가 주요 도로에 구축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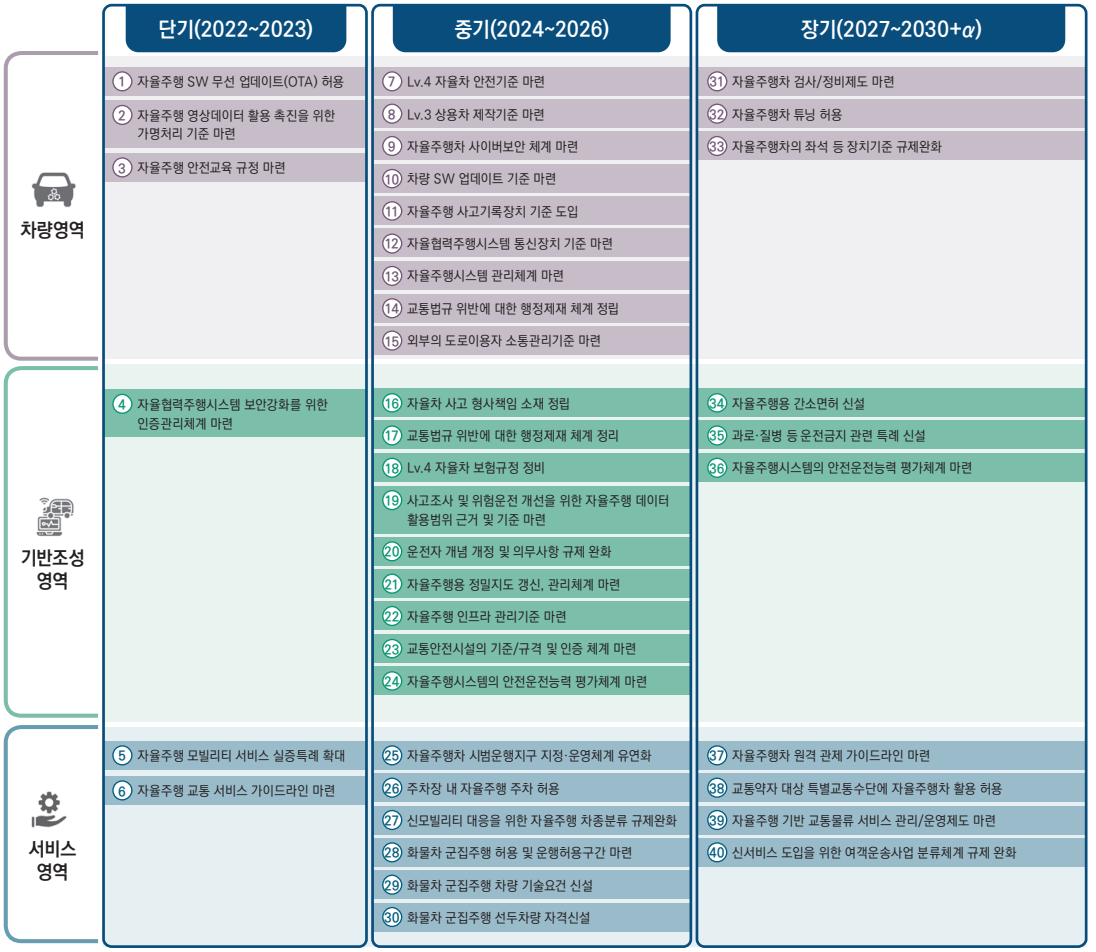


(5) 로드맵 세부내용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영역별 규제를 발굴하였다. 로드맵은 ①차량, ②기반조성, ③서비스의 3개 영역 총 40개 규제이슈와 개선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차량(15건)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Lv.4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 자율차 사이버 보안체계 마련 등
- 기반조성(13건) →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 Lv.4 자율차 보험규정 정비 등
- 서비스(12건)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설, 주차장 내 자율주행 주차 허용,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 완화 등

이를 바탕으로 수립한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전체과제는 다음과 같다.



(6) 향후 계획

자율주행차 세계시장규모는 2020년 약70억 달러(약8.4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6,565억 달러(약787조 원)으로 93배나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자율차 시장을 선점하고자, 정부는 로드맵 2.0을 기반으로 2027년 세계최초 Lv.4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이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동시에 2021년부터 1.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4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집필자 • 김현정 사무관
Tel. 044-200-2665, hj730@opm.go.kr
집필자 • 조병대 사무관
Tel. 044-200-2666, cankoon@korea.kr
집필자 • 김미선 전문위원
Tel. 044-200-2667, kms2667@korea.kr

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무인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63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新의료기기, 신약 등을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규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간소화 등 탄소중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부처별 추진일정에 따라 과제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 주요 규제혁신 사례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총 36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301건(81.5%)이 완료되었으며, 68건(18.5%)은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도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의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3건의 규제개선 사례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이하 전기차충전기(약 9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중에 있으나, 2021년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350㎾ 초급속충전기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안전확인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범위를 현행 200㎾이하에서 400㎾이하로 확대하여 초급속 전기충전기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 운용요령 개정('22.12월)

(2)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를 경감해 주던 것을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시에도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 (산업부) 친환경차동차법 개정('22.12월)

(3)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 자격 완화

그린벨트내 주유소,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20.2)하였으나, 설치 자격은 해당 주유소 또는 LPG 충전소의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유자가 아닌 수소충전소 관련 기업들도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친환경차 충전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21.5월)

(4)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항암제, 희귀의약품, 감염병(코로나 19 등) 백신·치료제 등 신약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운영 중이나 심사기간, 제출자료범위*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과 예측성이 낮았다.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의약품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우선심사 대상 증명자료, 개발경위, 제조방법,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 등
**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2.1월)

(5)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의료데이터를 사용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 승인 절차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임상시험계획 수립 후 IRB*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하였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 179개 운영('22.4월 기준)
**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22.12월)

(6)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대조약 선정대상 확대

동등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은 대조약과 비교하여 동등성을 입증해야 하며 대조약은 식약처에서 공고한 의약품 중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공고된 대조약이 없는 경우 식약처의 공고를 기다려야하며 제품 개발도 제형·용량 등 공고사항(제품명, 성품명, 제형, 용량 등)으로 제한되어 바이오시밀러 산업발전을 저해하였다. 이에 제약사가 신약 또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의약품 중 대조약을 선정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제조판매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이미 받은 생물의약품과 비교하여 임상시험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입증된 의약품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21.4월)

(7) 드론 개발 시 '안전성 인증' 예외 확대

2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여, 드론을 수리·개조할 때마다 매번 안전성 인증 후 비행을 할 수 있어 드론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최초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인 인증 없이 드론의 수리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제작, 정비기록, 비행성능 등을 확인(초도, 수시, 정기인증 등)
** (국토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운영세칙 개정('21.12월)

(8)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인구,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밀집 지역 및 위험한 비행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도심 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위축되었다. 이에 도심 내 드론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량적 수치를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연구용역 진행('21.6~'21.12) 후 가이드라인 마련('22.12월)

(9)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제공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IoT 기술 뿐만 아니라 3차원 고정밀지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상도 90m 이상의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되어,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 가능하여 산업용으로는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전문기관의 보안심사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계에서도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정밀지도 제공을 확대하였다.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22.3월)

(10)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생산' 가능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 생산**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공공조달 입찰·계약 참여가 가능했다. 이에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도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생산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영세한 혁신 시제품 지정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예: 태양광 CCTV 보안등, IoT 맨홀 등)
**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요건(제조공장, 생산시설, 인력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21.7월)

(11) 지하철 객차의 Wi-Fi 속도 상향

지하철 객차의 Wi-Fi 공유기용으로 6GHz 대역을 신규 공급하였으나, 6GHz 대역은 방송사, 통신사 등의 통신 용도로도 사용 중이어서 전파 혼간섭 우려로 전파 출력을 제한(25mW)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하여 지하철 객차 내의 Wi-Fi 속도를 10배(70→700Mbps) 상향하였다.

* (과기정통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22.3월)

제3절 민생규제 혁신

1 규제챌린지 추진

집필자 • 정 송 사무관
Tel. 044-200-2407, jngsng@opm.go.kr

가. 추진배경

그간, 정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여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2020년 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논의·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갈라파고스 규제: 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제시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 6월 경제인 간담회에서 '규제챌린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밝히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하였다.

나. 추진경과

규제챌린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다.

규제챌린지 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건의협회	소관부처
1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대한상의	여가부
2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대한상의	국토부
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산업융합옴부즈만	복지부
4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주한유럽상의	식약처
5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대한상의	환경부
6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대한상의	고용부
7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외투옴부즈만	산업부
8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벤처협회	복지부·식약처
9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중기중앙회·중견연	환경부
10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대한상의·벤처협회	복지부
11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대한상의	복지부
12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대한상의	과기정통부
13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주한유럽상의	식약처
14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대한상의	복지부·식약처
15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주한유럽상의	국토부

정부는 규제챌린지 추진을 발표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각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협회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및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하여 최종 검토결과를 도출하였다.

* 민간인 또는 부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전문가 등)으로 구성 + 규제챌린지 과제 논의를 위해 건의협회·기업,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 필수 참석

다. 추진결과

정부는 건의과제 15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등 2개 과제는 일부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외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검토하기로 하였다.

라. 주요 개선사례

①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대한상의 / 여가부)

기존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게임중독 문제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11.11월~)

개선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시간선택제 일원화) 및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21.8.25)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 순기능 확산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회복 지원 등

효과 청소년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존중, 보호자 교육권 및 가정내 선택권 부여 등 규제 합리성·실효성 확보, 게임산업 발전 기여

②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대한상의 / 국토부)

기존 법령상 공유주거 개념 부재로 민간형 공유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규제(면적제한 등)를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어려움

개선 공동기숙사 개념 신설 및 그에 따른 건축기준,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 마련 추진(주택공급 브리핑, '21.9.15)

효과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이 용이하여 1인 가구 주거 안정 및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 기여

③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산업융합옴부즈만 / 복지부)

기존 인간·인체유래물 연구는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 서면동의 면제요건 해당*시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 연구 가능

*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 다만, 아동, 장애인 등 동의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대리인의 서면동의 면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개선 대리인도 동일한 면제요건 적용

- 단, 면제요건 적용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등을 통해 엄격 관리

효과 대리인 서면동의 획득이 불가능한 연구(아동폭력 사례 연구 등)가 가능하여 인간 대상 연구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④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주한유럽상의 / 식약처)

기존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18년~)으로 국내 인증 함량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

개선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 ISO 16128: 화장품의 천연·유기농 함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가이드라인)

- 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 'ISO 지수 표시' 간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ISO 지수 표시·광고 방안' 마련

효과 화장품 영업자의 원활한 제품 홍보에 기여, 기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통한 화장품 산업 발전 지속 유도

⑤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대한상의 / 환경부)

기존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강화('20.1월~)

* 허용기준: ▲(고정지붕형) 200ppm 이하 ▲(내부부상지붕형) 방지시설 설치(저감율 90% 이상 또는 50ppm 이하) ▲(폴리올레핀계 물질) 200ppm 이하 등

개선 저장시설 형태·보관물질을 고려하여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 ▲(고정지붕형)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연결 및 95% 이상 저감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내부부상지붕형) 저장물질 위해도에 따라 시설기준 차등 적용 ▲폴리올레핀계 물질에 대한 합리적 배출기준 마련 추진

효과 제도운영 탄력성 부여로 관련업계 부담 완화,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내부부상형과 연결 등을 유도하여 총탄화수소 저감효과 증가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대한상의 / 고용부)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21.1월~)

* ▲(1,000톤 이상) ~'22.1.16 ▲(100~1,000톤) ~'23.1.16 ▲(10~100톤) ~'24.1.16 ▲(1~10 톤) ~'25.1.16 ▲(1톤 미만) ~'26.1.16

- 원료보다 중간제품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중간제품을 제조·수입 하는 자는 구조적으로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문제점 발생

개선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26.1월)까지 적용

- 단,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MSDS를 받은 경우는 현행과 같은 유예기간 적용하여 악용 가능성 방지

효과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의 부담 및 애로사항 적시 해소, 현장에 맞는 MSDS 제도의 원활한 추진

⑦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외투옴부즈만 / 산업부)

기존 상품 종류·크기와 관계없이 15포인트(가로 3, 세로 4mm) 크기 이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판매가격 의무표시제도' 확립('17년~)

- 위반시, 1차는 시정권고, 2차부터는 과태료 부과*

* ▲(2차) 20~30만 원 ▲(3차) 30~50만 원 ▲(4차) 100~200만 원 ▲(5차) 300~500만 원

개선 '15포인트 이상' 의무조항 삭제

- 단, 고령자·장애인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조항 마련

*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침」에 '글자크기는 15포인트로 권고한다' 포함

효과 가격표시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매장 운영업체 부담 감소 및 홍보 효과 증대 기여

⑧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벤처협회 / 복지부·식약처)

기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식약처) 및 '신의료 기술평가**'(복지부) 대상

*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을 위해 장비의 규격 등에 대한 심사
** 건강보험 등재 등을 위해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

- 관련 업계는 신의료기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심사·평가기간 단축 및 임상문헌 미제출 등 규제 완화 지속 요구

개선 평가기간 단축을 위한 동시(통합)심사를 지속 추진하고, 신의료 기술에 대한 임상문헌 제출 예외 적용, 유예기간 확대 등* 개선

* ▲유예대상에 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진단용 의료기기는 평가실시 이력(탈락)에도 불구하고 1차례 시장진입 허용

효과 신의료기술 활용 의료기기의 선진입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신의료기술 발전 촉진 기여

⑨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중기중앙회·중견연 / 환경부)

기존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연간 0.1톤 이상은 등록, 0.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 1톤으로 등록기준 상향 조정, R&D 목적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등 화학업계 지속 요청

개선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 유해성' 우려가 낮은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2종 면제), R&D 목적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수입시 상세 성분정보자료 제출 면제(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효과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생산 비용*·소요기간 부담 감소, R&D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여

*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평균(건당) 22.7 → 8.4백만 원(14.3백만 원 절감)

2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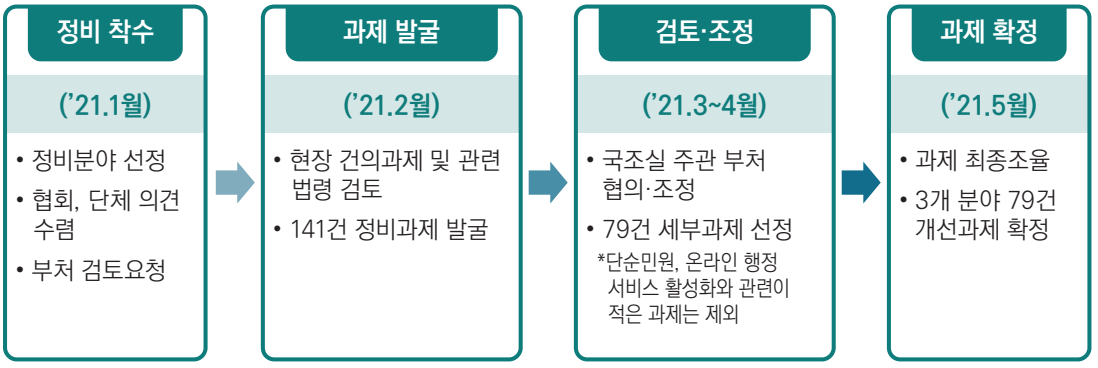
집필자 •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1, kimjh061425@opm.go.kr

가. 추진배경

정부는 그간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기준 규제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행정부담 및 영업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온라인 행정서비스 분야 53건, 온라인 교육 분야 20건, 온라인 영업 분야 6건 등 3개 분야 총 7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례

(1)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처리(국토부 등)

기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업허가 신청 등에서 여전히 방문 처리하는 규정 존재

개선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 인정 등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전자문서 효력 확대

효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확대로 행정절차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② 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 간소화(농식품부 등)

기존 등록증, 면허증, 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162개)하여 행정업무 처리 중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효과 행정효율 증진 및 기업·국민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③ 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 인정(과기부)

기존 국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받은 경우 전자서명의 신뢰성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 부재

개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 면제하는 '국제통용평가' 적용

효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사업자의 평가부담 완화

④ 모바일 전자고지 분야 확대 및 제도화(국방부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2~'23.2, 1회 연장)'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중

개선 △예비군 훈련 및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비스 확대 △법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화

효과 주소불명, 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사용자 편의 제고

(2) 온라인 교육 활성화

①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교육부)

기존 일반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개설(20%) 및 이수가능학점(20%)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불가

개선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학위 운영 가능

효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학위취득 접근성 확대

② 직무교육 등 대면교육의 온라인 교육 허용(식약처 등)

기존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의 적기 실시 곤란

개선 축산업 영업자 위생교육 등 필수교육을 적기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허용 확대

효과 필수교육의 안정적 제공, 교육 수요자의 편의 제고

(3) 온라인 영업 활성화

①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생협력 추진(중기부)

기존 판로 확보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 가중

개선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 관련 주기적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포상·지원

효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이용업체 상생협력 유도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

②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중기부)

기존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으로 상시인력 2인 이상, 생산장비 구비 의무, 생산공장에 격벽을 갖추도록 규정

개선 △생산직 2인 이상 → 1인 이상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허 → 임차보유 인정 △격벽설치 의무 → 격벽설치 예외(사무실 공동임차시) 인정

효과 동영상제작서비스 업체의 비용절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라. 향후 계획

정부는 금번에 마련한 79개 개선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온라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장입지 규제개선

집필자 • 조수향 사무관
Tel. 044-200-2416, soo820@opm.go.kr

가. 추진배경

정부는 '21년 규제혁신 플랫폼, 신산업 성과와 함께 기존산업 불편·부담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산업 중 투자·고용 비중이 큰 제조업은 규제 완화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기업·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공장입지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검토내용

검토 대상은 그동안 기업·지자체의 규제개선 요구와 투자 애로가 많았던 산업단지·용도지역의 입주업종 용지·임대 등의 규제로, 규제 취지와 규제 완화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완화 기간·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다. 추진경과 및 결과

그동안 기업·지자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규제애로 사례 분석을 거쳐 규제정비 대상분야를 선정하였고, 관계부처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의 총 11건 입지규제를 개선하였다.

구분	과제명	방식
산업단지 (7건)	❶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영구
	❷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용적률 완화	영구
	❸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영구
	❹ 산단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종 의무건축면적 완화	영구
	❺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최소면적 완화	영구
	❻ 항만배후단지 제조업 입주요건 완화	영구
	❼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존 입주대상 확대	영구
용도지역 (4건)	❶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	영구
	❷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한시
	❸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	한시
	❹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영구

라. 주요 정비사례

(1) 산업단지

①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산업부)

기존 산업단지별로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업종이 특정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의 지정도 저조하여 신산업 및 지역특화 업종 육성이 제한

개선 대구·광양국가산단 등 산단별 입주애로 해소, 산단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허용규모·업종 등 종합개선 추진

① (대구산단) 입주가 자동차 자제업체로 제한되어 모터사이클업체 입주곤란
→ 모터사이클 제조업 입주 허용(입주 관련 행정조치 완료, '21.6월)

② (광양산단)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지연
→ 네거티브존 지정(광양산단계획 개정 완료, '21.6월)

효과 산단 입주기회·투자 확대(광양산단은 약 2,700억 원 투자 전망)

②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용적률 완화(국토부)

기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은 건폐율이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01년~)
→ 도시·업종을 고려한 공간활용에 제약

개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용도지역 입지규제 미적용 구역)에 포함하여 지자체별 건폐율·용적률 다양화

효과 32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활성화('20년말 기준 미분양률 26.9%)

③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국토부)

기존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은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입주기업의 임대료 조달 부담이 더욱 가중

개선 경제·기업여건 고려, 필요시 임대료 부과기간을 3개월로 단축

효과 24개 산단 300여개 업체 임대료 이자비용 약 50% 절감

(2) 용도지역

① 생산관리지역 입주업종 확대(국토부)

기존 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시설이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 식품공장 등으로 제한되어 영농시설 등의 입지확대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가 꾸준히 제기

개선 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환경관리 조건 하에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입주 허용

효과 생산관리지역('19년말 최종 4,971㎢) 편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국토부)

기존 '03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곳은 공장 최대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어 기존 공장의 증설이나 편의공간 확보가 곤란

개선 전환 당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20%에서 40%로 한시적 확대 허용

효과 해당지역에 1.2만개 공장 증개축 가능

③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 완화(국토부)

기존 산업단지·공업단지 외 공장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6m의 이격이 필요하여 공장 설치가능 면적감소로 투자 저해 우려

개선 신규 공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소 이격거리를 3년간 1/2로 완화

효과 공장입지 3% 증가 효과(1만㎡/건폐율 80% 기준 최대 246㎡ 추가확보)

마.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투자로 이어지도록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 내용을 기업 등에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준비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 건의,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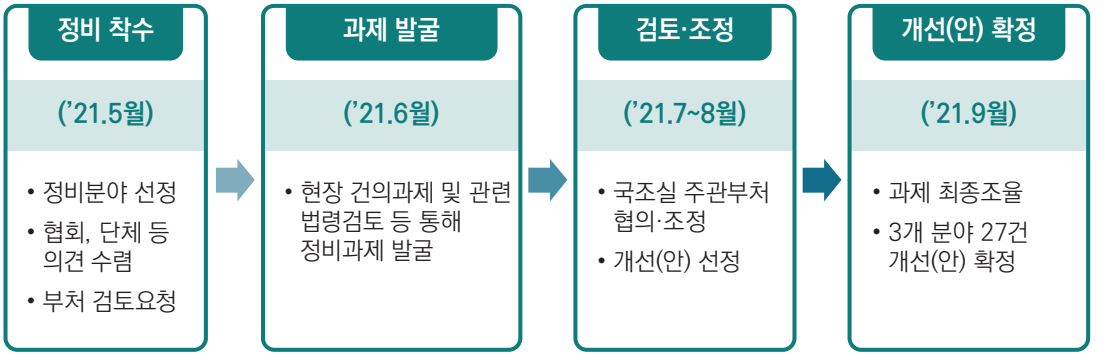
집필자 •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1, kimjh061425@opm.go.kr

가.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규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민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및 휴·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침체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둔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기업의 판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중에서 경제단체 건의 등 규제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대상을 선정하였고,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비를 추진하였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3개 분야 총 27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다. 주요 개선사례

(1) 판로확대 지원

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농식품부)

기존 지역특산주는 직접생산 또는 제조장 소재지, 인접 지역 內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 가능

개선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량(5%) 사용할 경우 지역특산주로 인정

효과 지역특산주 개발 및 판매 확대 전망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확대(식약처)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직접배송 포함)만 가능하고, 뷔페음식점 등 다른 식품접객업에 판매 불가

개선 과자류, 빵류 및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효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25,018개소) 매출 증가 예상

③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식약처)

기존 고령친화식품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

개선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만65세 이상)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기준 신설하여,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 식품 개발 촉진

효과 약 2,300억 원 규모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 고령인구 건강 증진

④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 확대(식약처)

기존 나트륨·당류 섭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으나, 저감 제품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저감제품 출시 곤란

*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률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대비 25% 이상 적을 경우 '덜', '더 줄인' 등의 저감 표시 가능

개선 라면 등 유탕면은 별도의 저감표시 기준 마련 → 유통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 낮춘* 경우 저감 표시 가능

* 단, 식약처가 제시하는 유탕면의 나트륨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정

효과 소비자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매출 약 24억 원 증가 전망

(2) 영업부담 완화

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기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개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할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허용

효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영업자(919개소)의 약 250억 원(업체당 약 27백만 원) 비용 절감

② 목재생산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산림청)

기존 목재생산업 제재업(1~4종) 중 둘 이상의 업종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술인력 확보 필요
→ 기술인력 미확보시 영업정지(1회 위반 3月, 2회 위반 6月)

개선 업종별 기존 인력이 다른 업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기술인력 추가 확보 없이도 둘 이상의 업종 등록 가능

효과 목재생산업 제재업체(151개)의 기술인력 추가 확보비용약 53억 원(업체당 약 35백만 원) 절감

③ 민간건설공사 인지세 부담 방식 개선(국토부)

기존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공동납부해야 하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

* 건설업체 인지세 부담 규모('20): 약 64,064만 원

개선 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인지세를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50%씩 공평하게 부담

효과 민간건설업체의 인지세 부담 약 3.2억 원 완화

(3) 공공조달 개선

①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선정 확대(조달청)

기존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중소기업 낙찰 제한적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이 20억 이상인 경우로,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 선정하지 않고 제안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고 유형

개선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발주물량 80% 이상은 중소기업 대상 공고

효과 수도권 중소 레미콘 업체 낙찰 확대(약 55억) 전망

②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조달청)

기존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분야 비중은 약 20%이나, 전용몰 등을 통한 판로지원은 대부분 물품 중심으로 운영

개선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대화·협상을 통해 서비스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 추진

* 공공조달에서 서비스 공급·수요 간 쌍방향 거래(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한 플랫폼

효과 약 50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서비스 거래 창출 전망

③ 추가납품검사 부담 완화(조달청)

기존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에 한해 검사 생략 가능

- 납품검사 완료 후 10%를 초과한 추가 납품시 검사 부담

개선 납품검사 생략을 위한 추가납품요구 상한금액 상향(10% → 30%)

효과 납품검사 생략 대상 증가(15,820 → 30,113건)

④ 내용연수 적용 자율성 확대(조달청)

기존 보안용카메라 등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이 기술발전에 뒤처진 경우에도, 내용연수* 규정으로 인해 적기 교체 곤란

* 내용연수(보안용카메라 7년, 차량번호판독기 9년 등)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개선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은 사용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때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

효과 정부물품의 탄력적 교체로 약 508억 원의 구매수요 증가 전망, 국민생활 안전 강화

라. 향후 계획

정부는 개선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개선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와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5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집필자 • 장성희 사무관
Tel. 044-200-2635, jangsh@korea.kr

가. 추진배경

지역은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으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물론 개선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비교적 크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최근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민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게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개선은 지역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 애로, 국민·전문가 대상의 민생규제 공모에 의한 건의 중 지역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 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토론회, 현장협의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를 거쳐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진성과('17~'20)

구분	주요 내용
1차('17)	• **△낙후지역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분야 **47건*** **개선** *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 기준 완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 허용 등
2차('18)	•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분야 **33건*** **개선** *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등
3차('19)	•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분야 **50건*** **개선** *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 허용,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등
4차('20)	• **△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주민불편해소 분야 61건* 개선** * 자유무역지역 농림 축산물 제조가공업 허용,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허용,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등 생산·판매 허용 등

나. 특징 및 경과

'21년도의 지역경제·민생 분야 규제혁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보육·복지 서비스 확대 등 규제혁신 수요가 높은 △ 지역활력제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불편행정 해소 △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건의와 국민공모(Bottom-Up), 지역균형 뉴딜과 같은 국가 정책 연계형 테마규제 공모(Top-down)로 접수된 건의 중 지자체-행안부 합동 개별과제 검토회의·주요 현안과제 현장방문 등을 거쳐 150여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 검토, 국조실·행안부 합동 쟁점 조정을 거쳐 총 56건을 개선하였다.

과제 발굴 (지자체·행안부)
- 지자체 개선 필요과제 발굴
- 부처 협의과제 선정

→

부처 검토 (소관부처)
- 개선건의안 수용 여부 검토

→

쟁점 조정 (국조실·행안부)
- 부처 미수용과제 및 중점과제 대상 국조실 주관 조정

다. 분야별 추진결과

지역 활력 제고 (15건)
- 기존 공공시설 활용성 향상
  -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 감면, 국유림 입체공간의 대부료 부과기준 완화 등
- 지역 개발 통한 경제성 증진
  -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 항만시설내 공공의료기관 신설 허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20건)
- 중소기업 매출증대 촉진
  -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간 사무실 등 시설의 공동사용 허용 등
- 소상공인 애로 해소
  -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소상공인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기간 연장 등

주민편의 향상 (10건)
- 주민불편 행정절차 개선·행정서류 간소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의 대리반납 허용, 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가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11건)
- 취약계층의 복지조치 강화·동물복지 확대
  -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통보규제 간소화 등

라. 주요 정비사례

(1) 지역 활력 제고

①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목적 사용시 사용료 감면(기재부)

현황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철도선형 개량, 노선 대체로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지사용료 납부

개선 지자체 체육시설, 공원 등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 감면 허용

→ 철도 유휴부지 활용 촉진 및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부담 경감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및「철도산업법」 개정, '22.12월

② 국유림 입체공간의 대부료 부과기준 완화(산림청)

현황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토지(입체공간)의 대부료 산정시 산「국유재산법」 적용대상 재산에 적용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 미비

*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 비율로, 국유재산법령에서는 2.1%~9.4% 적용하여 대부(사용)료 부과함

개선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대부 대상 국유림의 입체공간에 대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입체공간(공중·지하 공간)을 활용한 생산활동 가능 및 국유재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부료 기준 적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2.12월

③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산림청)

현황 현행 임산물 생산을 위한 관정(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는 임업용 산지에만 가능하도록 제한

개선 공익용 산지에도 농업용수 개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임업 경영여건 개선 및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자 불편 해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2.12월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① 기술개발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확대(중기부)

현황 창업자를 7년 미만의 사업자로 제한함에 따라 기술개발, 실증연구 등 비교적 장기 소요되는 창업인 경우 지원에서 소외

개선 신산업 창업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요건을 개정

→ 기술창업 생존율 증가 및 유니콘 기업*의 발굴·육성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 '21.12월(완료)

②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간 사무실 등 시설의 공동사용 허용(국토부)

현황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영업공간 공유 방식의 사업자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공유오피스 사업자는 별도 사업자 등록 필요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 사무공간 구비 필수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시, 시설기준에 공동사용 계약공간도 인정

→ 1인·스타트업 공유오피스 활성화 및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22.4월

③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중기부)

현황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 기타 서비스업·여행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규정

개선 소상공인 기준을 중소기업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

→ 복잡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 등 행정 비효율 개선 및 지원 확대

* 둘 이상 업종 영위시 주된 사업 및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등 파악 등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22.12월

(3) 주민편의 향상

① 고령자 운전면허증의 대리반납 허용(경찰청)

현황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시 본인이 직접 반납하여야 함

개선 고령운전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 또는 가족에게 위임하여 면허반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캠페인 참여분위기 확산 및 연로한 주민의 관공서 방문과 행정처리 불편 해소 필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리신청 허용 지침」개선, '21.5월(완료)

② 기간제 교사 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허용(교육부)

현황 기간제 교원은 경력증명서 발급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함. 교육공무원(재직,퇴직자)은 나이스 홈에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

개선 기간제교원의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기능을 포함한 4세대 나이스(NEIS) 서비스 구축

→ 기간제교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주민센터나 임용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나이스(NEIS)시스템 기능개선, '23.3월

③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내역 전산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국토부)

현황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자체의 행정처리 불편

개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지자체 플랫폼에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개선, '22.1월

(4) 사회적 약자 보호

① 저소득층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복지부)

현황 가정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등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재함(아동수당은 가능하여 형평성 논란)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10~20만 원 지원중

개선 가정양육수당도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급되는 방안 추진

→ 저소득층 영유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환경 조성
☞「영유아보호법」개정, '22.12월

②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통보규제 간소화(복지부)

현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상 관할 지자체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설입소 아동, 가정위탁, 상습학대 친권자 등

개선 보호사실 통보시, 보호되는 시설(기관)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을 개정(삭제)하여 아동 안전 도모

→ 보호자에게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개정, '22.12월

③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기간 이행 및 단축 개선(복지부)

현황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쟁점 안건은 협의요청서 접수후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됨

개선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협의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용지침을 개정

→ 신규 사회보장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복지지원 가능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22.1월(완료)

제4절 공직사회 혁신

1 적극행정 추진

집필자 • 나홍환 사무관
Tel. 044-200-2916, nahh87@opm.go.kr

가. 2021년 추진성과

(1)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유례 없는 감염병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출현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기존의 규정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적극행정은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행정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3월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면책 제도 신설 ▲사후 면책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기존에 없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제도 기반을 구축했다. 2019년 이후 매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활발히 활용되어 방역 대응, 민생경제 지원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2021년에는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주요정책 전반을 지원하고,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 **대통령 지시**

-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기 바람('19.2.12)
-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20.3.17)

(2) 주요내용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차인 2021년에는 확실한 국민체감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고, 주요 추진방향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체감 정책 지원

2021년에는 전 기관이 총 171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해당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과제별 실적 및 주요성과를 격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성과 창출을 견인해왔다. 중점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다. 연초에 선정된 171개 과제는 신규 현안 발생 등에 따라 연말에는 280개까지 확대되었고, 과제별 추진 과정에서 모범사례 398건을 선정하여 전 기관에 적극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중점과제 추진실적을 연말 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

주요사례로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백신 총력 도입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일괄 지급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간편 지원 ▲백년가게 제품의 밀키트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체계 구축 ▲음식점 옥외영업 요건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는 2019년 61.6%, 2020년 62.2%, 2021년 64.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민원·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국민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2021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100일간 총 1,115건이 접수되어 143건이 해결되었고, 주요사례로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원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제도 개선 등이 있다.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 온' 사이트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올해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57건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심사단 1,60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전 부처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총 800여명을 운영하면서 경진대회 심사, 주요정책 발굴 등 적극행정 추진에 참여하도록 했다. 적극행정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부처별 100여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21년 기관별 적극행정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 통로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다) 적극행정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는 2019년 8월 도입되어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중심축으로 역할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표준훈령을 제정하여 기관별 운영의 편차를 최소화했다. 또한,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2021년 69개 기관, 468건이 활용되어 2019년 18개 기관, 42건 대비 10배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중앙·지자체에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정을 독려하는 등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사전컨설팅은 2021년 73개 기관에서 1,506건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의사결정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법제처는 2021년 총 412건에 대해 평균 4~5일 이내로 신속하게 회신하면서 전년 215건 대비 약 2배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총 3,910명의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고, 이 중 50%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근평가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하는 한편, 인센티브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2019년 529명, 2020년 2,022명에 이어 올해 3,910명으로 선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상·하반기, 연 2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 추세, 기관별 적극행정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극행정 정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중앙부처(상반기: 58.6% → 하반기: 68.5%), 지자체(상반기: 68.7% → 하반기: 69.6%) 모두 인식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6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도 적극행정이 명문화되는 등 법적 기반이 확보되면서 적극행정의 추진동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접 온라인 영상에 출연하여 적극행정 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골든볼 트로피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영상은 총 8편 분량으로, KTV, 유튜브,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되었다. 영상으로 소개된 주요사례는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 판매 ▲지자체 농수산식품 아마존 입점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고속도로 휴게소 가변형주차장 설치 ▲항공기 통합보험 등이 있다.

나. 향후 계획

적극행정 본격 추진 4년차인 2022년에는 일상적인 공직문화로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3가지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1) 지원제도 내실화

먼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한다.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한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는 유형별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할 예정이다.

(2) 일선 현장으로 확산

적극행정을 지방 일선 현장으로 확산한다.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를 장려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중앙부처 → 지자체)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43개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하고, 컨설팅 및 법제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현장 변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공직사회 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되는 경우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극행정 문화가 지자체 등 일선 현장까지 뿌리 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 규제입증책임 전환

집필자 • 정 송 사무관
Tel. 044-200-2407, jngsng@opm.go.kr

가. 개요

정부는 2019년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한 것이다. 이에 각 부처에서는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의 체계 구축과 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0년, 2021년에는 제도의 확산과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였다. 먼저 입증책임제를 기반으로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행정규칙에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주요 공공기관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규제 정비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협단체·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입증위원회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나. 추진현황

2021년에는 입증책임제를 기반으로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민간·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다.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건의협회·기업이 직접 참여한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총 15개의 건의과제 중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등 9개 과제가 개선되는 등 건의협회·기업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2020년부터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국민생활·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년간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일제 검토·정비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기관의 규정도 입증책임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였다.

아울러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였다. 특히 각 부처 규제입증위원회에 건의자·경제단체,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여 찬·반 의견이 균형있게 논의되고, 규제입증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으로 심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이를 적용한 법령 및 규정의 일제 정비를 통해 공무원 등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건의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건의자들 역시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다. 향후 계획

2022년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및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증책임 과정에 건의협회·기업의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개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증책임제를 규정화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다.

제5절 규제혁신 소통 확대

1 국무총리 주재 현장대화

가.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규제샌드박스 도입 2주년을 맞이해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 '21. 2. 2,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등
- **(민간)**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도구공간 대표이사,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 본부장, 에스아이셀 대표이사 등 7명





규제샌드박스 성과보고회에서는 먼저 국무조정실장이 410건의 과제 승인, 1.4조 원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고용창출 등 규제샌드박스 2주년의 주요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신속확인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5개 분야(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하였다

■ **분야별 발표기업 및 발표과제**

❶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❷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❸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❹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❺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나.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 7월 1일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하여 특구현장을 살펴보고 그간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를 되살리고 배터리팩과 같은 부품을 국산화 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 **일시·장소**

• '21. 7. 1,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중기부·기재부·문화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차관 등
• **(민간)**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백란 호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민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맞추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서는 ①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②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③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등 3개 사업이 실증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증테스트 중인 차량들을 관람하고, 직접 LNG 중대형 상용차에 시승하기도 했다. 실증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반이 구축되면 신시장 창출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지역인사 50여명이 함께 하여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LNG 상용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총리는 신속한 규제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몇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전북 경제에 규제자유특구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현장방문이었다.

다. 가명정보 성과보고회

집필자 • 공도연 사무관
Tel. 044-200-2912, kdy5142@opm.go.kr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2020년 2월 4일)으로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막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활용이 제한되었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활용함에 따라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데이터 3법 시행('20년 8월) 1년을 계기로 가명정보 제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2021년 7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21. 7. 28(수),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 **(국회·지자체)** 이광재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 **(참석기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최귀선 국립암센터 센터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최준기 KT 사업본부장, 하경태 카카오뱅크 팀장, 이은주 삼성SDS 센터장 등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데이터3법 시행 이후의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황과 결합성과를 점검하고, 21차례 이루어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개선필요사항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혁신과제 16개와 맞춤형 지원과제 10개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국립암센터·KT·카카오페이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허용됨에 따라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을 예측하고, 고객 유형별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분석 범위가 확장되었고, 신규대출상품 출시 등 신(新)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기관이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 간소화, 활용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기관 역할제한 완화 등 규제혁신 필요성과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지원확대 요청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데이터 경제 초석인 가명정보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데이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라.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집필자 • 박정용 사무관
Tel. 02-6050-3393, park4467@korea.kr

(1) 추진배경 및 개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범 정부차원의 비합리적 규제 혁파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대화’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관계부처는 “현장대화”를 통해 직접 현장에서 심도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변화된 산업환경 및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장대화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이 기업, 협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주제와 관련된 기업인, 기관 종사자, 연구자 등이 참석하는 “현장대화”에서 이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토론하면서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국무총리, 관계부처 차관 등이 즉석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추진단에서 취합하여 건의자에게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대화는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고자, 업종·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수요자와 진솔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

(2)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금년 규제혁신 현장대화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인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규제혁신”을 주제로 혁신 기술 등을 보유한 신생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7월 6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무총리는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및 청년창업기업 제품 전시관을 방문하여 청년창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창업기업 대표 및 창업지원 기관이 참석하는 현장대화를 주재하여 창업기업이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 일시·장소

- ’21. 7. 6.(목),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달청장, 식약처장, 대전광역시장 등
- **(민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장, 기업대표 등 11명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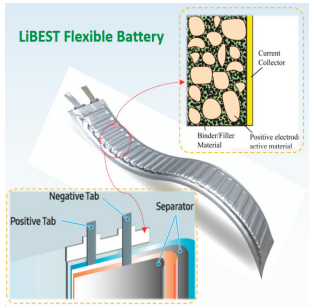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대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장방문

국무총리는 규제혁신 현장대화 시작 전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내 학술문화관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청년창업기업인들이 만든 면광원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2차 전지, 스마트 팜 제품 등을 관람하고,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워크온슈트4) 시연을 참관하고 참석한 청년창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제품 원리	시제품	워크온 슈트	엔젤렉스 매디컬
〈플렉서블 2차 전지〉 휘어지는 공간에 장착 가능하고, 외력으로 인한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디바이스에 안정적으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한 2차 전지		**〈장애인 움직임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의도파악 기술, 보행보조 어플리케이션 기술, 정밀한 구동기 제어기술, 치료사를 위한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을 종합하여 구현한 최점단 장애인 움직임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규제혁신 현장대화

금번, 규제혁식 현장대화는 한국과기술연구원 학술문화관 5층 존헤너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창업기업인들은 사전에 규제건의 과제로 제출한 9개의 과제에 대하여 창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는 형식으로 90분간 진행하였다.

또한, 총리의 적극적인 주문으로 참석한 창업기업이 현장대화 자리에서 5개의 추가 과제를 전달하였고, 현장대화 이후 관계부처에서 해당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를 추진단에서 취합하여 회신하였다.

창업기업 규제혁신 주요 논의내용

구분		개선내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과학기술원 교원창업 심의/승인 제도 완화	• 과기원 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원창업 승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학과/단과대 심의 1단계 심의로 대폭 완화 * 과기특성화대학 창업규정 가이드라인 개정(21.9월)
기술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관련 규제 완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등록 절차 개선	• 공장을 보유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직접생산으로 의제하여 조달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21.9월)
	조달청 운영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직접생산요건 완화	• 공장을 보유 또는 임대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임대공장의 일부를 재임대하여 사용하는 전대차도 직접생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나라장터 등록이 가능하도록 직접생산요건 완화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21.6월)

구분		개선내용
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허용범위 완화	•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방식으로 광고를 허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제출(21.2월)

규제혁신 현장건의 주요사례

과제명(건의자)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창업기업 개발제품 검증을 위한 기회제공형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도입 (위젯누리 대표)	• 서울시 등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도입 필요	• 테스트 베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이 병행될 필요 ⇒서울시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도입 여부 등을 적극 검토	조달청
대기업의 특허, 지식재산 침해 방지 (카이스트 총장)	• 창업기업이 특허를 침해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인지세 비용이 높아 소송에 소극적임	• 인지제도는 남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창업기업에 한하여 인지대를 조정하는 것은 곤란 ⇒다만,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창업기업 등의 지재권 탈취 시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추진	특허청

2 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가.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회의

(1) 회의 개요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국무조정실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을 논의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를 2020년부터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총리실/민/관/학 4개 분야 참여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유주거, 이동약자 맞춤 콜 서비스 등 총 5차례에 걸쳐 다양한 쟁점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아래 세 건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 주요 조정사례

(가) 이동약자 맞춤 콜 서비스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흔히 '장애인 콜택시'로 알려진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 콜밴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가·지자체만 운영이 가능하고 민간업체는 불가능하다. 운수사업자가 아닌 민간업체가 해당 사업을 할 경우 택시·버스 등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갈등과 자동차 안전관리 등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평균 40~50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5월 ㈜힐빙케어는 교통약자를 대상하는 운송사업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여객운송사업 질서 훼손 우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다.

이에 2021년 3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당 안건에 대해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폭을 넓히는 등 사회적 가치가 크고, 다른 신규 서비스에 비해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업역이 중복될 소지도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국토부 등에서 실무논의를 통해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다른 기업들의 추가 신청에 따라 현재까지 총 5개 기업에 대해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 아파트 주민간 차량렌트 중개 플랫폼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간에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해당 법령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30대가 넘는 차를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이나 차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1~2대 가지고 있는 개인은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가 있고, 대여를 원하는 이웃주민이 있어도 대여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5월 ㈜타운즈는 아파트 주민간 차량 대여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질서 혼란, 안전 위협,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었다.

2021년 3월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당 안건에 대해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좋은 사례로서 신규시장 창출과 유휴 자원 활용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렌터카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후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실무논의를 통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요건 등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공유주거 '코리빙' 임대서비스

집필자 • 강혜인 사무관
Tel. 044-200-2503, khi0419@opm.go.kr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1인 가구 주거형태이다.

독립된 개인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동생활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고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셰어하우스 등과 구별된다.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을 떠오르고 있다.

2021년 1월 ㈜MGRV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일명 '코리빙')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신축형'과 기존 관광호텔 등을 매입·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형'으로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MGRV의 '코리빙' 모델은 건축법·주택법 상의 건축물 기준에 맞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신축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과 유사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침실이 1개만 허용되어 1인당 침실 1개이나 주방·거실은 공유하는 2인 1실, 3인 1실 등 세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없었다. '리모델링형'은 기숙사와 유사하지만, 기숙사는 학교 학생, 공장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고 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주거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5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차로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축형'은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뤄냈으며, '리모델링형'의 경우에는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4차로회의 개최 일주일 뒤 정부는 침실을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는 '신축형 코리빙 모델'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22년 3월)하여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는 등 공유주거 서비스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 2021 규제혁신포럼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1) 추진배경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시행성과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21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2) 개요

이날 규제혁신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웨비나(Web+세미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유튜브로도 중계하여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럼은 국무조정실에서 성과발표를 시작으로 산업현장에서 바라보는 성과에 대한 평가, 해외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와의 비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장소

- '21. 1. 12, 온라인(국무조정실 유튜브 중계)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등
-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등
- **(민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 강영철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박철우 대한상공회의소 변호사, 유정희 벤처연구소 부소장 등

발표 이후 이어진 참석자 간 토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신속한 사전심의 및 효율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 실증특례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법령정비의 필요성 등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규제샌드박스 기업·전문가 간담회

집필자 • 이호기 사무관
Tel. 044-200-2415, chipclip7@opm.go.kr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1월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승인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부처·전문가의 논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일시·장소**

- '21. 12. 29(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등
- **(단체·전문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원소연 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
- **(기업)**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김영욱 제로그라운드 대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 황철연 소울인포테크 대표 등





간담회를 주재한 윤성욱 국무2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의 가시적 성과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우수사례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라.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수립을 위한 기업·전문가 간담회

집필자 • 류준호 사무관
Tel. 044-200-2437, riswell@opm.go.kr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대상으로 최초로 로드맵을 수립한 후 그동안의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 2.0으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5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초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좀더 심도깊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1. 12. 15(수),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등

• **(민간)** 장정아 아주대 교수, 조용혁 법제연구원 센터장,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신승원 현대자동차 실장,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이사 등

윤성욱 국무2차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기술 발전수준, 상용화 및 신규 서비스 등장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정부-업계-전문가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정비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율주행차 로드맵 2.0을 토대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누비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보완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다.

3 기업·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집필자 • **김재연 사무관**
Tel. 02-6050-3292, kjy1980@korea.kr

집필자 • **박정용 사무관**
Tel. 02-6050-3393, park4467@korea.kr

집필자 • **황혜정 사무관**
Tel. 02-6050-3364, sister2@gg.go.kr

집필자 • **오자현 사무관**
Tel. 02-6050-3372, momizzy@korea.kr

(1) 개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발표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알려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실적 및 사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출범 이후('13.9~'21.12) 총 11,788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7,934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2,929건(36.9%)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누적)	일반민원(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1,788	3,854	7,934	2,929(1,331)	961	4,044
		100%	36.9%(16.8%)	12.1%	51.0%

분야별로는 영업 386건(13.2%), 국민불편 298건(10.2%), 환경 240건(8.2%), 위생안전 220건(7.5%), 기술인증 168건(5.7%), 공장입지 163건(5.6%), 자금·금융 155건(5.3%), 재정·세제 146건(5.0%), 판로조달 142건(4.8%), 인력 140건(4.8%) 등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	영업	국민불편	환경	위생안전	기술인증	공장입지	자금금융	재정세제	판로조달	인력	창업	대중소상생	교육의무	기타
2,929	386	298	240	220	168	163	155	146	142	140	50	43	41	737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453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363건, 산업부 251건, 식약처 218건, 고용부 210건, 복지부 142건, 금융위 139건, 중기부 139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고용부	복지부	금융위	중기부	기타
2,929	453	363	251	218	210	142	139	139	1,014

2021년에는 총 1,138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545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224건(41.1%)을 개선하였다.

(단위: 건)

계	일반민원 (이첩등)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138	593	545	224(93)	58	263
		100%	41.1%(17.1%)	10.6%	48.3%

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현행 국내는 재생에너지 구매제도가 부재하였으며, 특히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이 필요하나 관련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던 상황(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용만 가능)

개선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외부구매 수단* 중 제3자 PPA, REC 구매, 지분투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 외부구매 수단(녹색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 구매, 지분투자) + 자가발전
** 단, 녹색 프리미엄제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기반영된 RPS, FIT 발전량을 대상으로 하는바 온실가스 감축인정은 불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21.1월)

☞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는 국제적 환경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②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록시 직접생산 증명 간편화

현행 공공조달시장에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 요건 확인을 위해 공장소유 또는 공장 임대차 사실 증명 요구

개선 공장 전대차에 의한 생산도 직접생산에 포함하여 직접생산으로 인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중소벤처기업부 '21.5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조달청 '21.6월)

☞ 창업기업을 비롯한 영세한 업체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지원은 기술창업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창업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라디오 재난방송 실시기준 합리화

현행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도 텔레비전방송과 마찬가지로 시·군·구 더 나아가 산지, 평지까지 구체적으로 호명

개선 보라디오방송의 경우 "한파", "폭염", "건조"에 한해 재난지역을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호명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기준」 개정(방통위, '21.7월)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지역에 대한 라디오방송 실시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라디오방송사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④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공고문 표준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작성시 관련지침 미숙지로 각종 오류·위반사례 발생, '표준안 마련' 필요

개선 계약대상물(주택관리업자,공사·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 공고문표준안'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고시 활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상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입찰 편의,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한 지침 위반 예방,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여 입찰절차의 혼란 감소

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이 산업단지와 협동화사업단지로 한정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개별입지 뿌리기업의 소외감 발생, 정부지원사업 수혜의 균등한 기회박탈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개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공업지역을 추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산자부, '20.6월)

☞ 기업간 협업, 공동대응력 향상, 매출액 증가와 고용창출 등 전국에 걸친 균형잡힌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며, 뿌리산업 육성 정부정책의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의 정부정책 체감도를 향상

⑥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오염 유발물질 배출규제 개선

현행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강화('20.1월)되어 고정지붕형 저장탱크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200ppm이 신설 및 확대적용으로 인해 THC 200ppm 규제 준수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시 2차 오히려 석유저장시설과 방지시설 연결시 폭발, 화재 등 안전 위험 우려

개선 저장시설 형태·보관물질을 고려하여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 (고정지붕형)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연결 및 95% 이상 저감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 (내부부상지붕형) 저장물질 위해도에 따라 시설기준 차등 적용
- (폴리올레핀계 물질) 합리적 배출기준 마련 추진(~22.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 '21.10월)

☞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내부부상지붕형과 연결하여 탄화수소를 95% 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달성

⑦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

현행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중 위해성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개발사 품목의 제품명,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등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이러한 경미한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관련된 모든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여 위해성관리계획 품목 변경허가를 다시 하고 의약품의 위해성을 재검토 받아야했기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개선 가이드라인 개정('21.8월)을 통해 공동개발사의 제품명, 회사명, 또는 담당자 연락처 등과 같은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민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식약처, '21.8월)

☞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품목검사 준비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 업무 효율 및 기업 경쟁력 강화

⑧ 전기차 배터리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민간사업 활성화

현행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는 해당 지자체에 반납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존재로 지자체의 폐배터리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로 재활용하거나, 폐배터리에 포함된 리튬,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재활용하는 산업육성에 장애요인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조항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개정(환경부, '21.1월 시행)

☞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 주기를 민간에서 사업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활성화

⑨ 주52시간 근무제 안착 및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보완 및 도입

현행 주52시간제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필요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하여 주52시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고용노동부, '21.4월)

☞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 보완입법 시행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는데 기여

⑩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서식, 첨부서류를 표준화, 간소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이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으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서식이 부처·기관 별로 상이력이 낭비되는 문제점 발생

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21.1월 시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절차, 기준, 서식 등)가 표준화하였으며, 해당 제도를 반영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의 구축으로 연구자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효율성 제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과기부, '21.1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서식 유용성, 공동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53종으로 표준화하고, 부처·전문기관별 상이한 시스템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통합하여 사업참여 중소벤처기업 부담 경감

(3)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민·기업과 함께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이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별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첫 번째, 신산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규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주요 분야는 ①스타트업 지원, ②영세자영업자 지원, ③신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④신규규제(ESG, 핀테크 등) 완화이다.

두 번째, 오랜 기간동안 쌓인 관행 등으로 인해 쉽게 깨지지 않는 경직된 규제는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를 재설계하도록 하였다. 주요분야는 ⑤지역 균형발전, ⑥국토의 효율적 개발, ⑦건설산업 구조혁신이다.

세 번째,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였다. 주요분야는 ⑧식의약 등 생활안전 제고, ⑨국민친화적 행정 혁신, ⑩산업안전 등 규제정상화이다.

기업 현장소통은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의 규제혁신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기업 애로에 대한 일선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기업현장 방문 활동은 내실있는 기업건의를 돕고 관계부처의 이해 괴리를 좁힘으로써 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보다 긍정적인 규제개선을 이끌도록 기여하였다.

① 스타트업 지원
② 영세자영업자 지원
③ 신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④ 신규규제(ESG, 핀테크 등)
⑤ 지역 균형발전
⑥ 국토의 효율적 개발
⑦ 건설산업 구조혁신
⑧ 식의약 등 생활안전 제고
⑨ 국민친화적 행정 혁신
⑩ 산업안전 등 규제정상화

① 스타트업 지원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등록 절차 개선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와 협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직접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진입 불가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제조업체와 협업 승인 시 협업기간 동안 직접 생산을 인정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21.9월)	조달청

② 영세자영업자 지원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결정방법 개선	• 개인사업자의 보수월액은 최고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결정	•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 등에게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복지부, '21.1월)	복지부
사업장 감독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및 행정절차 개선	• 변경된 감독기준(중상해 재해율)을 해당 기업에도 감독대상 사유가 충분히 설명·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지방관서에 명확히 시달 요청 • 더불어 자기 사업장 및 동종업종의 재해발생 정보(중상재 재해율 포함)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장기) 필요	• 감독 시 감독대상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감독결과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청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지방관서에 시달 • 사업장 재해율 정보는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장 감독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및 행정절차 개선(고용부, '21.4월)	고용부
소량취급시설 검사 공량 및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검사 항목 대비 공량 및 수수료 과다 산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검사 및 진단수수료 산정 근거 마련으로 검사수수료 절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환경부, '21.1월)	환경부

③ 신산업(바이오, 헬스케어) 육성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공동개발 신약의 한국내 세계 최초 허가를 위해 제조판매증명서 제출의무에 대한 대체 방안	• 수입 신약의 경우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규제 •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제조한 신약도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필요로 국내보다 타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 GMP 대상 수입 신약의 경우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규제 폐지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신약 제조, 판매 증명서 규정 삭제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21.4월)	식약처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자료 요건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명시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중 자외선차단지수(SPF) 등의 설정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 중 자외선차단 지수(SPF) 등의 설정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 기구(ISO) 시험법이 명시함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식약처, '21.6월)	식약처

④ 신규규제(ESG, 핀테크 등)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관리 제도 개선	•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시티 도시건설을 위한 교통, 환경, 건축, 도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 시설의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철강 재질로 전파 차단으로 인한 사업추진 곤란	• 스마트시티 도시화에 적합한 도로상의 맨홀뚜껑 재질을 전파 투과가 가능한 비철강 재질을 사용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국토부, '21.2월)	국토부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개선	• '21년 1월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중 배출구가 없는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방법 및 자가측정 생략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기준 제시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환경부, '21.6월)	환경부
완전판매모니터링 (해피콜) 전자적 방식 도입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해피콜이 불가하도록 규정	①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TM채널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법 해피콜을 허용 * 단, 고령자 계약은 현행과 같이 전화로 해피콜 실시 ②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피콜에 대한 미응대시 해피콜 종료 방식 개선 • 「보험업법 시행세칙」 개정(금감원, '22. 상반기)	금감원

⑤ 지역 균형발전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공익사업 수용 주택 (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근생시설은 철거 후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불인정	•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도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개정(국토부, '21.5월)	국토부
국내 복귀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총량제 등 관련 규제 완화	•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복귀기업 미포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복귀기업을 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토부, '20.12월)	국토부

⑥ 국토의 효율적 개발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업 행위허가 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만 설치 가능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야영장 및 일반야영장 설치 가능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해수부, '21.8월)	해수부
비관리청 토지,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건의	•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 항만시설은 임대금지되어 항만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여 항만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항만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과 해당 임대가 항만시설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항만관리청이 임대허가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 반영 • 「항만법」(해수부, '20.7월 신설)	해수부

⑦ 건설산업 구조혁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종심제 사회적책임 지역경제기여도 심사항목 개선	•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중 해당업체 비율이 높은 입찰자에 가점 부여하고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	•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간이형 종심제 대상 사업에 대해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비율을 산정토록 기준 완화 •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공포(기재부, '20.12월)	기재부
부담금 미납가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제2항)	•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하고 요율을 국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경감(월 1.2% → 일 0.025% 이내)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기재부, '21.6월)	기재부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개선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에서 추가로 감점하는 기준을 적용함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로 감점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복제재로 볼 소지가 있어 추가 감점기준을 삭제함 •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국방부, '21.6월)	국방부

⑧ 식의약 등 생활안전 제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 융자, 교육홍보, 조사연구, 포상금 지급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	• 식품진흥기금 사업 대상을 감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이외에도 필요시 지자체장이 식약처장에게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식약처 '21.2월)	식약처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 의무 완화	• 건강기능식품영업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예외 근거규정 미비	• 영업 승계 시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승계받지 않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 '21.7월)	식약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시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스스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면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개별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조사 착수 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조사 착수 후 조사 완료 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국토부, 2월)	국토부

⑨ 국민친화적 행정 혁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속도 현실화	• 톨게이트 하이패스 통과 속도 30km/h 제한	• 도로폭·기하구조 등에 비추어 속도상향이 가능한 다차로 하이패스 대상, 본선형 80km/h·나들목형 50km/h로 제한속도 현실화 * 단차로 하이패스는 시설물·도로폭 등 한계로 30km/h 현행 유지 • 「도로교통법 제59조」 개정(경찰청, '21.1월)	경찰청
분실된 카드 반환시 은행의 본인 확인 법적근거 마련	• 금융회사가 자동화기기(CD/ATM)의 고장으로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획득하였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본인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음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 '20.11월)	금융위
자동차보험 대인Ⅱ 치료비 과실상계 적용 개선	•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상해 14등급중 12~14급인 환자(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염좌(삔 것), 타박상 등) • 현행 대인Ⅱ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적 한계에 기인	•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Ⅱ)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처리 * 환자의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1~11급)와 보행자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쌍방이 차량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감원, '23.1월)	금감원

⑩ 산업안전 등 규제정상화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정비사업 교육환경 영향평가 합리적 개선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공정성및 중재 역할 부족하고 학교장의 과도한 공공기여 및 불합리한 심의 발생하여 평가서 검토기한 준수 및 세부 매뉴얼 마련 필요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전문성 화를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시 학교의 장 의견 수렴절차 마련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교육부, '20.7월.)	교육부
주정차 특례조항 절차 개선	• 기존 교통활동은, 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해제, 허용 특례구간을 정하는 국가사무였음	• 경찰법 제4조제2호나목 신설: 자역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항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2 개정: 시·도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해제, 허용 특례구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권한이양) • 「도로교통법 제34조」 개정(경찰청, '21.1월)	경찰청
도로표지병 색온도 범위 소폭 확대 및 전문기관 검사 검사기준 개선	•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금액이 10% 이하인 경우 납품검사를 생략하되, 초과 시 납품검사를 실시	•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범위(현행 10%)를 30%로 상향 조정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5조」 (조달청, '21.8월)	조달청

(4) 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규제개혁위원장,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찾아가는 지자체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이하 '지역 현장간담회')을 개최하고 있다.

21년에는 지역 현장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중소기업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 등 유관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전국 지역특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지역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산업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정하여 정부 해당 부처와 논의, 해당 법령 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지역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기업인·주민이 참석하여 지역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의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해결방안을 위한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지자체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과제해결을 독려하고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였으며, 나아가 'Follow-up(후속조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지를 고무하였다.

지역 현장간담회 건의 주요 개선사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지역특구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완화	• 주차장법에 의거,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할 때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 공영 주차공간 확보, 공공 개방주차장 지정 등 주차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차량의 출입제한 등 주차난의 발생할 위험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위치, 용도, 규모를 정하여 주차장 설치면제 가능	국토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관련 규제특례 도입	• 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	• 행정절차 효율화 및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화사업자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및 변경 시 시·도지사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 다만,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의제대상에서 제외 필요	문체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련 규제특례 도입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완화 사례가 있고 동일한 특구에서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허용	고용부
국유림법 관련 규제특례 적용 현실화(산림청)	• 산양삼 재배 목적의 대부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20년간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을 것, 마을주민 1/3이상의 연명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 과도한 요건을 요구	•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있는 사용허가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의 적극적인 규제특례 적용 요청	산림청

대전 충남 세종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충남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경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REGULATORY REFORM BOOK

PART

03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REGULATORY REFORM BOOK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34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 136
제3절 일몰규제 정비 146
제4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152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154
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62

PART 03

규제개혁 법령·제도 운영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 입법연혁

집필자 •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1, kimjh061425@opm.go.kr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에 최초 시행되었다. 동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신설강화 규제심사 도입, 기존규제 정비 등 현재의 규제시스템 체계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후 13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 마련('13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형평 근거 마련('18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19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혁신시스템 정비를 뒷받침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연혁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97.8.22('98.3.1)	△행정규제 등록 및 대국민 공표 △규제영향분석제도 △기존규제 정비 △신설·강화시 규제일몰제 △규개위 설치 등
'05.12.29('06.6.30)	△규제사무목록 국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존속기한 도래시 국회 제출 △규개위 위원 증원(20명 → 25명)
'10.1.25('10.1.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3.7.16('13.8.17)	△재검토형 일몰제 근거 마련
'15.5.18('15.5.18)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 영향 고려
'17.11.28('18.3.1)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18.4.17('18.10.18)	△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 △규제정비 요청 처리절차(규제개혁신문고) △연관규제 개선 △규개위 회의록 공개
'19.4.16('19.7.17)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도입 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우선 고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2 2021년 개정사항

정부는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그간 행정규제기본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출('20.8월)하였고, 동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등록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요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규제정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규제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 활성화 등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2절 규제개혁신문고

집필자 • 민자영 사무관
Tel. 044-200-2634, jymin@korea.kr

1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규제건의 창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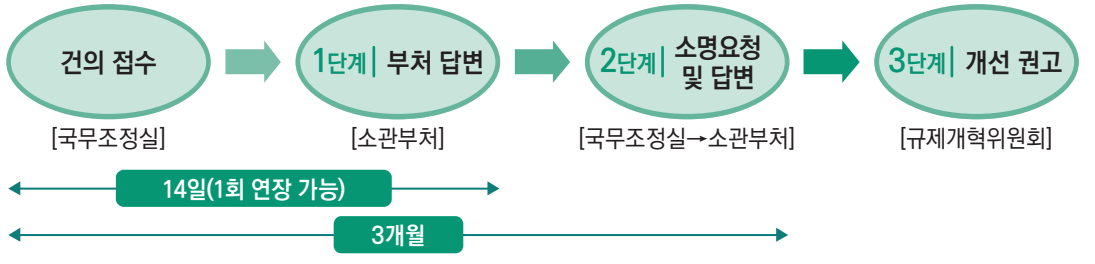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한 사항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

규제개혁신문고는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 3단계 검토과정을 통해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규제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규제개혁신문고 3단계 처리절차



1단계 소관부처는 규제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건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2단계 국무조정실은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하여 타당성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소명제도 국무조정실은 부처 답변이 불합리하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 부처가 소극적·관행적으로 답변한 경우 소관부처에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관부처는 소명대상 규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입증위원회 등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소명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규제건의수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마다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신문고가 '18년에 이어 '21년 평가에서도 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서 온라인 소통서비스 우수 평가('18년 4~6위→ '21년 3~4위)를 받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14년 3월 개설 이후 국민참여 활성화라는 국정기조에 맞춰 운영체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구분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① 국민 권리	**규제의견 제출제** (소극적 권리)	→	**규제정비 요청제** (정부 성실답변 의무 → 적극적 권리)
② 건의 창구	**비전용·비독립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內 일부 운영)	→	**전용·독립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③ 건의 경로	**분산·다원화** (부처·지자체별 개별 접수)	→	**통합·일원화** (부처·지자체 연계 → 접수창구 단일화)
④ 지자체 건의	**전담창구 부재**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불가)	→	**전담창구 마련** (지자체 상시·즉시적 건의 가능)
⑤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부재**	→	**지자체 규제혁신활동 평가반영**

❶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을 통해 규제의견 제출제에서 '규제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였다. 국민이 규제정비를 요청하면 정부는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❷ 기존에 규제정보포털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개설('17.10)하여 국민이 규제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홈페이지를 구축('21.1)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❸ 중앙부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건의를 개별 접수하던 것을 규제개혁신문고로 연계·통합하여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였다.

❹ 제도와 현장의 경계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자체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상시·즉시적으로 규제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담 창구를 마련('20.1)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활용도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21.10)하였다.

4 2021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21년말까지 총 23,174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총 7,697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1년 한해 규제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549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21년 규제건의 처리현황

규제건의	처리	전부수용	일부수용	대안제시	기시행	불수용	중장기검토
1,549	1,549	92	125	1	183	1,081	67

또한,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건의 중 6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하여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함으로써 소관부처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2021년 규제건의 1,549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1.3%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18.1% ▲자영업 건의 13.4% ▲기타 건의 17.2%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64.7%를 차지한다.

수용된 규제건의 218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50.5%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1.1% ▲자영업 건의 16.0% ▲기타 12.4% 순이었다.

5 주요 개선사례

가. 국민불편 해소

①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행안부]

현황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사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진 촬영·제출 필요

→ 사진 재촬영 및 중복제출에 따른 불편 야기

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시 기존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불필요한 중복적인 사진 촬영·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21.11)

※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내 재발급 건수: 연간 93,673건('20년 기준, 행안부)

②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확대[식약처]

현황 인체위해성분이 포함되었거나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문제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에 대한 별도 규제 부재

→ 어린이·노약자가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위험 존재

개선 기존 유통 식품의 형태·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화장품도 제조 및 판매 금지대상에 포함

→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 「화장품법」 개정 ('21.8)

③ 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식약처]

현황 주류 이외의 식품(알코올 1%미만)은 알코올 함량에 따라 '무알코올' 또는 '비알코올'로 표시

* 주류 이외 식품 표시 구분(알코올 함량 기준)
- (알코올 0%) 무(無)알코올, No-alcohol added 등
- (알코올 1%↓) 비(非)알코올, Non-alcoholic

→ 소비자가 '알코올이 없다(무알코올)'와 '알코올이 아니다(비알코올)'라는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 발생

개선 주류 이외 식품대상 알코올 함량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도록 표시

→ 정확한 식품정보를 통해 임산부 등 대상 식품안전의 편익 확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21.11)

※ 무/비알콜 시장규모: ('20년) 200억 → ('25년) 2,000억 예상

④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현실화(자동차가액 기준 완화)[국토부]

현황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자산 중 보유 자동차가액 총 2,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

*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 인상된 차량 가격 고려시 자동차가액 입주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당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대두

개선 인상된 차량 가격 등 현실을 반영,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중 보유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조정 (2,500→3,500만 원)

→ 자동차가액 현실화를 통해 상당수의 입주요건 부적격 사례 해소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고시) 개정('21.4)

※ 전국 공공임대주택 현황: 약 157만호(임대·영구임대 등 150만호, 행복주택 6.3만호)

나. 중기·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 허용[식약처]

현황 위생용품은 기존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제조·생산 불가

→ 원료·제조공정이 유사함에도 불구, 요실금팬티위생용품 제조를 위해 기존의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 외 별도의 시설 필요

개선 상호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도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공유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요실금팬티위생용품를 생리대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제조 가능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21.11)

※ 생리대를 생산하는 A사는 현재의 시설·설비로 요실금팬티 제조가능→시설·설비비 약 200억 원 비용절감 기대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대상 확대[산업부]

현황 20KW 초과 전기사업용 발전설비는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만 예외적으로 대행 허용

* 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다른 소규모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예외적 대행 허용대상 확대(태양광1,000KW↓, 연료전지300KW↓ → 태양광1,000KW↓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300KW↓)

→ 안전관리자 대행 허용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22.12)

※ 안전관리자 비용(월): (고용) 약 250~300만 원, (대행) 100KW당 약 10만 원
↳ 수력·풍력·바이오 등 58개 신재생에너지사업장 연 14.5억 원 비용절감

③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환경부]

현황 분리배출된 커피박(커피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폐기물)

* 식물성 유지·비누, 비료, 사료 등

→ 재활용 유형이 제한되어 커피박 처리비용 부담 발생

개선 추가적으로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

→ 폐자원의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 커피박 처리 부담 완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

※ 국내 연간 커피박 발생량: 약 15만 톤 추정

④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의 측정대행업자 제출대행 허용[환경부]

현황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대행업자를 통한 측정대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측정결과는 반드시 사업자 제출*만 허용

* 환경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 전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측정 결과 제출에 애로

개선 측정대행업자가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자도

측정결과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

→ 제출대행 허용으로 대기배출사업장 사업자의 부담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1.6)

※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전국 60,611개('19년 기준, 환경부)

다.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① 스마트양식장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가능 시설에 포함[국토부]

현황 산업단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스마트양식단지를 개발할 민간 수요가 증가하나, 제조업이 아닌 1차 산업(어업 등)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가 원칙적으로 불가

개선 기술 축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특정어종에 대한 ICT 등 기반의 '대규모 스마트양식장'에 한해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허용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는 산단

→ 신규산단 입주가능 시설 확대조치를 통해 국내 양식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6)

②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환경부]

현황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가공 후 수처리제로는 재활용 가능하나, 화학물질로 재활용 불가

→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단순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

개선 반도체 공정의 폐산을 '수처리제'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 기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

※ 폐산 중 인산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연간 약 15억 원의 비용 절감(업계 추산)

③ 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산업부]

현황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용도(승용/화물) 구분 없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동일 적용

* 승용·화물: 5.0km/kwh

→ 화물용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구조와 중량의 차이로 해당기준 준수 곤란

개선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용도(승용/화물)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동일)승용·화물5.0km/kwh → (차등)승용5.0km/kwh, 화물4.0km/kwh)

→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사업 활성화 기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개정 ('21.7)

④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행안부]

현황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發光)하는 창문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 국내 허용 여부가 불명확

→ 국내 지하철 등에 본격적 도입이 지연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 개발. 현재 중국 주요 도시에서 운용 중이며, 러시아·일본도 본격적 도입 추진 중

개선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광고'는 교통수단 외부면에 발광하는 창문광고 금지규제 비대상임을 명확화

→ 국내 지하철 등에 해당 신기술을 활용한 광고방식 본격적 도입 계기 마련

☞ 「옥외광고물법」 유권해석('20.12)

라. 행정 불합리 해소

① 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의무 합리화[당진시]

현황 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조치*에 따라 시설면적(연면적) 증가로 부설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

* 비산먼지 발생 시설인 저탄시설은 '24년까지 옥내화 조치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근무자를 포함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 발생

개선 환경규제의 불가피성 및 추가적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조치 (300→525m^2)

→ 발전소 현장에서 불필요한 주차장 조성 비용절감 기대

☞ 「당진시 주차장 조례」 개정 ('21.7)

※ 당진화력발전소는 주차장 설치비용 약 20억 원 절감(추가 주차면수: 약 1,100→550대)

② 지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 기준(최소반경 거리기준) 합리화[산업부]

현황 지방 거점산업 혁신클러스터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광역도의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반경 20km이내에서 지정이 가능

* 전국 14개 지정, 신산업분야 예산·세제·융자지원 등 혜택 부여

→ 해당 지정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어, 일부 지방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가 해당 혁신클러스터에 불포함되는 사례가 발생

개선 최소반경 거리기준을 포함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예시: 최소반경 거리기준 20→30km 등)

→ 지역여건에 맞는 융복합단지 지정으로 활성화 촉진 기대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2단계 사업계획」(산업부 작성지침) 시달('21.11)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기준」(산업부 고시) 개정('22.12)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최소반경 거리기준 밖에 위치한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등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 합리화[행안부]

현황 공공조형물 낙찰자 결정시 예술작품으로서의 특징을 감안한 예술적 가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한 평가기준(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으로 선정

→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사례] 경북 포항시 '은빛 풍어' 조형물은 3억 원을 들여 설치 후 철거(→ 고철값 1천6백)

개선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공조형물 평가기준* 신설

* 작품성·예술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포함

→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21.7)

※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공공조형물은 약 1만5천점, 제작비 약 1조 원 추정

④ 친환경 세탁세제 인증기준에 '계량컵 포함' 규제 개선[환경부]

현황 친환경 세탁세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계량도구(컵) 포함' 필수

→ 친환경 인증제도 목적에 반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조장한다는 지적

개선 해당 인증요건에서 계량도구 외에도 표준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허용

* 용기뚜껑 활용방법, 제품표면에 눈금선 표시 등

→ 친환경 인증제도에 맞는 플라스틱 사용저감 등 기대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개정('21.8)

6 향후 운영 계획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불편·민생분야' 명실상부한 범정부 온라인 규제건의 소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건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의 규제개혁 성과 홍보 등 규제개혁신문고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수요자인 국민·기업·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지자체가 규제개혁신문고를 상시 건의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규제개혁신문고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3절 일몰규제 정비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1 규제일몰제 개요

가. 개념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유형

규제 일몰제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마.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일몰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2021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2021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7개 부처의 335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6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한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단위: 건)

총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비규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335	2	67	50	17	260	153	107	6

3 주요 정비 사례

가. 진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촉진

(1)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점포(SSM) 개설등록 개선

개선내용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운영·관리계획, 재무구조 제출 필요

변경 운영·관리계획, 재무구조를 사업계획서 포함 항목에서 제외

기대효과 대규모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 증진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지정기준 합리화

개선내용 기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대기, 수질 등)의 장비보유기준 준수 필요

변경 필요한 필수장비(질량분석기 등)는 공통기준으로 최소화,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받으려는 분야의 장비만 갖추도록 세분화

기대효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초기 사업비용 부담 절감

(3) 가축검정기관 등 지정시 인력기준 완화

개선내용 기존 가축검정기관, 가축개량기관에 필요인력 기준으로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

변경 자격기준을 '축산산업기사' 이상으로 확대

기대효과 신규 진입자 증가에 따른 축산업 활성화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1) 전기·전자제품 우수 제조·수입업자 평가부담 완화

개선내용 기존 재질·구조개선사항 매년 평가

변경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완화

기대효과 기업부담완화 및 제품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기여

(2) 건설기계 정기검사 제도 개선

개선내용 기존 정기검사 미이행시 10일 이내 검사받을 것을 최고

변경 검사받을 것을 명령, 명령기간에 대한 연장 가능

기대효과 정기검사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건설기계업 행정부담 완화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변경신고 간소화

개선내용 기존 내부업무규정 변경시에도 변경신고 필요

변경 내부업무규정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불필요

기대효과 검증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검증역량 증대

다.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복리 증진

(1) 농약가격 표시방법 개선

개선내용 기존 게시판 형태로 농약가격 표시

변경 다른 공산품처럼 제품 또는 진열대에 가격표시

기대효과 소비자가 손쉽게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유도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내 설치가능 시설범위 확대

개선내용 기존 민북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의료기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등으로 제한

변경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 시설 등도 설치허용

기대효과 민북지역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소득증대를 도모

(3)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게시구역 확대

개선내용 기존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서만 전자게시대를 통한 홍보 가능

변경 전자게시대 홍보에 관한 관할구역 제한 폐지

기대효과 지역구분 없이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홍보 활성화

라. 기타 정비사례

(1) 사이버대학 교명 사용의 자율화

개선내용 기존 사이버대학의 교명을 “사이버”, ‘디지털’, “가상” 등 특정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변경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명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사이버대학이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사이버대학 자율성 강화, 일반대학교 대비 불합리한 차별 개선

(2) 유치원의 평가부담 완화

개선내용 기존 유치원 평가시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활용해 정성평가 실시

변경 유치원 공시사항을 활용하여 정량평가를 실시, 필요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유치원의 행정부담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역량집중을 유도

(3) 산림보호구역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허용

개선내용 기존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불가

변경 산림보호구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허용

기대효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통한 문화재 발굴 확대

4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에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 약 1,800여건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개선 등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민생 불편·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제4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집필자 • 정현욱 서기관
Tel. 044-200-2366, waho98@opm.go.kr

1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존속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 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이다.

■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 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 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 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즉,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가 작성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 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 수 및 총 규제 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규제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 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록된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부처별 소관법률과 연계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규제조문을 규제등록카드와 함께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정보포털은 맞춤형 생활법령서비스와 연계하여 창업, 토지이용, 건물관리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생활규제 정보(필요한 조치 및 구비서류, 절차, 관련 법령 등)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국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를 '사전 준비 → 점포 준비 → 영업시설 등 설치 → 위생 관리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 사업의 등록'과 같이 절차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1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년7월~'16년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 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16년7월)을 통해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중이다. 2018년 1월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종합평가 연구용역('17.9~12월) 결과에 따라 법제화는 곤란하지만 훈령·지침 등의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규제비용관리제 법안*(김종석의원안, '17.1.25)에 대하여는 법제화는 곤란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18.3.7 법안소위에서 폐기하였다. 최근 유사한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송언석의원안, '20.8.26)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 중요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 정비

■ **해외 사례**

- **(영국)** 신설·강화규제가 기업·사회단체에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존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비용을 상쇄시키도록 하는 "One-In, One-Out" 제도 도입('11년), "One-In, Two-Out"('13년), "One-In, Three-Out"('16년)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나, '17년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BIT(Business Impact Target) 제도 도입('15년)·운영중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Two for One Rule"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17.1월)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1.1월)

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관리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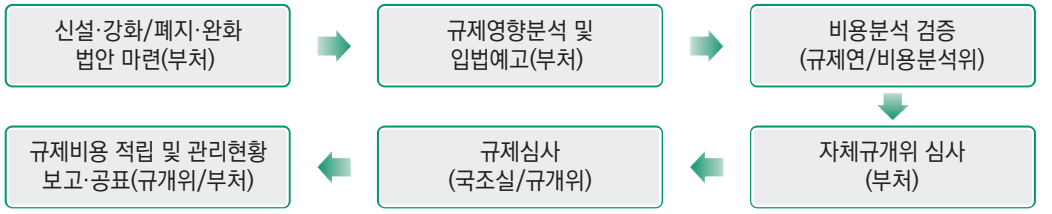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기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기한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규제는 연간균등순비용 1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절차와 간편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과 함께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간편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만 거치며,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은 생략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 반기별로 부처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규개위 보고·공표 및 정부평가 반영

(3) 운영관련 조직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의 경우는 '18년 초기까지는 제도연구실이 규제연구센터에 포함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별도의 제도연구실로 분리되었다. 비용분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팀에서, KIPA(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분석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규제연구센터 현황

구분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능	•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력	• 총 22명(소장: 양용현)	• 총 9명(소장: 원소연)
조직	• 2팀(분석평가팀, 제도연구팀)	• 1팀(비용분석팀)

(나) 비용분석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인(규제심사관리관)과 규제연구센터장 2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의 경우 32회에 걸쳐 비용·편익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다.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2021년 30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266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신설·강화(Cost-In) 규제로 인해 총 2,160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폐지·완화(Cost-Out) 규제로 총 5,425억 원의 규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차등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편익을 비용관리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면서 중소기업에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비용관리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총 2건의 규제 차등화 사례가 비용검증을 완료하여 Cost-Out 금액에 적립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3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13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10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2,909억 원), 국토교통부(-1,241억 원), 농림축산식품부(-222억 원) 등으로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781억 원), 금융위원회(344억 원) 등은 규제순비용이 증가하였다.

누적 순비용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5,311억 원), 농림축산식품부(-4,185억 원)가 감축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14개 부처가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1,407억 원), 보건복지부(170억 원) 등 12개 부처는 증가하였다.

2021년 규제비용관리제 기관별 운영현황

(단위: 백만 원/ 감축비용 누계순)

기관명		Cost-In 금액	Cost-Out 금액	규제순비용 ('21년)	규제비용 누계 ('16.7월~)
총계		**215,955**	**-542,509**	**-326,554**	**-1,373,972**
1	국토교통부	30,285	-154,340	-124,055	-531,055
2	농림축산식품부	17,104	-39,258	-22,154	-418,548
3	산업통상자원부	530	-291,439	-290,909	-363,314
4	방송통신위원회	0	0	0	-96,110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65	-21,791	-20,526	-63,143
6	산림청	5,263	0	5,263	-44,955
7	식품의약품안전처	12,325	-20,661	-8,336	-28,173
8	금융위원회	34,355	0	34,355	-10,435
9	여성가족부	0	0	0	-9,793
10	관세청	0	-757	-757	-4,349
11	중소벤처기업부	23	0	23	-3,218
12	문화재청	700	-342	358	-2,724
13	기획재정부	0	0	0	-2,637
14	특허청	0	0	0	-1,886
15	법무부	0	0	0	0
16	인사혁신처	0	0	0	0
17	경찰청	0	0	0	0
18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0
19	국가보훈처	0	0	0	4
20	소방청	133	0	133	133
21	해양수산부	35	-83	-48	1,240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68	0	1,268	1,268
23	질병관리청	2,260	0	2,260	2,260
24	행정안전부	5,594	-1,529	4,065	2,574
25	문화체육관광부	3,145	0	3,145	6,501
26	공정거래위원회	250	0	250	9,601
27	환경부	7,585	-559	7,026	11,387
28	교육부	0	0	0	13,653
29	보건복지부	4,081	-52	4,028	17,006
30	고용노동부	89,755	-11,698	78,057	140,742

나. 주요 사례

(1) Cost-In 주요 사례

▸ **Cost-In 규제: 총 2,160억 원 증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조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개별사업장의 재해예방 실적에 따라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 운영, 보험급여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100)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할증

개정 개별실적요율 할인이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중 최근 3년간(매년 6.30 기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하여 40~100% 범위 내에서 할인율 조정

효과 개별실적요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증가로 연간 약 699.3억 원 비용 발생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유인 강화 및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확대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인 경우에만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로 확대

효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으로 연간 약 51.8억 원 비용 발생
▹산지 이용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존 영양성분 표시 비대상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

개정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 떡류, 당류, 두부류, 묵류, 소스류,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베이컨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효과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 비용 등 연간 약 47억 원 비용 발생
▹소비자가 최적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라)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존 영유야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 원칙,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최대 5개소까지 영양사 공동 활용 가능

개정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배치 원칙, 단,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가 곤란한 경우 최대 2개소까지 영양사 공동 활용 가능

효과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부담 증가로 연간 약 27억 원 비용 발생
▹안전한 급식 제공·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마) 환경정보공개대상 확대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기존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만 환경정보공개 의무 부과

개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추가

효과 정보 공개 관련 자료 생산 비용 등 연간 약 24.6억 원 비용 발생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업의 녹색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달성 유도

(2) Cost-Out 주요 사례

▸ **Cost-Out 규제: 총 5,425억 원 감축**

(가) 차령연장을 위한 차령기간 내 자동차 검사 의무 부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등에 대한 기본차령 연장 규정 없음

개정 기본차령 기간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등의 차령연장 가능

효과 신규차량 구매비용 절감에 따라 연간 약 857억 원의 비용 절감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감소 및 경영환경 개선

(나)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기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개정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중소·중견기업 이외의 사업자인 경우 감면율을 '21년 80%, '22년 50%로 축소

효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에 따라 연간 약 218억 원의 비용 절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가계통신비 인하

(다) 사료 중 특정 성분의 함량 제한기준 조정(농림축산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기존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은 제한하지 않음

개정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기준 신설, 축종 및 사육단계에 따라 13~24%(양돈사료의 경우 13~20%) 범위 내에서 차등 조정

효과 배합사료 생산원가 및 사료비 절감에 따라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 절감
▹가축분뇨내 잉여질소 감소에 따라 분뇨 악취 감소 및 온실가스 저감

(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기존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 표시제 운영

개정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효과 식품 폐기량 감소에 따라 연간 약 76.1억 원의 비용 절감
▹섭취여부 판단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제출(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모든 시설),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를 각각 작성·제출

개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량에 따라 작성수준 차등화

효과 제도 통합에 따른 서류 작성 비용 감축으로 연간 약 5.6억 원 비용 절감
▹위험이 큰 취급시설 집중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경감 및 안전성 확보

제6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집필자 • 손민정 사무관
Tel. 044-200-2428, minjeong@opm.go.kr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려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연구하고 각국의 규제개혁 정책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여 국내 규제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정책 현황 및 추진성과를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고, 다자 또는 양자간 접촉을 통해 선진국과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평가 결과,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해 2018년 평가결과(3~6위)에 이어 2회 연속 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간 교류에 제약이 있었으나, 화상회의로 개최된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24차, 25차) 등에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규제정책 패러다임, 규제분야 국제협력의 최신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규제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였다.

2 2021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가. 개요

OECD는 2021년 10월 14일(목)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을 발표했다. 규제정책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OECD는 회원국 대상으로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2015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OECD는 규제개혁의 핵심 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각 국의 주요 제도 개선 사례도 소개하였다. 평가방법은 20년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영국, 프랑스 및 한국을 꼽으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3T 전략(Test, Trace, 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나. 우리나라 평가 주요 내용

분야		'15년 (9~15위)	'18년 (3~6위)	'21년 (2~7위)	관련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	9위	4위	3위 (1↑)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신문고,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15위	6위	4위 (2↑)	
규제영향분석	법률	13위	3위	2위 (1↑)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
	하위법령	12위	4위	2위 (2↑)	
사후평가	법률	13위	3위	5위 (2↓)	규제일몰제, 규제입증 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
	하위법령	14위	3위	7위 (4↓)	

(1) 이해관계자 참여

OECD는 규제 입안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규제준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대다수 국가에서 △온라인 방식 활용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청취 △의견조회 대상 법령 확대 등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는 개선되었다고 총평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참여 확대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기업과 국민 누구나 쉽게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소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2) 규제영향분석

OECD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고 규제실패를 방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및 하위법령 부문에서 2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대다수 국가에서, 하위법령 제정 시 규제영향분석의 품질과 절차적 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기운영중인 모든 법률·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비규제수단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대안 분석 △중요도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3) 사후평가

OECD는 정책집행 후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기존규제의 적합성 및 규제의 영향·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5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7위로 평가되었다. OECD는 사후평가 분야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투명성 부문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OECD 회원국 중 약 25%만이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구체적인 방법론 확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시키고 5년 범위내에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국제회의 참석

가. 제24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24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4월 19일~22일 4일간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9/20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래에 적합한 규제관리수단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민첩 규제 거버넌스(Agile Regulatory Governance)」 원칙을 작성하였다. 회원국들은 제안된 원칙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향후 확산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OECD는 규제정책평가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서베이를 통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 등 부문별 조사결과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2021 규제정책평가에서는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의 위기대응 규제 및 위험기반 규제관리에 대한 현황 조사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규제 유연성의 적절한 허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제25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25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1월 19일~23일 5일간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금번회의에서는 규제정책 수립 시 건강·복지·기후위기 등 경제·사회·환경적 영향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OECD는 「규제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모범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을 이사회의 권고문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이에 대한 회원국간 논의를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PART

0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 1 절 개요 168
제 2 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71
제 3 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237
제 4 절 국토·해양 분야 278
제 5 절 농림·산림 분야 406
제 6 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424
제 7 절 노동·환경 분야 444
제 8 절 교육·문화 분야 513
제 9 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37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591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602
제12절 규제영향분석 652

PART 04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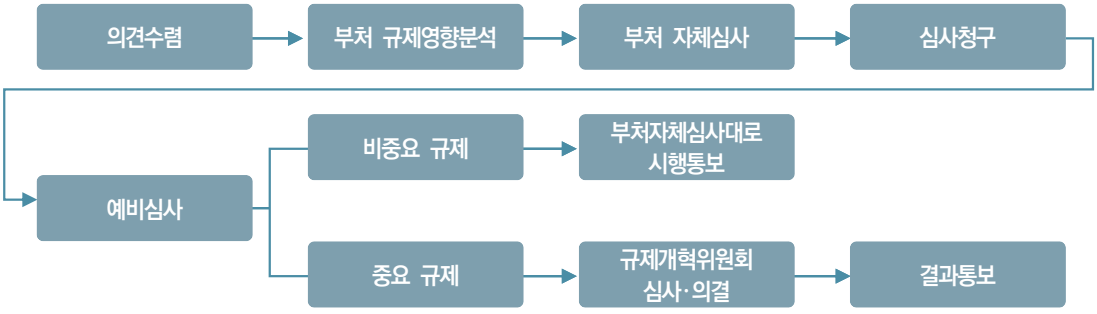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11조)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는 예비심사로 심사를 종결(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동법 제12조) 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동법 제12조)



2 2021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129건(중요규제 47건, 비중요규제 1,082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철회권고, 23건은 개선권고, 6건은 부대권고를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개선하였다.

'21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1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14	12	2	0	1	0	1
경찰청	4	4	4	0	0	0	0	0
고용노동부	24	46	42	4	0	1	0	3
공정거래위원회	10	22	21	1	0	1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33	32	1	0	1	0	0
관세청	6	6	6	0	0	0	0	0
교육부	18	25	22	3	1	2	0	0
국가보훈처	12	35	35	0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3	4	4	0	0	0	0	0
국세청	1	1	1	0	0	0	0	0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21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국토교통부	116	221	214	7	0	3	0	4
금융감독원	3	4	4	0	0	0	0	0
금융위원회	48	101	88	13	2	6	3	2
기상청	5	11	11	0	0	0	0	0
기획재정부	5	7	6	1	0	1	0	0
농림축산식품부	14	28	28	0	0	0	0	0
농촌진흥청	4	8	8	0	0	0	0	0
문화재청	5	9	9	0	0	0	0	0
문화체육관광부	6	13	13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3	4	4	0	0	0	0	0
법무부	8	19	17	2	0	0	0	2
보건복지부	30	50	48	2	0	0	0	2
산림청	10	14	12	2	0	2	0	0
산업통상자원부	43	83	82	1	0	0	0	1
소방청	25	32	32	0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36	65	63	2	0	1	1	0
여성가족부	4	4	4	0	0	0	0	0
외교부	1	1	1	0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8	11	11	0	0	0	0	0
인사혁신처	11	11	11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6	7	7	0	0	0	0	0
질병관리청	5	7	7	0	0	0	0	0
특허청	1	1	1	0	0	0	0	0
해양경찰청	2	3	3	0	0	0	0	0
해양수산부	55	79	77	2	0	2	0	0
행정안전부	17	30	30	0	0	0	0	0
환경부	73	116	112	4	0	2	2	0
계	647	1,129	1,082	47	3	23	6	15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관세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2 (중요 1, 비중요 1)
(3)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	신설 5, 강화 2 (중요 1, 비중요 6)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관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신설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

심사결과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 상에 구매대행여부가 별도로 드러나지 않아 세관에서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게 하여,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를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계부담을 최소화한 점,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서도 영세·소규모업자는 제외한 점, 연간 구매대행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총 물품가격 10억 원) 이상인 업자만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제대상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관세사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신설

- 5급이상 퇴직관세공무원의 수임제한 대상을 모든 국가기관의 통관업으로 하되,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과 소속기관을 별도의 기관으로 간주

심사결과 수임제한 대상인 통관업의 범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통관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하역장소 변경에 따른 통관업의 경우 시행령에 수임제한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규개위 **개선권고**에 대해 기재부에서 전관예우 방지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점, 예외 인정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심사요청. 이에 대해 당초 규개위 심사결과('21.3.12)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여 개선권고 유지

심사내용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시 통보·공고방법 구체화** 신설

- 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징계 등의 조치 후 통보 시, 2주 이내 해당 관세사의 인적사항, 등록취소 또는 징계 내용 등을 관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관세사회는 통보된 내용에 기초하여 일정기간(등록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해당기간 등) 관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심사결과 관세사 등의 징계조치 시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납세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관세사 업무의 공정성 제고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사 징계사항을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납세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한 관세사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전한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규제대상인 관세사도 2000여명에 불과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외국환거래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외화 투자자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 의무화** 강화

-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외 증권투자자의 외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증권금융 예치 의무를 명확화

심사결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의무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환거래규정은 투자자예탁금 예치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환으로 거래되는 투자자의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외화 투자자예탁금의 손실 방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규제대상이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금융 예치 의무가 부여된 기관 및 투자자예탁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적용토록 하여 피규제자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관투자가에 대한 외화증권 투자 모니터링 강화** 강화

- 기관투자가의 한은총재에 대한 외화 증권투자 현황 보고 주기를 매분기 보고에서 매월 보고로 강화

심사결과 외환·외화자금시장의 단기 외화수요 급변 가능성을 적기에 모니터링 하되, 보고대상·범위 확대 없이 보고 주기만 단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불법거래·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외화유출입 파급효과가 큰 일부거래의 경우 일보 또는 주보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에 비하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었으며, 규제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 신설** 신설

-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를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금지

- 영업기간에 따른 사업자별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설정

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20.1.1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	• '20.1.1~12.31 기간동안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1.1 이후 신규 사업자	•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1.1.1 이후 신규 사업자	•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심사결과 중국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 중단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의 매점매석 유인을 차단하고 원활한 요소 및 요소수 수급으로 대기오염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소비자의 구매수요 및 기업의 예비물량 확보 필요성, 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유량 제한수준을 설정한 점, 동 규제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 이전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2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설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판단기준 등의 유효기간 1개월 ('21.12.31일까지 → '22.1.31일까지) 연장

심사결과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21.11.8)으로 요소수의 생산, 유통 등이 비교적 안정화 되었지만, 요소 재고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수입 증가에도 사재기 등 시장 불안요인 사전 차단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여,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기존 매점매석 판단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1개월 연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2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금융위원회

집필자 • 신성환 전문위원
Tel. 044-200-2413, shin2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0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1건 중 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3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2건에 대해서는 철회권고 하였으며, 9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21.01.08)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18)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철회권고 2	신설 4, 강화 4 (중요 6, 비중요 2)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12)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4.23)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9	신설 9 (비중요 9)
(21)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본위원회 (2021.06.11)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신설 10 (중요 1, 비중요 9)
(2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7.09)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8.2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3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3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0.08)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39)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4)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6, 부대권고 3 철회권고 2 원안의결 90	신설 76, 강화 25 (중요 13, 비중요 88)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등록요건·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광고 심의기구** 신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및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규율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예외(1개社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를 규정하고, 관리기준 마련 시 준수사항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이관
- 각 금융권 단체가 심의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심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는 보관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금융상품 판매·자문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대한 내부통제, 광고심의에 대한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 필요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약서류 제공의무 및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가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청약철회 대상 및 위법계약해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품 특성상 원본반환이 어려운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등 청약철회권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범위를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외"로 정하여 위약금, 수수료 때문에 위법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감독업무** 신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을 금감원장이 연간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실태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며, 신뢰성·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 등 평가방법을 규정
-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 등에 대해 개별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취소, 기관조치,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사유 등을 규정

심사결과 과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KIKO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 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상의 관련 내용을 실태평가와 반영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시 준수사항** 신설

- 개별법 하위규정에 산재해 있던 '6大 판매규제' 및 '대리·중개업자의 영업 시 준수사항'을 통합하고 일부 규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개선

심사결과 금소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심사하였으며 ①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 ② 판매자는 금융상품 권유 시 핵심설명서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③ 全금융권의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 ④ 적합성·적정성 원칙 회피를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및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 ⑤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광고하여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⑥ 대출모집인의 이해상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1개 여신기관의 상품만 취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의무 규정에 2년의 일몰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법 시행 1년 후 관리·감독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것을 **부대 권고**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기타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 강화** 강화

- 금융회사등이 전신송금 외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

심사결과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확인 의무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2020.4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한화 기준금액(1천5백만 원)이 외국통화 기준(미화 1만달러)보다 높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기준금액도 1,000만 원임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의 기준금액을 일치시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므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신설

- 일회성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확인 기준금액을 100만 원 상당으로 규정
-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제공 기준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송신인·수취인의 성명·가상자산주소 등을 제공·공유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규정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으로 명시하고, 발급 기준을 구체화

심사결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2019.6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고객확인 기준금액 및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금액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인 점,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한 확인, 가상자산의 거래·전송내역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규정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한 점 등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정지 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및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정지 기준으로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로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의 직권말소, 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4, 강화 4)

심사내용 **소비자신용 관련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등** 강화

-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하고, 여타 등록업(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과 동일한 요건을 부과
- 채권수탁추심업 허가요건에 사회적 신용, 영업보증금 예치 등 일부 허가요건을 추가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취소시 거래종결방법 규정

심사결과 신설되는 채무조정교섭업에 대해 허가가 아닌 여타 등록 소비자신용관련업과 동일한 요건 부과, 채권수탁추심업 허가요건 강화 및 이미 등록 소멸된 대부업자 등의 기존 영업자산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는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채무조정교섭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이견 대립으로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하는 **원안에 동의**

심사내용 **연체채권에 대한 주요 처분 전 의무적 채무조정 절차 및 연체이자 제한** 신설

-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진행 금지
- 기한이익상실 後 연체이자 제한

심사결과 채무자의 방어권, 주거권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채무에 대한 연체가산 이자 부과로 채무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채권추심의 절차 및 방법, 위탁의 제한** 강화

-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 추심위탁 시 수탁추심업자 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추심연락 제한 및 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과도한 추심연락은 채권회수 가능성(편익)을 높이는 효과보다 연체채무자의 정신적 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1주 7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에 대해 **원안의결**. 원채권자의 수탁추심업자 사후관리 의무는 원채권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점, 그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채권자의 수탁추심업자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원안의결**.

심사내용 **채권조정교섭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신설

- 채무조정교섭업자의 신의성실 의무 및 설명의무 규정
- 채무조정교섭업자가 수취 가능한 수수료 관련 제한 규정
- 기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심사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과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비자신용 관련업자의 업무범위 및 업무준칙** 강화

- 원칙적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이외에 타업무간 겸영을 금지
- 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조달비율이 70% 이하 令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심사결과 수탁추심업자의 채무조정교섭업 겸영금지는 수탁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교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채무조정을 도출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은 크지 않고, 과도한 추심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경쟁 활성화 위해 수탁추심업의 채무조정교섭업 겸영을 허용하되 2년 일몰을 설정하고,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을 상향하되 시행령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개인채권의 양도절차 및 원채권자의 책임 강화** 신설

- 연체된 개인채권의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재양도하려는 경우 원채권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
-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 매각 시 매입추심업자 사후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채무자 보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원채권자와 매입추심업자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3자 양도시 원채권금융기관 동의 의무화는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 원채권자의 채권양수인 사후관리 의무는 원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의무를 강제하기 어렵고, 채권양수인이 원채권자의 점검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채권금융기관의 매입 추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철회권고**

심사내용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기회 부여 의무화 및 개인채권의 소멸시효** 신설

-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채권금융기관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거부 가능

심사결과 공적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채무조정요청권 남용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접수거부 사유를 명시한 조항에 "실효 후 일정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향후 채권금융기관이 접수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제재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 강화

- 매입·수탁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부담
- 개인채무자가 소비자신용 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대신 300만 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심사결과 소비자신용법 위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채권 양수인·추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중요규제**로 분류. 원채권자의 추심업자 손해배상책임 원안의결, 채권 양수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은 **철회권고**,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 신설

- 자산보유자 등 실질 자금조달주체에게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 매입하게 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심사결과 유동화증권 발행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기초자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험보유규제 이행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국가, 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은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점과 다수의 해외사례와 유사한 점도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기** 강화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기산일까지 공매도 거래자의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

심사결과 일부 공매도 투자자들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통해 주식 가격 및 유상증자 발행가격 하락을 유도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차거래정보 보관** 강화

-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차거래정보는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대차계약정보 보관 의무 등이 마련되지 않아, 대차거래계약 정보 보관의무 및 구체적인 보관방법을 마련하여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법공매도 의심거래의 적법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토록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사모운용사의 건전성 및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신설

-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
-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펀드운용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

심사결과 전문사모운용사의 손실대응 능력 확충 등을 위해 공모운용사 수준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산운용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펀드간 거래 요건 강화** 강화

-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 의무
-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심사결과 자전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일정 규모 이내에서 자전거래를 허용하며, 매수·매도 펀드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의무부과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였으므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펀드 관련 공시, 보고 강화** 강화

- 자산규모 2,000억 원 이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 위험관리정책 및 내부통제정책의 이행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사모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변경
- 차입을 통하여 사모펀드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
- 사모펀드의 운용위험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심사결과 펀드 운용의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등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보고사항,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 확대 등 피규제자의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은 수단을 통해 규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점에서 규제 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신설 3)

심사내용 **등록요건·절차, 내부통제기준 및 광고 심의기구** 신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

심사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자문 자격이 없는 자의 영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대해 내부통제와 광고심의에 대한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 시 준수사항** 신설

- 개인 일반차주에 대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

심사결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규제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별 영업행위의 준수사항 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시키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새로운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 신설

- 건강진단보험, 지급보증을 청약철회권 적용의 예외로 추가

심사결과 상품 고유의 특성상 청약철회권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시행령의 철회권 제외 기준과 유사한 상품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강화

- 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24.0%에서 20.0%로 하향 조정

심사결과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업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들이 역마진 해소를 위해 고원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거절·기피함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대립으로 **중요규제**로 분류.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자금사정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다만,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와 자금조달원가 절감이 필요한 고금리대출 금융기관을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9)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예외사유** 신설

-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이 없는 경우를 신고 불수리의 예외 사유로 정함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행위가 없는 경우 고객은 은행의 입출금 계정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며 규제 수준도 적정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 강화

-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규모 계산방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신용공여 한도 계산시 신용융자와 개인대주 한도를 각각 설정하여 주식대여 취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 대응도 가능함에 따라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예외적 허용** 신설

- 거래소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와 동일한 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심사결과 공매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증권시장에서 원활한 거래를 위한 독립거래 단위의 유상증자 참여 등 정당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신설

-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
-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대차거래정보를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
-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보관

심사결과 불법공매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법공매도 의심거래의 적법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토록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신설 2)

심사내용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 또는 해임시 보고절차 구체화** 신설

- 부가통신업자가 임원 선임 시에는 자격요건 적합 사실, 임기, 담당업무, 직위에 대한 사항을,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심사결과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또는 해임시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보고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임원 선·해임시 보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한의 세부 내용 규정** 신설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카드 이용액의 0.5%로 제한

심사결과 영세·소상공 가맹점수수료 부담 개선 등을 위해 카드사의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법인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을 신용카드사의 실제 수입, 비용 등을 토대로 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신설

-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등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기존 신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던 선거운동방법을 농협법·수협법 시행규칙 등 타 법령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해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규정** 신설

-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등의 지정·운영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 공시

심사결과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의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 차이니즈월 내부통제기준이 전담 임원 등을 통해 정상 집행되고, 공시 등을 통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신설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상품의 특성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해당 상품 목표시장 내용·설정근거 등을 상품 요약설명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신탁재산 운용자산에 고난도상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고난도상품의 요약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심사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고,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보험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 강화

- 실손보험 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변경 시 요건 추가
-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관련, 보험금 실적을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 보험료 산정기준 추가

심사결과 실손의료보험은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기부담률을 인상하여 일부 과도한 의료이용 자제를 유도하고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불가피한 의료이용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서 제외하고, 비급여 자기부담 인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손보험의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재가입주기를 단축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결제대행업체 및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거래조건 준수 및 고지** 신설

- 결제대행업자가 정기결제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조건(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 포함)을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유료전환,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분쟁 등 민원이 다수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 요구가 가능하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약관이나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심사결과 서비스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인 정기결제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할 뿐 서비스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에 과도한 의무를 전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약관·계약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 반영 등은 원안대로 처리하되, 결제대행업자의 관리 대상을 "정기결제 사업자" 전부가 아닌 합리적인 범위의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신설

-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
- 자체정상화계획에 핵심기능·사업,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극복수단,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지를 위한 운영체제 등을 포함할 것

심사결과 중요금융기관이 평시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자체 정상화를 모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시정지의 기간 구체화** 신설

- 일시정지의 기간을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로 정함

심사결과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는 중요금융기관의 정리시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시정지의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보험업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설정** 신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취급상품, 보험기간, 보험금·보험료 기준을 설정

심사결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수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험 소비자보호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및 보험료 상한액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의무화** 신설

- 총자산 1조 원 이상 보험회사를 외부검증 대상으로 설정
- 책임준비금 적정성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연 1회 검증
- 외부검증 기관(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심사결과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 17)가 도입되는 만큼 보험 소비자 보호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부과 및 중복배정 규제** 신설

- 증권회사가 일반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청약자에게 중복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

심사결과 공모주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증권사로 하여금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배정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의무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근거 마련** 신설

-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의 중복청약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한 청약자 개인정보 취급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모주 청약 시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중복청약을 확인하고, 증권금융이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중복청약

확인을 위해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가 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상호검증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기준** 신설

- 종투사의 신용공여가 가능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종투사의 "손자법인"으로 규정
- 신용공여 한도를 개별 현지법인은 종투사 자기자본의 10%, 전체 현지법인은 종투사 자기자본의 40%로 규정

심사결과 종투사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함에 따라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에서 보다 높은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담이 크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된 일반 증권사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됨을 감안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이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게 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현행 非종투사에 대한 규제와 동일하게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손자법인으로 정의하여 규제 적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9)

심사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자료제출요구** 신설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일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부실금융회사 등의 자산총액이 50% 이상인 경우,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정 제외
-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
-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유지

심사결과 우리나라 '非지주 금융회사 집단'의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회사, 금융지주 중심의 금융감독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회사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법령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8.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운영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 요건을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체계**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사항으로 내부통제정책,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내부통제체계 등을 규정
- 내부통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 금융기업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필요하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회사가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기준 반영 사항으로 위험관리정책,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 위험관리체계 등을 규정
- 위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
-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체계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회사가 아닌 집단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본적정성 기준,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사항**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비율 100% 이상 유지
- 금융회사의 설립·합병 등에 따른 인허가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에 대해, 해당 집단의 자본적정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허가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고려

심사결과 자본적정성 관리는 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전이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업집단 전체의 자기자본을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준수를 통해 개별업권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필요성이 인정. 자본적정성 규제로 인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자체적인 관리 부담과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평가 부담 등이 발생하는 반면,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자본적정성 비율, 자기자본합계액, 통합자기자본 및 최소요구자본합계액 등은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 및 공시** 신설

- 대표금융회사의 보고 및 공시 사항으로 소유·지배구조 현황,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으로 규정
- 허위 또는 불성실 보고·공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재보고·재공시 또는 정정보고·정정공시 요구 가능토록 규정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토록 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위험요인을 시장과 감독 당국이 사전 인지하여 집단 차원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 인정.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금융위험 요인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평가·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법 및 해외사례 등에서 보고 및 공시하는 사항과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미제출·미이행시 조치 등** 신설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취약)인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규정

-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 또는 불이행에 대한 조치 및 유예 등 규정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건전성 유지 및 감독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준, 제출권 확보, 제출 절차 등이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타법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기준** 신설

- 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내부거래 시 단일거래금액 50억 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작은 금액)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앞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유지를 도모하려는 목적에 비해 중요한 내부거래(50억 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고객정보를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
-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사유 규정

심사결과 고객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위반되는 사항으로 거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시행령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객정보의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시행령에 열거된 행정처분의 면책 사항은 임직원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의무를 다하여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신설

- 소속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을 규정

-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시 준수해야 하는 통지의 내용, 통지 주기, 통지 방법 등을 규정

심사결과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만큼 고객정보 제공 목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정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제공된 고객정보와 관련 해당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제공된 정보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보험업 감독규정 (신설 3)

심사내용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설정** 신설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심사결과 소액단기전문 보험제도 도입 취지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보험기간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매년 갱신이 가능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대응에 보다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의무화** 신설

-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결과를 사업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보험회계 제도 변화(IFRS17, '23년 시행)에 따른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인해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의 의무화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회사별로 특화된 상품구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제3자의 외부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신설

-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내용에 보험사별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을 추가

심사결과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무리한 구상금 청구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제고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소제기권은 보장하되, 이를 보험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평판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려는 취지를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보증연계투자의 방식** 신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 프로젝트투자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

심사결과 프로젝트투자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경우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신설 10)

심사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등** 신설

- 국내 소속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 또는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에 미달하더라도, 1년의 범위내에서 자산총액이 4조 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지정 해제 보류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기준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 금융복합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유지되어 법령 준수의 부담이 연장될 수 있으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됨에 따라 생기는 금융복합기업 집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신설

- 내부통제기준에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소속계열사 간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사항, 소속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 등 포함
- 내부통제기구에 여·수신업, 보험업, 금투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
- 내부통제기구(내부통제협의회)에 소속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심사결과 금융기업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필요하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회사가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신설

- 위험관리기준에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사항, 위험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포함
- 위기관리기구에 여·수신업, 보험업, 금투업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
- 위기관리기구(위기관리협의회)에 소속금융회사의 위기관리책임자 또는 위기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는 필요하며,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정책 중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회사가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성 제고 및 금융사고 방지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에 피규제 대상에게 일부 재량을 부여하고 타법사례에 비추어도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음.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본적정성 기준** 신설

- 자본적정성 비율은 소속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
- 자기자본합계액은 금융관련법령 등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
- 소속금융회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우회출자, 금융복합기업집단 외의 회사와 상호보유하는 자본증권 등을 중복자본으로 간주
- 소속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자기자본 등을 합산한 금액을 최소요구자본 합계액으로 규정
- 추가적인 위험평가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규정
- 금융위는 추가적인 위험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통보

심사결과 자본적정성 관리는 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전이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자기자본을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자본적정성 기준 마련·준수를 통해 개별업권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자본적정성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중복자본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다른 규정과 충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복자본 차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재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후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하되,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행후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심사내용 **단일거래금액 산정기준 등** 신설

-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해 단일한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단위 및 금액 규정
- 약관거래, 내부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는 제외

심사결과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앞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일거래금액의 경우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단일한 약정 등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약관 및 부수적 거래 등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어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실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 및 공시** 신설

- 보고 및 공시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되, 보고는 매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 공시는 매 분기 말일부터 3월 이내 이행토록 규정
- 보고 및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대주주에 대한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주요 소송 현황 등 규정
-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허위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보고·공시한 경우 재보고·공지 등 요구 가능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공시토록 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고, 재무 및 손익,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내부거래 사항 등 위험요인을 시장과 감독당국이 사전 인지하고 집단차원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보고 및 공시는 금융소비자·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법 및 해외 사례에서 보고 및 공시하는 사항 및 공시 기한 등과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험 관리실태 평가** 신설

-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종합평가 결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

심사결과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평가 대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험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등급이 저조한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위험 관리실태 평가 항목, 등급, 방법 등은 지난 2년간 시행해온 모범규준의 평가 및 다른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계량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자본적정성 평가와는 달리, 위험관리, 내부통제,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조직, 규정, 체계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는 정성적인 평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등** 신설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
-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만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시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 가능

심사결과 자본적정성은 전년도 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거액의 부실채권,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건전성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경영개선제출 명령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 조치가 지체될 경우 경영 악화로 금융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 건전성 개선 조치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사항** 신설

-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해야 하는 업종 및 자본적정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심사결과 인허가 등 심사시 해당 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토록 하여 기업집단의 재무·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인허가 등의 심사시 고려해야 할 업종을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으로 규정한 것은 이 법 제5조 제1항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정한 것이므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인허가 등의 심사시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충족토록 한 것은 부실기업 등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신설

-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고객정보 암호화, 고객정보의 분리보관, 고객정보의 지체없는 파기, 고객정보 이용 점검 사항 등을 준수
- 고객정보 관리인이 작성하는 업무지침서에는 고객정보 제공목적, 고객정보 이용제한 관련 사항, 고객정보 제공 관련 업무처리 절차, 고객정보 보안대책 등이 포함
- 소속금융회사가 정하는 고객정보취급방침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소속금융회사의 상호 및 업종,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에 피해 발생시 구제수단 등이 포함

심사결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해 대표금융회사가 소속금융회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고객정보 제공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정으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만큼, 고객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감독규정의 고객정보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추어 고객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은행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신설

- 자체정상화계획에 보고체계,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시 준수해야 할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사업,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판단기준, 극복수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기준 등을 제시

심사결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효성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도록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시 준수해야할 지침을 명확히 제공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정상화계획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포함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 신설

-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보고체계 및 정보시스템,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획된 자구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실효성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도록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제출시 준수해야할 지침을 명확히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을 이사회·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운영체제 등으로 구분한 것은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이수 과목 및 학점 변경** 강화

- 정보기술(IT) 과목을 3학점으로 추가하고, 경영학 과목의 학점을 6학점으로 축소

심사결과 회계환경의 변화에 맞춰 예비공인회계사들이 IT 관련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경영정보기술(MIS), 경영정보체계론, 금융정보시스템, 물류정보시스템, ERP 회계정보 등 다수의 IT 관련 과목이 경영학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어 수험생의 추가부담은 크지 않아 규제의 적정성도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의 심사 기준 정비** 신설

- 해산·폐업 인가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
- 금산법에서 정한 합병 인가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합병 인가 기준으로 규정
- 영업 전부 양도 인가 기준으로 해산·폐업 인가 기준 및 합병 인가 기준을 준용
- 영업 전부 양수 인가 기준으로 합병 인가 기준을 준용

심사결과 저축은행이 해산·합병 등 인가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에 감독규정(해산, 합병, 양수도

기준) 및 금감원 인허가 매뉴얼(자본금 감소 인가 기준)에서 정하던 인가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상에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강화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이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 조정

심사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신용·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규모가 영세한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라 대부 중개시장 축소, 큰 폭의 수입 감소 우려가 있어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중요규제**로 분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원활화를 위한 비용절감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되,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대부 중개시장의 시장 혼탁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절히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출연제도 변경** 강화

- 全 금융업권에 대해 공통출연요율 및 보증이용출연요율 부과

심사결과 서민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DSR 도입,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는 등 서민의 금융접근 애로 가중이 우려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임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보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금융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도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있어 금융권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에 필요한 적정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제도 개편** 강화

- 감독분담금 납부 상한을 검사대상 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산정
- 금융회사별 납부하는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재무건정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 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심사결과 추가감독분담금 제도의 상위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예산편성시 과다 징수된 감독분담금을 결산 단계에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환급하여 감독·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 징수액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운용규제 강화** 강화

-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행위 및 대출수수료 수취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 시장성 없는 자산에 펀드 자산의 50% 초과 투자시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 의무화
-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산정시 거래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차입 후 매도 등을 포함
- P2P, 대부업자와 연계한 개인대출 등 금지

심사결과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 및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등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참가자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조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설정·운용시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금전대여가 허용됨에 따라 금전대여 방식 사모펀드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신설

- 일반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항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현황, 위기상황별 유동성 위험 등 추가
- 집합투자재산은 기준가격 계산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
-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기재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증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의 신탁업자(수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 수량 등이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탁사가 확인

심사결과 펀드의 유동성 위험 등 중요사항이 자산운용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는 펀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유동성위험 및 관리방안 등을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에 추가하여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기준가격 산정 방식상 '공고·게시일 전날'의 개념은 공고·게시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에는 적용이 불가하여 산정 방식 개정이 필요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핵심상품설명서 사전 검증 및 교부, 운용행위에 대한 점검 등 운용사 견제 기능이 필요하며, 펀드재산의 수탁기관은 운용지시를 실행함에 따라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 가능하여 수탁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모펀드 등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 강화** 강화

- 등록 말소된 금융투자업자 및 그 말소 당시의 임원 또는 대주주는 5년간 등록 업종으로의 재진입 제한
-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설립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즉시 보고 의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다수의 자사 子펀드가 母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해당 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母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전문투자자로 제한
- 펀드 운용업무와 펀드자산의 취득·매각 실행업무의 겸직 및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사모펀드 운용행위 등 금지
- 위법사유가 중대하고, 투자자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을 일괄 취소하여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행위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정·운용 관련 정보를 기존에 비해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복잡한 복층·순환투자 구조의 펀드는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공모규제 회피 등 불건전 영업행위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공모규제를 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업무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단위업무에 대한 취소만 가능하므로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에 비상장법인,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 및 계열사 등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중요규제**로 분류.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견제 능력 등이 규제 차등화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

(32) 보험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 특례기간을 연장** 강화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맞춰 「보험업법 시행령」 상 규제특례의 종료기간을 5년 연장

심사결과 2012년 이후 지속된 규제로 농협조합의 사업구조, 농촌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21.4월) 취지에 부합하게 2009.10.28일 현재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공제상담사 수 만큼 보험설계사를 두는 것을 2027.3.1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조치** 신설

-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행위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대행하며 동시에 매매도 가능하여 일반 이용자와의 정보 불균형, 이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가상자산 관련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자체발행 가상자산 취급 및 사업자·임직원 등의 해당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제한되지만 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신탁업자의 자산대사 시점 등 구체화** 신설

- 신탁업자(수탁사)가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 대사를 하도록 규정
- 신탁업자의 자산대사 결과 법령 위반사실 발견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요구토록 규정

심사결과 펀드재산의 수탁기관은 운용지시를 실행함에 따라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 가능함에 따라 일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에 대해 수탁기관이 이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시정 요구하는 등 관리·감시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법과 시행령에서 신설된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대사 의무의 이행시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사실 확인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020.8월 행정지도를 통해 차질없이 시행 중인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 및 신탁업자의 업무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자산대사 확인 시기를 "매 분기말"로 설정함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강화** 신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 추가

심사결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과 사업자간 출혈경쟁 발생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고의적 비용 부담 회피 및 과도한 가입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서비스 안전성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위규칙 강화는 필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은 건전한 시장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타 법령도 동일·유사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과도한 가입 유도 행위 금지에 대해 산업 시행 초기 사업자 간 마케팅 출혈경쟁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의 사례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의 통상적

수준을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금전, 물품, 편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제 강화** 신설

-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된 경우 동 선택권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선택권 행사자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
- 전환가액조정 조건에 따라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경우, 이후 주가 상승시 최초 전환가액 범위에서 상향조정을 의무화

심사결과 상장법인의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최대주주 등은 주가가 상승해야 콜옵션 행사시 전환차익이 증가함에 따라 콜옵션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주가 하락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범위(전환가액의 70% 범위내)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최대 주주등'에 한해서 동 선택권의 '행사한도만'을 제한하고, 전환가액조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사모방식 발행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한하여 '최초 전환가액 범위에서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강화

- 부동산PF 대출채권의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심사결과 2013년 이후 부동산PF가 비은행권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중인 가운데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가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 대출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를 방지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현재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에도 부동산PF 대출

부실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할 경우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 확대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상 우대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부동산PF 대출 과잉취급 소지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신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를 금감원장에게 보고
- 금감원장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

심사결과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익 유연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건전성 제고 등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추가 충당금 적립에 대한 자율성은 유지하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및 금감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고, 타 법령에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기상황분석 제도 도입** 신설

-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분석 제도 실시 근거 마련

심사결과 저축은행업권의 규모가 급증하여 금융업권 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역량은 부족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능력 강화 및 잠재위험 축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마련토록 할 필요. 저축은행이 정기적으로 자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것은 위기상황 발생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고, 특히 자체모형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시행세칙에서 중앙회 표준모형을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본점 종합검사시 이외에 부문검사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하여,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타업권 수준으로 경영실태평가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규모 검사인력이 투입되어 장기간 실시하는 종합검사와 달리 단기간 적은 검사인력으로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수검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점, 타 업권의 경우에도 부문검사를 통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신설

- 신협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의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 금융위가 전체 여신 중 특정 업종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동성부채 대비 보유해야 할 유동성자산을 규율할 근거조항 마련

심사결과 신협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농·수·산림조합(의무예치비율 100%)의 절반 수준이고 예탁금 및 적금은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을 통해 조합의 부실 발생에 대한 대응력 제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여신한도 및 유동성비율에 대해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한도 규율의 필요성 및 시급성,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원안의결하되, 조합에 따른 자산 규모의 편차가 크고 특히 자산 규모가 작은 조합의 경우에는 유동성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중앙회가 유동성 부족에 대한 지원 가능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에 대해 좀 더 구분하여 차등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것을 **부대 권고**.

(39)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결제대행업체의 준수 의무 강화** 신설

-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① 결제예정 금액 증가 또는 유료전환 경우 승인 7일 전 고지 방안을 마련

②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공정한 철회·취소·환불기준 마련

심사결과 정기결제 서비스 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필요성이 인정.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목적 및 수단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유료전환시 사전고지 등의 의무를 온라인 신용카드 등 결제에 대해 구체화 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운용규제 강화** 신설

-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서, 펀드 자산의 50% 초과를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시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전대여 운용시 의사결정을 위해 타당성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대출의 심사·승인·실행 등 금전대여의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받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 요건 구비

심사결과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등 자산의 현금화가 곤란한 경우 펀드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을 제한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금전대여가 허용되었으나, 금전대여의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에 대한 규율이 부재함에 따라, 사모펀드를 투자위험이 높은 금전대여로 운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합한 업무수행 체계 및 업무위탁 기준 등을 갖출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수준 강화** 신설

-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중 일부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비용 경감을 위해 서면교부, 이메일 이외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제공 가능
-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규정

심사결과 현행 사모펀드 운용은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후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정기적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운용상황 파악 곤란함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할 의무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의무 경감을 위해 필수 기재사항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교부비용 경감을 위해 서면교부, 이메일 이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보고서 제공 등을 가능토록 하여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또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안내되어야 할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서 누락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신규작성 부담이 크지 않아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모펀드 등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관리 강화** 강화

-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등의 투자비율을 30%로 규정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자수 합산의 예외로 인정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 운용전문인력' 중 2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

심사결과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펀드 투자가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등에 이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을 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도입된 투자자수 합산 규제가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예외를 둘 필요가 있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전문성과 준법의식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전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시 즉시 보고 요건인 상호출자제한 계열사 등의 투자비율을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子펀드 투자자수의 母펀드 합산을 통해 공모규제 회피 시도를 저지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사모펀드 개편을 통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및 운용자산 범위 확대 등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非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합리화** 강화

- 非카드 여전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카드사와 동일(10 → 8배)하게 조정. 다만, 당기순이익 대비 30% 이상 이익배당 지급시 강화된 레버리지 한도(7배) 규제 적용

심사결과 최근 일부 여전사가 과도한 차입을 통한 경영으로 인해 유동성 경색을 겪는 등 레버리지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코로나 19 위기 시 일부 캐피탈사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을 한 사례도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非카드사의 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기간, 코로나로 인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을 감안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데다, 非카드사가 위기시 손실감내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30% 이내로 결정하는 경우 레버리지 한도에 인센티브를 부여(7→8배)하는 등의 적절한 유인구조도 마련되어 있어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 신설

- 소규모펀드 비율 5% 이하인 경우에만 신규 공모펀드 등록 가능

심사결과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소규모펀드의 효율적 정리 및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공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시적 규제로 전환하여 규제 투명성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규모펀드 2개 이하, 펀드 최초 설정액 50억 원 이상 등 현행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성과보수를 받는 등 책임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모범규준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 신설

-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 가능

심사결과 펀드 성과를 투자자와 운용사가 공유하는 자기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공모펀드 책임운용 제고 및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위주로 이루어져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운용사의

운용역량·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만큼 규제 필요성이 있음. 자사운용사의 최소 투자금액(2억 원) 및 최소 투자기간(3년)을 행정지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 정할 계획이며, 소규모 자산운용사(운용규모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분할납입을 허용하는 등 현행 행정지도에 비해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명의무 강화** 강화

-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설명

심사결과 투자자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펀드비용의 투명성 및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투자기간별 유·불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영구채 등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신설

-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으로 인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영구채 발행을 추가

심사결과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주식가치를 희석하지 않으면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영구채 발행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영구채는 발행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행기업의 이자상환부담도 높고, 발행회사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기존 영구채를 조기상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상환시 부채 증가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해당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채와 성격이 유사한 조건부자본증권도 이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므로 규제수단도 적절.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추가** 강화

- 단기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출 것

심사결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단기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시 필요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여타 금융투자업 인가요건과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금융투자업간 규제 형평성도 확보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 신설

-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 관련 사항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 파생결합증권 미상환잔액을 대상으로 1개월 및 3개월 유동부채 대비 100%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

심사결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헤지운용이 특정 자산에 편중되거나 원화자산에만 집중될 경우 2020년 1분기와 같은 금리 및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헤지자산을 분산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파생결합증권 미상환액에 대한 만기별 유동성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운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자산 확보를 규율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유동성비율을 100%로 설정한 것도 은행 등 여타 업권과 종합금융투자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에 대해 이미 유동성비율을 100%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신설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
  -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마케팅, 제3자 제공 등 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금성상품, 직불·선불 카드 및 전자지급수단 외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심사결과 적요정보는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오남용 등 발생시 정보주체가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민감정보인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관련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을 법령상 명확히 하는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경영건전성 기준 신설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신설

- 건설업 30% 이내, 부동산업 30% 이내 및 건설업과 부동산업 합계 50% 이내 여신한도 설정
- 3개월 이내 유동부채에 대해 보유해야 할 유동자산의 비율 100% 이상 유지

심사결과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021년 6월말 20.0%로 2016년(6.7%)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동 업종 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여타 업권에서 시행 중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상호금융 조합의 안정적인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업종별 여신한도 규율을 통해 잠재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단위조합별 자산규모의 편차, 소규모 조합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천억 원 이상 조합은 100%, 300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 조합은 90%,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로 유동성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시행령에서 동 규제를 3년 이후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보험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신설

- 선임계리사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할 것
- 선임계리사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할 것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심사결과 IFRS17 시행으로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선임계리사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대형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임원급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수·평가기준 설정,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직접 참석·보고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보험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선임계리사 제도개선** 신설

-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 추가
-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 후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절차 준수
- 선임계리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심사결과 IFRS17 시행으로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기를 보장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임할 경우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사임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선임계리사의 업무 추가·명확화는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금융감독원

집필자 • 신성환 전문위원
Tel. 044-200-2413, shin2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2)

심사내용 **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기준 마련** 신설

- 상호금융조합의 여신심사기준으로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담보대출 취급기준 등을 포함

심사결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여신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여신심사 및 승인 업무운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을 인정.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인정, 유예기간(6개월) 등을 감안시 합리적 규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협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 마련** 신설

-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차입금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기본자본의 5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잔존만기 5년 이내시 매년 20%씩 차감토록 개선

심사결과 신협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한도 요건 개선을 통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형평성을 도모하고 신협 보완자본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기준과 동일하고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신설 1)

심사내용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 근거 마련** 신설

- 보험회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정한 제3의료기관을 통해 추가로 의료자문(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 보험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건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일부 지급 건수·비율 등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토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보험소비자에게 의료자문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 권익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정보제공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3의료기관을 통한 자문의뢰 절차는 현행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자문 관련 비교·공시는 보험협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0.6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 중임에 따라 적정한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비용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비율 강화** 강화

- 금융투자회사의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및 DLS) 발행잔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초과분에 대해 가중치(25% ~ 100%)를 적용
- 단, 손실제한형 ELS·DLS 및 국내 주가지수의 비중이 50% 이상인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2로 완화하여 적용

심사결과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건전성 및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아져,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가중치를 적용해 총자산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파생결합증권을 자기자본대비 과도하게 발행할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해당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규제의 실행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참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규제를 설계한 것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회사의 손실 규모 등을 감안하여 규제기준을 자기자본의 50%로 설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적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레버리지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규제 정도를 최소화한 합리적 규제로 판단. 피규제자수, 각 부처영향평가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2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26)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강화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3)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7	강화 3, 신설 4 (비중요 7)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21	강화 9, 신설 13 (중요 1, 비중요 2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화 1, 신설 3)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신설

- 정보공개서의 등록거부 또는 내용변경 요구사유에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추가

심사결과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법에 의한 별도의 면허를 받는 경우를 적용 제외하여 규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규모 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강화

-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적용 제외되었던 ①정보공개서 등록(제6조의2), ②정보공개서 등록거부(제6조의3), ③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제6조의4), ④가맹금 예치(제6조의5), ⑤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7조) 등 조항 적용 확대

심사결과 소규모 가맹본부의 모방브랜드 및 가맹금 미반환 등 문제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다수의 가맹본부가 정보제공 및 가맹금 반환을 하고 있어 규제 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고 및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신설

- 광고 및 판촉 행사 시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 의무화
- 다만,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원에 의한 광고나 판촉 행사는 사전동의 예외로 인정

심사결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행사로 인한 비용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제를 의무화하되, 별도의 약정 시 비용의 사전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 신설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심사결과 건전한 가맹거래사 제도 유지를 위해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불법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공인중개사법 등 타법에도 유사사례가 많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항목 추가** 강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그 계열회사 간 물류·IT 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이상(상장사 200억)인 경우 그 거래현황 공시

심사결과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IT 서비스 내부 거래현황을 공시하려는 것으로 공시대상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제한하여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대부분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비자기본법 (신설 1)

심사내용 **서면실태조사 근거조항 신설** 신설

- 소비형태, 거래현황, 소비자 지향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요청 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의무 발생

심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권한을 신설하되, 실태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서면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을 조사하여 규제의 부담이 적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다수의 유사 입법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신설 4)

심사내용 **독립경영회사 자료제출 의무 확대** 강화

- 기업집단과의 3년간 거래내역 제출의무 대상을 현행 친족분리 독립경영회사 이외에 독립경영 후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까지 확대

* 독립경영친족 단독 또는 독립경영친족 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최다출자자인 회사

심사결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도 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에 비해 사익편취 행위억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크며, 해외 입법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강화

- (현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3백억 원 이상인 다른회사(상대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부과
- (추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아닌 회사(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신고 기준* 신설

* ①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천억 원 이상일 것 ②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직전 3년간 월 100만명 이상 대상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③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해 왔으며 연간 지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심사결과 대기업이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IT·디지털 분야 스타트업의 인수로 시장의 독과점 형성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고기준이 독일 등 해외 입법사례를 준용하고 규제 대상이 제한적(M&A 심사실적 기준 상위 1% 수준)으로 규제 부담이 적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금지** 신설

-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전환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심사결과 총수일가의 벤처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승계와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초기로 규제 대상이 매우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벤처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제출** 신설

- 현행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사항* 이외에 벤처지주회사의 경우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추가

* (지주회사 제출사항) 지주회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주식 소유현황, 재무현황

심사결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등에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 부과** 신설

-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공시항목 신설

* (총수일가가 지분율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경우) 1. 회사 명칭,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대표자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주주현황

**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경우) 1. 회사 명칭,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및 대표자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심사결과 국외 계열회사의 공시항목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항목과 비교 시 기본적 사항이며 추가 공시에 따른 규제 비용이 적고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을 판단하는 거래규모*와 계열회사**의 기준 구체화

* (거래규모)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

** (계열회사)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

심사결과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규모와 계열회사의 기준은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과 동일하고 규제 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자 간 교환 시 경쟁제한 우려의 유형 구체화** 강화

-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유형에 법률에서 정한 '가격, 생산량' 이외에 '상품·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대금·대가의 지급조건' 추가

심사결과 기업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정보교환 외에 거래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규제 부담이 적고 정보의 유형도 이미 국내·외 판례로 인정된 사항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 사실' 공개** 강화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추가

심사결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공개** 강화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추가

  * (직영점 현황)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 산정기준

심사결과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 규제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고 해외 유사 입법사례 및 판례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정보' 공개** 강화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 추가

심사결과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 '온라인 판매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온라인 '판매가격 차이'가 아닌 '매출액 비중'으로 완화하고 모든 브랜드가 아닌 동일 브랜드 상품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설 2)

심사내용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요건 추가**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15억 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가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 →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자본금 보유 의무 위반 시 시·도지사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심사결과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보유 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의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신설**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관련 납입금액 및 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 통지의무 신설
-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미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심사결과 할부거래업체의 잦은 폐업·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수금 납입내역에 대한 주기적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통지방식이 이메일·SNS 등 형식의 통지로 규제 비용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선불식 할부계약의 적용범위 확대** 강화

- 선불식 할부계약 적용범위를 현행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이외에 '여행·가정의례를 위한 용역'까지 확대

심사결과 여행·가정의례 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어도 규정 미비로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 시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당 상품 거래업자 대부분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되어 있어 규제 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을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에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의무 부과

심사결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준수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규제 비용이 적고 해외 및 타법 유사 입법사례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관련 보고양식 및 제출서류 구체화** 신설

-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제출서류)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한 입증서류, ②주주현황, ③대차대조표, ④투자내역, ⑤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 (제출서류) ①투자내역, ②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③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④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약정서 등 증빙서류

심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제한적 소유를 허용하면서 총수일가가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거래현황 공시항목 추가** 신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집단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시항목에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 간의 거래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소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규제의 부담이 크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국세청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대상 시스템 및 인증절차의 구체화** 신설

- 국세청에 시스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표준인증 신청 대상 시스템의 종류와 명칭(ERP, ASP, 지로시스템) 규정
- 홈택스 표준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인증신청, 인증시험의 기준 및 결과 통보 등 인증 절차 신설

심사결과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인증 업무 수행의 주체가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세청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관련 제도에 대한 질의 및 다양한 민원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원화되어 있던 검증방법 및 시스템 이용 절차 규정 개선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10여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규율해오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의 인증 대상 및 인증 절차를 동일하게 반영한 점, 시스템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 및 등록시 상담을 국세청에서 전담하고 발급·전송의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스템사업자의 편익이 향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관세청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중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 및 재지정** 강화

-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 품목(냉동고추) 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지정 10개 품목(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 플랜지, 연석,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규정

심사결과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 가능한 물품의 신속한 리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을 지정하여 통관 및 유통내역,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 제도 시행 중임.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는 11개 물품을 신고 또는 재지정하였음. 동 물품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신규 및 재지정 필요성이 있었으며, 관계부처가 지정 요청한 품목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내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고 첨예한 이해관계자 이견 대립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지정장치장 반입 특송화물 장치기간 통일** 강화

- 지정장치장(항공 특송물류센터, 해상 특송장 등) 별로 상이한 특송물품 장치기간을 2개월로 통일하여 규정

심사결과 특급탁송화물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으로, 소량·소액·다품종의 특성을 가지며 항공화물 또는 해상화물로 반입되나,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의 장치기간이 각각 2개월, 6개월로 상이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해상 특송화물의 98%가 1개월 이내 통관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이 대부분 폐기처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6개월 간 장치할 실익이 없는 점, 긴 장치기간이 지정장치장 혼잡 및 신속통관 저해 원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치기간 2개월로 통일하는 것은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별도 수반 비용이 없으며, 타 지정장치장과 비교하였을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지정장치장으로 제한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신설

-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세부기준 신설

위반 사항	제재 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록 취소	-	-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 포함)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 시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40일	업무정지 60일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위반 사항	제재 기준		
	1차	2차	3차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 포함)가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시	경고처분	업무정지 20일	업무정지 20일

심사결과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상(직전 연도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 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며 상위법 상 행정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 신설을 통해 임의적 판단에 따른 처분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규제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해당 기준이 보세운송업자를 제재하는 타법 사례의 기준과 유사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과 규제대상이 구매대행업자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인 백만명에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지정** 강화

-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8개 품목(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규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신규지정 1개 품목(맨홀뚜껑) 규정

심사결과 국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신속한 리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을 지정하여 통관 및 유통내역,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 제도 시행 중임. 2021년 재지정하는 8개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신규 및 재지정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신규지정하는 맨홀뚜껑의 경우 통관 후 원산지 변조 등이 대규모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 해당 물품들은 관계부처가 요청한 품목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내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 수가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미치지 않고 첨예한 이해관계자 이견 대립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신설 1)

심사내용 **재해·재난 등의 경우 수탁판매기관 시설요건(면적) 완화** 신설

- 천재지변 등으로 몰수품 등 위탁판매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진열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면적 조정 가능 규정

심사결과 코로나19로 몰수품 등이 급감하면서 수탁판매기관이 사업 반납을 요청한바,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 몰수품 등의 매각을 중단없이 시행하여 국고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 시설요건 설정 추진하였음. 동 규제는 규제완화를 하면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해·재난의 낮은 예측 가능성과 비정형성을 고려하여 특정 재난 상황을 규정하는 대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설요건의 완화를 규정하였으며, 해당 면적 완화 범위는 영업용 보세창고 면적 기준을 참고하여 창고의 최소 필요 면적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규제인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수탁관리기관이 1-2개로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 실시** 강화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 구체화하여 규정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 적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규정

심사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 과정에서 운송·하역·보관·통관 등 물류서비스 일체를 주선하며, 물류 지배력을 악용한 명의위장, 관세포탈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등록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함.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화물운송주선업의 대표·임원이 될 수 없으나, 종사자로 등록하여 명의대여 형식으로 운영 지속하고 있어 종사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함. 대표·임원 등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이 어려워 관련 인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서류심사 시 명의대여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어려워 현장확인 근거 조항을 규정한 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전국적으로 10,000개 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8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고압가스 안전리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7	신설 3, 강화 4 (비중요 7)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5)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0)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1)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2.10)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9)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83	신설 53, 강화 30 (중요 1, 비중요 8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7)

심사내용 **수소전문기업 확인 및 사후관리** 신설

-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 확인·사후관리 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효과적인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합리적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설정, 확인·사후관리 절차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소재부품기업법」 및 「벤처기업법」 등 타법사례의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설정** 신설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수소전문기업 대상 투자비율을 "자본금의 100분의 51이상"으로 규정하고, 자금차입·담보제공·채무보증 금액을 자본금의 30% 이내로 한정
- 잔여자산의 50% 이상을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잔여 자산 운용 방법 및 자금차입 상한 등 구체적인 자산운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산운용 범위를 설정한 점, 「지능형로봇법」 등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착공계획, 설치장소, 시설규모 등을 규정하고,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열 비중 등을 규정
-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설치계획서에 착공일정, 설치장소, 시설규모 및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비중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출시기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보고 의무규정 마련** 신설

- 진흥 및 안전 전담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수익사업 해당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경제 전담기관이 교육사업 또는 컨설팅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전담기관의 필요최소한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수소용품 제조사업 안전관리자 종류 등의 기준 마련** 신설

-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

심사결과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용품의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수소용품의 제조공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종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국내 수소용품과 동일한 안전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신설

- 최초 완성검사(완공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설검사) 및 정기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1년 내외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주기를 정함으로써,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다중이용시설 및 그 외 시설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법」 등 타법사례에서도 정기검사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공개 표시 규정 및 수소사업자 금지행위 기준 마련**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운영자에게 수소판매가격 보고 및 가격표시판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

- 수소사업자의 유통질서 위해 행위를 “급격한 가격 인상·인하, 부당한 거래 또는 폭리 목적의 사재기 행위”로 구체화

심사결과 수소충전소 운영자의 수소판매가격 보고를 통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하고, 수소 판매가격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폭리목적의 사재기 등 건전한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소의 유통질서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 판매가격의 보고내용이 필요최소한의 간단한 내용이라는 점, 폭리목적 사재기 금지 등의 규정은 석유 및 LPG 충전소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 범위 규정** 신설

-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시험항목의 누락, 측정기준의 오적용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로 규정

심사결과 공인기관이 발행한 오류성적서로 인한 기업,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류성적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적용 범위를 공인기관의 공인성적서로 제한하고, 오류성적서의 정의를 적합·부적합 등 평가결과가 변경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성적서로 제한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기준** 신설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으로 인정업무 관련 비영리성, 독립성 및 평가 인력 확보 등을 규정

심사결과 역량 있는 경영체제인정기구 지정 및 인정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민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요건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 등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의무화** 신설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부정성적서 확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의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성적서 무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성적서 의뢰자에게 문서통보를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 공인기관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공인성적서의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공인기관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KOLAS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 인정기구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민간 인정기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피규제자의 업무 권한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법 위반사항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 설정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역량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부정·부실 양성기관으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효기간 설정 및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공인기관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강화

-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하고, 고압 수소시설과 동일 수준의 안전관리 실시

심사결과 수소 공급 급증에 대비하여 수소의 취성, 가연성, 폭발범위 상 특성으로 인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있으며, 고압 수소시설과 저압 수소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 어느 한 부분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해가 발생하면 압력과는 무관하게 그 위해가 다른 시설로 전이되어 재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수소에 대해 압력과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하거나, 고압가스에 연결된 저압설비도 안전관리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 마련** 신설

- 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증가가 예상되어,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충전소의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수소 공급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연결배관 및 고정프레임 안전기준 마련** 신설

-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규정

심사결과 튜브트레일러는 압축가스를 200bar로 충전하여 운반·저장에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적정한 안전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7)

심사내용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신설

-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긴요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기업은 확인신청서와 매출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매출액 증명서류 등 수소전문기업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식 및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음.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연료공급시설, 연료전지의 설치계획 및 수소 수급계획 제출**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을 규정
-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에게 생산능력, 충전·저장용량 등의 생산계획 및 수급계획을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의 생산·수급계획을 통해 수소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수급계획은 최소정보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및 체계 마련** 신설

- 수소용품을 제조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기준, 수소용품의 재료 및 성능 등을

확인 및 유지할 수 있는 기술기준, 제조시설 및 제품의 검사기준 등을 규정

- 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재등록의 기간, 기준 및 제조등록 면제 대상 등을 규정

심사결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용품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액화석유가스법」의 가스용품 안전관리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고, 수소용품의 안전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규정
-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의 수소용품에 대해 유통제품 검사 실시

심사결과 수소용품은 수소누출 및 산소혼입에 따른 화재,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해 수소용품 판매 또는 사용 전 안전검사 실시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액화석유가스법」의 가사용품의 검사기준 및 유통제품 검사기준과 유사한 수준이고, 수소용품의 안전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용품 제조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수소용품 제조시설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소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기술과 새로운 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한 사업소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고압가스법」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유사한 수준이고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으로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및 체계마련** 신설

-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배치, 기초, 배관, 연소기 설치 등의 시설기준과 안전유지 및 점검 등의 기술기준 등 규정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제출서류 등을 규정

심사결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검사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및 제조사업자 등의 보험금액 규정** 신설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세부기준 규정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보험가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수소용품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하고, 보험가입 제외 대상 및 보험금액, 보험료의 할인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해 위반차수에 따라 차등화된 처분을 적용하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수소용품 사고 발생 시 사용자 등 타인의 손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범위와 보험금액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액화석유가스법」의 행정처분 기준 및 보험금액 수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 확대** 강화

- 여러사람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 및 '전기차충전시설' 등 포함

심사결과 농어촌 민박은 기존 전기설비 임의변경, 무등록업체(인테리어업체) 등 시공이 불량한 경우 화재발생 시 사고로 확대될 개연성 높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상시 전원공급 시설로써, 사용자가 직접 충전기기에 접촉하는 설비 특성상 충전 중 감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농어촌민박 및 전기차충전시설의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공개의 범위** 신설

- 정보공개 대상으로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안전관련 정보 규정
- 정보공개 범위는 전기설비 검사·점검 일자·결과, 전기설비 현황, 전기안전관리자 정보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 정보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 제정안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공개 방법 및 대상 등 항목은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요건** 강화

-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장비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 마련

구 분	등록 요건
자본금	- 2억 원 이상
기술인력 (10명)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2명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5명 - 전기분야 기능사 자격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 3명
장비	- 공용장비 12종, 개인장비 5종

심사결과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시설물관리업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설물업체도 전기전문업체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등록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전기전문업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4)

심사내용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강화

- 공해방지설비, 연료전지발전소 및 1,000kW 미만 자가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발전소의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일부설비가 제외되어 있고, 현행

자가용전기설비 內 전기화재는 일반인의 접촉빈도가 높은 구내배전설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승강기, 소방용품 및 가스용품 등에 대한 유사입법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용전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강화

- 해양에너지 기초구조물,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 시기 명확화

심사결과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를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실시 할 경우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발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사용전검사로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旣 시행중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기별 검사시기를 지정하고 있고, 이를 他 전기설비에도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기검사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 강화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긴급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방치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 시기조정을 통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최근 ESS 화재와 같이 사고가 반복적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점검시기 조정을 통해 점검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점, 긴급점검과 정기검사를 병행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등급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등급을 적합·부적합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환경적 요인 등을 반영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심사결과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계량화한 안전등급을 지정·관리하게 되어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 규제는 안전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검사·점검주기 연장 등)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장비 보유** 강화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한 자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12종, 각 1대) 규정

심사결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적정 장비 미비로 안전사고 발생 및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보유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관리장비는 대부분 旣 확보되어 있어 큰 비용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점, 산업안전 및 가스안전 분야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신설

- 안전시공교육 대상(시공관리책임자) 및 기간(매 3년 1회, 시공관리책임자로 최초 지정시 6개월 이내) 등 세부사항 규정

심사결과 전기공사 단계부터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적정한 시공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 시공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전기설비 안전시공에 필요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수단이라는 점, 소방시설 공사업 등 타법사례에서도 안전시공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 신설

- 시설물관리업체에 대한 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기준 대상에 시설물관리업체 포함

심사결과 신규 등록대상이 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명의대여 등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現「전기사업법」상 동일 업무, 유사 수준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旣 규정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타 분야에서 규정한 불법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강화

- 화력 및 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 개조공사는 공해방지능력과 관계없이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
- 연료전지발전소는 주 설비(전지, 전력변환장치) 뿐만 아니라 보조설비(압력용기 및 배관)의 경우도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에서 일부 누락된 설비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공사계획(인허가), 검사대상에 주요기기부터 부품까지 포함한 유사입법 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용전검사 대상, 기준 및 절차** 강화

- 해양에너지 기초구조물,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 시기 명확화

심사결과 해양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전기저장장치의 사용전검사를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실시할 경우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발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사용전검사로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타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공정별 시기에 맞추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공공기관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 강화** 강화

- 공공기관 등(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의무구매비율 상향(70 → 100%) 및 전기차·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80% 이상
- 공공기관장 등의 전용차량은 모두 전기차·수소차로 구매 의무화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확대하여 친환경차 보급 활력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경우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하여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충전소 구축 지연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상향되지만, 화물차, 특수차 등 친환경차 구매가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100% 저공해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로 旣 의무구매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충전완료후 계속주차시 단속근거 마련** 신설

- 완속충전기의 완충시간(약 10시간)을 고려하여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최대 14시간만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

심사결과 증가하는 전기차의 충전시설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완속충전기의 완전충전시 소요되는 시간(약 10시간)을 고려하여 충전목적의 주차 허용시간(14시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있는 점, 일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의 경우 단속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타법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영업방법 등 위반행위 처분기준 명확화** 신설

-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위반행위를 행정처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위반행위를 8개로 유형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심사결과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가벼운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방법의 실제 위반사례를 분석한 후, 그 위반행위를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영화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성적서 등 자료보관** 신설

-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의 성적서 등 자료 보관기간 규정(△교정의 경우 4년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 △건설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

심사결과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방지 및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 조사의 기본이 되는 관계 자료보관 의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합성평가사업자의 성적서 등 자료는 성적서 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자료라는 점, 자료 형식(수기·전산 작성, 서면·전자문서 형태 모두 허용)에 구애받지 않는 점, 성적서의 특성 및 발행의 대상이 되는 제품·서비스의 주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인 기간에 따라 보관하게 함으로써 피규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공인기관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공인성적서의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공인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인정기구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 방지, 민간 인정기구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피규제자의 업무 권한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하고 있는 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부정·부실한 양성기관로 인한 교육생들의 피해 방지, 교육기관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인정, 교육기관의 역할 및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한 점,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상향** 강화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18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을 통한 바이오디젤 시장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적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혼합의무비율 상향의 필요성 인정, 동 규제는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혼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상향(3년 단위 0.5%p)은 과거 상향 추세, 정유사의 이행능력, 바이오디젤 제조업계의 생산 능력 및 원료 수급 상황 등을 감안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강화 1)

심사내용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강화

- 신속한 리콜조치를 위해 제품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2→1개월)

심사결과 리콜 처분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시간적 여유로 인해, 리콜조치 개시지연, 리콜제품 재유통 등 제품안전사고 발생 및 소비자 피해확산의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리콜 이행점검의 신속한 개시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동 규제는 기존 진척상황보고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해 리콜 조치에 대한 보고 부담을 완화(보고서 2개 → 1개)한 점, 리콜제품을 개선하여 신속한 이행실적 확인을 통해 사업자의 회수제품 보관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 이행점검 조기개시(1개월 이후)를 통해 리콜조치가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 적시조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 등에 추가** 강화

-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검사대상기기에 추가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의무에 따라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기기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그간 캐스케이드 보일러는 동법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동일 공간에 여러 대의 가정용 보일러를 연결하여 실제 산업용 보일러 이상의 연료를 소모하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관리 제고 등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성 인정, 동 규제는 산업용 보일러 기준인 총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캐스케이드 보일러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점, 중복 검사 방지를 위해 제조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계속사용 검사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임기준(1구역 1명이상)도 일반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압력용기에 준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광해방지의무자의 비용 부담 기업규모별 차등화** 강화

- 광해방지사업비 중 광해방지의무자 비용 부담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광해방지의무자 비용 부담 비율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30%	• 대·중견기업 40% • 중기업 30% • 소기업 20%

심사결과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비 중 정부지원 사업비가 대·중견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영세광산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광해방지의무자 비용 부담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대·중견기업과 소기업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점유율 측면에서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써, 정부 출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재무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인 대·중견기업 및 관련 협회 등에서 부담 비용의 기업규모별 차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한국전기설비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은폐장소에 대한 전기배선 시설기준** 강화

- 건축물의 이중천장 內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 금지
- 은폐된 장소에서 콤바인덕트관(CD관) 시설 시,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 관등회로 공사시 점검 가능한 은폐된 장소에 화재 위험성이 높은 합성수지몰드 공사 및 애자사용공사 시설 금지

심사결과 이중천장의 은폐장소 등에 합성수지제 전기배선을 제한하고,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건축물의 은폐장소 內 합성수지제 전기배선 공사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미국, 일본 등 국제기준과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점, 소방청 고시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배선 공사시 합성수지관의 경우 벽 또는 바닥 등에 매설하도록 하여 합성수지관 공사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송·배전설비 자체검사의 대상·기준 및 자체 검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 등** 신설

-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검사 대상·기준 및 절차, 자체검사 결과 보고 등의 내용 신설
-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검사자의 자격 기준 신설

심사결과 동 규제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전기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간 송·배전사업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해오던 전기설비의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점, 송·배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설비별 특성 등으로 고려한 세부 검사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 점, 발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 대상·기준 및 검사 주기 등과 유사한 점, 또한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기술자격 기준(중급 이상) 이외에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일부 설비(공중배전)의 경우 송·배전사업자가 현재 보유한 전기설비 현장 운영 경험과 검사능력을 가진 전문기술자(초급 이상)도 검사자로 활용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봄.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신설

-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세부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심사결과 최근 다수 판매되고 있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등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들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의 위해요소 및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정용 미용기기 중 LED마스크 안전기준의 경우 우선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표원이 旣 공고한 예비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점, 두피관리기 등 3개 품목의 안전기준은 식약처 연구용역 보고서의 안전기준(안)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점, 각 세부품목의 주요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은 국제표준을 인용한 점, 동 규제의 시행일이 '22.3월로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감열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신설

- 감열지 內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규정한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심사결과 감열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의 위해요소 및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 인정. 국내에서 비스페놀A가 사용되는 타 제품(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 합성수지)도 비스페놀A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사용금지 및 용출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점, 해외 다수 국가들도 감열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A의 유해성을 인정하여 감열지 내 비스페놀A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 중에 있는 점, 국내 감열지 제조사는 이미 대체 현색제가 존재하여 비스페놀A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수입업체의 대응 준비 등을 위한 유예기간(1년)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강화** 강화

-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요건으로 제한 중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 이외에 DIBP(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추가 지정(허용치: 가소제 총합 0.1% 이하)

심사결과 어린이제품에 DIBP를 제한하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써, 타법 및 해외 사례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BP의 유해성이 인정되어 DIBP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피규제 기업(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들이 DIBP 시험을 완료하고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40) (강화 1)

심사내용 **친환경 냉매제(A2L-HFO계열) 안전기준 추가** 강화

- 기존 냉매제(A1, A2, A3-HFC계열) 이외 친환경 냉매제(A2L-HFO계열) 사용을 가능토록 추가하고, 그에 따른 가스 사용 관련 안전기준 마련

심사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HFC(수소불화탄소)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체 냉매인 A2L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안전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의 점진적 이행 및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냉매의 사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동 규제의 필요성 인정. 기존 냉매의 사용 금지가 아닌 새로운 냉매의 사용을 가능토록 추가하여 제조사 등이 선택 가능한 점, 수출기업은 이미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국내 안전기준에는 A2L 냉매가 적용되지 않아 내수제품과 수출제품 생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내 제조사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라도 안전기준 개선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강화 1)

심사내용 **압력 조리 기기 안전 장치 강화** 강화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5) 적용 품목인 전기밥솥에 사용되는 고무패킹을 압력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는 문구 추가 규정

심사결과 전기밥솥의 밀폐를 위해 사용되는 고무패킹은 재질의 특성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기능은 있으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압력 안전장치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국표원 소속의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기기기전문위원회('20.6.24)에서 고무패킹은 적절한 압력장치로 기능할 수 없어,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압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는 점, 기존 유권해석('16.8, '18.3)을 통해 대부분의 전기밥솥 제조업체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강화 2)

심사내용 **대기전력 시험기관 사후관리 검사 주기 명확화** 강화

- 대기전력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 포함) 최초 지정 이후 시험기관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주기를 3년으로 신설

심사결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상 신뢰도 제고 및 우수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전력시험기관에

대한 정기적 사후관리 검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정기적인 검사가 시험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검사 주기가 3년으로 시험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타법사례에서도 시험기관의 검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전력 시험기관의 전문인력 관련 요건 정비** 강화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시험요원 자격요건 중 필수교육 과정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직책 구분에 따른 해당 경력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 교육과정(KS Q ISO/IEC 17025 운영실무 및 측정불확도 추정 교육)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특히, 실무경력과 관련해서는 KOLAS 공인 시험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자와 기술책임자를 구분하고, 실무자의 경우에는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관리자인 기술책임자의 경우에는 시험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경력을 강화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신설 3)

심사내용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 안전진단의 계획 수립 등** 신설

- 사업자는 준공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5년마다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 실시
- 사업자는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심사결과 열수송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열공급 중단, 안전사고 등)로 국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안전진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진단의 세부사항(대상, 주기 및 기간, 계획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열수송관의 설치 현황 및 유사 지하시설물(가스관 등) 기준을 반영한 점,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 신설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인력(책임기술자 4명 이상, 참여기술자 8명 이상), 장비(10종) 및 자본금(5억 원 이상) 등 지정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은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열수송관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격 및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통해 안전진단의 품질 향상 및 무자격 업체의 부실진단 방지가 가능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진단기관 지정 기준은 열수송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점,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자본금 5억 원 이상 기준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진단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진단 예방, 참여예상 진단기관의 자본금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는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신설

- 사업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 3년 이내에 이를 완료
- 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대체 또는 보수·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 제출

심사결과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자의 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에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진단 이행조치 기한(2년 이내 착수, 착수 후 3년 이내 완료)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안전진단 대상 사업자의 현장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한 점,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 금지 단서 규정**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표시방법에 KC마크 표시를 금지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사업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

심사결과 KC 인증 대상이 아닌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 표시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KC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토록 하여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제품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KC마크 표시 금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가 현행 표시사항 제도를 준수토록 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 타법사례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도 KS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 KS규격이라고 표시하는 사례를 부당한 사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벽지 안전기준 강화** 강화

- 중금속(납, 카드뮴) 및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안전기준 신설
- 납, 카드뮴 함량을 각각 100mg/kg, 75mg/kg 이하로 제한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4mg/㎡·h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벽지 제품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고 있으나, 별도의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벽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타 법령에서의 유해물질 안전기준과 유사한 규정으로, 개정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신설

-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심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기능성 마스크로 허위 표시한 제품, 인증마크를 불법 표시한 제품 등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방한대 등 일반용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하여 사전 시험·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연구용역(방한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20.12))을 통한 시중 유통제품 조사, 국내·외

방한대 안전관리제도 검토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정된 점, 특히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사회적 이슈, 안전성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유해물질을 추가한 점, 국내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일부 안전기준은 해외사례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 추가** 강화

-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 포함하고, 품질검사시 수수료 부과

심사결과 항공기는 엔진 가동 시 압축공기를 사용하므로 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품질 부적합한 항공유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대상에 항공유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타 석유제품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 특히, 항공유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리터당 0.469원)는 내국적 내항기에 판매한 양에만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수소 가격표시를 위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표시위치,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신설
- (표시내용) 가격정보(의무), 품질정보(선택), 서비스정보(선택), 수소의 종류 정보(선택)
- (표시위치 및 방법) 진출입로에 설치, 글자크기 준수 또는 크게 표시

심사결과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수소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수소판매가격 정보접근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유소, LPG 충전소의 가격표시판 표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단일제품, 비경쟁적 시장구조 등 수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1)

심사내용 **요소 수입·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및 수출제한** 신설

- 요소 수입·판매업자에게 매일 수입량·수입처·수입단가, 판매량·판매대상·판매단가, 직접 사용량, 재고량 등 신고 의무 부과
- 요소 수입·판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량, 수입·판매대상 등의 조정 명령 및 해외 수출 금지
- 매점매석한 요소 전부를 他 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토록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 및 국민적 불안감 등 가중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요소의 유통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조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수입·판매업자의 당일 수입·판매량 등의 파악 및 신고 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정명령 조치에 따른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점, 수출제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매점매석한 요소에 대해서도 물가안정법상 몰수토록 하고 있어 몰수한 요소를 적시에 판매할 필요가 있는 점,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 이전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의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2호)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비용부담 근거 마련** 신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심사결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심사비용, 출장비 등)을 요청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외국용기 및 외국가스용품의 공장심사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자국민의 안전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외 제조사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요비용을 해당업체에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기, 기준 및 방법 등 구체화** 신설

-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5년마다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신청서 및 계획서를 60일 전까지 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부장관 및 송유관설치자 등에게 보고하며, 진단 결과 필요시 개선조치
- 진단항목, 진단방법, 진단결과 등 안전진단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송유관 원유 등의 유출사고로 화재 및 주변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진단의 세부사항(대상, 시기,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국내 송유관의 설치 현황 및 유사 지하시설물 기준에 대한 입법례(도시가스사업법 등)를 참고하여 반영한 점, 5년이내의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을 통한 송유관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안전진단의 대상, 절차 및 진단 기준 등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등 명확화** 신설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구체화
- ▲공개 대상: 제1종보호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공개 범위: 시설명, 시설위치(주소),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공개 방법: 한국가스안전공사(홈페이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요청시)
  ▲공개 시기: 검사일 당해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분기 1회)

심사결과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공개 대상을 일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점, 검사 결과 공개범위도 일반 국민들이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토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기설비의 점검항목 표준화** 강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월차 점검 시 별지 서식(제9호~제14호)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은 별지 서식(제15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주택 세대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항목 부재 및 부실 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전통 전기설비 위주의 안전관리 점검에서 벗어나 전기설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해 표준화된 점검기록표(신설된 별지서식)에 따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점, 기존에도 신설 점검기록표와 유사한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지정** 신설

-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친환경차를 구매목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는 대상기업의 범위 구체화
- ▲여객운송사업자: 차량보유대수 200대이상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보유대수 3만대이상인 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보유대수 200대이상인 자
  ▲화물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기업 인증획득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된 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2,612개)

심사결과 제도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수요기업에 환경개선책무를 부여하고 친환경차 국내보급도 가속화할 필요성 있으며, 동 규제는 기업의 규모 및 의무이행 여건(친환경차 보급 여부 등) 등을 감안하여 구매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고, 대상 기업별 상황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설정할 예정인 점,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현재 구매목표 미이행시 벌칙 등 제재가 없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사례에서 민간기업인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세부 내역(대상기업)은 고시 등으로 위임되어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차충전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강화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인 시설로 확대
-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확대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수량에 대해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의무비율 강화

심사결과 기축 아파트(100세대 이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토록 의무 부과하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전기차 보급 계획('22년 2%, '25년 5%) 및 기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예기간(3~4년) 등을 감안할 때, 기축 아파트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2% 의무설치 비율은 과도한 규제로 예단하기 곤란한 점, 주차여건이 열악한 기축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 등의 의무설치 비율의 완화 등이 필요한 경우라도 지자체가 당해 시설별 주차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원안의결**

심사내용 **친환경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강화** 강화

-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급속 2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 가능하도록 개선
-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충전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단속

심사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기차가 장기간 주차하여 他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충전용도로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강화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기차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충전시설 설치 취지 및 타법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개방 확대** 신설

- 충전시설 개방 대상기관에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추가
- 다만,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임대 및 공동소유시설 등의 사유로 개방이

곤란한 경우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부적합한 경우 등은 개방 예외로 인정

-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정보공개 절차 및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주거지·직장 등에서 충전이 곤란한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이 보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충전시설 개방 대상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현황 등 의무이행 여건을 고려한 점, 개방 대상기관이 보안, 안전관리, 업무지장 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가능한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및 대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별기관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점, △국가보안시설 △임대 또는 공동소유시설 등으로 개방이 곤란한 경우 △보안, 업무지장 등의 사유로 개방이 부적합한 경우 등은 충전시설 개방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미이행자에 대해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 부여(1회 연장 가능)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설정

심사결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시정기간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설정한 것으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1회 연장가능)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조치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또한 타법사례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강화 1)

심사내용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강화

-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연도별 RPS 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법정상한)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탄소중립위원회는 '21.10.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등을 통해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50년 60~70% 목표를 제시, 3030 목표를 고려한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RPS 비율을 법정상한인 25%까지 연도별('22~'26)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이행능력, 설비보급 및 시장상황(의무량 대비 초과공급) 고려시 향후 공급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태양광 설비보급 전망, 관리중인 풍력사업의 진입시기를 고려한 신규설비 전망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예상 발전량 추정 및 적정 수준의 연도별 의무비율을 산출한 점,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전력시장에서의 정산을 통해 비용 보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규정** 신설

- 산업부장관이 LNG(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범위,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시기,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

심사결과 LNG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통해 국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LNG 시장에서 역할과 비중이 커져가는 직수입자에 대해 비상시 필요 최소한의 조정명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LNG 공급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급시설의 건설 및 이용은 국가 수급관리와 밀접히 연동되며, 가스수급 위기시 수출입 물량 뿐만 아니라 LNG 거래에 대한 조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직수입자는 순수한 사적 경제주체라기보다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엄격한 처분제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준하는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는 공적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보고사항 추가** 강화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및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사항의 추가 및 신설
-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및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거래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조정명령의 이행 사항, 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현황, 도입계획 및 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 및 실적, 용도별 사용실적 및 비용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시설이용현황, 가스도매사업자 및 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판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등

심사결과 민간의 직수입 확대, 선박용 LNG 시장 활성화 등 변화된 LNG 시장 및 이를 고려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가 LNG 수급 현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사항 구체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現 도시가스사업법령은 LNG의 안정적수급 관리 및 거래질서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旣 규정하고 있고, 실적 및 현황 보고 등을 통해 이러한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시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강화 1)

심사내용 **요소 긴급수급 조정조치 유효기간 연장** 강화

- 요소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의 유효기간 1개월('21.12.31일까지 → '22.1.31일까지) 연장

심사결과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21.11.11)으로 요소수의 생산, 유통 등이 비교적 안정화 되었지만,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 재발 시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조치 필요성이 있으며,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규제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점, 그간 시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요소수 부족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2항2호)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외국인 소유 용기의 수입 전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제출 의무화** 신설

-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 前 검사권자(가스안전공사)에게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제출을 의무화

심사결과 수입용기의 국내 유통기한이 연장되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추적관리(사용처 등) 및 안전성 여부 확인(인증여부 등) 등 규제 필요성 있으며, 동 규제를 통해 검사생략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용기를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고, 반도체가스 등 특수가스 사용자는 해당 가스의 수급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검사생략 확인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신청자에게 부과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간 안전 강화** 신설

-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과의 사이에 방호벽(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높이 2m, 두께 12cm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벽 설치를 면제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기존 시설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 공포 후에 제조허가 또는 신고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고, 동 규제에 충분한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고 있는 점, 고압가스 저장소의 경우에도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압력방출기능 장착 의무화** 신설

-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부탄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압력방출기능(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심사결과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탄캔으로 인한 폭발 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 제조시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21.10월 기준 6개 부탄캔 제조업체 중 4개 업체가 생산비율은 높지 않으나 자율적으로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한 제조설비를 갖추어 생산하고 있는 점, 동 규제로 인한 부탄캔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위한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1년)을 부여하고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 부탄가스용 연소기의 과압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강화 1)

심사내용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강화

- 헤어 스트레이트너, 컬링 아이언 및 물 채움 발관리기 등에 대한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심사결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WTO TBT)에 따라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피부 소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안전기준 개정으로 헤어 스트레이트너 등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나, 기존 안전기준을 동 개정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최신버전(IEC 60335-2-23 Ed 6.1)을 적용한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품에 旣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강화 1)

심사내용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강화

- 세탁기의 사용장소와 용도에 대해 사용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요구

심사결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WTO TBT)에 따라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세탁기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안전기준 개정으로 제품 사용장소 및 용도가 사용설명서에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나, 기존 안전기준을 동 개정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최신버전(IEC 60335-2-7 Ed 8.0)을 적용한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품에 旣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강화 1)

심사내용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강화

- 천장형 팬 및 브러시를 포함한 전동기가 내장된 팬에 대한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심사결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정(WTO TBT)에 따라 최신 국제표준과 부합하도록 전기 팬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안전기준 개정으로 전기 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사용설명서에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나, 기존 안전기준을 동 개정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병행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제표준 최신버전(IEC 60335-2-80 Ed 3.0)을 적용한 관련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도 수출품에 旣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한 규제로 보았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중소벤처기업부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상생협력법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2	신설 2 (비중요 2)
(4)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5)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의 지연이자율** 신설

-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한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15.5%(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로 정함

심사결과 대금·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중소기업 등 수탁기업의 피해가 반복되어 금전적 손해를 보전토록 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15.17%) 수준으로 설정되어 합리성을 확보한 점, 하도급법 등 유사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수·위탁 거래 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사유 추가** 신설

- 벌점 부과 위반행위에 ①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 요구·유용하는 행위, ② 부당 감액한 대금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추가

심사결과 법률 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벌점 부과기준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벌점 부과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하도급거래법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벌점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법 대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지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 방법 및 규모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규정** 신설

-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시 최근 3년 총매출액 평균의 10%가 될 때까지 매년 매출액 2% 적립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한도가 [(소속 지도사 수 × 4백만 원) - (이미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의뢰인이 지도법인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법인의 업무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법인의 보상한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등록의무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완화된 수준인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업무위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 신설

- 행정처분 사유에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부적격 벤처투자조합에 의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기준에 위법한 업무위탁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법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처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점, 기 부여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후속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 규제순응도도 확보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업무위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 신설

-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1차 주의 → 2차 시정명령 → 3차 등록취소의 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조합원 모집 및 조합자산 운용과정에서 출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위탁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법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처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기 부여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후속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신설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①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②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출 것

심사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대응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조사·연구와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의 지정요건을 설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특허청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 총 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 중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발명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포기** 신설

-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종업원 등이 해당 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 사유 규정

심사결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공공기관 등이 포기하였을 때 종업원 등 발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유망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술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본 규제는 국민 건강 보호 및 공공안전질서 유지 목적 등 공익이 현저히 사익에 우선되는 경우, 독립된 기관인 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도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규제대상자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집필자 • 연희정 사무관
Tel. 044-200-2420, huijeongyeon@opm.go.kr
집필자 • 오은경 사무관
Tel. 044-200-2423, okekr5@opm.go.kr
집필자 • 서성현 사무관
Tel. 044-200-2424, ssh341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11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2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21건 중 3건은 개선권고하였으며, 21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9)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 (2021.02.26)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26)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4 (중요 2, 비중요 6)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1.02.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3 (중요 1, 비중요 2)
(1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4)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2)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49)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5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6) 철도차량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5)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6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7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6)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9)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8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1.10.08)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6)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2)
(8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89)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9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7)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9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2.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108)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0)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1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14)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116)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3, 원안의결 218	신설 159, 강화 62 (중요 7, 비중요 21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수립 및 통지 의무** 신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 또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어 운행제한을 명한 경우, 운행제한 사유, 운행제한 명령 관련 소유자 주의사항 및 불편해소 방안 등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의무 신설

심사결과 보호대책이 없는 결함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시 차량 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어 결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부품제작자 등에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수립 의무 도입이 필요하며,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소비자 불편 해소방안의 제작자 자율수립, 통지기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을 수용·반영)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수립 및 통지의무에 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조사 통보 의무 강화** 신설

-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조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제작사에게 통보의무 신설

심사결과 제작 결함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제작자 등에게 조사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조사 착수 통보기한 설정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자동차 결함 또는 부적합 조사 시작 시 해당 내용을 통상 5일 이내 제작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Working Day 5일 이내에 메일로 통지)하고 있어 해외사례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시험대행자의 적정성 조사 결과 보고 의무 부과** 신설

- 성능시험대행자가 실시한 적정성 조사의 결과 보고 의무 신설

심사결과 성능시험대행자가 실시한 리콜 적정성 조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작결함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리콜 개시 후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도 결함조사기관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작자 등에 시정조치 재공개 의무 부과** 신설

- 시정조치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70% 미만으로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시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에게 요구되는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 신설

심사결과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조치율 또는 경제적 보상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중의 안전을 위해 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시정조치율 등의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 재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조치 재공개 명령 적용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작자등에 제작결함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신설

-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제작결함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 의무 신설

심사결과 제작결함 원인 규명 및 리콜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자 등의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5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주요사항 변동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최초 청약접수 5일 전까지 정정공고 의무 부과** 신설

심사결과 정정공고 기간을 최초공고 기간(10일)의 절반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사회적 편익 등이 확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여객운송사업자에 휠체어 탑승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 근거조항 신설** 신설

- 버스운송사업자에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심사결과 휠체어 이용자의 버스 탑승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에 휠체어 탑승공간, 고정장치 등의 설비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필요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사업 주체의 재공급 의무 대상 주택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를 추가** 강화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실수요자 우선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의무** 신설

- 입주시작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설정하되, 500호(또는 세대)를 공급하는 경우 45일까지 예외적 허용
-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 1개월 이전에 실제 입주일 통보

심사결과 입주예정자의 편익이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주택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마련**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더라도 LH에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있는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이전·신설 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확대** 신설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특별공급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수단 적합성 및 사회적 편익이 확보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에 관한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신설

-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기계설비기술자 자격으로 기계설비산업 관련 인정기능사 및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를 규정하고, 기계설비·냉동공조·에너지 관련학과 등을 기계설비 교육과정 및 관련학과로 규정

심사결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의 원활한 유입 및 기계설비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관련 자격 및 학과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기계설비 현장에서 인정되는 전문인력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令에 규정된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와 유사하여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영국의 기계설비 관련 직업 현황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신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수행업무 및 자격 취득 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일반 기계설비기술자 중 전문성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경력 인정기준 및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행업무의 특성 및 자격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인정 실무경력을 차등화·세분화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기술자 자격으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규정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3)

심사내용 **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 강화

-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및 재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건설기계 도난, 압류, 사고발생, 1개월 이상의 정비 등 검사신청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규정

심사결과 건설기계 검사 불합격 사유의 상당수가 안전에 치명적인 제동장치·조향장치 등 중대결함이므로 신속한 정비를 통한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주기 및 동 개정안에 따른 도로주행식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에 따른 정비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기계와 자동차의 사고 치사율 차이를 고려하여 정비명령 이행 기간을 설정한 점, 피규제자의 경영상 부담 가중 우려의견에 불가피한 경우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부담을 일부 완화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단축** 강화

- 기중기·항타 및 항발기·터널용 고소작업차·천공기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통일하고,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도로보수 트럭·트럭 지게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세분화(기존 1년 → 20년 이하 시 1년 / 20년 초과 시 6개월)

심사결과 타워크레인·기중기·항타 및 항발기 등은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한 높이 50m이상·무게 1,000톤 이상의 대형장비로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덤프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만 운행되는 건설기계에 비해 사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험도·사고발생 가능성·유사기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점, 검사주기 단축으로 인한 검사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도로주행 건설기계 노후 판단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시설보유기준 강화** 강화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시설보유기준에 비파괴시험장비(자기탐상검사(UT), 초음파탐상검사(MT), 침투탐상검사(PT) 등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표면 균열 등의 결함, 용접부의 내부결함 등을 외부에서 확인하는 장비) 추가

심사결과 건설기계 검사 시 각종 장치의 균열 여부 검사를 위해 비파괴시험장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사 시 비파괴시험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보유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현행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검사기관의 시설기준으로 비파괴시험장비 규정하고 있는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표지판, 검사수수료 안내 등 각종 의무 부과** 신설

-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표지판 설치, 검사수수료 게시,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연결,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표지판 설치, 검사수수료 게시 등이 모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국민의 편의 및 자동차 안전을 위해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은 검사 신청절차 순서, 업무 접수 시간, 수수료 등에 대한 검사시설 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도 석유판매업자에게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격표시 의무화하여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현 고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여 고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규제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차수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입법례를 전수 조사, 비교·분석하여 모호·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소부처 제도개선 사항으로 타법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가중처분 입법을 규정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와이어로프 및 차량 소켓부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검사요령** 신설

- 사용시간 15,000시간 이상 와이어로프에 대한 비파괴검사 의무화(매 2년마다 실시) 및 소켓부의 검사항목 신설

심사결과 차량 소켓부가 운행 중 탈락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와이어로프 연결부는 단선발생 시 사고위험이 일반구간보다 높음에도 유지보수기준이 없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유럽에서도 와이어로프 단선 등에 의한 궤도시설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와이어로프 사용시간 또는 사용연식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도 파손 등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품·장치 등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여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와이어로프 소선 단선수에 따른 교환기준** 신설

- 와이어로프 구조, 단선형태 등에 따른 단선 세부 교환기준 마련 신설

심사결과 와이어로프 안전성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와이어로프

구조별 단선형태에 따른 세부 교환기준 관련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에서도 「삭도(케이블카)시설 설계표준·관리표준 및 해설」에서 "지삭 이외의 삭조의 교환기준"에 와이어로프 구조별 국부 단선기준을 규정하여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신설 2)

심사내용 **개방식 차량에 대한 탑승객 추락 방지 보조기구 설치 의무화** 신설

- 개방식 차량(리프트 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등에 보조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심사결과 스키장 리프트 등 개방식 차량은 어린이 등 체구가 작은 사람이 불안전하게 탑승할 경우 틈새 추락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 설치 의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16개 스키장中 9개 사업장은 스키장 리프트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해 추락 방지용 보조기구를 자체적으로 장착하여 운영 중으로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보호망 등 추락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기구 설치 의무 제외)을 제시하고 있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도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에 구동부분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난간 및 손잡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타법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와이어로프의 접합부 유지보수 기준** 신설

- 와이어로프 접합부 등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 신설

심사결과 와이어로프 접합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일반구간보다 단선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으나 별도 유지보수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은 「여객용 트램 기술표준」에 와이어로프 접합부 보수시 1~2개 스트랜드에 같은 치수와 구조를 가진 스트랜드 로프만을 이용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신설 2)

심사내용 **평가기관 지정** 신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의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평가기관 지정요건 규정

심사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증평가 운영기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기계관리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에서 본 규제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증기관 등의 인력·시설요건을 규정한 점, 전문인력·인증평가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은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신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대상·평가기준·취소기준 규정

심사결과 현재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인증제도를 통한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취소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스마트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도시별 수준을 진단하고 있는 유럽 및 국제기구 등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 연계·정보 인프라·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인증기관 등의 인력·시설요건이 「건설기계관리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타법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 판단되는 점, 전문인력·인증평가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은 심도있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강화 1, 신설 2)

심사내용 **철도사고 등의 즉시보고 의무** 강화

- 종결보고 기한설정(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전) 및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사고와 관련된 모든 철도차량 운영자 및철도시설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강화

심사결과 각종 철도사고 보고의 누락 방지로 철도 안전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규제강화의 필요성 인정되며, 영국, 일본에서는 철도 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도 철도운영자 등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 항공안전 의무 보고를 규정하여 해외사례 및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동에 발생한 고장 등의 보고 의무** 신설

-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고장요인을 인지 후 7일 이내 국토부에 보고 규정

심사결과 철도차량과 관련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국, 일본에서는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 징후를 발견한경우에도 철도운영자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 항공기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발견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보고 대상, 방법, 시기 및 기한 등을 명시하고 96시간 이내 보고의무 규정이 있어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안전 자율보고 내용에 대한 확인·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의무부과** 신설

- 철도안전 자율보고 내용이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 및 보고 의무 부과

심사결과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차량 안전성 향상을 위해 철도안전 자율보고 및 대응체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안전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에 항공안전 자율보고 근거를 규정하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자율보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기준** 신설

-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건설협회 등) 및 공제조합 이사장' 삭제
- 다만, 기존 협회장 및 이사장의 운영위원직은 '22. 5. 31.까지 유지

심사결과 현재 운영위원 선출방식은 출자비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체 조합원의 이익 대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위원의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필요함. 단, 공제조합의 지배구조가 주식회사 등 일반적인 법인의 지배구조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인 이사장을 배제하는 것은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훼손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어 **중요규제**로 검토됨. 다만, 적정 보증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실 및 왜곡을 방지하는 공제조합의 성격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협회장 등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삭제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협회장 및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규제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영위원장 선출방식** 신설

-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정부위촉직)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함

심사결과 조합원 위원(협회장 포함)이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한 현행 호선 방식은 대표성·전문성 및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 투표를 통해 위원장(부위원장)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위촉위원 위원장(부위원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이해충돌 안건 회피가 가능하므로 본 규제는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제한** 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기존 3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 동 개정안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토록 하나 임기만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함

*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2월 31일
2. 2023년 1월 1일 이후: 2022년 5월 31일

심사결과 현행 임기는 3년이나 연임 제약이 없어 장기연임(최장 12년)에 따른 전체 조합원의 참여기회 제한 및 운영위원회 사유화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임기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버스운송공제·공인중개사 공제·전기공사공제 등 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등의 임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2년의 임기(1회 연임)는 운영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조합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됨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건 사전협의 절차** 신설

- 운영위원회 소집 시 국토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심의·의결 사항 규정

심사결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권고·명령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 조치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감독에는 한계가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공제조합의 대외신인도 및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제조합의 기본 목적 외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무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사전협의 사항으로 한정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강화 4, 신설 4)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의무 부과** 강화

-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및 그 기록의 보관·관리의무 부과

심사결과 택시의 경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운행 前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적발 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플랫폼운송사업"에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동일수준의 음주운전 예방 의무 부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은 기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 허가기간 및 허가기준 준수의무 부과**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기간을 10년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포함

심사결과 현재 공급과잉인 택시운송시장과 4차 산업시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업영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운송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존 택시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택시단체 등이 최대 허가기간 축소 의견을 제기하였고, 피규제자인 플랫폼운송사업체는 모두 스타트업 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 수익모델 실현을 요구하여 업역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화 소지를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동 규제는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사업 간 반목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계 및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납부 의무부과** 신설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에 관한 산정, 납부주기·방법, 연체료의 납부·징수, 납부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도입이 현재 공급과잉인 택시운송시장의 경쟁을 심화하고,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운송사업의 도입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의 업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여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한 법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적 근거 결여의 소지가 있고, 해외사례와 비교해 기여금 부과 수준이 과도해 보이며, 중기부 의견 및 첨예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기여금 수준 등에 대한 재검토기간 축소(3년→2년) **개선권고**, 기여금 부과前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하여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기여금 관련 하위 고시에 운송 부가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종사자격 요건 제한** 신설

- 플랫폼 운수종사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택시 운송사업으로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여객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므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현행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서비스 질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차량 운전자에 대한 택시운전자와 동일 수준의 면허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어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면허취소 요건 등 각종 준수의무 부과** 신설

-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의 개선,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의 근거 마련,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 규정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 고객의 이용편의와 안전향상을 위해 차량 위치통지 서비스, 여객 운송편익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무자격자 운전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기존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적용된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요건 규정** 강화

-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나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분을 위해 필요한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비율)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기존 택시운송사업과의 유사성, 형평성 및 여객의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일반 택시운송사업과 동일한 교통안전지수 기준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사업용 자동차 차령 및 연장요건을 제한** 강화

-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배기량 2400CC 미만은 4년, 배기량 2400CC 이상은 6년으로 규정(환경친화적 자동차는 6년)

심사결과 노후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화물자동차의 차령 3년)와 비교하여 현행 차령기준이 크게 과도해 보이지 않고, 차령연장 기준을 제외하고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된 차령 기준과 동일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플랫폼 운송사업 및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세부적 행정처분 사항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중개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여객운수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된 처분기준과 동일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입법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운수종사자에 사업허가기준,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각종 준수의무부과**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절차, 허가 갱신 절차,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허가기준,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택시 운송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서비스특화계획의 구체적 내용, 단기 렌터카 활용여부, 운송 플랫폼 기준 등에 대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이견이 상당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결제처리 수단 관련 괄호의 예시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서비스특화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사업자용 번호판 이용, 차량 외장(색상, 디자인 등)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에 면허취득 등 각종 의무부과** 신설

-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기준 및 면허신청 절차, 운임·요금 신고, 변경절차 규정

심사결과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가맹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신청, 사업계획 변경 및 운임·요금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운송가맹사업에 적용되던 기준과 유사하고, 일부 신설된 조문도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 차별성을 위해 필요·최소 수준으로 규정된 것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 등록·신고, 사업계획 변경인가, 운임·요금신고 등 각종 의무부과** 신설

-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절차, 등록기준 및 중개요금의 신고절차 등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중개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중개요금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플랫폼중개사업의 운송플랫폼 기준은 타 플랫폼사업과 동일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 조문의 경우 신고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플랫폼 중개사업의 등록 및 중개요금 자율 신고제 법제화 등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증가로 국민 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편익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설정** 신설

- 물류창고의 성격에 따라 일반창고, 택배터미널로 분리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준 마련

심사결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물류시설 네트워크의 체계적 확충 및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첨단화·지능화가 요구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낙후된 물류시설 및 물류시스템의 첨단화에 따른 물류산업 경쟁력 증대, 연관산업 발전 등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비용 지원, 융자지원을 통한 이차보전, 건축기준 완화, 보증조건 우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류 작성 방법 규정** 신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자체평가서의 세부 작성방법 규정

심사결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도입 취지가 물류센터의 첨단화·지능화를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인 점을 감안, 인증에 필요한 요건과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인증관련 신청서류에 있어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물류센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관련 각종 의무 부과** 신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기업의 정기·수시점검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기준미달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심사결과 IT·IoT가 결합된 스마트물류센터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인증관련 점검 및 실태조사 등에 있어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차령연장을 위한 차령기간 내 자동차 검사 의무 부과** 신설

- 차령연장을 위한 차령기간 내 자동차검사 의무부과

심사결과 버스 차령 연장 시 차량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 차량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검사 기준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차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의 요건이 요구되나 버스 검사를 위해 예상되는 규제비용(27,534백만 원)보다 신차 구매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705,641백만 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간 857억 원의 순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규제 도입으로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추가** 강화

- 공사중단·지연 상태가 6개월 이상이고,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되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지위를 승계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공사이행 항목 추가

심사결과 공사 중단·지연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장기간 방치를 해소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중단·지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사로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공사이행을 요청하여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규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신설 3)

심사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종안전장치 등 각종 추가 기능 설치의무 부과** 신설

- 자율주행 자동차 유형을 A·B·C형*으로 구분하고 차량 유형별로 안전운행을 위한 조종·안전장치 등의 설치의무 부과

  * A형: 유인(시험운전자, 승객)+운전석有 / B형: 유인+운전석無 / C형: 무인+운전석無

  - (B~C형) 비상시 차량 정지를 위한 조종·수동제어장치 설치
  - (A~C형) 경고장치 기능을 강화하고 충돌방지를 위한 감지대상 현실화, 경사로 사고예방을 위한 구름방지 제동장치 자동 작동 기능 설치

• (A~C형)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심사결과 자율주행자동차는 유형에 따라 기술 및 구조적 특징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안전확보를 위한 조종·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통한 기술개발의 다양성 보장 및 국민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종류별 기술 및 안전기준** 신설

- C형(무인) 자율주행차의 기술 및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A, B형 자율주행차의 무인 운행 시 C형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변 교통상황과 정상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관측장비 설치, 통신두절·고장발생 시 경고장치 작동 및 자동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 및 대책 마련 의무화

심사결과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의무 부과** 신설

- 자율주행차 유형별 임시운행 중 시험운전자의 위치를 별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
- 운전석이 없는 B형 또는 시험운전자가 미탑승하는 C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험운전자의 안전운행 상황과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자율주행차는 유형에 따라 기술 및 구조적 특징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시험운전자 위치지정 및 B, C 유형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시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 운영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유형별 안전관리 절차 관련 개정안이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 공급의 기본원칙(3% 이상)은 유지하되, 50만㎡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1%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우선 공급 비중을 축소하되, 50만㎡ 이상의 지구에서만 조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점,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 기준 강화** 강화

- 공장·창고 등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제외 사유(소규모 공장·창고)를 삭제하고,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을 추가

심사결과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주로 마감재료 공정 중 발생하고 소규모 공장·창고에서의 화재사고 비율을 고려할 때 마감재료 기준을 모든 규모의 창고·공장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영국 등의 규모별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적용여부 등을 고려시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새롭게 건축·대수선하는 창고·공장 등의 내부 마감재료를 난연 이상의 재료로 교체 시 비용이 발생되나 마감재료 공사 중 화재사고 및 확산을 방지하는 동 규제의 목표를 고려할 때 감리의 감독 강화 등 현장관리 강화는 화재확산의 근본적 예방안으로서 한계를 지녀 동 규제도입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 의무** 강화

- 마감재료 공사 중 창고·공장·위험물 처리시설 등의 건축공사 시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하며 해당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건설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토록 함

심사결과 동 개정안과 함께 개정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창고·공장 건축 시 가연성 단열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마감재료 공정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현장의 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를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장·창고 등에 대해 강화된 마감재료 기준의 예외로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로 노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 부작용을 완화한 점, 가연성 단열재 사용은 건축주 등의 요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항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 기준 강화** 강화

- 모든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의 내부 단열재는 난연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 이상을 사용토록 함
- 모든 공장·창고·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는 준불연 이상을 사용토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대형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단열재 및 우레탄을 내부 심재로 하는 복합자재 사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마감재료로서 우레탄 및 복합자재의 주된 사용처가 공장 및 냉동·냉장 창고 등이므로 관련 내부·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영국 등의 규모별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인 복합자재의 내부·외벽 마감재료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 의무** 신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단열재 전담감리 의무 배치의 대상으로 창고·공장·위험물 처리시설 등의 건축공사 시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있는 경우를 규정

심사결과 창고·공장 등은 난연 이상의 단열재 사용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연성 단열재 사용이 가능하나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된 경우에는 화재사고 우려가 커지므로 안전강화를 위해 단열재 전담감리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담감리 배 의무는 공장·창고 등에 대해 강화된 마감재료 기준의 예외로 가연성 단열재가 외기로 노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 부작용을 완화한 점, 가연성 단열재 사용은 건축주 등의 요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항인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4)

심사내용 **모든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사업 주체가 추가선택품목을 개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 중인 사안으로 사업주체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 신설

심사결과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사회적 편익이 큰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이미 시행 중인 규제지역 당첨주택에 대한 재당첨 기간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신설

심사결과 규제지역 공급주택에 대한 재당첨 기간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재당첨 기간제한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의 사회적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물량의 재공급시 분양가는 취득가격으로 규정** 신설

- 단, 정상적인 계약취소 과정에서 투입되는 부대비용(소송, 자문, 인건비 등)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포함 허용

심사결과 재공급 가격은 사업주체의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 일부 비용은 시장·군수 등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당한 이익취득 방지에 적절하며, 적정한 가격 수준의 재공급을 통해 얻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기준 적용범위 확대** 신설

- 인증기준 적용범위를 현행 KS X 6924*에서 교통카드로 구체화하여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수정

* 비접촉식 선후불 IC카드의 물리적 특성, 기본구조, 명령어 및 프로토콜 등을 규정하는 KS 표준규격

심사결과 모바일 기기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호환성 인증기준·방법 등이 미비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업체 간 기준 난립 및 승객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므로 전국호환성 기준의 모바일 교통카드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에도 새로운 장치와 기존 장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18년부터 모바일 교통카드 현황파악 및 전국호환 규격제정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이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규정** 신설

- 서류 등을 보관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응해야 함

심사결과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청구권자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방화에 지장이 없는 창호설치 대상 건축물** 신설

-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을 법 제52조제2항의 외벽 마감재료기준 적용 건축물과 동일하게 규정

심사결과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외벽의 구성요소인 창호의 방화성능도 함께 확보할 필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IBC) 및 독일(MBO)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창호 방화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등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소방청·중소기업 옴부즈만·창호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20.6월)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외벽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규제대상 건축물을 현행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인 건축물로 한정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계 부품 안전성 기준** 강화

- 부품인증 대상인 타워크레인 마스트 및 지브의 안전성 기준·시험조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마스트 및 지브가 부품인증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부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설현장 등의 이해관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안전성 기준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정된 위치에서 충격하중이 없도록 운용해야 하는 타워크레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직강도·굽힘강도·비틀림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점, 타워크레인 노동조합·부품업체 등과의 협의를 근거로 동 기준을 마련한 점, 부품인증기관의 제원심사·장착검사와 연계하여 부품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교통안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대상 확대** 강화

- 특별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요건인 교통사고의 기준을 확대
  (기존)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 (변경) 1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이상

심사결과 관할 지자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의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국토부 교통수단 안전점검의 경우, 점검 실시 후 사망자 감소 효과가 뚜렷하여 정부 개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통수단 안전점검 준비 및 자료작성 등을 위해 연간 169.41백만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개선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고, 점검요건 확대 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특정감시 성능요구 공역 사전승인 의무 부과**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역에 '특정감시성능요구(RSP)공역' 신설

심사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운영기준은 당해 공역 운항을 위해 항공기의 항법장비 보유 및 관련 비행절차, 정비절차 등의 수립·운영에 관한 소속국 정부의 확인 및 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국적항공사들이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이용 시, 비행시간·

거리·연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제항공기에 이미 필요한 항법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는 점과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 등을 위한 제도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 등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제한** 신설

- 항만 등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행위를 제한

심사결과 드론을 이용한 주요시설 테러 우려가 확산되고,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미승인 비행 등 드론 불법비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국가의 중요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할 필요성 인정되며, 해외에서도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군사기지 관련 법률에서도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 비행금지를 규정하는 등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종사자 등의 기내 흡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 항공종사자가 운항 중 또는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흡연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항공안전법은 탑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항공종사자의 항공기 내 흡연 문제가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효력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인 항공종사자의 예측 가능성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항공기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시행 중인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 위반시에 부과되는 처분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항공종사자의 기내흡연 금지에 의한 항공안전운항 확보와 쾌적한 기내환경·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정비규정 포함내용** 신설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감항성 개선지시, ②계약정비 평가, ③정밀측정 장비 등 절차를 신설

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 사용”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므로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규정 항목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는 항공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항목이며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수준의 정비규정을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출제인력 기준 준수의무 부과** 신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기준에 일정 자격을 갖춘 출제인력 2명을 신설 및 인력 중 면접·평가·출제인력(운영인력은 제외)은 외부 전문가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해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사) 간 원활한 언어소통이 중요하므로, 양질의 전문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위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제인력이 상근 인력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미미하며, 양질의 전문적인 시험문제로 공정한 능력평가와 언어소통에 능숙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항공운항 안전성 제고의 편익이 예상되고,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Doc. 9835(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세부운영사항을 정해놓은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시) 및 지역(전국, 단 비수도권 지역의 군단위 제외) 설정** 신설

심사결과 정부 내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한 안으로 목적-수단 간의 적절성 등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점,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법 등 시험절차** 강화

- 안전기준 개정으로 신설된 이륜자동차의 전자파적합성 및 가변축 설치기준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동차충돌·구동축전지·보행자 보호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시험방법 도입

심사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자동차 안전성 시험 현장의 혼란 방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UN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국내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사례에 비춰 과도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 신설

- 8 종류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기인증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의 일부분만 적용받도록 함

* ① 수제자동차(3.5톤이하, 승차정원 10인이하), ② 항공기 겸용 자동차, ③ 무한궤도 자동차, ④ 수륙양용 자동차, ⑤ 리무진 장의차, ⑥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⑦ 관광목적 자동차, ⑧ 친환경 자동차 등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제자동차 등 특정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자기인증 기준이 필요해짐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고, 생산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8 종류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기준' 중 필요·최소한의 기준만을 적용하고 그 외 기준은 예외 인정 또는 미적용하는 등 대폭 완화된 자기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제작자들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적은 부담으로 소량생산 자동차 생산 환경을 구비할 수 있게 된 점, 소량생산 자동차 시장을 육성하고자 안전 중심의 엄격한 기존의 규제체계를 유럽제도를 참고하여 개선하되 필요·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제스포츠카·항공기 겸용차·무한궤도 자동차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시장을 활성화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승무원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및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결과 보관 의무** 강화

- 항공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 강화
  - (일반승무원) 연간 50mSv, 5년간 100mSv 이하 → 연간 6mSv 이하
  - (임신승무원) 연간 2mSv 이하 → 연간 1mSv 이하

- 피폭방사선량 기록 자료 보관기간 연장
  - (현행) 5년 → (개정)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된 때 중 늦은 시점까지'로 연장

심사결과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의 건강과 신체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선량 기준 및 자료 보관기간의 수준이 합리적인 점,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 의해 항공승무원의 실제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할 때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mSv를 넘지 않도록, 임신승무원은 2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결과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6mSv를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자료 보관 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비용이 예상되나,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예방의 편익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가 부가할 수 있는 조건** 신설

-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허가 시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

심사결과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시 부가될 수 있는 조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조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①사업계획 준수, ②여객 배정기법 개발, ③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및 고용노동관계법령의 준수, ④운송약관의 공정성 유지, ⑤소비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운송사업 질서확립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플랫폼운송사업의 다양한 부가서비스(B2B전용, 노약자 병원수속 지원, 유아 이동 지원 등)제공으로 국민들의 교통이용 편익증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양식시설 입주 기준** 신설

- 산업시설용지(농공단지에 한함) 대상시설에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추가하면서, ①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 ②첨단 정보통신기술 적용

및 대용량 기반시설 필요, ③시·도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 양식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측면에서 전통적·재래적 방식의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화·첨단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입주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단지와 성격이 유사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등을 고려할 때 동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1차 산업인 양식업의 특수성과 기존 어민과의 갈등 방지 및 지역산업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필요·최소 수준의 완화규제 적용 요건을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조합원 운영위원 입후보 자격** 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 후보자 자격을 조합원 총 출자좌수의 3% 또는 대의원 총수의 3%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

심사결과 시행령 개정으로 투표를 통한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입후보 남발 방지 및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입후보 자격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직선거법」 등 입후보 남발 방지를 위해 무소속후보자의 요건으로 선거권자로부터의 추천을 규정하고 있는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추천 이외에 매출·자산 규모 등 별도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입후보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자좌수별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기준** 신설

-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시 대규모·소액 출자자 중 일정 인원 이상(건설공제조합은 대규모출자자 중 2명 이상, 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 공제조합은 소액출자자 중 1명 이상)을 의무 선출토록 규정하고, 대규모·소액출자자의 출자좌수 기준을 각각 상위 20%·하위 20%로 설정

심사결과 운영위원 선출 투표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이루어지나, 공제조합별 대의원 구성 방식에 따라 운영위원 구성이 대규모 또는 소액출자자 위주로 특정집단에 편중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각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이 결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건설산업기본법 (강화 1)

심사내용 **불법하도급 등록말소 강화** 강화

- 법 제83조제7호('3진 아웃제')의 위반행위에 무등록자 하도급을 추가
- (3진 아웃제) 무등록자 하도급을 제외한 3가지 불법하도급에 한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을 받고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제도

심사결과 시공능력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는 무등록자 하도급은 일괄·동종·재하도급과 같이 건설시장 건전성을 더 해치는 행위이므로 '3진 아웃제' 대상에 '무등록자 하도급'을 추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법하도급 유형 중 불법성과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무등록자 하도급을 '3진 아웃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불법하도급 근절의 사각지대 해소와 건설시장 건전성 제고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무등록자를 포함한 '다른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 도입** 신설

- 제주도 내 카지노업을 양수·합병하려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인가 시 검토되는 결격사유 등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사업 및 카지노업 결격사유를 준용토록 함

심사결과 부적격자 및 불건전 자본유입 방지와 카지노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양수·합병 전에 재정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전인가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카지노 규제청의 사전승인 없이 카지노 허가의 양도, 카지노 사업자의 지분을 양도·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싱가포르 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동 규제는 카지노업 대표자 회의('20.10)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사항 이행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설비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육지에 비해 말 사육시설 및 소규모 사육시설이 많고, 특히 소규모 사육시설이 AI 유입경로인 철새도래지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등의 제주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으로 방역조치사항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따라 도조례로 마련될 방역 설비기준 및 소독실시 의무는 허가·등록 사육시설 기준에 비해 완화된 수준인 점,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나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육시설 등에 대해 사육신고 및 최소수준의 방역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도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 규제의 도입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존자원 반환 규정** 신설

- 반출허가 대상인 보존자원은 제주도 외에서 매매를 금지하고,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으로 불법 반출한 자 및 제주도 외에서 보존자원을 매수한 자에게 도지사가 반환명령 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제주도 외로 불법 반출된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및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매금지 및 반환명령 등 도지사의 관리 권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출 시 허가받도록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매매금지 및 몰수 규정을 두는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보존자원의 무분별한 채취 및 훼손, 불법 반출을 예방하고, 기반출된 보존자원을 원상 복구하는데 적합한 수단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수준에 해당하여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하수 굴착행위 허가제** 강화

-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및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지반·지질 시추조사 등은 굴착행위 허가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를 유지토록 단서 조항 마련

심사결과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굴착행위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고, 지하수가 제주도의 주요 수원(98%)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 원칙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하수를 관리하는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에 비해여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행위별 지하수 오염 유발 가능성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 여부를 상이하게 설정해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의무기준을 상향** 강화

심사결과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본 규제 외 대안이 없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공익적 효과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유료도로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민자도로사업자에 유지관리계획 수립의무부과** 신설

- 유지관리계획(5년 단위 수립)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연차별 수립) 포함사항과 수립 시기 등

심사결과 개정법에 신설된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과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별 내용과 수립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간 고시로 운영하던 사항을 상향입법하므로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민자도로사업자에 부가통행료 고지 의무 부과** 신설

- 부가통행료 등의 부과·수납 절차 명확하게 규정
  -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 절차 마련: 최소 2회 고지 의무화
  - 납부 기한의 설정: 최소 15일 납부기한 부여
  -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 기준: 20회 상습 미납 시

심사결과 관리주체에 따라 상이한 미납통행료 고지 및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이용자의 혼선에 의한 민원, 상습적 미납 등이 증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수납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이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성실납부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운영 중인 유료도로 사업자는 미납(부가)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대부분 2~3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하이패스 미설치 도로 제외), 동 규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민자도로사업자에 유지관리계획제출 의무부과** 신설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방법
  - (계획) 계획의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제출
  - (보완) 계획의 수정·보완 요구 시 15일 이내 제출
  - (검토)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 관리센터에 적정성 검토 요청 가능

심사결과 개정법에 신설된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과 민자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의 계획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그간, 旣시행되고 있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거하여 운영하였던 사항을 상향입법하므로 규제 순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 (신설 4)

심사내용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원칙 준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규격 준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위치별 설치기준 준수 의무** 신설

- 단지내도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 (설치원칙) 보행 연속성 확보, 설계속도(≤20km/h) 등
  - (설치규격)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방법·규격 등
  - (위치별 설치기준) 진출입로, 교차로, 가로, 주차장 내 시설물 설치기준

심사결과 일정 범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후속조치로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단지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로안전시설에 관한 다른 지침·매뉴얼을 준용하여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지내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부과** 신설

-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규정
  - (점검) 주기적 점검, 안전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등
  - (보수) 시설물 변경·파손 시 복구 또는 재도색 등 신속히 보수

심사결과 일정 범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 후속조치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마모·방치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에서 단지내시설의 안전점검 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교통안전실태점검을 통해 보완 권고가 가능하여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공공측량 작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공공측량성과 메타데이터의 제출** 신설

- 공공측량수행자(실제 공공측량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행자(공공측량 발주 기관)의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공측량 성과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중복으로 이뤄지는 측량을 최소화하여 아날로그식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및 공공측량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진행('21.2월)하여 데이터 작성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메타데이터 제출 관련 일본 등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기계설비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기계설비 설계기준 및 시공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 기계설비 시공 후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일반사항 및 최소 유지관리 공간 등이 포함된 설계 및 시공기준을 마련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작성하는 '유지관리지침서'와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 관련 시공자와 감리업무수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

심사결과 건축물에 비해 수명이 짧은(10-25년)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시공 체계 마련이라는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보완하고 건축법상 다른 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능 및 안전평가를 도입하며 시공자·감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미국 기계설비코드(IMC) 상 기계설비의 안전과 관련 사항 및 타법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성능·안전평가 등은 일반 공사현장에서 시공자·감리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기계설비기술사회 등과 9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동 설계기준을 마련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AMC가 준수해야 할 경영건전성 유지기준 및 AMC에 대한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 관련 사항** 신설

심사결과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AMC의 변경인가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규정**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큰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시 판스프링 부적합판정기준** 신설

-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절손을 시행규칙(주요 부적합사항)에 추가하여 심한 변형·절손된 판스프링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재검사 필요)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판스프링 검사기준 및 방법을 추가

심사결과 주행 중 낙하시 후방 차량 가격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량 판스프링에 대해 적합 판정·시정권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동차 검사제도의 취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부적절하므로, 심한 변형 또는 절손된 판스프링에 대해 부적합 판정만 가능하도록 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주행 중 낙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한 변형·절손된 판스프링에 한해 부적합 판정·재검사받도록 하는 것은 차량소유자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도로안전 강화 효과가 크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정비사업자 리프트 설치기준 준수 의무부과** 신설

- 검사시설 중 의무설치 시설을 피트 또는 리프트로 규정하고, 리프트 규격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검사장비의 발달로 리프트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피트설치만 의무화하고 있어, 리프트 설치만 희망하는 사업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피트를 설치해야 하므로, 검사시설의 안전 강화 및 검사능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피트와 리프트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시설 내 추락사고 방지 및 자동차 하부검사 정확성 제고에도 적합한 수단으로 신설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리프트 설치면적이 기존 피트 설치 면적에 비해 크지 않아 설치에 필요한 면적증가가 미미하므로,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 검사 대행사업자에게 리프트 설치기준 준수 의무부과** 신설

- 종합검사시설의 의무설치 시설을 피트 또는 리프트로 규정하고, 리프트 규격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검사장비의 발달로 리프트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피트설치만 의무화하고 있어, 리프트 설치만 희망하는 사업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피트를 설치해야 하므로, 검사시설의 안전 강화 및 검사능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피트와 리프트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사시설 내 추락사고 방지 및 자동차 하부검사 정확성 제고에도 적합한 수단으로 신설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리프트 설치면적이 기존 피트 설치 면적에 비해 크지 않아 설치에 필요한 면적증가가 미미하므로,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철도안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강화** 강화

-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객차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 규정(사각지대·위치 등 설치 시 고려사항 및 해상도 요건을 명시)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승객용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설치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상기록장치 설치, 유지관리비, 안내문 부착 등을 위해 연간 60.19억 원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승객용 객차 내의 범죄예방, 사고발생 시 원인 파악 및 관련 증거 확보 등에 의한 안전한 승객용 객차환경 조성의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용 객차 내의 범죄예방, 사고발생 시 원인 파악 및 관련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현재 운행 중인 객차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설치토록 경과규정이 있어 철도운영자의 설치 부담을 경감하였고, 유사 운송수단인 도시철도에는 旣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 고시 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등에 전자출결시스템 구축의무 부과** 신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종으로 차등화된 무인동력비행장치(이하 '드론')의 종별 조종자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
  - (자격기준) 만 14세 이상인 자 + 드론 조종자 증명 소지(단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 온라인교육 6시간 이수)
  - (업무범위) 1종(1-4종 조종 可), 2종(2-4종 可), 3종(3-4종 可), 4종(4종만 可)

구분		현행		개선(최대 이륙중량 기준)	
조종자격	비사업용	불필요	⇨	완구용	250g 이하 자격 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 **온라인 교육(6시간)**
				3종	2kg 초과 ~ 7kg 이하 → **필기+비행경력(6시간)**
				2종	7kg 초과 ~ 25kg 이하 →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약식)**
				1종	25kg 초과(자체중량 150Kg이하)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심사결과 안전한 드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드론 조종 자격 및 조종 가능한 업무 범위를 드론의 최대이륙 중량 기준에 따라 차등화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조종자격 차등화로 희망하는 드론의 조종자격만 취득하면 되어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고, 차등화된 드론 조종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설정으로 드론 종류에 따른 조종자의 전문성 향상으로 조종 미숙에 의한 추락, 충돌 등 사고 예방 편익이 기대되고, 4종 드론의 경우, 만 1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온라인 교육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규제준수에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강화된 기준준수의무 부과** 강화

-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 훈련기준, 교육훈련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심사결과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과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육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시설 및 인력기준은 기존 고시에 적용되던 내용과 유사한 수준에서 무인비행장치 특성에 맞게 세분화되었고, 전문교육기관의 무인비행장치 교육 내실화 및 드론 조종자 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에 편익이 기대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제한요건 설정** 신설

-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및 교육생의 출결관리를 위해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의무를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심사결과 모든 전문교육기관에 위치기반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출결 허위기재 방지 및 조종자 교육 내실화, 비행경력 정보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수기에 의한 출결관리는 대리출석 등 허위·조작사례가 많아 교육기관에서도 출결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 이미 정부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전자출결시스템이 무료 설치되어 비용부담도 없으며,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학사관리 강화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 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항공안전 향상 편익이 예상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철도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강화** 강화

-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심사결과 행정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위험성, 동기 및 결과 등의 사안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타당성·합리성이 제고되면 철도차량 운전자의 처분 수용성이 높아져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감소가 가능하고, 철도안전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면허정지 기간 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자 교육의무 및 자격 규정** 강화

-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려는 자의 자격에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하고, 성능평가자에게 정밀진단자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

심사결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제도는 철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도 내실화를 위해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상호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필요·최소한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일반 기계·전기가 아닌 전력공급 전차선, 열차제어 신호설비 등 철도 특화시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 및 자격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하도급 제한**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하도급의 범위
  - 비파괴검사, 지반·지질·수중조사, 내진평가 등 전문적인 검사·계측·분석·조사·시험·측정의 경우

심사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 제한 등을 도입하는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이 개정되어 후속조치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가능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특수장비 사용 등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하도급 가능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하도급제한에 따른 비용 발생은 미미한 반면, 무분별한 저가 하도급의 금지로 인한 철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따른 사회적 편익 발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설정**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과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등록변경 사항 규정

심사결과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안전전문기관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세규정 및 변경등록 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 및 변경신고를 통해 철도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도지사의 감독하에 난립을 방지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의무 부과** 신설

- 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자가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 세부 사항으로 교육기관, 교육 종류 및 주기, 필수 교육시간 규정

구분	정밀진단		성능평가	
	신규교육	보수교육(5년주기)	신규교육	보수교육(5년주기)
시간	70시간	14시간	14시간	7시간

심사결과 철도시설은 구조물·궤도·건축물 분야와 전철전력·신호제어·통신과 같은 시스템 분야 등 전문·특수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철도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므로 전문기술 분야별 교육기관, 교육종류 및 주기, 필수 교육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철도협회 등 철도 관련기관에서 신규·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정밀진단·성능평가 별 역량 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진단측정장비 구비 의무 부과**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구비해야 할 분야별(구조물·궤도·건축·전철전력·

신호제어·통신) 진단측정 장비 세부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철도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립 또는 부실화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위해 등록 시 구비해야 할 분야별 진단측정 장비 세부사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진단측정 장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전문기관 등록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장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 규제의 장비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력 인정 기준 설정**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확보해야 하는 각 철도시설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직무분야·전문분야) 인정기준 규정

심사결과 철도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난립 또는 부실화 방지를 위해 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위해 등록 시 구비해야 할 분야별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세부사항으로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확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강화 1)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강화** 강화

-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뿐만 아니라 인상시마다 각각 실시하도록 실시 시기를 신설하고 점검 횟수를 강화

심사결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타워크레인 전도·붕괴 사고는 설치·인상·해체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지침으로는 설치·해체 시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공사 현장은 타워크레인 인상 시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시 전도·붕괴 예방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한 동 규제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작업중단 방지·근로환경 안전 개선에 적합한 수단인 점,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시 작성하는 점검보고서는 현행과 같이 2회로 유지하여 규제부담을 완화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신설 2)

심사내용 **MC의 변경인가 대상, 세부 요건 등 규정**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AMC 신규(변경)인가 시 갖춰야 할 물적설비 세부요건 규정** 신설

심사결과 본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요금장치 변경금지 의무 부과** 강화

- 택시미터 구조에 (기존) 택시전기식미터 → (추가) 택시앱미터를 도입
- 택시앱미터 요금산정기능의 개조·변경 금지

심사결과 GPS 기술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앱미터는 탑승 전부터 경로와 운임 예측이 가능하여 택시 이용 서비스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반면, 무선망을 통한 원격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제작사 등에 의한 요금산정기능 무단 변경의 우려도 크므로, 택시앱미터를 도입하되 택시 운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공적관리 또한 필수적이어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旣 운영 중인 전기식미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앱미터에 대해 검정 의무 및 요금산정기능 변경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시앱미터 검정신청 의무 부과** 강화

- 택시앱미터도 전기식미터와 마찬가지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제작·수리·사용검정을 의무화

심사결과 GPS 기술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앱미터는 탑승 전부터 경로와 운임 예측이 가능하여 택시 이용 서비스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반면, 무선망을 통한 원격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제작사 등에 의한 요금산정기능 무단 변경의 우려도 크므로, 택시앱미터를 도입하되 택시 운임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공적관리 또한 필수적이어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旣 운영 중인 전기식미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앱미터에 대해 검정 의무 및 요금산정기능 변경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철도차량제작사에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방법 준수의무 부과** 강화

-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방법별 적용 기준 마련
  - 기존 기술기준과 마찬가지로 IEC 62279를 적용하되, 사업수행 형태별로 관련 조항을 재편성하고, 국제표준 면제근거 신설

심사결과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의 합리성 제고와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 향상을 위해 기존의 경직된 기술기준을 다양한 사업유형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안 마련 과정에서 차량제작사, 관계기관 등과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사업수행 유형별 세분화 및 국제표준 면제근거 신설 등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신설

-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에 따라 **일반창호**(이격거리 1.5m 초과) **또는 방화유리창**(이격거리 1.5m 이하)을 **설치**토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재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어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외벽 구성요소인 창호의 방화성능도 확보해야 하나 관련 방화성능 기준이 없으므로, 건축법 위임에 따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기준은 창호를 통한 화염 분출 범위 및 복사열을 고려하여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인 점, 동 규제로 인하여 방화유리창 설치비용이 발생하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개정된 건축법의 취지(외벽의 구성요소인 창호의 방화성능도 함께 확보)를 고려하면 동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보험회사, 자동차 제작자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부과** 신설

-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기록장치 접근권한 가진 자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심사결과 자율차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책임 배분 등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기록장치 접근권한 가진 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사고 관계인 또는 관계 물건 소유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에게 기록장치 등 사고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 등의 제출 및 훼손 금지와 같은 협조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면서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무 면제 또는 기한 연장 등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송비용 감소(사고당사자), 비용 환수(보험사) 및 자율차의 신뢰도 향상(자동차 제작사) 등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고관계인 등에 사고관련 자료제출·출석·현장보존 의무부과** 신설

- 사고 관계인 또는 사고와 관련 있는 물건(이하 '관계 물건) 소유자 등의 자료 또는 관계물건의 보존·제출 의무 규정

심사결과 자율차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 공정한 책임 배분 등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자 등 또는 기록장치 접근권한 가진 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사고 관계인 또는 관계 물건 소유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에게 기록장치 등 사고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자료 등의 제출 및 훼손 금지와 같은 협조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면서 공공의 이익 또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무 면제 또는 기한 연장 등의 예외도 인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여 소송비용 감소(사고당사자), 비용 환수(보험사) 및 자율차의 신뢰도 향상(자동차 제작사) 등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추가** 강화

-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일 경우, ①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점, ②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점

심사결과 본 규제로 큰 사회적 편익이 확보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분양계약서 작성 사항 추가** 강화

- 수분양자가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 및 주거용 사용금지 대상임을 확인하였음을 별도 서식에 따라 증명
- 수분양자가 계약해제 가능한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분양건축물 허위·과장 광고 및 분양계약서상 계약목적 달성 곤란까지 확대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건축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설

- 생활숙박시설의 정의 규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됨에 따라 인근의 학교 과밀, 교통체증, 조망권 침해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건축기준 마련을 위해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의 마련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을 차단함으로써 민원 최소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의무** 강화

-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

심사결과 생활숙박시설 관련 문제 해소 및 동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에 따른 직접적 비용과 생활숙박시설 관리강화를 통한 지역 민원 최소화,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을 비교형량한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0)

심사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신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일반·시설·장비)

구분	등록요건
일반요건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활용
시설요건	• 영업점(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천m^2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 화물취급소 • 전산망 시설
장비요건	•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심사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 및 전국적 택배서비스의 안정적 운용과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기존 인정제 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 요건을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 활용, 시설,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기존 인정제 하에서 규정한 시설·장비요건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표준계약서 추가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 의무** 신설

- 택배사업자에게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조치 등 영업점 관리 의무를 부여
  - 택배사업자는 영업점에 자료제출 요구·확인 및 시정요구 등을 조치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영업점이 이행하여야 하나, 택배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점 이행관리를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의무화한 입법 취지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자료 확인·조치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취소 처분기준** 신설

- 등록취소 사유(기속·재량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절차 기준 마련

구분	기속 등록취소	재량 등록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으로 등록·변경등록 • 화물법 운송허가 요건 미충족 • 등록결격 사유(법6조) • 택배사업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위반	• 택배사업 일반, 시설, 장비 등록요건 미충족 • 변경등록 위반 • 개선명령(법39조) 미이행
처분	• (등록취소) 사유발생 시	• 1차 경고 • 2차 등록취소(단, 경고로 감경 가능) ※ ①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 30일 내 시정 ②소비자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사결과 등록취소(기속·재량) 사유가 법에 규정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참작하여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는 고시에 따라 시설 및 장비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를 인정·공고하였으나, 법 제정에 의한 등록제 도입으로 피규제자의 사업 가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기준**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으로 ①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품질관리체계, ②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 ③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가능한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요구

심사결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교통안전 위협·배달사고 등 종사자·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되어 법 제정으로 신설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우수 소화물배송업체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는 인증 상세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유업인 소화물배송업을 법적 관리체계 안으로 유도하고자 우수업체 인증 상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은 이를 희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인증 시 행정적·재정적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준수가능성이 높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 신설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소비자의 의무, 운임 청구, 운송물 인도 및 처분, 손해배상·면책 등 약관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

심사결과 생활물류서비스는 화물배송 과정에서 배송상품의 파손·훼손 및 분실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지속 및 분쟁 증가가 우려되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약관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표준약관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서비스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첨부서류 등을 필요·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미 다수의 사업자는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규정에 의거 서비스약관을 시행 중이며, 포함사항에 사업의 종류만 추가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금지 유형** 신설

-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행위의 유형 규정

구분	유형
부당한 이익 '수취'	• **화주가** 사업자·영업점·종사자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수취 •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 '제공'	•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운송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주에게** 제공

심사결과 관행화된 리베이트, 백마진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택배 거래구조 개선 및 택배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이익 수취·제공 금지규정의 행위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택배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근거하여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 신설

-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사항으로 ①종사자 보호 및 처우, ②거래구조, ③표준의 도입·적용, ④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규정

심사결과 택배가격의 지속 하락과 종사자의 과로사 급증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장관의 개선명령권을 신설한 법 취지에 따라 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택배서비스 품질·안전 제고 등을 개선명령 사항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근거하여 마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협회의 설립 인가 요건**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협회 설립에 필요한 인가 요건 규정
  - 발기(회원자격 있는 자 1/5이상) → 동의(회원자격 있는 자 1/3이상) → 정관작성(창립총회) → 인가신청

심사결과 법 제정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법 시행 및 협회가 대표성·정당성을 확보하여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가 상세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협회설립에 필요한 발기·동의 최소 인원과 필수 절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요건**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인증사업자')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가 요건 규정
  - 발기(조합원 자격 있는 3인 이상) → 동의(조합원 자격 있는 5인 이상) → 정관작성(창립총회 의결 後) → 인가신청

심사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필수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는 사망·중상 등의 사고위험이 커서 보험료가 높고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에 신설된 소화물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이 업계의 대표성·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사업수행능력과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설립 인가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업계 특성인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업체 등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등록·신고가 불필요한 자유업이므로 정확한 업체 수 파악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급성장 중인 소화물배송 업계에 절실한 공제조합이 신속하게 설립되고 충분한 사업수행능력과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화물인증사업자 3인 이상의 발기, 5인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조합의 운영 준수 사항**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의 사업운영 시 준수사항과 관리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의무 규정
  - (준수사항)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 계상·적립, 재무건전성 기준
  - (서류제출) 총수입·지출 편성(예산), 결산보고서(결산) 등 제출·비치·공고

심사결과 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조합의 준수사항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 신설

- 소화물인증사업자 공제조합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 규정
  - ①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 ②구상채권 등 보유자산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심사결과 소화물배송업의 필수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높은 보험상품 사고율 및 손해율과 저조한 보험가입률 등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경영 안전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세기준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본의 적정성·자산의 건전성·유동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상세 기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부과** 신설

심사결과 전매제한·거주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관리주체의 점검의무** 신설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를 구체화하고 관리주체에게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의무 부여
- 관리주체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실시 및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표 기록 의무
- 관리주체의 매년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및 연 1회 이상의 성능점검 실시 의무

심사결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주기 등 세부적인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설비별 점검수량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점검 대상을 축소하고 성능점검시 유지관리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타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기계설비별 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해외사례 대비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매년 성능점검으로 인해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효율적·체계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로 기계설비 품질 향상 및 수명연장에 따른 교체비용 절감,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기계설비법」 제정 및 유지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 이상 성능점검 대상 및 관리·점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동 규제 외에 대안이 없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신설 7)

심사내용 **인정신청의 제한** 신설

-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위반행위별로 일정 기간(6~24개월) 동안 신규 인정신청 불가
- 기존에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및 동일품목에 대한 특정 사유(①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중, ② 인정이 일시정지 중, ③ 품질시험 실시 중) 발생 시 인정신청 제한

심사결과 제품 성능시험과 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 평가를 모두 합격한 자재의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화재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므로 인정신청 제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신규 인정신청 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인정신청 제한 대상을 '동일성능의 동일 인정품목'으로 한정하여 비례성이 충족되는 점,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제한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신청 제한의 범위·수위 관련 의견이 반영돼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시험 절차** 신설

-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한국건설시험연구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게 품질시험 실시 방법 준수 의무 부여
- 제조업자 본인의 자체적 품질시험 실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서의 품질시험 실시 금지

심사결과 시험기관이 제품 성능을 시험하는 품질시험의 실효성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방법 및 시험주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시험방법을 따르는 등 합리적 수준의 규제인 점, 내화구조의 품질시험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기준** 신설

- 인정업자에게 자체 품질관리 실시 후 그 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부여
- 인정업자가 품질인정내용 및 시공·검사 방법 등을 시공자 등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외부기관의 확인·점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인정업자가 스스로 일상적 관리를 지속해야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구체적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정업자의 기록보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확인·점검 이후에는 기점검된 자체 품질관리기록을 인정기관이 보존토록 할 예정인 점, 내화구조의 인정업자 자체 품질관리 관련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정 자재에 대한 표시** 신설

- 인정표시를 인정업자는 제품 표면에, 시공자는 시공부위에 부착해야 하며, 미인정제품·포장에는 동일·유사 표시 사용 금지
- (인정표시) 인정마크와 인정업자 정보(인정번호, 사용부위, 내화시간, 회사명, 공장주소) 및 시공자 정보(시공회사, 시공책임자)로 구성

심사결과 방화문 등에 신설 도입되는 품질인정제도가 원활한 시행 되고 제품 구매자·시공자 등이 수월하게 품질인정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정제품 표시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표시부착 의무 및 비인정제품의 표시 제한 관련 규정 등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관리 확인점검 기준** 신설

- 인정업자 또는 시험기관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장·시공현장·시험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에 협조해야 함

구분	공장	시공현장	시험기관
품질관리 점검주기(1年)	2회 이상	1회 이상(1개소 이상)	1회 이상

심사결과 품질인정제도는 부적합 자재의 생산·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시공현장, 시험기관에 대한 점검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설치·유지·관리단계에서 검사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사례 및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 및 공사현장 점검 관련 세부 사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 제품에 대해 잦은 성능시험 응시를 규정한 기존 제도를 완화하는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동 규제를 도입한 점, 공장·시공현장 점검 비용이 발생하나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또한 기대되므로, 비용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정변경 신청의무** 신설

-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인정업자에게 인정변경 신청의무를 부여하나 해당 변경이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신청을 제한

심사결과 인정 변경내용을 관리하여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인정 변경신청 의무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정제품의 핵심 사항인 내화성능 변경 시에는 인정변경 절차가 아닌 신규 인정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외 일정한 사유에 한해 시간·비용적 부담이 적은 변경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유사입법례인 내화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변경 신청의무 및 발생사유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정의 취소 등 제재기준** 신설

- 인정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개선요청·일시정지·인정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업자의 위법행위별 구체적인 행정제재기준(개선요청, 일시정지, 인정취소)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제품의 품질·성능에 미치는 영향, 위반의 고의성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차등화하였고, 비교적 약한 수준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인정제품에 대한 생산·판매 중지 없이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할 기간을 보장하는 등 품질인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내화구조 인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의 제재기준이 동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허용 기간 제한** 강화

- 화물차(5톤 초과)의 톤급상향 대폐차 주기 제한: 16개월(우수물류기업 12개월)

심사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일부 특수용도형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에 대하여 신규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바, 대폐차로 인하여 기존 허가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무분별하게 증가될 경우 실질적 증차효과로 화물자동차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톤급상향 대폐차의 기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旣 고시('07.12~'19.8)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이 법적 근거 미비로 삭제되었다가 다시 동일하게 재입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신설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사업시행자의 대상 및 요건 규정
- 건설업 등록자 및 신탁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출자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요건 구체화

심사결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담보되는 사업시행자로 제한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밀억제권역 분산 취지를 고려해 대상·요건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추가로 인정됨.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시공능력 평가액·사업실적·자산 운용실적 등)을 판단기준으로 각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당 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를 제시하고, 결격사유인 제재처분 이력의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규제로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사업채권 매입 의무** 신설

-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금액을 규정하고, 매입대상에게 해당 금액만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 의무 부여

매입대상	매입금액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 당 20,000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허가면적 3.3㎡ 당 20,000원

심사결과 대규모 공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수적이기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직접 당사자들에게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사도급계약 체결자, 민간사업자, 토지형질변경허가자와 같은 정비사업의 직접당사자로 한정하여 채권매입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범위를 최소화한 점, 일정 범위 내에서 시·군등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정비사업채권 매입상당액만큼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천재지변과 같이 정비사업채권매입이 부적당한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 부담을 방지한 점, 정비사업채권 매입 당시 금전적 부담이 예상되나 원금상환과 더불어 채권발행 당시의 금리 상황을 고려한 이자 또한 지급되어 실질적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경영의 건전성 기준** 신설

- 건설업 등록자·신탁업자 및 부동산 개발사업자에게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 신탁업자의 경우 재무·경영 건전성 기준을 미충족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요구

심사결과 사업중단·사업시행자 부도 등이 없는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능력이 담보되는 사업시행자로 제한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것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시행능력의 구성요소인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서 규정한 경영 건전성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본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제한** 신설

- 매입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에 대한 중도 상환 제한 규정 신설
- 단,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사유가된 허가·인가의 취소 및 도급계약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존재하는 대상·금액을 벗어난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 상환 가능

심사결과 안정적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담보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금의 유동성을 제한하여 자금조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상환을 제한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입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매입 의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초과 매입이 발생한 경우는 매입자의 권익침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제외하는 등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비례성이 충족되는 점, 관계 법령 또한 도시개발채권의 중도 상환을 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예외를 규정하는바 본 규제의 규제수준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친환경자동차 검사기준 및 시정의무 부과** 신설

구분	신설 규정
부적합 판정	•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작동상태 불량 또는 미설치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 불량

심사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旣 마련된 경고음발생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의 육안 확인에서 전자장치진단기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용진단기 보급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 육안검사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정기검사 실시장면 영상관리 의무 부과** 신설

- 자동차 촬영 방법(검사 진입(앞면), 진출(뒷면)) 및 선명한 사진(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 可)을 전송 의무 규정

심사결과 정기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부실 검사 방지에 따른 차량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 영상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영상촬영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상의 화질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업자의 교육 이수의무 부과** 신설

- 정비책임자 교육별(신규, 정기) 이수 의무 규정

구분	교육 이수 규정
신규교육	• 정비책임자 선임 6개월 이내 (종합*, ·소형정비업) 신규 35시간, (전문**·원동기 정비업) 신규 14시간 • 정비책임자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신규교육 면제
정기교육	•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종합·소형정비업) 정기 14시간, (전문·원동기 정비업) 정기 8시간

심사결과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및 고전원 전기장치 등의 신기술 정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정비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비책임자의 자동차 정비 신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비업계에서도 정비인력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을 요구하였고, 정비업 규모에 따른 교육시간의 차등화, 경과 규정(공포 후 6개월)과 신규교육 이수 간주 규정 등을 두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교육기관에 서류발급 및 시설장비기준 준수의무 부과** 신설

- 정비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 규정(강의실, 실습실, 전임강사 자격 등)

심사결과 친환경차 보조금·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전기차 신규 출시로 전기·수소차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비책임자 의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교육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비책임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비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 신설

구분	신설 규정
검사 기준 및 방법	• 구동축전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 및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진단기 활용) • 경고음 발생장치 및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정상적 작동(진단기 활용)

심사결과 친환경자동차의 안전성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旣 마련된 경고음발생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의 육안 확인에서 전자장치진단기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의 범용진단기 보급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 육안검사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①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②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

- 다만, 3기 신도시 등은 보상이 진행 중이며 보상 전 협의 단계부터 안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2.1.1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마련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기준 규정** 신설

-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 부여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구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 제한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요건** 신설

- 안전진단전문협회 설립 시, 회원자격이 있는 전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 및 인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군소협회 난립 방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협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동의 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발기인 요건을 규정한 타법 사례를 고려 시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현재 안전진단 분야의 유일한 협회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전문협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업시행자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허가취소) 규정

시정명령 대상	위반 시 처분
• 정당 사유 없이 공사착수 지연 또는 공사 완료 예정일 미준수 • 준공확인 결과 실시계획과 다른 경우 ▸허가의 조건 위반	허가취소

심사결과 안정적이고 신속한 신공항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이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법에서 정한 처분범위 내 합리적인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시행자의 시정명령 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미이행에 따른 2차적인 행정조치 수단으로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특수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및 차령 제한** 신설

- 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차동차의 차령 9년 및 차량충당연한 3년 설정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차종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신설
	경형·소형·중형	대형		
차령	5년	8년	9년	**9년**
차량충당연한	1년		3년	**3년**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추가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 및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노후화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충당연한 및 차령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캠핑용 특수자동차와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한 승합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기간 5년 부과** 신설

심사결과 거주의무에도 불구하고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만큼,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점,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6)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기준 준수의무 부과** 신설

구분	신설 규정
기본원칙 (안전기준)	• 튜닝승인 불가대상 신설 – 이륜자동차의 차량중량이 6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 차륜이 변경되는 경우 – 차체 및 차대를 절단(변경)하거나 축간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길이·너비 및 높이	•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를 말한다)로 자기인증하여 제원을 통보한 차종의 높이 이하로 변경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의 동일한 원동기(부품포함)에 한함 • 튜닝승인 확인 시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승차장치	•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 동승자의 탑승이 불가한 구조로 시트를 변경
물품적재장치	•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나 작게함
조향장치	• 조향장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분과 미접촉 • 조향장치 추가 설치 불가

구분	신설 규정
	• 조향장치 변경은 제작사가 같고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된 조향장치로 변경 • 조향장치 높이는 좌석으로부터 60cm 이하

심사결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므로, 불법이륜차 양산 방지와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세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불법튜닝 이륜차 양산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이륜차 튜닝 상세 기준(안전 및 환경 허용범위내)으로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 및 장치'를 마련하여 튜닝승인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이륜자동차 승인대상 튜닝 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제59조~제85조)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원칙 중 차량중량(60kg이내 허용), 차륜·차대교체(재조립으로 제작 수준에 해당)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튜닝이 불가하고, 그 외 조향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등,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배출허용의 제한규정은 자동차규칙의 안전기준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허용기준범위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필요·최소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례성이 충족되는 점과 자동차튜닝 세부기준 및 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고, 관련단체 및 업계에서 이륜차 튜닝 승인 기준마련을 요구하여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기준 마련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품질인증 보완 절차 신설** 신설

- 운영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업자는 이를 보완하여(1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여부 확인을 위해 인증업무처리기관장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 시정조치 명령 사항 구체화(①해당연도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외:안 제15조①단서), ②보완요청일로부터 90일 내 시료채취 미이행, ③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심사결과 본 규제는 운영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전 단계에서 보완 절차에 따라 보완토록 한 것으로, 인증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마련하여 인증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인증 사용중지·취소를 방지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초 품질검사 결과에 한해 보완요청→개선명령으로 조치를 차등화하고 전체 품질검사가 아닌 보완여부 확인에 필요한 품질검사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등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부적합사항 보완·결과제출 의무를 규정한 타법 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규제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제재기준 강화** 강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강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현행	인증 사용중지 1개월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개정안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심사결과 품질인증 보완 절차가 신설된다면 인증업체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기회를 부여받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年 3회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비로소 인증 사용중지 1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행정처분을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정명령 위반 시 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가중적으로 제재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있는 점, 인증 관련 타법 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정명령 전 보완절차 신설에 따라 최초 처분까지 시정기회는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주택 공급요건 강화** 강화

-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통상 '주민공람 공고')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거주할 것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또는 종사하였던 날부터 3년이 미경과한 자)에 대한 공급 제한

심사결과 본 규제로 택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라도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정당보상 원칙이 유지되는 점, 최근 정착금의 지급한도가 상향되어 택지·주택 공급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9)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신설

- (공중이용시설 범위 규정)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실내공기질법(가목)·시설물안전법(나목)·다중이용업소법(다목) 적용시설 중,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 적용 제외 또는 추가

1호	법 가목	•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적용(약 3.8만개)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②업무시설 중 주상복합·오피스텔 및 ③전통시장 **제외**
2호	법 나목	•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중 △1·2종 시설물 중 대부분은 적용하되, **주상복합·오피스텔**, **갑문·수문·통문·배수펌프장·공동구·상하수도**(취수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 수원지시설 外) **제외,** △3종 시설물은 일부만 안 제4호에 포함
3호	법 다목	•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의 영업장**(법에서 기 규정) * 영화상영관·목욕장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유흥주점업 등 23개 업종 전부 **포함** → 다중이용업 영업장 총 17.7만여개 중 바닥면적 1천㎡ 이상
4호	법 라목	•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로 ①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연장20m 이상)·**철도교량, 도로터널·철도터널**, ②2천㎡↑ **주유소·LPG가스충전소,** ③**종합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 추가

-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조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사업주등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 및 사업주등에게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확인 후 필요시 개선·보완을 지시할 의무 및 안전관리자·점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미이수 시 실시할 의무 부여

심사결과 법 제정 취지가 사업주등에게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재해발생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법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등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의 원활한 시행 및 사업주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관련 일부 시설에 대한 제외·추가 의견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나,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내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과도한 적용 범위 확대를 방지하고 적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 법률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각 규정을 종합 판단하여야 하기에 관계 법령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타당한 점, "적정한 예산", "인력의 적정규모"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8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신설

- 검사원교육의 의무 위반에 따른 기술인력 제재처분 규정(직무정지 10일)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 교육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처분이 도입되어, 입법 취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인 교육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재규정으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의 적정제재수준을 반영한 처분기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1)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신설

- 수검사원교육의 의무 위반에 따른 기술인력 제재처분 규정(직무정지 10일)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 교육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처분이 도입되어, 입법 취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자동차검사원 기술인력의 주기적인 교육의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재규정으로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의 적정제재수준을 반영한 처분기준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처리 기간 설정** 신설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後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의무에 따른 요청 준수기간 신설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폐차 요청 준수기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최근 3년간('18.4~'21.4) 보험사(삼성, 현대 등 5개)가 침수 전손처리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소요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30일 초과가 3.2%에 불과하고 '18.4월부터 전손처리 후 폐차 결정된 차량의 국내 재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지침으로 '폐차이행확인제도'를 운영되었던 점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 및 교육의무 부과** 강화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별(신규, 정기) 이수 의무 규정

구분	교육 이수 규정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신규 35시간(종합검사 기술인력 대상 확대) •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 재취업시 신규교육 면제 신설
정기교육 신설	•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이수 후 3년 주기 정기 14시간,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해 검사원의 주기적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원활한 법시행 및 신기술 교육을 통한 검사능력 제고와 불법·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권익위에서 정기검사 검사원이 종합검사 검사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 사항에 맞춰 동일 수준(주기, 교육시간)의 정기교육을 추가한 것으로, 시행 후, 정기교육 이수 간주 규정으로 정기교육의 이수의무는 3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기준** 신설

- 자동차검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기준(시설, 장비, 강사 기준)

심사결과 친환경차 보조금·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기·수소차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신기술 검사기준과 방법 등의 검사교육 수요 증가하고, 법에서 위임한 자동차검사원 주기적 의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지정 해제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 시장·군수등의 빈집 안전조치·철거명령을 미이행한 빈집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설정
  - ① 안전조치(3·4등급 빈집)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x 40%
  - ② 철거조치(4등급 빈집) 미이행 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x 80%
- 다만,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의 50% 이내에서 경감 가능

심사결과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지역슬럼화·범죄 등 위해성이 높은 빈집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 조치 이행을 유도하는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정 상한 내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차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로 각 부과비율의 경감을 가능토록 하면서 빈집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철거비보다 낮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설정하는 등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세부 기준**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기준 및 배점 신설
  - 3개 평가분야(①종사자 보호, ②소비자 보호, ③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총 5개 심사항목(❶사고 예방 및 피해 감축 ❷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❸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❹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❺지속가능성 확보)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을 규정

심사결과 소화물배송대행업 서비스 품질향상,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제정으로 신설된 소화물사업인증 기준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우수 소화물배송대행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3개 평가 분야로 분류하고 배점 비중을 특히, 종사자 안전조치, 배송서비스 품질관리, 정보망 운영실태 등에 상대적으로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비례성 충족되고,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상한요율을 거래가격 구간별로 설정** 강화

- 일부 구간(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의 상한요율 인하

심사결과 상한요율 인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반대나 이견이 있어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거래금액 상승시 보수급증·역전현상 등 제도상 문제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시장 상황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가중,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선권고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제도 대비 거래구간 을세분화하고 요율을 조정하여 합리성을 보완하는 등 규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86)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비행계획서 취소·변경정보 제출의무 부과 등** 신설

-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제출 시한 강화
  (현행) 인천 비행정보구역 진·출입 최소 2시간 前 → (개정) 최소 3시간 前
- 출발예정 시간 변경(15분 이상) 時 취소 또는 변경정보 제출 의무 신설

심사결과 인천공항의 낮은 정시성은 공항 활주로 등의 인프라 부족,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공역의 협소 등 교통량 대비 수용능력 초과에 기인하나, 인프라 및 인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입수된 항공정보와 인접국의 제한사항 등을 고려한 신속한 교통량 분산을 통해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 비행계획서 제출시한 1시간 강화, 15분 이상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화는 교통량 변화 예측과 기타 동적요인(기상, 공항시설운영 등)을 반영한 공항·공역 수용량 분석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항공기 운항지연 감소 및 운항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최소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 충족된 적정규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해체공사 현장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 해체허가 대상 및 일부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에게 해체공사 전 기간 상주 감리원(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배치 의무 부여(해체 대상 건축물의 범위·해체방식 등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차등 설정)

배치 대상 건축물		배치 인원 수
해체 허가대상	연면적 3,000m^2 이상	2명 이상
	연면적 3,000m^2 미만	1명 이상
해체 신고대상 中	① 특수구조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다목) ② 해체시 폭파공법 사용하는 경우 ③ 10톤 이상 중장비 탑재하여 해체하는 경우	

- 필수확인점(감리자의 입회 점검·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한 '공사중지점') 해체 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감리자 배치·확인 의무 부여

심사결과 감리원의 해체공사 현장 상주 의무가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된 법률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바, 감리인력 배치 관련 건축물의 대상·규모·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물의 규모·해체공사 공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장 상주 감리원 배치 건축물과 배치 인원을 차등화한 점, 감리자 및 상주 감리원의 최소 자격기준을 차별화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규제자의 과도한 부담을 지양한 점, 상주감리원 배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같은 해체공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또한 기대되는 점, 상주 감리원 배치 건축물과 배치 인원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최대 60일) 부과

심사결과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이 마련되었으므로, 원활한 법시행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는 CCTV 설치의무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가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 수준이 사업개선명령(운임조정, 시설개선 등) 미이행, 미인가 사업 양도·양수 시와 동일하면서 처분 개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필요·최소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 충족된 적정규제로 '14년 법 개정으로 이미 신규 구매차량에 대한 CCTV 설치 의무가 도입되어 상당기간(약 7년) 설치·운영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9) 건축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공작물 축조신고시 내풍설계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 공작물 축조신고자에게 높이 8m 이상 축조신고 공작물의 경우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제출 의무 부여

심사결과 내풍설계 등 구조안전 설계 의무가 기 부여된 축조신고 공작물에 대해 내풍설계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절차가 미비하고 공작물의 전도·붕괴사고는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한 본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대상을 전도·붕괴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의무가 부과된 '높이 8m 이상의 공작물'로 한정한 점, 관련 해외사례 및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내풍설계 하던 대상에 대하여 내풍설계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0)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내진설계 강화 필요 건축물 추가** 신설

- 중요도('1') 건축물에 민간데이터센터 명시
- '중요도 2(중요도계수 1.0)' → '중요도 1(중요도계수 1.2)'로 상향

심사결과 데이터센터는 대규모의 민감·비가역적 디지털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손상 시 대량 정보 멸실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 구조안전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리주체에 따른 보유 정보의 규모·중요성 차이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차등화한 점,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민간데이터센터는 이미 내진등급 1등급(중요도계수 1.2)에 준하게 구축되고 있으므로 동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1)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신설

-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규정(①「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 ②프런트데스크·로비 설치, ③린넨실 설치, ④객실관리(제어)시스템 도입)

심사결과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됨에 따라 투기수요 집중, 민원 증가 등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숙박시설'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숙박업 운영 시 필수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관련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한 점,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함을 안내하고 용도변경 특례기간('21.10.14~'23.10.14) 동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적용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세부기준 규정

심사결과 항공업계 종사자 대상 항공안전 훈련의 원활한 운영이 요구되는바 이를 저해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통일성·예측 가능성 있는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항공안전 훈련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및 위반의 고의성·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차등화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정지 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모의비행훈련장치 인증 관련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사전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제도개선 연구반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항관리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 신설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운항관리사과정' 운영 관련, 지정기준 신설
  - ①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②교관 확보기준, ③시설·장비 확보기준, ④교육평가방법, ⑤교육계획, ⑥교육규정 포함사항, ⑦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 수행 규정

심사결과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방법 중 하나로 전문교육기관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를 규정했음에도 관련 법령·제도의 공백으로 해당 경로의 자격증명 취득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경로 다양화·접근성을 강화 및 교육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운항관리사 인력확보를 위한 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육과목·교육방법 관련 필수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세부 교육시간은 교육기관이 조정토록 재량을 부여한 점, 교육계획 수립항목·교육평가방법·교육규정 포함사항·과목별 교관에게 요구되는 자격증명 수준 등이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적정 수준으로 설정된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행정처분 추가** 신설

- 소속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항공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적발된 경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신설

심사결과 소속 조종사의 음주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근거와 기준이 명확한 내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달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비하여 조종사 안전의식 저하를

유발하고 항공기 이용자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조종사의 음주 적발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처분 대상인 '소속 종사자'의 범위를 안전에 핵심적인 '조종사'로 한정하면서 외항사의 국내 공항에 취항하는 노선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수위를 설정하는 등 필요·최소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조종사의 음주 영향 하 업무 금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표준 사항으로 보편화된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강화

-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명확화
  (일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감경사유 명확화
  (개별기준) 세부 위반행위별 단일 행정처분 기준 설정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21.2월) 따라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의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처분의 상한 내에서 위법의 정도·피해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을 단일화하면서도 일반기준에 근거하여 조종사의 이력·불가피성·피해규모 등에 따라 처분 가중·감경(2분의 1 범위 내)이 가능토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한 점,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강화

-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대상 한정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기준 규정** 신설

-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 부여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지구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에게는 공급 제한

심사결과 협의양도인 택지 관련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대여자동차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미확인하여 무자격자(무면허, 면허정지, 면허범위 도과) 대여시, 사업일부정지(최대 90일) 부과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마련되었으므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최소수준(사업일부정지)의 제재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가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 수준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자격자 관리위탁 및 유상운송 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의무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17년 법 개정으로 이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도입되어 상당기간(약 4년) 운영(과태료 제재)되어 왔고, 과징금 조항의 신설로 과징금 부과시, 사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신설 3)

심사내용 **관리주체의 공중이용부위 결함 FMS 입력의무** 신설

- 관리주체가 시설물 '공중이용부위' 결함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입력할 의무 부여

심사결과 관리주체의 시설물 공중이용부위 결함 통보 방식으로 FMS입력을 특정·의무화하지

않아,관련 사후조치 등에 활용되는 해당 정보의 체계적·연속적 이력관리가 미흡하기에 공중이용부위 결함을 통보받는 경우 FMS에 입력토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토부장관에 대한 공중이용부위 결함 통보의무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기규정된 의무이고 서면 등 기존 통보 방식과 비교했을 때 FMS 입력방식은 접근·입력·관리의 편리성 및 사후조치 입력사항과의 연계 편의성이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완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피규제자는 이미 FMS 입력방식으로 시설물 관련 타 서류제출을 수행하여 해당 방식이 익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주체의 FMS 입력내용 확인의무** 신설

-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FMS에 입력한 내용과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e-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입력내용) 점검진단구분, 점검진단 기간, 점검진단기관명, 시설물 종별, 책임기술자명, 비용, 안전등급, 주요 점검진단결과, 주요 보수보강, 환기구, 작성일자, 작성자명

심사결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 내용과 e-보고서의 불일치로 검수 업무 지연 및 시설물 관리 혼선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원 제출의무자인 관리주체에게 일치 확인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토부장관에 대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 및 해당 내용을 담은 e-보고서 제출 의무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기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점, FMS에 입력한 안전점검등 결과는 e-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에 불과하여, 일치 여부를 단순 확인토록 하는 동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대장 현행화** 신설

-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관리대장 내용(소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현행화하여 운영기관장(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규모·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주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설물관리대장 정보를 FMS 상에서 현행화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안전점검등의 결과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기초·필수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현행화하도록 하고, 기 수행중이던 내진성능평가·유지관리의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FMS 상에 반영하는 것에 그쳐 추가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변경된 정보의 취득 용이성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 피규제자는 이미 FMS 입력방식으로 시설물 관련 서류제출을

수행하여 해당 방식이 익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7)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인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확대** 강화

심사결과 토지개발사업 방식이 '환지방식' 또는 '수용방식'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면적 1만㎡ 이상의 토지개발사업 중 사업빈도·사업지속성 등 현행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과 동일한 적용기준 하에 사업 7개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필요 최소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8) 건축법 시행령 (강화 3)

심사내용 **품질관리 등 점검 결과 위법사실에 대한 조치** 강화

- (점검) 기 수행중인 「건축법」 제52조의3에 의한 점검 외에, 건축자재 품질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는 점검 추가
- (조치) 기 수행중인 「건축법」 제52조의3에 의한 점검과 동일하게, 품질 인정기관 점검에서 위법 사실 발견 시, 위법사실 통보, 사용 중단 또는 영업정지 요청 등 조치

심사결과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자재의 생산·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며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점검·조치의 대상·사유를 구체화하면서, 기존 국토부장관등의 점검·조치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조단계 이후 유통단계→시공현장 전 주기에서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수준 확보라는 품질인정제도 취지를 반영한 점, 건축물 화재 안전과 밀접한 '건축자재 등'에 한하여 점검·조치를 규정하고 건축관계자등이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시공부분 시정 및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규정하는 등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인정제도 적용 대상 추가** 강화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자재의 범위를 규정
  (현행) 내화구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추가) 내화채움구조, 강판·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심사결과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및 내화채움구조는 화재 발생 시 화재확산 방지에 중요한 건축자재이므로 성능기준을 충족한 자재의 유통·시공이 요구되고 방화문 등 타 건축자재와 마찬가지로 동 자재들의 부적합률이 지속 발생하여 강화된 품질인정제도에 포함·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자재 관련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 품질인정기관의 자료요청(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기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시, 요청받은 자가 자료를 즉시 제출토록 하고, 제출내용이 부실하거나 인정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보완의무 부여

심사결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 상태, 유통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요청 및 확인이 필수적이고, 자료요청 이후 미보유 자료 생성 및 부적합한 자료가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제출을, 부실 자료 제출로 제출의무 해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제출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서류·피규제자의 범위가 법에서 규정한 범위와 유사하고 일부 건축자재등은 이미 동 서류 작성·보관·제출 의무를 이행 중이기에 추가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 내화구조 및 방화문·셔터 품질인정제도 상 관련 규정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바닥면 상태" 추가** 강화

심사결과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수차례 협의하여 도출한 안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중개사고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비례성 인정되며, 해외·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 상향, 타법상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 조정** 강화

심사결과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수차례 협의하여 도출한 안이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비례성 인정되며, 해외·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중개사무소 내 사업자등록증 게시** 강화

심사결과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수차례 검토 및 협의하여 도출한 안이며, 중개거래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부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절차** 강화

- 안전기준 개정으로 신설된 '수소연료 승합자동차 연료장치' 및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기준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간접시계장치)' 및 '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동일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도입

심사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자동차 안전성 시험 현장의 혼란 방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UN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국내 자동차의 국제경쟁력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사례에 비춰 과도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작사 등 개정항목에 대한 시험시설 및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2) 주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확인" 추가** 강화

심사결과 수차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면서 설계도서·시공계획·공정 상황 등을 검토·확인하는 감리자가 건축분야 전문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관련서류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하도급 폐해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비례성 충족하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신설 2)

심사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신설

-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시 수립해야 하는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의무부여

  ①이산화탄소 저감율 25% 이상 온실가스 저감 계획 제시, ②신·재생에너지*의 유형별 이용범위·발전용량·시설배치 포함, ③에너지저장시스템, 분산전원, 에너지통합플랫폼 등 도입·통합관리 방안 제시, ④폐열 발생·처리 관련 사항 검토, ⑤집단에너지공급시설 검토

심사결과 국민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 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 低효율·多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산업단지의 高효율·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이 필수적이기에 CO_2 25%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에너지이용협의 시 산업단지의 감축계획 수립수준 및 해외 친환경 산업단지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본 규제는 스마트그린산단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당 산업단지에 각종 특례 부여의 근거 마련이 주된 목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신설

- 스마트그린산단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 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충족 의무 부여

심사결과 국민의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적 탄소중립 흐름 하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물 친환경화가 필요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내 개별 건축물에 대해 상향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획득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1++ 충족 필수) 의무획득 대상 확대가 예정되어있는바 스마트그린산단 내 대부분 건축물에 동일 수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 의무가 예상되는 점,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건축물 중 민간·자발적 인증 비율 및 등급별 인증 비율을 고려할 때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해외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규제사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친환경 인증 확보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품질인정제도 관련 점검 규정** 신설

-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품질인정자재등 관련 **시험기관, 제조현장, 유통장소·건축 공사장 점검의무** 부여

대상	주기	내용
시험기관	연 1회 ↑	원시데이터,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 일지 (세부사항 고시)
제조업체 제조현장	인정 유효기간 동안 연 1회 ↑	△원재료·제품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 일치성 △제조공정 관리 기준 준수, △제조·검사 장비 교정 여부 △제품의 추적 관리 여부 (기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	△품질인정자재등의 인정서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인정된 건축자재등과 동일성 여부(납품확인서, 품질관리서) △건축공사장 시공 상태 (세부인정내용, 설계도서·시방서, 건축공사 감리 세부 체크리스트) (기타 국토부장관 고시 사항)

심사결과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자재의 생산·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축자재등에 대한 제조업자·시험기관 등의 계속적 품질 유지·관리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 대상별 주기 및 확인 내용 등 점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조·유통·시공단계 간 건축자재등 품질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점검 대상별로 점검 주기 및 점검내용을 차등화한 점, 신규 및 연장 인정이 있는 해에는 제조현장 점검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고시안) 점검대상별 구체적 타당성을 강화하여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품질인정제도를 기 시행 중인 내화구조 품질관리 점검 규정 및 점검대상·주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강화

- 건설기술인 1인이 중복배치될 수 있는 공사 현장 수 축소
-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공사현장 및 기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새롭게 행해지는 동일 종류 공사: (現) 3개소 → (改) 2개소

심사결과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빈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 개수를 축소하여 건설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설기술인은 시공자 측에서 시공방법·품질, 현장 작업·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문인력으로 중복배치 시 현장별 상주시간 감소가 불가피하여 부실시공·안전사고 증가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점, 건설기술인의 추가배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규제로 인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예상되는 점,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2)

심사내용 **복합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강화

- (외벽복합마감재료) 전체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 결과 준불연재료 이상에 해당 시, 각각의 구성재료는 준불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 가능토록 하는 완화규정 삭제
-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복합자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이거나,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에 해당토록 기준 신설

심사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단열재 및 우레탄을 심재로 하는 복합자재 사용이 지적되는 등 개별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가연·난연성 소재가 심재 등에 포함된 실제 마감재료의 정확한 난연성능 판정을 위해 마감재료의 각 소재별로 난연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할 때의 심재 및 외벽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의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것을 명시한 법 개정('21.3.16) 취지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1년→3년) 등 규제 부담 완화방안 등을 고려할 때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복합자재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규제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모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외벽 마감재료 시험기준 강화** 강화

-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및 외벽복합마감재료에 대하여, 전체재료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 실시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만족 의무 부과

심사결과 실제 화재현장에서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의 붕괴·훼손·변형 양상 등 화재확산 시 위험성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성능시험은 한계가 있는바, 화재확산·건축물 붕괴 등과 같은 피난에의 영향까지 평가가 가능한 실대형 시험을 도입하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 화재사고 반복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대형 성능시험은 복합자재 및 외벽복합마감재료가 법에서 규정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정합성이 높은 시험방식으로 소규모 샘플시험과 목적·시험방식·평가항목 등이

상이하여 추가 도입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대형 시험 면제사유를 정하고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1년→3년)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 규제의 연착륙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대형 성능시험 합격이 가능한 재료표준·시공방법 등 표준모델 도입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도시지역에서 토지 거래계약시 허가가 면제되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조정** 강화

심사결과 대도시권 부동산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만 조정하고, 토지거래의 최소단위로 볼 수 있는「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에 맞춰 조정하는 등 목적-수단 간 비례성이 있고,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신설

- 순수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차등화(수도권·광역시·세종은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거래가액 산정시, 계약체결 1년 이내에 연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거나, 기존 취득 토지의 추가지분 취득 시 거래가액 합산

심사결과 규제가 과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기준을 재선정할 것을 **개선 권고**한 데 대해, 국토부에서 수도권등의 경우 비지분거래는 1억 원 이상 시, 지분거래는 거래가액을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수정. 이에 대해 수도권등에 대해 비지분 거래의 경우 1억 미만 거래를 제외시켜 규제의 형평성을 보완하되, 지분 거래의 경우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모두 제출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므로,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에 동의

(108)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신설

- (제출서류) 주요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전영향평가 의뢰 시 '피난계획(피난유도계획 및 피난동선도)' 제출 의무 부여
- (검토항목)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피난계획의 적정성' 신설

심사결과 피난 불안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 고려 시 체계적 피난계획 수립이 요구되나, '先건축 설계 後피난시설 계획' 관행에 따라 종합적·실효적 피난계획 정립이 부족하므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의뢰 단계에서 '피난계획'을 의무제출토록 하고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내용의 대부분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 적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항목만 추가하는 등 필요·적정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막다른 복도의 길이(dead end)의 적정성 관련 미국 등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서 검토받은 항목은 제출을 생략토록하여 중복규제를 방지한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 자격요건 신설** 신설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확대
  - 자동차진단평가사와 정비·검사 기능사 자격 모두 취득 시 경력요건 완화
    (기존) 기능사+3년 경력 요구 → (개선) 진단평가사+기능사+1년경력 요구

심사결과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 시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총 5,165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의무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63.7%(3,289건)에 해당하고, 성능·상태점검의 부실은 불법행위(허위점검) 제재의 부재(행정처분 입법 中), 중고차 매매 거래대수 대비 성능점검자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의 피해 저감 및 신뢰회복을 위하여 성능점검자 자격 확대가 필요하며, 동 규제는 旣 인력기준(자동차정비·검사 기능사)에서 경력요건을 완화(3년→1년)하면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①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외관 평가, 사고·주행거리 조작 식별, 수리이력 확인,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 등의 특화된 전문자격으로, ②자동차정비·검사 기능사 자격과 정비 또는 검사 또는 성능·상태업무의 1년 경력을 추가 요구하여 성능점검자 인력확보와 충실한 성능점검을 유도하기에 적절한 기본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0)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입주자격 미충족시 부과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설정** 신설

- 소득 기준 초과시 0~30% 할증
- 자산 기준 초과시 30% 할증
-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구간 초과시마다 5~15% 할증
- 거주기간 30년 초과 후 최초 갱신계약은 10%, 2회차 이상부터는 20% 할증

심사결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데 실효성 있는 할증비율을 설정하는 등 합리성을 갖추고, 소득·자산·거주기간·공급면적 등 각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와 예비입주자 유무에 따라 할증 정도를 차등화하면서도, 2개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는 점, 유형별 할증 면제 사유를 규정하는 점, 영구·국민·행복주택 소득 기준 초과시 할증되는 수준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강화 4)

심사내용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격심사제' 추가** 강화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그간 적격심사제의 주요 위반사례를 감안할 때 전자입찰의 도입을 통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으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를 추가** 강화

심사결과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 금품등을 이미 제공받은 자 뿐만 아니라 추후 제공하기로 한 자 또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에 관한 입찰공고·선정결과 내용을 동별게시판에도 추가 공개** 강화

심사결과 사업자 선정 등 정보에 대한 입주민등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입찰공고 내용 등을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입찰시간 축소** 강화

- 입찰서 마감 제출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변경
- 개찰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입찰 과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개찰 가능시간에 1시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면서, 다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입찰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입찰서 마감 제출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변경** 강화

심사결과 입찰 과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개찰 가능시간에 1시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면서, 다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입찰 마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추가** 강화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①시장등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②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사결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즉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을 요구하도록 하고,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말소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서 비례성을 충족하는 점,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보증회사가 보증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차선책으로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점, 보증회사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4) 항공보안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의무 신설** 신설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하는 승객은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은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심사결과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 확보를 위해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의무 등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법이 개정됨('21.7.27)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확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규제는 이미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항공기 보안 확보에 필수적 사항으로 판단 후 시행 중인 사항인 점, 상황·피규제자별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탑승 노선(국제선·국내선)·수화물 위탁 여부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차등화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승객 본인 일치 여부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및 미국 사례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기준제정기관 지정요건: 인력, 전담조직, 재정적 안정성을 요구** 신설

- 지정 취소 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심사결과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였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개정 등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기관의 지정 및 취소 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징계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 실적을 추가** 강화

심사결과 감정평가 의뢰인이보다 적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점,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은 일정 요건(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평가사로서 그간 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고용할 것** 신설

-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검토평가사)는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검토하여, 검토결과서를 작성
- 검토평가사 명단, 업무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고 의무·감평사협회의 관리 의무

심사결과 업계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된 안이라는 점,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업무는 전문적 식견과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업무인 만큼, 충분한 경력을 갖춘 법인등이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의 신뢰와 직결되는 업무로서, 최소 2인의 상시 소통을 통해 검토의 적정성과 품질을 상호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토평가사 2인 이상 상시 고용(근무)할 것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 따른 검토결과서의 발급·보존 등은 기본적인 준수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적정성 검토 결과서 또한 감정평가서에 준하는 정도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고 및 협회의 관리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실무수습 시간 연장 및 교육연수의 대상과 내용 규정** 강화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업무정지·자격취소 등 징계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이론·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25시간 이상 이수 규정

심사결과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4주일로 연장함으로써 전문성 및 수습의 실효성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교육연수의 경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보수교육(15시간)을 감안할 때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등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25시간)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요건** 강화

-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 10% 이내로
- 전문가 요건: 법무·회계·법무·세무·기술·건축·변리사 등 자격보유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 감정평가사 최소인원: 상시 근무하는 5명 이상

심사결과 입법 취지를 살리되 감정평가법인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10%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전문가 요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감정평가 업무 수행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자격 요건으로 설정한 점, 감정평가사 인원 감정평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감정평가사 최소 근무 인원을 5명으로 규정한 당초 입법 취지, 동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인원의 근무형태를 '상시근무 인력'으로 한정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볼 수 있는 점,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6)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해체계획 수립기준 추가** 신설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추가
- ①해체계획서 작성 전 해체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에 대한 사전조사 의무, ②도로·보행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 도로·보행로에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해체 작업순서 작성 항목 신설, ③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작성 의무

심사결과 해체공사의 증가추세 및 사고 취약성이 높은 공사 특성 고려 시 면밀한 주변조사와 체계적 해체계획 수립이 요구되므로 해체공사 계획단계부터 인접보행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인근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사고방지 방안을 포함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토록 작성 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공사장 주변 인접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타법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해양수산부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총 5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9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7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어선기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선원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인정 및 면제선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2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2)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본위원회 (2021.06.25)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3)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공해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32)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1)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4) 어장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5)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3) 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5)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77	신설 53, 강화 26 (중요 2, 비중요 77)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처분 강화** 강화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위반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정지에서 1차 취소로 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어선들의 조업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어업협정 여건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정지처분을 받은 어선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업 시기 어업활동을 지속하고 비조업 시기에 정지처분을 이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 강화가 필요성이 있음. 어업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 제한 기간 이후 재허가가 가능하며, 어업협정 및 EEZ를 위반하여 조업 감행 시 나포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적 국제법규의 위반과 어업 협정 위반 여부를 분리하여 처분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한 점, 타법사례에서 조업한계선 등을 위반할 경우 동일한 처분 기준을 두고 있는 점과 국제수역에 조업하는 어선의 수가 1,000척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체 노후 어선의 조치 결과 미제출 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대체되는 노후 어선의 조치 결과를 미제출 시 위반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1차 경고, 2차 허가 취소에서 1차 허가 취소로 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어업인들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여 대체어선을 폐선하고 어업에 종사할 때 기존 허가 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운 어선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어선의 폐선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대체 노후 어선을 불법조업에

사용하고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성이 있음. 어업 허가는 대체 노후 어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류 제출까지 6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는 점과 폐선을 조건으로 신규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숫자가 10,000명 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2020년 7월 ~ 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신설 1)

심사내용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추가** 신설

-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기간 동안 총허용어획량계획(TAC)에 근해자망 어업에 의한 오징어 어획량 2,648톤 추가하여 규정

심사결과 수산자원은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계획(TAC)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음. 그러나 오징어 자원은 매년 감소 중임에도 총허용어획량으로 조업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증하여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한 근해자망 어업 대상 총허용어획량 설정 필요. 근해자망 어업 및 기존 적용 어업 간 시범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오징어 자원은 낮은 상태에서 보호가 시급한 점, 동 규제의 어획량 제한은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 및 평균어획량을 고려하여 적정 물량을 추가하여 설정한 양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어선설비기준 (신설 4)

심사내용 **소화기의 유효기간** 신설

- 어선에 비치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유효기간을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소화기는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장비이나 어선 비치용 소화기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이 없으며, 분말형 소화기의 경우 장시간 미사용 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기적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한 바 유통기한 설정 필요. 어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노후 소화기를 적기에 교체할 필요가 있는 점, 육상 비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유효기간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전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이고 규제비용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 및 설치 의무** 신설

- 어선에 일정 요건 충족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구분		내용
요건		•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내장된 음향장치가 화재를 알림 •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다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기기도 화재를 경보하는 연동식일 것
유효기간		•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설치 장소	기관실	• 총톤수 1,000톤 미만 어선의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 설치 •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시각경보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해야 함 – 다만,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거주구역, 업무구역	• 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다만,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심사결과 어선은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FRP)으로 주로 건조되며, 소재의 특성상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어 발생 초기에 인지하여 진화하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바, 어업인이 주요 생활구역 내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재발생 시 조기에 경보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인 점, 설치 비용이 크지 않은 점, 타법사례에서 유사하게 경보장치 기준을 설정하고 배치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의 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 및 설치 의무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설치 시 국가보조를 받는 등 규제에 따른 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기준 및 설치** 신설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원격조난발신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장치와 연동 의무화 규정
-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의 경우 선원실에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규정

심사결과 선박은 해상에서 조난시 신호를 발신하여 구조를 받아야 하나, 기존 법령상 조난발신을 겸용하는 무선설비는 설치 위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타실에 주로 설치되어 사고 발생 시 선원실 내 어업인의 대처가 어려워 피해 확산을 야기한 바 관련 기준 개선 필요. 특히,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조타실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설치가 필요한 점, 타법사례에서도 선원실 내 화재 인지 및 대응을 위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규제비용 등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단파대 무선전화,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기준 및 설치 의무화** 신설

- 근해어선에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설치 의무 및 설치 기준 규정 규정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술요건(위성항법장치와 상시 연결되어 어선의 위치 자동 입력, 전력 차단 시에도 48시간 이상 기능 유지 등) 규정

심사결과 바다에서 어업활동 중인 근해어선 등은 어업기지국 등에서 10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 법령상 무선설비는 100km 이내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여 원거리 조업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원거리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전원 차단 시에도 충분한 시간 동안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함. 동 규제는 위치 확인이 어려운 100km 이상 떨어져 조업하는 근해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설치 유예기간을 둔 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비가격 일부를 국고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이 수반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 신설

- 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 규정

심사결과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공 능력,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이 필요하며, 상위법은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민간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으로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시공업종 등록을 하고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③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⑤ 사업구역 토지면적 1/3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지정함. 타법 사례에서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시행자, 항만재개발 등 사업시행자의 요건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제가 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자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참여자로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신설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 ② 적절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③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히 확보, ④ 타당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규정

심사결과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해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세부기준 지정 필요.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수산종자 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타법 사례에서 기관의 지정 요건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제가 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규제대상기관이 교육기관에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 신설

-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 요건으로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④ 지원 비용을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를 규정

심사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지정 기관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 해제의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의 지정해제 요건은 타법사례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와 유사하며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기관도 지정된 양성기관에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신설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규정
- 프로그램 인증 요건에 따른 세부 기준 규정 및 구체적 사항 고시 위임 규정

심사결과 해양치유자원과 시설을 활용한 건강증진, 여가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인증을 부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술영향평가 시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와 중복 가능성이 참고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처는 세부 인증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여 하위법령 제정 시 해당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바 타당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체험프로그램

인증 대상자가 소수인 점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수리 조선소 경비, 검색인력 기준 강화** 강화

-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에서 최근 2년 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비·검색 상시 배치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기준 상향 규정

심사결과 항만보안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해 경비·검색 인력은 상시 2명 이상 배치하도록 2018년 개정하였으나, 이후 수리조선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여 배치 기준을 1명으로 완화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수리조선소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보안위험이 높은 수리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필요. 특히, 항만보안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 보안 유지가 필요하며,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한 수리조선소의 사례를 고려할 때 완화된 배치 기준이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강화의 적정성 인정됨. 이해관계자 및 영향평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한 점, 타법 사례에서도 필요한 경우 공항 내 보안검색요원 증원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수리조선소는 10여개에 불과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자본금 요건** 강화

- 부산항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규정

심사결과 부산항은 국내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요항만이며 우량 경비업체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부산항에서 보안사건이 빈발하여 경비 및 검색 실패를 줄이기 위해 보안능력의 향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바 기존 자본금 기준을 상향 추진이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존 수탁업체 중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에서도 공항 규모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금액 기준 차이가 개정안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기관은 부산항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한정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은 업체당 5억 원으로 연간비용이 5천만 원에 불과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도선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음주 도선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도선사가 음주 상태로 도선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규정

구분		기존			개정	
		1차	2차	3차	1차	2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 미만	-	-	-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0.1% 미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면허 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 0.16% 미만	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이상	면허취소	-	-		

심사결과 선박 입출항을 담당하는 도선사가 음주 상태로 도선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해사안전법」상 도선사 벌금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처분 기준을 이에 맞추어 강화 추진한 바 필요성이 인정됨. 음주 도선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등 타법상 음주 운항 및 운전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인 도선사의 수는 1만명 이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항만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 규정

심사결과 기존 「항만법」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 사업시행자의 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제정 당시 처분 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항만법 시행규칙」상 항만개발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분법 이전 시행규칙 상 처분 기준이 동일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자가 항만 재개발 사업자에 불과하여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어선기관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배관장치 설치** 신설

-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의 기관실 격벽에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 어창잔수를 별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배관설치 의무 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름오염방지 설비 갖출시 배관설치 의무 적용 제외 규정

심사결과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해수, 기름 등의 혼합물) 무단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실 내측에 밸브나 콕이 있는 경우 어창잔수가 엔진의 유류와 섞여 발생하는 것임. 이에 배관장치를 설치하여 어창잔수를 별도 배관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에서 연료유 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을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선저폐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갖출 경우 배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선박수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 2)

심사내용 **배관장치 설치** 신설

- 총톤수 10톤 이하 어선의 경우 기관실 늑골 하나는 해수와 유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정
- 빌지흡입관 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격벽에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 어창잔수를 별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배관설치 의무 규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름오염방지 설비 갖출시 적용 제외 규정

심사결과 선저폐수(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해수, 기름 등의 혼합물) 무단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관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오염 방지 처리할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에서 연료유 장치에서 배출되는 드레인을 적절한 드레인탱크에 유도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선저폐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갖출 경우 배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 수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선설비 설치** 신설

- 근해어선에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설치 의무 규정

심사결과 바다에서 어업활동 중인 근해어선 등은 어업기지국 등에서 10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 법령상 무선설비는 100km 이내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여 원거리 조업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원거리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 설치 필요. 동 규제는 위치 확인이 어려운 100km 이상 떨어져 조업하는 근해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설치 유예기간을 둔 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비가격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수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신설 1)

심사내용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요건** 신설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요건 신설 규정

구 분	요 건
조직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 확보 1.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경제학 분야 또는 경영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지자 4.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심사결과 무역항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관련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충족 요건 마련 필요. 동 규제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며, 타법사례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확보 및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된 현실성 있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대상기관은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는 기업체에 한정되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선원업무 처리지침 (강화 1)

심사내용 **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 명확화** 강화

-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을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으로, 대상 선박은 그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을 승무시켜야 함. 규정 이행을 위한 해기사 공급 부족 및 선박 구조 변경 부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이견, 중기영향평가 의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함. 피규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발령 후 2년으로 확대하고, 시행 이후 2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시행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구조변경이 필요한 선박은 3년 후 첫 정기검사 시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처리.

(1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인정 및 면제선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면제 선박** 신설

-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는 해상 운항선박에 최적항로, 실시간 전자해도, 위험 경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와 관련하여 설치 필요가 없거나 설치가 곤란하여 면제 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비어선, 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의 형태별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타법의 무선설비 설치 면제 대상과 동일하거나 완화하여 규제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규제대상자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신설

-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후 해당 조치명령 이행 완료 시 명령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오염 원인자가 수거·정화 명령 이행 과정에서 허위·부실 이행 가능성이 있어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보고 규정 신설 필요. 타법에서도 환경보전 관련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 이행 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규제대상자인 오염 원인자의 수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항만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우선입주 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 신설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한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으로 제조업 등 8개 업종 규정
- 국내복귀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자격으로 공고일 직전 1년 동안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50% 이상일 것을 규정

심사결과 국내 복귀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되, 입주가능 기업의 범위 및 우선입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업종의 경우 국내기업의 입주 가능 업종을 참고하고, 우선입주 기준의 경우 제조업 기준을 완화하면서 동일한 수준에서 우선입주 요건을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국내 복귀기업 수가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신설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시설, 인증업무규정 관련 세부기준 규정 규정

구 분	내 용
조직 및 인력	• 조직: 인증업무 수행 전담조직은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나타낼 것 등 • 인력: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함 ① 수산·식품산업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 ② 수산·식품 분야 산업기사 자격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품질관리업무 3년이상 담당한 경력자 ③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① 또는 ②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시설	• 사무실 및 장비 확보 •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추는 경우 개별 법령의 공인시험연구기관 관련 규정 준수
인증 업무 규정	• 인증업무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인증업무 실시방법, 인증 사후관리방법, 인증수수료, 인증심사원 관련 사항, 인증 체계 등

심사결과 인증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타법사례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규제대상인 인증기관이 소수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기준** 신설

- 좌초·표류된 고래류는 위판을 제한하고 폐기하도록 규정
-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용·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 폐기 제외 규정

심사결과 고래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좌초·표류된 고래류는 위탁판매 등이 가능하여 좌초·표류된 고래류 발견 시 방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른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위판 대상 제한 추진. 어업인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좌초·표류 고래류에 한한 점, 해외사례에서 고래류의 보호를 위해 유사하거나 강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과 피규제자가 확정되지 않아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 강화

- 해양보호생물로 3종(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추가 규정

심사결과 국제적 보호가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지정된 3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점, 해외사례에서도 멸종위기 생물종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관련 신고 사항** 신설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작성·변경 시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저축성 공제, 보장성 공제, 갱신·재가입 시 계약체결 비용이 최초 계약 체결비용 대비 70% 초과하는 공제) 규정

심사결과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 사항이 추가된바,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공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규제비용도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 납입 한도 축소** 강화

-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납입 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 규정

심사결과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이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도록 개정된바,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공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타법과 동일한 수준의 납입한도 기준을 두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표준해지공제액보다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 규제 강화** 강화

-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은 해지공제액 비교 등 관련 사항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 규정
-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한 계약체결비용 적용 상품에 대한 해당 상품 사업비를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에 추가

심사결과 금융위원회에서 적절한 원가분석 없이 해약 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공제사업 기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필요. 수협중앙회는 해지공제액 차감 한도 내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규제 순응에 어려움이 없으며, 타법에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규제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무(저)해지환급형 공제설계 제한** 신설

- 무(저)해지환급금 공제의 환급률이 전 보험기간에 걸쳐 100% 또는 표준형 공제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금융위원회에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사항을 수협중앙회 운영 무(저)해지환급금 공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개정 추진. 타법에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기손해공제 및 제3공제 해지공제액 산정 기준 일원화** 신설

- 생명공제와 장기손해공제, 제3공제의 표준해지공제액 산정기준 일원화

심사결과 제3공제는 같은 보장이더라도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 선택 여부에 따라 해지공제액 한도가 상이하고, 사업비가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동일 보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기준 일원화 필요. 동 규제는 제3공제와 장기손해공제 공제요율 산출 시 생명공제의 기준 준용하도록 일원화하였으며, 타법사례에서도 장기손해보험의 기준은 생명보험의 기준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품 공시사항 추가** 강화

- 수협중앙회가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①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청약철회비율, ②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 불만족도, ③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공제금 부지급 사유, ④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추가 규정

심사결과 공제계약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공시사항 추가 필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민영보험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이미 공시하고 있는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잠수기어업 흡입기 사용조건** 신설

- 잠수기어업에 대해 5마력 이하 흡입기 사용을 허용하되, 여수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어선은 마을어장과 1km 이상 이격할 것을 규정

심사결과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제한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때 어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어업 및 마을어장과 분쟁 방지를 위해 조건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 수행 시 분쟁 방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며, 타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개정안의 조건은 여수잠수기 자율관리공동체가 기 수용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는 이해관계자가 제시하여 수용한

조건으로 추가 완화 요구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불수용한 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신설 2)

심사내용 **수산생물 병원체 제3자 분양 및 사후 관리** 신설

- 병원체 제3자 분양을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분양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제3자 분양된 병원체 사용 목적을 시험연구, 숙련도시험,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으로 제한
- 수입된 병원체 및 제3자 분양된 병원체 보유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도·점검·시정요구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수입 병원체를 국내 연구자가 다시 사용할 근거가 부족하여 제3자 분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병원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규제 마련 필요. 타법사례에서 병원체의 분양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사항** 신설

- 수산생물 병원체의 보관, 폐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시설의 준수사항 규정

구분	준수사항
수산생물 병원체 보관	• 병원체 관리책임자 지정 • 안전한 보관장소 지정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사항 보고	• 수산생물 병원체 관리대장 작성, 보관 • 매년 말(12월 31일 기준) 수산생물 병원체 보유 현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수산생물 병원체 폐기	• 수산생물병원체 폐기 시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처리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
수산생물 병원체 이동	• 수산생물병원체를 국내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해 운송하는 경우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한 후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유지하여 이동

심사결과 수산생물 병원체 유출 시 수산업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운송·관리·폐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구의 수생동물 위생규약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기 보기 어려우며, 타법사례에서 병원체 관리 및 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 유사한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피마자박에 대한 인체 위험성 제거 입증방법 규제** 신설

- 피마자박에 대해 위험물 운송 규정 적용 제외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열처리 방법으로 위험성을 제거했음을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받은 후 해당 열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피마자박은 위험물 포장하여 운송함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선박 산적하여 운송되고 있으며, 피마자박의 위험성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이 제기됨에 따라 운송 관리 강화 규제 도입 추진함. 그러나 수입되는 피마자박이 인체에 유해함을 입증할 근거 부족, 관련한 열처리 기준 및 시험방법이 불명확함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함. 규제를 실시하는 해양수산부가 피마자박 인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입업체가 따라야 할 구체적 열처리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개위는 피마자박의 인체 위험성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이나 기준을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23)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 지정기간 연장** 강화

- 유통이력 신고 대상 지정기간 만료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17개 품목(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재지정 규정

심사결과 수입수산물의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제에 따른 신고대상 품목 중 17개 품목이 지정기간 만료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적발이 계속되어 재지정 추진 필요. 동 규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재지정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유해방오도료로 디우론 지정** 신설

- 디우론(Diuron)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방오도료로 규정

심사결과 디우론은 해양에서 일정기간 잔류하여 해양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방오도료로 사용 금지할 필요가 있음. 디우론 사용에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설정한 점, 해외 국가는 디우론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 점, 타법사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해성 인정 물질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2020년 7월 ~ 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신설 1)

심사내용 **총허용어획량의 계획** 신설

- 고등어, 전갱이, 붉은 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등 8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설정

심사결과 어종별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은 매년 수산자원 조사 평가에 따라 재설정되며, 동 규제는 2021년 수산자원 평가를 바탕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사항임.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범위 확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대상 어종별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원평가를 시행하여 객관적 자원 상태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한 점, 기존에도 총허용어획량 배분 범위 내 충분히 어획하고 있는 등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수산자원의 실태에 따른 어획량 관리계획을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에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어선위치추적장치 기준 등** 신설

- 원양어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기술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구 분	내 용
성능 및 기술요건	•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운항 정보 자동전송 • 운항 정보를 선박운항자가 조작·변경 불가능 •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 선장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수단을 갖출 것
봉인 절차	• 장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구조 변경 방지(이하 '봉인') 장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이 설치하며, 원양어업자는 봉인을 유지하여야 함 • 장치 고장, 파손 등 사유로 봉인을 해제해야 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즉시 보고
수동보고	• 선장은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함 • 장치 정상 작동 전까지 매 시간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2시간마다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 – 선명 및 선박 –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 – 위치 일시(세계표준시)
작동 중지	• 어선이 1주 이상 항구 정박·계류하며 장치의 작동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서류 제출 • 작동 중지 사유가 해지되거나 선박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장치를 정상작동시키고,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알려야 함

심사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원양어업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지역수산기구에서 정한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사항 준수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동 규제에 대하여 수동보고 주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기존 어선위치정보 확인 주기가 2시간으로 수동보고 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의견 제출 이해관계자가 해양수산부의 불수용 의견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수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타법사례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유사한 기술요건을 두고 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선박감시시스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대상선박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검역시행장 지정 시설요건 기준** 강화

-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해외 신종 수산생물질병 피해사례가 보고 있어 검역시행장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 검역시행장 시설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타법사례의 가축전염병 검역시행장 시설기준과 유사한 점, 기존 검역시행장 중 상당수가 추가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에 비추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검정기관 사후관리** 신설

- 수산물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사유 및 보고 규정
- 수산물 검정기관의 검정능력평가 의무 및 요령 규정
- 점검결과에 따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

심사결과 수산물 검정기관의 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타 기관의 검정기관과 규제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타법의 위탁기관 사후관리 사항을 참고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우수수산식품등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세부사항** 신설

- 시설, 품질, 안전 및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항 등 원산지 인증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

심사결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하여 왔으나, 이후 수산식품 관련 사항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면서 원산지 인증 기준 정비 필요가 있음. 원산지 인증 기준은 다수의 법령이 관련되는 등 복잡성이 있어 국민의 기준 이해에 혼선이 우려되어 세부기준이 필요한 점, 유사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법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이며, 종전 인증제의 세부기준을 정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기준 추가** 신설

-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 승인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심사결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연구자에게 승인을 통해 보유 자원을 무상 제공하는 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나, 자원의 미승인 분양 및 관리 소홀

사례 등이 나타나 관련 책임 강화 필요가 있음. 부정 분양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 회수가 어려워 사전관리 기관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점,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수립한 안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처분 절차 및 기준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공해 저연승어선 승선 옵서버 승선일 비율 상향** 강화

- 공해 저연승어구 사용 어선에 기존 조업일수 50% 이상 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한 것을 100% 이상 승선 의무화 규정

심사결과 미국의 혼획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혼획저감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혼획저감조치로 옵서버 승선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 대미 수산물 수출국의 동등성 평가 대응 사례와 유사하며, 기존 관련 원양어업자 중 상당수가 동 규제 개정사항을 충족하거나 기존 규정보다 상향된 비율로 옵서버가 승선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해 저층어선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관련 의무** 신설

- 공해 저층어선의 혼획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규정
- 공해 저층어선이 해양포유류 혼획 시 즉시 방류 조치 규정

심사결과 미국의 혼획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혼획저감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혼획저감조치로 옵서버 승선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타 대미 수산물 수출국의 혼획 대응 어업관리조치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이며,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조치를 협의 및 선정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업계와 협의한 사항으로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어선안전조업법 (강화 2)

심사내용 **기상특보 시 안전 조치 강화** 강화

-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을 금지하고 어선소유자 및 선장에게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 및

특보 확인 의무 규정

- 출항 및 조업 제한 위반 및 안전운항 조치 미수행 시 행정 제재처분 규정

심사결과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 제한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으나 회항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 사전 안전조치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어선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기상정보 확인 의무, 벌칙 규정 등이 있어 유사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기존에도 기상특보 시 실무적으로는 어선 통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선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 확대** 강화

- 일정규모 이하 어선에 승선하는 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규정
- 선장의 구명조끼 착용 명령 의무 규정

심사결과 소형어선의 경우 신속한 구조 지원이 어려워 어선사고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높아 안전조치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구명조끼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규제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화 외 홍보 및 개발·보급 사업 병행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일정규모 이하 어선 선원에 대한 착용 의무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신설 1)

심사내용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신설

- 안전도선 일반사항, 강제 도선 기준, 도선 속력 및 관련 절차 등 도선구와 관련한 구체적 안전절차 규정

심사결과 도선 과정에서 도선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도선안전절차 마련 필요가 있음. 기존 부산항 안전도선 매뉴얼 및 부산항도선사회 도선 표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안전절차 마련하였고, 해외 항만 당국이 유사한 안전 지침을 공고하고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안전확보의 구체적 절차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에 따라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형식승인 시험기준 추가** 강화

-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외관검사, 기능시험, 소화제 요건, 소화시험, 수동작동 장치 구조 및 기능검사 등) 추가 규정

심사결과 기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소화장치는 수동조작이 불가능하여 조기 진화가 어려운바, 수동작동 기능 등을 추가하고 그 외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기술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기준으로 적정성이 있으며, 국제 표준 등을 준수하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자동 소화장치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어선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요건** 강화

-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요건에 수동작동 기능 추가하고 관련 관리 기준 신설 규정

심사결과 기존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소화장치는 수동조작이 불가능하여 조기 진화가 어려운바, 수동작동 기능 등을 추가하고 그 외 기준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타법상 적용 기준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타법사례와 유사한 수준의 자동 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성능인증 대상 보안검색장비** 신설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로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규정

심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 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바 성능인증 대상 장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유사 제도의 보안장비 종류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보안검사 검색장비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 지정 기준** 신설

-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 지정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기준 규정

심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 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합한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바 장비의 성능평가를 시행할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유사 제도의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외에서 유사하게 시험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 규정

심사결과 성능인증 시험기관이 규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타법사례의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발포 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 사용금지** 강화

- 어장부표 규격 기준 조항의 고밀도 발포 폴리스티렌 허용 내용을 삭제하고 발포 폴리스티렌 포함 부표의 사용금지 규정

심사결과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 원인이 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 규제 필요. 기존 설치 부표는 개정 전과 같이 유지하고 신규 설치부터 적용되는 점,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교체 지원하고 있는 점, 어민의 자부담 수준을 낮추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점, 해외에서도 발포 폴리스티렌 부표의 사용 및 판매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강화

- 수산자원의 승인 결정 기준을 추가 규정
-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산자원의 예외적 이식 승인 규정

심사결과 수산자원 이식 시 별표의 세부기준에 따라 이식 여부를 결정하며, 매년 수산자원 수급 및 외래유입 질병을 고려하여 재설정 필요.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처리 절차, 승인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이식승인 기준변경 협의회 및 전문기관 적합성 검토를 거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해외에서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법에서 외래생물 등 유입 시 승인 규정을 유사하게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선원실 등 설치 의무화** 강화

- 총톤수 2톤 이상인 소형어선의 무인기관실과 선원실 등 각 구획(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 등)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규정

심사결과 어선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여 발생 초기 인지 및 대응이 중요하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 구역별 감지기 설치 필요가 있음. 「어선설비기준」 개정 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존 어선에 감지기 무상보급한 결과 화재 사고 예방 효과가 있어 대상 확대 추진함. 기존 소형어선 중 대부분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보급되어 있고, 건조비용 대비 설치 비용이 크지 않으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창구 등의 코밍 설치 기준 완화** 신설

- 소형선박 내 해수 및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코밍(Coaming)의 설치를 면제하는 기술기준 규정

심사결과 소형선박의 경우 갑판 공간이 협소하여 코밍 설치 시 안전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면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코밍을 일괄 면제할 경우 해수 유입으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기술기준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소형선박과 유사한 성격의 선박 검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이며, 해외에서도 규모가 작은 선박에 대해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수산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근해자망어업 살오징어 포획금지** 신설

- 동해안 및 남해안 일부 해역 내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포획을 금지 규정
- 관련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북, 경남)에서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부 오징어 포획 허용 규정

심사결과 오징어 어획량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해자망어업의 어획량이 급증하여 어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어 관련 규제 신설 필요가 있음. 총허용어획량 설정, 자율협약 등 자원 갈등에 대응한 타 제도의 효과성이 부족한 점, 해외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는 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어민간 간담회를 다수 진행하여 협의한 최종안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해경 미가입어선 통보 톤수 확대 및 수협 미가입어선 해수부 통보 규정 마련** 신설

- 해양경찰청 어선원보험 미가입어선 통보 기준을 당연가입 기준과 일치 규정
- 수협중앙회의 미가입어선 정보 공유 의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상 당연가입 대상어선 기준이 확대되었으나, 시행규칙 상 미가입어선 통보대상 기준에 대상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연동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절차 법제화 필요. 동 규제는 보험가입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조치 사항으로, 유사한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용 기준** 신설

- 기존에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한정적 허용 및 이동시 관련 필요서류 규정

심사결과 해양보호생물이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보유기관의 지속적 보유가 인정되나, 해당 기관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정한 시설로의 해양보호생물 이동보관 규정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해양보호생물 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법의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절차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보호생물 5종 신규 지정** 강화

-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등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규정

심사결과 추가 지정된 5종은 국제적 보호가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임.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의 제한이 아니며, 해당 종에 대한 유통 및 수출입 사례가 적어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어장관리법 (신설 1)

심사내용 **어장 관리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

- 어업권자가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의 근거를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심사결과 어장 청소 의무가 3년마다 발생하나 과태료 규정은 1년 단위로 적용되어 위반차수 가중에 따른 누적 부과가 불가능하여 의무 위반이 지속되는바 개선 필요가 있음. 해양보호생물이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보유기관의 지속적 보유가 인정되나, 해당 기관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이동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정한 시설로의 해양보호생물 이동보관 규정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해양보호생물 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타법의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절차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어장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양식품종별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마련** 신설

- 양식 면허종류 및 방법에 따른 청소 주기 및 구체적 방법 규정

심사결과 어류양식의 경우 양식품종별 유기물 부하량, 시설물 구조에 따라 오염도 차이가 있어 청소 주기와 방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구체적 주기 및 방법을 마련한 내용으로, 유사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소규모 창고시설 허가 및 취소** 신설

-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 제한을 해제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소규모 창고시설 설치 시 허가 및 취소 규정

심사결과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을 허용하되 공사 시 무인도서의 형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건, 기한 등을 달 수 있도록 단서를 달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정안 실시로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대신 건축물 허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예상되어 규제 합리화 조치로 판단되는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지정검역물의 범위 확장** 강화

-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지정검역물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양서류 추가 규정

심사결과 양서류의 수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검역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이 필요함. 양서류

수입위험 및 주요 위해요소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관리 및 검역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양서류에 대한 검역이 진행되는 점, 타법사례의 수입 동물에 대한 검역 실시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 추가** 신설

-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내 기재 필수사항 신설 규정

심사결과 기존 처방전 기재사항은 기초적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필수적 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며, 잔류 위험이 있는 의약품 관리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가적 정보 수집 규정 신설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타법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동 규제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강화

- 가중처분 시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전 행정처분은 누적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누적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필요가 있음. 타법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른 개정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동 규제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합작선사 외국인 지분 상한 하향 조정** 강화

- 원양어업자로 인정되는 합작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국민 지분율 기준을 외국 법령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24% 이상으로 하향 규정

심사결과 관세법은 원양어업 신고 합작선사에 대해 국민 지분율 기준에 따른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러시아) 법령 개정으로 조업권 유지를 위한 지분율 조정이 시급하여 기준 개정 필요가 있음. 외국법령 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분율 기준을 재조정하고,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 피규제자의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범위 및 기준** 신설

- 동력 추진기관을 보유하는 선박(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의 정비업을 등록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구체적 등록 기준 규정

심사결과 마리나선박은 정비 관련 제도가 부재하여 무자격·무등록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체계 마련 필요가 있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기관 고장 등 레저기구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 기준 설정한 점, 타법사례에서 유사한 정비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예기간을 두어 대응 시간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신설

- 정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자격 취소 시 반납 등 절차 규정

심사결과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위반행위 하였을 경우 구체적 처분 기준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타법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처분 기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계획 등 보고의무** 신설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계획 및 실적을 매해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시 15일 이내 보고 의무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상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계획 및 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타법 유사사례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의 교육계획 등 보고의무에 대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기준 설정** 강화

- 가중처분 시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심사결과 행정처분 기준 해석 시 법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화하기 위해 부과처분 시 적용차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타법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산정** 강화

-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중 유조선은 14.9%, 유조선 외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경유 제외)은 13.7% 부과요율 상향 규정

심사결과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 방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부과요율이 '15년 이후로 동결되어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정 필요가 있음. 일몰 설정하여 향후에도 요율 재산정 및 규제 차등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및 유사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해당 요율은 방제분담금 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신설

-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은 김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타 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마련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선내의약품등비치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선내의약품 비치 기준** 신설

- 선박 내 비치하여 의료관리자가 취급해야 하는 의약품을 고시로 정하면서 의약품의 성분, 용량, 단위 등 선박 내 비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기존에 공문 형식으로 정하고 있던 선내 필요 의약품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부처(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몰 설정하여 주기적 현행화를 계획하고 있는 점,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타법 유사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할 시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점에 비추어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시 면책 사유** 신설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 규정
-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준수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어긴 경우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서아프리카 해역 등지에서 해적 피랍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진입 제한 등 안전조치를 상위법을 통해 법제화함. 하위법령에서 진입 제한을 대신할 안전조치 및 면책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진입 제한을 대신할 안전조치의 경우 선택지가 부여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해당 해역 인근 입출항 국내 선박의 경우 선택지 중 일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추가 부담이 미미하고,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해외 및 타법 유사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출입·점검 규정 정비** 신설

-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점검과 관련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 현장에 출입하여 점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

- 출입 및 점검 시 관련 서식 및 이행조치 조항 정비

심사결과 기존에도 선원대피처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 및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해적 피해예방 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대상이 확대되어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타법에서 유사한 자료 제출 의무 및 출입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몰 설정하여 해외환경 변화에 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 및 사후관리** 신설

-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기준 및 이에 따른 부두(11개, 14개 선석) 지정
- 부두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및 사후관리 규정

심사결과 기존 위험물 해상환적은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부두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응하여 법제화된 안전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며 적정 부두 선정 필요가 있음. 해당 부두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선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조사 등 적정성 검토 조치 실시 후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를 최종 지정한 점을 고려할 때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해양경찰청

집필자 • 고인영 사무관
Tel. 044-200-2441, inyoung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신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 가입기간, 가입대상, 가입금액 등 보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심사결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기부여되어 있으나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이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를 상위법에서 의무화하였고, 동 규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방법으로 가입기간,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 내 게시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정보는 보험 적용여부 및 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과도한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장 내 공개적 게시가 적정하다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점과 규제대상이 중요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장비 기준 강화** 강화

- 연안체험활동 시 성인과 소아 참가자를 구별하여 해당 인원의 각각 11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를 배치하도록 안전장비 기준 규정
- 구체적 성인용 및 소아용 구명조끼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심사결과 착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는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 및 체구에 따른 구명조끼를 충분히 구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은 구명조끼 수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체험활동 시 특성에 적합한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참가자를 성인 및 소아로 구분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나이에 따른 일괄적 성인·소아 구분은 착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시장 수요 가변성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에서의 구체화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참가자 인원 대비 비율을 규정하고 그 외 구체화된 기준 일부를 고시로 위임함. 운영자가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의 구명조끼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상황에 따라 참가자 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게 한 최소 규제 수준인 점, 타법에서도 성인용·소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배치하도록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취소기준** 신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기준, 시설·설비기준 등 지정기준 규정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준 규정

심사결과 기존 안전교육 실시 관련 업무는 레저스포츠 관련 학부 등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교육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부실화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 인정됨. 교육 대상자와 기존 위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경력 등을 기준에 반영한 점, 기존 훈령 및 타법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 수준의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 점, 일몰을 설정하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5절 농림·산림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식물방역법 등 총 1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8건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격리재배 검역요령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농어업회의소법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6) 수의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7)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1.07.0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 식품산업진흥법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8.0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0) 식물방역법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10.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전통식품 표준규격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8	신설 23, 강화 5 (비중요 28)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의 상근강사 자격 기준** 신설

- 교육훈련기관의 상근강사 자격 기준을 ① 표준 교재를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 ② 친환경농어업 인증에 필요한 실천방안과 취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 ③ 친환경농업 이행 과정을 기술한 표준 재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규정

심사결과 내실있는 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상근강사 역량 담보를 통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한 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상근강사로 활용할 수 있어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점, 친환경농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우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어 타법사례 대비 완화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제한기준** 신설

-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허용되는 에톡시퀸의 양을 기존 300ppm(300g/1톤)에서 전면 금지로 강화(단, 비의도적인 20ppm미만의 혼입은 허용)

심사결과 어체 내 유해물질인 에톡시퀸 잔류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에톡시퀸의 인위적 혼입을 원천금지하면서 비인위적 혼입은 허용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기존 사료업체가 대체 원료로 생산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뱀장어 등의 어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점,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원천금지하고 있어 국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농업기계 표시대상 확대(4종→ 41종)** 강화

- 테프론스티커를 농업기계 형식표시판 재료에서 제외하고,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표시방법 강화

심사결과 농업용 기계 표시 사항을 위·변조한 농업기계 유통·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부착 용이성을 고려하여 본체와 엔진에 따라 교체가 편리한 테프론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시행 후 경과규정을 두어 비례성을 확보한 점, 등록된 모든 건설기계에 등록번호를 새기도록 한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의무 표시대상을 완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격리재배검역요령 (강화 1)

심사내용 **격리재배 검역 대상인 식물종 추가** 강화

-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5종,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8종, 기타 유사종 2종 추가

심사결과 금지병해충의 대상이 되는 기주식물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식물종을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확보한 점, 피규제자인 수입업자도 상품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재배 후 유통하여 격리재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농어업회의소법 (신설 6)

심사내용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신설

심사결과 농·어가의 의사를 조직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인가 취소 사유 규정** 신설

- 기초·광역·전국단위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취소 요건 규정

심사결과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가 및 설립취소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설립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비례성을 확보한 점, 농업협동조합 등 타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된 점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가권자의 농어업회의소 통제권한 규정** 신설

- 정관 주요사항(목적, 관할구역, 해산 등)을 변경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권자가 필요 시 회계 조사와 필요 서류 검사 권한 부여

심사결과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주요 사항을 통지 의무 부과, 인가권자의 조사·검사 권한 도입 필요가 있고, 통지의무 대상을 절차적 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항으로 한정하고, 타법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업회의소 대의원 총회 구성** 신설

- (정원) 기초·광역 100명 이내, 전국 300명 이내
- (성비) 여성대의원 전체 재적 대의원 중 100분의 20이상
- (특별대의원) 특별대의원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1 이하

심사결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민법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정원 및 여성대의원 비율을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한 점, 규제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의원·특별대의원 등 해임요구 정족수 및 특별회원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 2)

- (해임요구 정족수) 재적대의원의 1/3 이상 동의하는 경우
- (결격사유) ① 비회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 ④ 회생절차, 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 미만, ⑥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⑦ 해임 후 3년 미만

심사결과 농어업회의소 내 주요 직책의 자격과 해임사유 등을 규정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농업협동조합 등 유사한 성격의 단체의 임원 등의 해임 요구 정족수와

결격사유를 규정한 유사입법례보다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수의사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동물보건사의 자격** 신설

- (관련업무) ①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교육·상담, ② 동물의 관찰, ③ 기초 건강검진과 투약 등
- (외국면허) 외국 학교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발급받은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인정되는 외국학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결과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서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수의사 외의 사람도 동물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성격인 점,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하는 점, 간호조무사 등 유사입법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및 유효기간** 신설

- (평가인증 기준) ①교육훈련 과정 편성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②교육 인력 등 인적 자원의 적절성, ③교육시설·환경 및 실습자원의 적절성
- (유효기간) 3년

심사결과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인증 기준으로 교육내용 및 인적·물적자원의 적절성을 요구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보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특례 관련 실습교육 기준** 신설

- 실습교육 항목으로 동물간호와 관련된 7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120시간(항목당 최대 20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자격시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취지를 고려하여 새롭게 진입하는 자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실습교육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설되는 실습과정보다 교육이수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여 비례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내 대부계약·사용허가** 신설

-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시설 임차희망자에게 사용계획 제출 의무 부여

심사결과 스마트 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해 도입되는 시설 등에 대한 특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 마련** 신설

- (교부 요건) ①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② 스마트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교육과정 이수
- (취소·정지요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④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심사결과 스마트 농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전문인력인 '스마트농업관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유사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신설

-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체계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근거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식품산업진흥법 (신설 1)

심사내용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취소 사유 마련** 신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법한 지정 및 운영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여 지정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벌칙 대상인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한 거짓광고 및 과대광고 범위 설정** 신설

- 거짓광고(“사실과 다르게”)와 과대광고(“오해 유발”) 범위 설정

심사결과 거짓·과대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율적으로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제 사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농약관리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료생산업·수입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강화

- 행위별 영업정지 기간을 2배 향상(각 1·2·3개월 → 2·4·6개월)

심사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기간이 짧아 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효성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농약관리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식물방역법 (신설 5)

심사내용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사유 (신설 2)**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지정취소 사유 마련

심사결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로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해충 정밀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밀검사 역량이 있는 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기술원 등으로 지정대상을 한정하면서 지정 후 예산지원

등의 비례성을 확보하였고, 규제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신설 2)

-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은 인력·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법 위반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지정취소 사유 마련

심사결과 상시 예찰활동으로 병해충 발생 사전 발견·방제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예찰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농업관련 대학·연구소 등으로 신청 대상을 한정하여 규제의 목적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의 별도 의견이 없는 점, 사회적 편익이 더 큰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과수원 재배자 및 농작업자의 예방수칙의무 등** 신설

- 과수원 식물 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예방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및 농가일지 작성 및 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

심사결과 식물병해충은 작업자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병해충 발생 피해를 차단할 1차적인 방지노력이 필요하고, 예방수칙 등은 농가에서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인 점,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신설

- ①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② 성폭력특별법 등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받는 경우 사업정지 → 폐쇄명령의 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숙박업의 특성상 불법촬영 등 성범죄 노출의 위험이 높아 성범죄 발생 사업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하여 범죄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사유와 연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공중위생관리법 등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의 처분기준을 마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추가** 신설

- ① 소독처리마크가 식별불가능한 경우, ② 열처리 등 작업 시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하지 않는 경우를 처분 사유 추가

심사결과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출업체의 경제적 피해와 대외 검역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현행 규정에서 소독처리마크를 식별가능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유사입법례에서도 전문인력이 참관하지 않는 경우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규제자도 규제도입 필요성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전통식품 표준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식품 추가 및 표준규격 강화** 신설

- (강화) 국수류, 미숫가루, 삼계탕, 곰국, 양념육류, (신설) 오미자가공품

심사결과 전통식품 인증대상 품목에 오미자가 추가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위생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준규격 현행화할 필요가 있고, 적용 기간에 경과기간을 두어 비례성을 확보한 점, 유사제도인 산업표준(KS)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사료 중 "조단백질" 성분의 함량 제한** 신설

- 축산용 배합사료 원료에 "조단백질" 함량 기준을 강화(양돈)·신설(축우·양계 등)

심사결과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여 온실가스와 축산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 내 질소 함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고, 향후 용역연구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단백질 함량 제한의 시작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신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청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도시숲법 등 총 1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임산물 표준규격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3	신설 3 (비중요 3)
(3)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4)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본심사 (2021.10.22)	개선권고2	강화 2 (중요 2)
(7) 산지관리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1	강화 1 (비중요 1)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2	신설 8, 강화 6 (중요 2, 비중요 1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임산물 표준규격 (강화 1)

심사내용 **임산물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강화

- 임산물(버섯, 산나물, 약초 등) 표준규격품의 포장지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후 섭취를 권장하는 문구 표시 의무화

심사결과 임산물 소비자가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잘못된 조리방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안전사항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한 점, 기존 포장재 소모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점, 타법사례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설정** 신설

- 도시숲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업무규정 등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설정

심사결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으로서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등의 사유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산림교육법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지정기준 등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의 준수가능성도 확보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사유 설정** 신설

- (지정)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으로 지정가능(전담인력 1명 추가 필요)
- (기준)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신설되면서 인증제도를 전담하기 위한 모범도시숲등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을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과도한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타법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인증기준 및 행정처분 사유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등 품질인증 기준 마련** 신설

- (신설 품질인증 품목)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임업용 귀덮개, 휴대용 소형윈치, 수실류 수확기,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산불진화용 방염장갑,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 산불진화용 방염텐트, 산불진화약제

심사결과 입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에 비해 임업기계는 품질인증만 받도록 하여 완화된 규정인 점, 독일·오스트리아 등 해외사례에서도 도입 이후 재해율이 감소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던 점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강화** 강화

-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판매·유통 시 해당 제품의 규격·품질 검사를 해야하는 검사기관의 품목별 품질시험기·분석장비의 목록 및 최소사양 변경

심사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을 반영하여 검사기관이 규격·품질 검사를 수행하도록 동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지정기관이 이미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어 준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신규 구입장비가 불필요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신설

-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 정지

심사결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부정행위 발생 시 당해시험 무효 및 향후 응시제한은 공정한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점, 타법사례에서도 부정응시자 발생 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면적 확대** 강화

- 산지전용 허가신청 면적 2만㎡이상 → 660㎡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심사결과 5천㎡미만의 면적의 경우 해당 면적에 재해 위험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는 점, 향후 면적확대로 인한 검토서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다만, 5천㎡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근거: 자연재해대책법)와 위험요인 파악·저감대책 마련 등 분석 항목·수단이 유사·동일하여 이중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18개월의 존속기한 설정 후 재해영향평가와 차별화되는 재해검토서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의무 폐지를 **개선권고**

심사내용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설치목적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면적 확대** 강화

- 산지태양광발전시설 설치목적 산지일시사용 허가신청 시 기존 면적 2만㎡이상 → 全면적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심사결과 5천㎡미만의 면적의 경우 해당 면적에 재해 위험을 검토하는 제도가 없는 점, 향후 면적확대로 인한 검토서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다만, 5천㎡이상의 경우 재해영향평가(근거: 자연재해대책법)와 위험요인 파악·저감대책 마련 등 분석 항목·수단이 유사·동일하여 이중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18개월의 존속기한 설정 후 재해영향평가와 차별화되는 재해검토서만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의무 폐지를 **개선권고**

(7) 산지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되는 기간 확대** 신설

-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 → 1년으로 확대

심사결과 법 위반 사유 발생 시 허가 취소·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중처벌을 위한 기존 6개월의 기간은 누적 위반행위를 가중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최소 1년의 가중처분 기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골재채취법 등 타법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가중처분이 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가나 신고없이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신설

- 외부토석을 신고없이 반입하는 경우 등 위반횟수에 따라 1차위반 중지→2차위반 허가취소의 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허가 외 외부 토석을 불법 반입하여 쇄골재용 토석으로 가공·반출하는 경우 허가의 주된 목적이 전도되고 소음·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므로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 위법 사례인 불법채취보다 법 위반의 고의성이 명백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산림보호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예외조항 삭제** 강화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예외사유 축소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상 농촌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사문화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산불 방지를 위하여 소각 대신 수거·파쇄 등의 대안을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제재처분이 필요하고, 산림보호법 등 타법사례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인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 없는 점,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유추가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신설

- “평가계획 미수립·양성과정 부실운영”한 경우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실태조사 결과 양성기관의 평가계획 미수립 등 운영 전반에 위법하게 운영되는 점을 시정하고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위해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적·가중적으로 제재처분을 규정한 점, 타법사례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제재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촌진흥청

집필자 • 김찬일 주무관
Tel. 044-200-2421, kci3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치유농업법 등 총 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8	신설 7, 강화 1 (비중요 8)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치유농업사의 응시자격 설정** 신설

- (1급)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및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과정 이수

심사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고, 치유농업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수는 많으나 체계적인 교육 및 자격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점, 등급을 나누어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 점, 타 분야의 조련사,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기준인 점 등을 종합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기준 마련** 신설

- 치유농업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치유농업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신설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양질의 치유농업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하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일정수준 이상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고려되고 있는 양성기관 지정 후보 기관이 대부분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지정기준을 보완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설정** 신설

- 지정받은 날부터 ① 1년 이내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결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양성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제도정착을 위하여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로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설정** 신설

- 치유농업사 자격기준(1급/2급)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이론/실습)을 설정

심사결과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할 목적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제도와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양성과정의 교과목과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시험과목을 일치시켜 전문성을 제고하여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신설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심사결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제도의 기반이 되는 양성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농약의 변경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와 품목을 추가** 신설

- "다미노자이드" 품목에 대해 변경등록을 제한하고, 유해 품목 농약으로 정해진 경우 추가적인 적용 작물 등록 등 변경등록 제한

심사결과 "다미노자이드"는 발암성이 확인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생산이 제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물질인 바, 해당 물질이 포함된 농약의 사용범위 제한을 위하여 추가적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일부 농가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확대사용을 금지한 점, 제조업체 또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기관의 논의 결과 별도 의견이 없던 점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금지** 강화

심사결과 농지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생활환경이나 토양·수질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페놀 또는 페놀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를 비료원료로 사용 금지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비례성을 확보한 점, 토양환경보전법 등 유사입법례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필자 • 연희정 사무관
Tel. 044-200-2420, huijeongyeon@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등 총 2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방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3)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8)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연구실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1)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1.11.26)	개선권고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2	신설 26, 강화 7 (중요 1, 비중요 3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전자파적합성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전자파 측정주파수 대역 확장 및 제품군 신설 등** 강화

- 전자파 장해방지(EMI) 시험항목에 대한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
- 전자파 내성(EMS) 시험제품군을 재분류(기존 4개 → 5개 제품군으로 변경)
- 전자파 내성(EMS) 시험항목에 대한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

심사결과 전자파적합성(EMC) 기술기준 등의 개정을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EMC 기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국제표준을 준용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을 확보하고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5G 이동통신용 무선설비(기지국, 이동국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강화

- 기상위성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기지국·이동국의 일정 주파수대역에 대해 불요발사 조건 추가
- 기지국 ↔ 이동국간 중계 장치의 송신조건 추가
- 이동국의 출력 허용편차의 상한 제한

심사결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반을 사전에 구성·운영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변경된 국제표준에 맞춰 규정하여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SW진흥단지의 세부적인 지정조건 규정** 강화

- 지정시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 요건(▲25인 이상의 SW사업자 상주 ▲조성지역에 관련 시설·기관 존재 ▲기반시설 확보) 충족, ② SW사업자 상호간 및 단지 주변의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높을 것, ③ 정주(定住)여건 확보 또는 개선 가능성 존재, ④ 진흥단지 지정신청 지역에 기반시설 마련 또는 관할 지자체 등에서 추가 조성 및 개선 계획 확보
- 지정 이후 ① 진흥단지 內 SW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 설치하지 않을 것, ② SW사업자와 SW 관련 시설·기관 등을 명확하게 구분

심사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단지 내 SW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SW산업의 발전 등 진흥단지의 조성목적을 고려할 때, 입지요건 및 성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정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신설

- 부가통신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정기적인 조사(기초조사)

- 세부정책 수립의 기반마련을 위한 수시조사(심층조사)

심사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해외나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정보제공자 등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신설

- 일정 기준(법개정 이후 시행령안 마련 추진)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
-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의무이행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한 점, 해외나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방송사업자의 재난·민방위경보방송 관련 준수사항 추가** 강화

- 재난방송 실시 결과 통보시간 명확화
- 태풍 예비특보 발표 시 국민 행동요령 등 방송 의무
- 재난 주관방송사의 수어방송 및 영어 자막방송 의무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 점,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라는 사회적 편익이 큰 점, 해외나 타법 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 연장, 취소 등 관련 절차 및 의무부과** 신설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증특례 지정자의 책임보험 가입 관련 의무 규정** 신설

- 가입사실 증명 의무 부과 및 보험기간 만료일 설정
- 최소 보험금액 기준 및 지급 방식 등 설정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증특례 관리감독 및 결과보고** 신설

- 실증특례 지정받은 자의 실증계획서상 목적 달성 여부 및 실증특례 조건 이행 여부 등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 제출 의무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및 일시적 중지** 신설

- 법 제16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시정명령
- 법 제16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일시적 중지 가능

심사결과 신기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조치불가 취약점 관리 및 재검토 의무 부과** 신설

- 조치불가 취약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
- 조치불가 취약점을 별도로 분류하여 주요시설 보호대책에 증빙자료와 보완대책을 반영하도록 관리방법 규정

심사결과 취약점 분석평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주요시설 관리기관은 매년 이를 진행하고 있어 개정사항에 대한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고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대외비 또는 보안등급 부여 관리 의무 부과** 신설

심사결과 주요시설 관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최소화한 점,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취약점 분석·평가 필수 점검항목 추가·변경** 신설

- 관리적 분야: 정보보호 교육 실시, 운영체제 보안대책 마련
- 기술적 분야: 제어시스템 접근통제 및 복구대응, 이동통신 운영관리 분야 추가

심사결과 추가·변경된 항목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 점, 발생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신설

-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청력 보완·대체, 색상 식별 능력 보완, 음성입력 대체 기능 등

심사결과 접근성이 높은 지능정보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과도하게 제품 생산업체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동 기준에 따라 우선구매 제품으로 검증될 경우, 제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생기는바, 규제 순응 가능성 높은 점, 해외사례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방송법 (신설 1)

심사내용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

심사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적 책무 및 영향력이 큰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한 점, 시행일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방송사에서 이미 설치·운영중이어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설 2)

심사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

심사결과 이용자위원회가 제기한 의견 중 일부만 수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한한 점, 시행일을 유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별로 이미 설치·운영중이어서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IPTV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신설

- 허가조건 위반시 시정명령하되 이를 미이행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심사결과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방송법」에 따라 IPTV와 같은 유료방송인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자들도 제재(시정명령, 허가취소 등)를 통해 허가조건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규제는 유사사업자간 사업 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신설 3)

심사내용 **관리주체(KT)의 통신구 유지관리 등 의무**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통신구의 점검진단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주체(KT)의 관리대책 등 수립 의무**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관리주체(KT)의 성능개선계획 및 실시 결과 보고 의무** 신설

심사결과 피규제자와 협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요건 및 절차 등** 신설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전문인력, 매출액·납품 실적 등의 인적·물적 요건
- 일부 세부업종과 신규 연구사업자(창업 1년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요건을 적용
- 신고요건 미충족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90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사항 미이행시 신고 효력을 상실
- 사업자의 중요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신고업종)이 변경된 경우, 해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심사결과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창업 후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신고요건을 유예하는 등 규제를 차등화한 점,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의 지속적인 증가 및 피규제자는 신고를 통해 정부의 지원·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순응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과조치로 법적 안정성을 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기준** 신설

- 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선택한 인증유형(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에 따라 총 7개 영역 평가(❶식별 및 인증 ❷데이터 보호 ❸암호 ❹소프트웨어 보안 ❺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❻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❼하드웨어 보안)

심사결과 산·학·연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본 인증은 최소한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 제도로, 인증 여부는 물론 인증유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주요국도 규제하는 추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운용** 신설

-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경우는 전담부서 운용, 그 외는 전담인력 2명 이상 운용

심사결과 주요통신사업자 중에서도 높은 가입자 수·회선 수와 밀접한 매출액 1조 원 기준으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운용으로 규제를 차등화한 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은 점,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2)

심사내용 **국내 어선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주파수 편이방식(FSK) 통신규격(대역폭, 신호 전송속도, 신호 구성 등)** 신설

심사결과 국제표준을 토대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규제 순응도가 높은 점, 해외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익수자 위치, 어망 등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율해상무선기기(AMRD, Autonomous Maritime Radio Devices) 규정** 신설

심사결과 국제표준을 토대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수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규제 순응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신설

- 사용자는 일정한 경우 이동체(선박, 모노레일)에 설치된 TVWS이동형기기를 고정형으로 간주하여 출력을 상향(~1W)하되, 기존 이용자(방송사)와의 혼·간섭 방지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 검증 받을 것
-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국립전파연구원 사전 검증 의무를 통지할 것

심사결과 기존 방송채널과의 혼·간섭이 없도록 실증특례에서와 동일한 요건으로 한정 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사전 검증받도록 하며, 사전 검증 필요성을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이 인정되는 점,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변경** 신설

- 사업자는 서비스 지역 범위, 수용 회선 수 및 기지국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하여, 중요통신시설을 A~E급으로 분류

심사결과 등급 기준 관련하여, 재난 발생시 피해 범위, 보호가 필요한 수용 회선 수 및 기지국수 규모, 주요 통신서비스 기능 등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하고, 기준별 등급이 다양한 경우 상위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하여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강화한 점, 등급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 및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안으로, 규제 준수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요통신시설 관리기준** 신설

- 현황관리, 우회 통신경로 확보, 전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통신재난관리 인력 교육훈련, 안전관리 실태점검

심사결과 통신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연구실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 강화

심사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동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다하지 않은 점, 해외 및 타법 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 강화

심사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동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과다하지 않은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강화

-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 보안성이 강화*된 홈네트워크 설치 의무 부과

심사결과 관계부처·학회·협회·산업계 등이 수차례 논의하여 만든 안으로, 안전한 설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망분리 방법을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필요 최소한의 항목에 대해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점,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신설

- (분야) 기간통신사업자 중 회선설비 보유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
- (매출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상장기업 중 연매출액 3천억 원 이상
- (이용자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 (적용제외)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는 자 등

심사결과 공시 의무대상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반대나 이견이 있어 중요 규제로 분류하고, 법 개정시 국회에서 논의된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을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개선권고한 데 대해, 과기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을 상향하고, 적용 제외사항에 전자금융업자로서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를 추가하여 수정. 이에 대해 국회 논의 취지에 따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상향하여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자 일부를 적용 제외하여 이중 규제 우려 완화하고, 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므로,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에 동의**

2 방송통신위원회

집필자 • 연희정 사무관
Tel. 044-200-2420, huijeongyeon@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중간광고 횟수 및 시간(회당 1분 이내) 설정** 신설

심사결과 개정안은 현행 유료방송 중간광고 기준을 지상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수용·반영한 점,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방송서비스나 시청점유 수준이 유사하므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한 점,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 구체화** 강화

- 부당성 예외사유 항목 수는 축소하되 구체성·명확성은 제고

심사결과 개정안이 기존 부당성 예외사유를 포괄하면서도 예외의 구체성과 명료성은 보완되고, 특히 방통위의 최종 인정이 필요한 기존절차도 유지되어 준수 가능성이 확보된 점, 타법·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취해야 할 ①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시행 ②불법촬영물등 신고시스템 구축 ③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심사결과 사업분야·규모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자별 효과적인 유통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신고 기능 및 검색 제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예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학계·전문가 등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타법 및 해외사례 대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식별가능성, 일관성 등)** 신설

심사결과 필요 최소한의 기준만 설정한 점, 학계·전문가 등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원자력안전위원회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원자력안전법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은 원안대로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6)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1	신설 6, 강화 5 (비중요 1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자력안전법 (신설 1)

심사내용 **대형가속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신설

- 대형가속기 등의 사용을 위해 허가받으려는 자는 사용시설 등 설치 착수 전, 방사선 안전성에 대하여 미리 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시설구축 시 착수허가·사용허가 등 단계별 허가방식으로 개선하여 방사선원과 주요 구조물의 설계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여 피규제자의 시설보완·변경 등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방사성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 단계별 허가 관련 연구용역 실시 후 대형가속기 사용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고급관리자 임명요건** 신설

- 미국 ANSI/ANS-3.1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고급관리자(발전소장, 운전실장, 정비실장) 임명요건 내부지침을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실정에 맞게 본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하고 용어를 명확화함

심사결과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서, 국내 운영여건에 맞는 명확한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요건 기준을 제시할 필요에 따른 사항임.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였으며 동 규제 신설에 따라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자가 없다는 점,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임명된 자에 대해 1년간의 특례기간을 적용한 점, 미국 ANSI/ANS-3.1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조장 자격요건 강화** 강화

현행	개정안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자격자로서 조장 교육을 이수한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본 위원회규칙 이외 상위법령상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장 교육은 요건에서 삭제하고, 방사선작업을 총괄하는 조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으로 요건 강화

심사결과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근거가 불명확한 조장 교육을 요건에서 삭제하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조의 관리 및 현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행 경력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며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격을 산업기사 이상으로 상향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 인정. 방사선 작업 현장 방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원자력안전법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 제도 도입** 강화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지정제도 폐지
- 타 시설과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사업지정 체계를 시설 기준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 개편
- 건설허가 신청 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원자력시설 간의 시설 기준에 따른 허가 체계를 일치시켜 안전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한 점,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해외사례 대비 과도하지 않다는 점,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지정을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 제도 도입** 신설

-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해 사업허가·사업지정 체계에서 시설 기준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의 개편됨에 따라 운영허가의 절차, 기준 등을 규정
- 운영허가 신청 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

심사결과 원자력시설의 안전 규제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 시설과 동일하게 단계별 허가기준을 시설 기준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 신설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출 관련 동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수용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강화 1, 신설 2)

심사내용 **운반검사 범위의 확대** 강화

- 국내 운반검사 수검자 관련 핵물질을 인수하는 사업소 기준에서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조정하고, 운반검사 범위에서 누락된 구간 추가

현행	개정안
• 해당 사업소 외의 장소로부터 해당 사업소로 운반	• 해당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
	• 수출을 위해 해당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
•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해당 사업소로 운반	• 수입 후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해당 사업소까지 운반

심사결과 국내 운반검사 수검자 범위를 송화인 기준으로 명확화하여 방호책임을 강화하고, 공백없는 방호체계 구축을 위해 항구 또는 공항으로 핵물질 수출을 위해 운송하는 경우도 운반검사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자력사업자를 대상 설명회를 통해 본 규제의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검사범위에서 누락되어 추가된 구간에 대해서도 상위법상 규정에 의해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규제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 신설

- 핵물질 수출, 수입 및 항구 또는 공항에의 경우·환적 등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물리적 방호계획인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 범위, 신청서 제출기한 등 내용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핵물질을 국제 운송하는 원자력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관련 작성 범위 및 신청서 제출 등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동 규제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고, 해외 및 유사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함.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일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핵물질 국제운송 시 적절한 방호체계를 구비하고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국제 신뢰도 제고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설

-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에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 핵물질을 수입하거나 핵물질을 실은 선박·항공기를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려는

경우 대한민국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국제운송방호계획 검사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심사결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검사이행 의무 준수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및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원자력안전법 (강화 1)

심사내용 **교육훈련 면제 대상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제외** 강화

-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신고사용자의 교육·훈련 의무 부여
- 방사선안전관리자 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신고사용자의 교육·훈련 면제 근거 신설

심사결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기관의 방사선 취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대해 피규제자 작업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동 규제를 마련하였고 해외 및 타법사례 대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훈련에 따라 규제비용 발생이 일부 예상되나, 작업자를 통솔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강화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하여금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했던 정기검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검사 기간 단축

심사결과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사주기 단축 조치이며, 안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피규제자가 규제강화를 먼저 제안한 사항임. 정기검사 주기 단축에 따라 비용 발생이 일부 예상되나 원자력시설 또는 유사 대형시설들의 정기검사를 주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및 타법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방사성물질 관련 재해방지 및 국민 안전 보장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신설** 신설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가능

심사결과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비상진료 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이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국민 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집필자 • 김성수 사무관
Tel. 044-200-2447, kss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6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45건은 원안대로 의결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8)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위원회 (2021.09.10)	원안의결 5	신설 5 (중요 2, 비중요 3)
(9)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1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7)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8)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11.26)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45	신설 32, 강화 14 (중요 4, 비중요 4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안전인증대상 품목 및 그 안전기준** 신설

- 안전인증 대상인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품목으로 '안전매트' 및 '광전자식'을 규정하고, 그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중대 재해방지를 위해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과 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인 '안전매트'와 '광전자식'의

안전인증기준은 기존 안전기준 및 국제표준에 조화된 KS표준을 준용하고 있어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대상 기준 마련** 신설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대상자의 경력기간 및 요건 신설

심사결과 '20.3.31.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침과 사실상 동일하며, 숙련기술법상 타 숙련기술인 선정기준 및 타법(식품산업진흥법)에서의 대한민국식품명인과 비교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보존 서류 대상 확대** 강화

- 보존 대상 서류에 법 개정으로 추가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 추가

심사결과 노사 간 근로조건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규제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서면합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는 것을 내용으로, 타법 사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연속 휴식시간 부여 예외사유 마련** 신설

- 신설·확대된 탄력·선택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에 위임된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 부여의 예외 사유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재난 발생, 인명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1시간 휴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도의 내용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폭발 또는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강화

-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팬, 배풍기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주의 조치의무 명시

심사결과 현행 규정은 조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가 필요한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08년부터 '19년까지 화재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유증기(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것)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48.4%) 한바, 유증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환기팬, 배풍기 등 설치 필요. 기존 규정과 같이 자연적 환기로는 폭발·화재 등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사업주의 신고의무(노무제공자의 매월 보수액,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 등)** 신설

- 보험가입자인 예술인·특고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 △12개 특고의 보수액 매월 신고 △예술인 및 특고가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심사결과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의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주는 특고 및 예술인의 입직, 이직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기에 적정한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설

- 특고 고용보험료 관련 고액·상습 체납자(보험료 등 체납총액이 10억 원 이상)에 대하여 공개대상 인적사항을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0조의4를 준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특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을 경우 건전한 보험 질서를 저해하고 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제재수단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됨. 특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개대상 인적사항 등은 근로자·예술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며, 타법 사례와도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일용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신설

- △추가징수금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증가할 수 있도록 개선 △추가징수액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즉시 납부 확약 대상을 '부정수급액'에서 '반환금·추가징수금'으로 변경 △특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조항 신설

심사결과 부정수급 제재 강화라는 개정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특고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추가징수 조항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감면 기준은 부정수급 횟수와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을 부과하는바, 부정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커짐. 근로자·예술인과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조항 적용 필요. 고용보험법이 위임한 범위(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음) 내에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하고, 고용보험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횟수를 반영하여 추가징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신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신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심사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고용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특고를 고용보험 제도 내로 편입시켜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성 대두. 개정 고용보험법이 '21.7.1. 시행예정이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을 조속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고용보험위는 ①보호필요성, ②관리가능성, ③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 기 적용 직종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재보험 기 적용 직종이 아닌 방과후강사도 포함하였다는 점, 보험설계사 등 13개 직종은 산재보험 기 적용 직종으로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었다는 점, 방과후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였으며, 공공부문의 대표적 특고로 모범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종사자 규모(5만 8천여명)가 크다는 점, 저소득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8)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5)

심사내용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 범위** 신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구체화

심사결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 제정, '22.1.27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의 구체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및 법 적용의 명확성, 이해도 제고 등 고려 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① "급성중독 등"이란 법 취지 및 인과관계의 명확성, 예방 가능성,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 ②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표현 및 경미한 증상 등을 삭제하였으며, ③ 열사병 등 판단기준을 명확화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신설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심사결과 동 규제는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이란 정책 목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① "적정한 예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한 점, ② 법률의 목적과 각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 판단해야 하기에 관계 법령을 일괄 특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탁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며, 입법예고안의 제한적인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법령별 특수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점 등을 인정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간·시기·방법 등** 신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내용·시간 등 규정 △안전보건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된 교육을 20시간 범위 안에서 이수

심사결과 안전보건교육 이수와 관련된 세부 내용 구체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국민 안전 확보 등을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에 대하여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적정성 등 고려할 때,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공표** 신설

- 중대산업재해 발생 時 공표 대상 및 방법 등 규정
  1) (공표내용)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장소 △재해자 수 △재해 내용, 원인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2) (공표기간) 관보 또는 고용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

심사결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를 통한 중대재해 관련 경각심 제고 및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의무 미이행 시 명단공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적정성 등 고려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면자료의 보관 방법 및 기간** 신설

- 제4조, 제5조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심사결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유도 및 자료를 통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와 관련한 서류 보존에 대해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 적정성 등 고려 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고용보험법 (신설 1)

심사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조항 신설

심사결과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하고 고용보험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시 추가징수 필요성이 인정됨.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조항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 추가징수금 부과기준 마련** 강화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의 세부 기준을 마련

구 분	추가징수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심사결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부정수급액의 5배 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한다는 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사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특히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허위체불)에 대해 보다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정수급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반복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노사 공모에 의해 체불을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죄질 또는 횟수에 따라 5배 또는 3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는 점을 볼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사용자 교육의 내용 및 시간** 신설

- (교육내용) 노동관계법령, 인권, 산업재해예방 등에 관한 내용 6과목
- (교육시간) 과목 수(6과목)를 고려하여 6시간 이상(1시간*6개 교과목)으로 설정

심사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교육 6시간 이수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됨.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1회 노동관계법령, 인권에 관한 사항을 6시간 이수하는 것은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신설

-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 등

심사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법에서 위임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에 대한 내용에 국한된다는 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사용자에게 이미 작성의무가 있는 임금대장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을 추가한 것이라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강화

-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축소(15명 이하 → 8명 이하)

심사결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완화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을 축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이 대부분 8명 이하라는 점,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심사결과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종류별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됨. 법상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가하였으나,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금액(1천만 원) 대신 인상률(50%)을 적용하여 상향한 것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이행강제금을 상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 신설** 신설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휴게시설 기준 마련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심사결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길기 때문에 휴게시설 확보와 휴게시간 보장이 근로여건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행정내부지침('20.6월~)으로 운영해 오던 휴게시설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추가부담이 적다는 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적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월평균 4회 휴무일 보장의 경우 대다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규정 신설** 신설

-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사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취소사유를 정비하여 승인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감단 승인기준을 충족함에도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용자가 다시 승인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해야 하므로 취소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1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를 처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도급인의 조정의무 대상 규정** 신설

- 화재·폭발 등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간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8가지 유형의 위험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작업의 혼재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유형, 양태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행령에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중심으로 정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 신설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전보건전문가의 범위를 명시

심사결과 안전보건대장의 적정한 작성을 도모하고 건설공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건설공사 사고사망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해당하여 건설분야에 대한 산재예방 전문가가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개정안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가의 자격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파악, 관계자 면담, 국내외 학술자료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 연구용역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20.1.15 제정, '20.1.16 시행)에 명문화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자격자가 동 제도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로 건설업계에서 통용되는 상황이라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변경 요청대상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과 동일하게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 변경

심사결과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을 통일하여 피규제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설계변경 요청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필요최소한이라고 판단되므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강화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을 포함하여 14개 직종으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중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제외한 4개 직종을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으로 추가

심사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5개 직종(①방문판매원, ②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④화물차주(4종), ⑤소프트웨어기술자)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종사자에 포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바,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이들을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이 중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한 직종의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그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 신설

- 부정수급자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부가금 세부기준을 마련

구 분	추가징수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1호)	취소금액의 5배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호)	취소금액의 2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2호)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2호)	
위 2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취소금액의 5배

심사결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받은 경우와 목적 외 사용 등을 한 후 5년 이내 반복 위반하는 경우 취소금액의 5배를 환수하고, 임의매각·훼손·분실·국외이전 등 보조·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취소금액의 2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는 점, 타법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규정** 신설

-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시작 전 확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달비계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의무 명시)

심사결과 곤돌라형 달비계 기준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달비계 작업 3대 기본안전 수칙이 사고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만큼, 이를 풀어 명시한 개정안은 필요최소한으로 규정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점,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었던 조치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 신설

- 삭제한 일반작업용 리프트 규정을 '산업용 리프트'로 명칭을 바꾸어 복원

심사결과 산업용 리프트 용어를 신설하여 리프트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리프트 사고예방을 위해 종전 삭제된 내용과 동일하게 복원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비례적으로 타당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 강화

- 중대유해물질 취급시 기록·보존해야하는 서류의 내용에 작업자명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의 보존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개정

심사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해당 규제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기록 보존토록 한 규정이 있으나, 정보내용이 부족하여 중독성질환이나 직업성암 발생 시 유용한 노출정보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바, 근로자명, 착용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건여부 등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노출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유해물질 취급 상황을 명확히 기록·보존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장해 추적·관리 및 산재보상에 있어서 중요하며, 기존에 안전보건기준 규칙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에 따라 작성 중인 취급기록 사항에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부담은 없다는 점,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 개정** 강화

-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기준을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 초과'에서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로 변경

심사결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청력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 기준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기준을 90데시벨로 정하였으나, 1일 8시간 미만 작업 사업장에도 90데시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 신설

-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신설

심사결과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취해져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직종별 노무제공 형태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정하였으므로 그 수단이 목적에 비례적으로 타당하여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 강화

- 자체업체 선정일(해당 연도 8.1) 직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자체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고용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사전심사 및 이행확인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므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 정부는 '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절반 감축'으로 목표 설정('18.1. 대통령 신년사)을 하였으며, '21년 자체업체(39개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자체업체 선정일(해당 연도 8.1) 직전 2년간 사망사고 1명 이상 발생 업체(20개사)를 제외하면 19개사(48.7%)가 자체업체 해당하는바, 사망사고 절반 감소를 위해 자체업체 선정일(해당 연도 8.1) 직전 2년간 사고사망 1명이상 발생업체를 자체업체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신설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 미이행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전산등록된 안전보건관리 상태보고서의 주기적인 확인 및 개선으로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質 관리 제고를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제조·서비스업 등)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업)은 위탁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이 유사하며, 해당 기관의 수행한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공정성·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행정처분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타법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직업상담원 채용제도 개선** 강화

-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민간직업상담원 응시자격 등 개선

심사결과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수시채용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원 채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됨. 직업상담 관련 지식 보유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인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필기시험 실시는 고비용 및 운영부담이 있어 직업상담원 결원 시 즉시 충원이 불가하며, 필기시험과목도 직업상담사 시험과목과 중복되어 효용성이 낮아 필기시험 축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은 고용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상담과 거리가 있어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상담사로서 필요한 인·적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검사를 채용과정에서 실시하여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 강화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정보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출

심사결과 현재 '기숙사 시설표'는 문서로 전달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정확한 기숙사 상태 및 정보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거시설의 상태를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 사용자가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해야 하는 7가지 주거시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주거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7가지 주거시설 시각 자료를 사진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1호)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2호)되는 자로 하되, 공단이 1호와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제출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소속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 계획을 작성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보험법 제75조의2 제1항은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장기요양에 대해 정해진 정의는 없으나, 무장해 요양종결자의 요양기간을 볼 때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학생연구자의 범위** 신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규정

심사결과 근로자와 순수 학생 신분 사이에 놓여 있어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큼에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전체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생 중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되, 모든 학위과정 학생과 휴학생·수료생도 포함토록 규정하여 연구실험 과정에서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하고,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하기 전이더라도 학기 시작 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규제수준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개별실적요율 제도 개선** 신설

- 원·하청 책임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 사고 다발 대기업의 개별실적요율의 인하 비율 조정

심사결과 원하청 책임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관련, 산재 예방 및 재해방지 노력에 대한 적정요율 책정이라는 개별실적요율의 본래 취지 고려 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하청재해의 책임을 원청 요율에 반영한 본 개정안에 대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사고 다발 대기업의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관련, 사고사망발생(중대재해)을 예방하려는 법 개정 취지 고려 시 개별실적요율 인하 비율 조정은 불가피하나, 이에 따라 사고 다발 대기업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발생하는바, 본 개정안의 인하비율 조정수준은 유지하되, 원청의 산재 예방 노력 유도 등 제도의 실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것을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개선권고**

(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 범위** 신설

- 고용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규정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 관리·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기존 사업주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 범위** 신설

- 고용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규정

심사결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피보험자격 관리·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기존 사업주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강화

-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제도 개선

심사결과 장기화 되고 있는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산재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신청서 접수 통보시 사업주 의견제출 기한(10일 이내)이 삭제되더라도 사업주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기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견개진 가능하다는 점, 공단은 현행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 및 산재보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장 현장조사 또는 서류·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의견제출권은 보장된다는 점, 공단은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재해조사시 사업주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는 점,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기준**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기한 및 작성항목을 규정

심사결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단은 사업주의 직장복귀 이행 지원을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 및 근로자의 정보,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능 여부 및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 사업주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원직장 복귀시 근로자 수행 예정 직무를 예상하여 근로자에게 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등을 준비시킬 수 있는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소속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당연의무에 해당하며, 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바, 공단은 사업주의 직장복귀 이행 지원을 위해 재해발생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능 여부 및 사업주 지원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신설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사유 규정

심사결과 산재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재활치료 및 직업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재해근로자의 원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필요성이 인정됨.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직업환경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병원은 67개소에 불과하여 2개 분야 전문의가 모두 재직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정신청 의료기관이 제한되는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점, 2인 이상 전문의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직업복귀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1명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전문의 부재시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산재근로자의 불편이나 직장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 2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므로 전문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재활치료 및 작업능력평가를 위한 장비는 환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준이라고 판단되는 점, 의료기관의 신청으로 지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명단공표 기준 의무고용률 상향** 강화

- 공공기관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의 기준이 되는 고용률을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 미만으로 상향하고, 판단 시점 또한 전년도 12월에서 1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선

심사결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명단공표 기준을 엄격히 하여 적극적 고용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에 80%만 달성해도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의무고용 노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이행지도 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노력을 기울인 곳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의무고용률 100% 미만 공공기관을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될 경우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일부 시점의 고용률만으로 공표여부를 판단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되어도 사전예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전에 장애인 채용 후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용률 조작 행위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바,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공표 기준율에 미달될 경우 사전예고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환경부

집필자 • 김수정 사무관
Tel. 044-200-2443, crystalkim@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지하수법 등 총 7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6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2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1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에 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2)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0.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심사 (2021.04.2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신설 3, 강화 2 (중요 1, 비중요 4)
(1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심사 (2021.05.28)	원안의결 3 (부대권고 1)	신설 1, 강화 2 (중요 1, 비중요 2)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본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28)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0)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7)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본심사 (2021.09.10)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7)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0)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5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5)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6)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8)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1)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3)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7)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9)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14	신설 82, 강화 34 (중요 4, 비중요 11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변경** 신설

- 호가 스프레드 및 호가 제출시간 기준 상향, 거래체결 가점 변경, 가격변동성 확대기간의 평가기준 변경 등 평가기준 강화 및 신설

심사결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시장현황에 맞추어 배출권거래시장 호가 공백을 해소하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활동 경과(평가실적, 시장조성자 의견)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배출권시장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외부사업인증 유효기간 설정** 신설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쇄배출권을 누적하여 일시에 배출권 시장에 유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외사례(EU는 4차 계획기간('21년~)부터 외부사업 실적을 사용하지 않음)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 수립** 강화

-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20년 기준을 '22년까지 유지하고 '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

심사결과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산구조 친환경적 개편, 연비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절감 등의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국제동향, 미래차 보급동향, 기준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기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에 비해서도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 변경** 강화

- 공제조합·보증보험사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를 확대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가입하도록 명확화

심사결과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사전에 처리이행 보증금을 적립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로 예산(국비, 지방비)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폐기물은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의 비용으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보증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외에서도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유사한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지하 역사 내 표출장치 설치** 신설

-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자가 많은 지점에 별도의 정보표출 장치(모니터 등)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역사 내 공기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

심사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 취지(지하역사 PM2.5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에 부합하고, 지하역사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해당 공간의 공기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 신설

- 건축자재 제조사이면서 동시에 시험기관인 경우, 자사 제품에 대한 방출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의 방출시험 완료 후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준수사항 추가

심사결과 현행법상 시험기관은 자사 제품에 대한 방출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방출시험 관련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보완·개선의 필요가 있고, 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규제수준을 설정한 것으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강화 1)

심사내용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강화** 강화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을 상향(75%→90%)

심사결과 '97년부터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침을 제정·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5년간('15~'19)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연간 평균 석탄재 재활용률은 발생량 대비 93%에 달하여 재활용 목표율(75%)을 크게 상회하여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환급제도 등 피규제자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신설

-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의 출입제한기간 연장

심사결과 해당 습지의 원형보전과 훼손 방지를 위해 단순 탐방목적의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금지를 규정하는 국내외 유사사례와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대서양연어 1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 등 규정

심사결과 어류인 대서양연어(Salmo salar)는 토착종과 먹이경쟁,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우려, 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어 위해성 2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관리 및 국내 발견 시 방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기준과 방법** 강화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서 전기자동차 폐차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기준과 방법을 제정

심사결과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해체시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분리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긴요하고, 현재 사업장 매뉴얼 및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 강화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서 전기자동차 폐차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방법을 제정

심사결과 전기차 배터리는 에너지 고밀도의 리튬이차전지로 외부충격, 수분노출, 고온노출시 감전, 누전, 합선 등에 의한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이 필요하고, 중국 등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수출입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 신설

- 폐기물수출입자가 계량값, 수출자의 경우 수입국 통관 전 정보(선박명, 수입국, 선박명, 통관일) 등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폐기물 불법수출입은 사후 적발시 국가간 분쟁,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 전까지의 유통이력 관리가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컨테이너별 사진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피규제자들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증금 예탁 및 보증보험 가입 관련** 신설

- 보증금 및 보증보험 보험금액 산정방법, 계약 및 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후 행정청의 반출 또는 반입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를 대집행함에 따른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반영하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변경제출 등** 신설

- 유독물질도 취급수량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유해화학물질별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을 구분(1군·2군)

심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0.3.31)되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면이 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조사** 신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대상(신규 영업허가 대상 시설, 3년 내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위법한 사실이 있는 시설 등)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

심사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획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비상대응 체계, 주민 보호대피 등 지자체와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검토협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신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시설(1군)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정기 이행점검)하는 주기·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다량 취급자(1군)는 소관기관이 1년 주기로 서면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전 확보를

하면서(현장점검은 일부 완화) 특별 이행점검으로 보완하는 등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신설

- 매년 홈페이지(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게재 외에 개별설명·집합전달·서면통지, 지자체 전달을 통한 고지 등 오프라인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지하는 방식은 취급물질의 종류·위험성 등 관련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로 주민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이고, 기업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피규제자 부담이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세부기준 및 내용** 신설

- 인명피해, 화학물질 유출·누출량, 인체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15분 이내 즉시 신고와 긴급한 사유 등으로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고기준을 구체화하고, 화학물질의 유출·누출량이 극소량이고 인명·환경피해 없이 방제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를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심사결과 화학사고는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화학사고 발생시 골든타임(30분, 신고 15분, 출동 15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즉시 신고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자체규개위원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하였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신설

- 시설 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신청서,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계획서, 지형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면적이 허가받은 면적의 100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

심사결과 해외사례(일본)에서도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유사입법례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변경허가 및 허가 대상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이며 제출서류는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신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이익금의 배분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제정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반입수수료, 운영이익금의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유사입법례(폐기물관리법)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에 따른 규제 비용 또한 1개 시설 당 연간 50만 원 이하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신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매립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기간 시설을 운영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 위반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설치·운영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이 필요하고, 해당 규제가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위반사실의 공표** 신설

-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실 공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반 일간신문) 및 내용(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를 한 자,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규정

심사결과 공표내용을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현장조사 대상시설** 신설

- 기업이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및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시설 규정

심사결과 종전 제도(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서도 현장조사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점과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최대보유량 산정 및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마련** 신설

- 유해화학물질별 상위·하위 규정수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1군·2군·면제)과 영향범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물질량 산정 방법 신설

심사결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성수준 판단을 위한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및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을 제시하며 각각 해당설비의 특징 및 성상을 고려한 점과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 환경공단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 추가** 신설

- 1회용 컵 보증금 부과대상에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커피 등 음료류를 판매하는 사업자(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 매장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자발적 참여 사업자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중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규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모든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현저히 넓고, 자발적 참여사업자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률 위임범위 일탈 여부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규모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발적 참여 사업자의 경우 법령 체계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규모·업종을 합리적으로 한정하도록 **개선권고**

심사내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절차** 신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허가를 위한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제출서류와 적정 여부 검토사항 등의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사용량이 증가하는 1회용 컵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불가피하게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대책으로 보증금제를 도입('20.6.9)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라스틱 제조업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에 추가** 강화

-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자(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자)를 추가

심사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국내 재활용 체계 활성화 및 관련 업계의 선제적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있는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원료사용 의무를 부여하므로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 추가** 신설

-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우산 비닐 사용규제를 위해 해당 품목을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

심사결과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 및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에도 빨대 및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활용 의무대상제품에 발광다이오드조명(LED) 품목 추가** 강화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의 종류에 발광다이오드조명(LED)제품(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제품에 한정)을 추가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을 신설

심사결과 발생량이 급증 추세인 폐LED조명의 단순폐기가 아닌 적정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크고, 회수체계 시범사업('20.4~10월)을 통해 LED 배출·수거체계 운영가능성을 입증한 점, 주로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내조명" 중 전구형·직관형·평판형에 대해 우선 도입한 점, 재활용기준비용을 형광등의 재활용 기준비용보다 낮게 설정하여 생산자 부담을 완화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양성과정의 등급별 교육과정의 기준**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1급 및 2급에 대한 총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이수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수도법 시행령에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을 고시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수관망의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과정을 규정하였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양성과정의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 내용(1급 및 2급 과정 평가의 문제형태, 출제범위, 평가시간, 문항 수 및 합격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교육대상자가 직무역량 확보를 위해 양성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타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 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재질·구조 외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기존 포장재 규제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과대포장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등에서 결정되고 위반시 불이익처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규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에서 낮은 두께 및 포장 무게비율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기준 준수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포장재의 재질별 사용비율 설정** 신설

- 플라스틱 용기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플라스틱을 캔·유리·종이 재질로 제품군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심사결과 플라스틱 중에서도 회수·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하여 기존 재활용체계는 유지하고 있는 점, 향후 하위법령 입법 시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 기업의 규모, 전환목표 등을 규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 확대** 강화

- 객실 50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법률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유사업종 및 해외 규제에서도 강화 추세에 있어 일부 적정성은 인정되나 피규제자 수(연간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50실 이상 숙박업(개소수 기준 5%, 호실수 기준 35%로 추정)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장례식장에서 세척이 용이한 수저류('22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도입 예정으로 수용성을 높인 점, 배달음식점의 경우 유사업종인 식품접객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다만, 장례식장의 경우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문제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권고**)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1회용품 규제대상 시설·업종 및 신규 품목 추가** 강화

- 종합소매업·제과점은 현재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고, 음식점·주점업을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추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매장 내 사용억제 품목으로 추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억제 품목으로 추가하고, 대규모 점포에 우산 비닐을 사용억제 품목으로 추가

심사결과 품목 및 준수사항 관련 피규제 사업자와 이용객을 감안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이고 피규제 기업의 1회용품 대체에 따른 추가비용과 비닐봉투·쇼핑백 구입에 따른 일반국민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균등순비용이 100억을 상회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해외에서도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해외 대비 1회용품 사용량, 1회용품의 대체방안, 소비자 인식 및 준수의사, 규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규제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다만, 규제업종 및 업종별 규제품목, 규제수준 설정 관련 정량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한 바, 업종별 규제품목 사용 추이에 대한 통계 구축 등 정책환류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권고**)

(22)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강화 1)

심사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강화 및 실적 산정방법 변경** 강화

- 강화된 차기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 추가에 따라 실적 산정방법을 신설

심사결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도의 현행 기준('20년)이 만료함에 따라, 차기 기준 수립과 실적 산정방법 현행화가 필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준수 가능한 수준의 보급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대부분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금지**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처리 금지 규정 추가(다만, 매립시설은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 금지)

심사결과 과다소각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입법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 유사입법례에서도 100분의 30을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보고 있는 점, 해외사례의 10%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올바로시스템 입력대상 확대** 강화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를 구체화하고,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현장정보(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관리를 통해 반복되는 폐기물 불법 방치·투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인정되고,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의 범위 및 규제대상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최소한으로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관·매립 중 폐기물 관련 화재예방 조치 구체화** 신설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모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화재예방조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화재예방조치 내용은 현재 旣 시행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규 규제 발생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 점, 행정처분기준의 경우, 유사한 유형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 유사한 점, 경쟁·중기·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신설

- 전기차 폐배터리를 수집·운반 및 보관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고, 전기차 폐배터리로 재사용 제품을 제조하려는 재활용업자는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등을 사전에 측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전기차에서 분리한 배터리는 잔류전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외부충격, 마찰, 단전 등에 의해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집·운반 및 보관시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인정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의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제출**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설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설치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설치비용 조달계획 등)을 규정

심사결과 사업자의 내실있는 설치계획 준비와 행정기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의 다른 설치계획 승인 내용,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준** 신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도가 도입('21.1.15, 법률 개정)됨에 따라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기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마련하고,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등의 변경등록사항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고, 유사입법례의 대행업 기준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승계·폐업 절차** 신설

-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필요 서류를 규정하고,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절차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의 대행업도 등록제 형태이며, 등록절차와 서류 제출의무 등이 다른 대행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의무** 신설

- 통합허가서류 보전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대행실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대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해 평가 신청 절차와 구비해야 할 서류를 규정

심사결과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영업수행능력 요청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의무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예외적 재대행 범위 등** 신설

- 통합허가 대행업무 중에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측정, 배출·방지시설 설계도 및 공정도 작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 조사 등을 재대행 가능토록 규정하고, 대행업자가 재대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발주자(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통합허가대행업 도입 취지에 맞는 재대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유사 입법례(환경영향평가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현재 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의견(재대행 가능 업무범위)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통합허가대행 기술인력 교육** 신설

-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전문기술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기관의 기술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결과 보고 의무를 신설

심사결과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계속 발전하는 최적가용기술의 적용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통합허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3년마다 보수교육)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 통합허가관련서류의 거짓·부실 작성, 대행업 등록기준 미비, 재대행 금지원칙 위반 등에 대한 처분 기준마련

심사결과 대행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사입법례(환경영향평가업)를 준용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규정하였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환경보건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납) 강화** 강화

- 도료나 마감재료(벽지, 시트지 등)에 함유된 납 안전기준 강화(現 0.06%에서 0.009%로 강화)

심사결과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리사각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영유아의 혈중 납 농도는 미국, 캐나다보다 높았으며, 규제 수준도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와 비교해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납 관리기준 강화의 적정성이 인정된 점, 이해관계자 공청회 결과 개정안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프탈레이트류) 강화** 신설

- 합성수지(고무) 재질 바닥재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7종) 대상, 총 함량을 0.1% 이하로 규제하는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조사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변중 프탈레이트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점,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서도 프탈레이트류 사용을 금지하거나 0.1%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공청회 결과 개정안에 대부분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신설

- 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사항('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품명'이 바뀌었을 때)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에 비해 변경신고 사항 및 제출서류 등 절차가 과도하지 않고, 본 규제가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신설

-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이동식 가설건축물 형태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오수의 적정처리 및 허가받은 농막의 용도폐지 시 1개월 이내 철거 및 원상복구를 규정

심사결과 농막 설치기준의 세부 내용은 「자연공원법」,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인용하거나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각 조문별 적정성이 인정되고,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 신설

- 종이팩, 페트병 및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등에 他재질이 혼합 또는 부착(도포·첩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도포·첩합마크(♲)'를 표시하도록 도안 변경

심사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 표시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하여, 선별·재활용의 효율을 제고하고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에서도 재활용 불가한 경우 표시를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과 기술영향평가 및 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신설 4)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윤활제 품목을 신규 지정하여 윤활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품목, 제품명, 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윤활제는 유해물질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우려됨에도 어느 법령에서도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해성평가 결과 및 시험분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대 등 강화** 신설

-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기준 도입당시('14~'15)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장감시, 실태조사 등 주기적인 제품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재설정(함량제한물질 추가, 사용가능 주성분 기준 재설정 등)

심사결과 연구용역을 통해 총 31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성 재평가 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품목별 물질을 안전기준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술영향평가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확대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균제 내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용도를 추가하고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쉽게 사용 및 노출되는 제품으로 흡입, 피부부식성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 방출되고 있어 관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위해성평가 결과 및 시험분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강화**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세정제 2개 문구, 살균제 7개 문구 추가)

심사결과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용상 주의사항 및 형광증백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기술영향평가 의견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나노물질의 시험자료 추가 제출** 강화

- 나노물질의 등록 신청시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에 대한 시험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나노물질의 경우 일반화학물질과 같은 분자식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입자크기, 모양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인체·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나노물질의 정확한 유해성심사와 공급망내 하위사용자 등이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시 나노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에서도 나노물질에 대한 제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운행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제도 신설을 위한 인증시험방법 추가** 강화

- 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시험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고, 운행 이륜자동차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제도 신설을 위한 인증시험방법을 추가

심사결과 이륜자동차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높고(CO 16.6%, VOC 6.3%),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 이륜자동차 교체용 촉매(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신설규정이 각각 타당성을 갖추었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 관리기준** 신설

- 현행 용광로 관리기준에 부재한, 보수 시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의 관리기준(공정개선(브리더 개방시 관계기관 보고, 미분탄 투입 조기 중단, 풍압 조정 등), 불투명도 기준 설정·관리, 연간 먼지 배출량 총량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용광로 보수를 위한 휴풍 시 용광로 폭발 방지를 위해 평상시 닫혀 있는 안전밸브를 개방해 용광로 내부 가스를 배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이며 도입하려는 관리기준이 해외 규제 대비 과도한 수준이 아닌 점, '19년부터 업계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용하는 개정으로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수은전용용기 기준 설정** 신설

- 수은전용용기의 재질, 크기·용량, 안정성 등에 대한 기준 설정

심사결과 수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수은전용용기'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 등을 통해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피라냐와 아프리카발톱개구리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수입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퇴치·제거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생태계에 외래생물의 확산 및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브라운송어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사육 및 방출·유기 등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및 그 밖의 교육, 전시 등 목적일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해당 규제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수입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퇴치·제거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생태계에 외래생물의 확산 및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설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지정서 발급 및 공고, 지정해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심사결과 법률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용한 점, 중기·경쟁·기술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신설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일반적인 의무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반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확인 후 필요시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및 교육 실시 조치 등을 하도록 역할 부여

심사결과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며,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업무처리절차 마련 대상을 정하고 있는 원료·제조물 관련 별표 5 제12호 규정(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해 적용 범위의 확대가능성을 유지하되, 규정의 명확성이 제고되도록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조건 부여** 신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시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한 허가조건 부여시 고려사항을 구체화(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사결과 대기 배출시설의 허가시에도 허가조건 부여를 통해 주변 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 등을 위해 시설의 입지 여건, 사업장의 배출 특성 등 상황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미미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에서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구체화** 신설

-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또는 배출 억제를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심사결과 행정처분 부과에 따른 사익 침해보다 대기질 개선, 국민건강 보호 등의 공익이 크므로 이익형량 측면에서 적정한 점,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진주상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별도 배출허용기준 설정** 강화

- 진주상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설정(“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TOC 배출허용기준을 160mg/L 이하로 설정)

심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진주상평산단 내 입주업체의 특성, 폐수발생량,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TOC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업종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종 사업장 3개소로 최소화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의하였고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평가 방법·기준** 신설

- 지정요건 및 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검사기관의 운영관리능력 및 시설검사능력 세부평가 항목·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점, 새로운 검사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고시를 적용한 검사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 점, 관련 규정 및 제도 설명회와 행정예고기간(5.7~5.31)동안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사후관리 현장평가 및 보완조치 결과 제출** 신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7에 규정된 검사기관 정기점검에 필요한 현장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기관 사후관리 시 발생 된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정기적으로 환경부의 점검을 받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됨('20.11.27)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검사기관 지정 시 받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 점,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대상 업무 추가** 신설

-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 요건(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을 규정하고,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해야 하는 업무로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관련 업무를 추가

심사결과 환경과 금융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입법예고기간(7.19~8.30)동안 환경책임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금융회사, 환경컨설팅회사의 의견 수렴 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 강화

-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리스크 증가로 인해 환경요소를 투자에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ESG 평가를 위한 정보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하지 않은 점, 3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4)

심사내용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청** 신설

- 살생물제품의 제품하자, 건강피해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견 제출의무 대상기관 및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살생물제품 피해 조사,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자료·의견 제출요청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발생 시에도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구제급여 지급기간의 유효기간 설정** 신설

-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5년) 경과 후 구제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건강 피해 수준의 변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갱신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와 해외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점, 소요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진찰요구 및 구제급여의 일시 정지** 신설

- 구제급여 지급결정 시 구제급여 신청자 및 대상자에 대한 진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불응 등의 경우 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들이 진찰요구 대상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진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수준에서 규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진찰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진료비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등 통제장치가 필요한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

- 피해구제분담금 계산식의 변수 산정방법, 체납 시 가산금 산정방법, 이의신청절차 등 분담금 세부 부과 절차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분담금 및 가산금의 산정방법,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 달성에 부합하고, 피규제자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한 점, 이해관계자 및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시장참여 허용을 위한 설비 기준** 신설

-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설비기준 신설(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

심사결과 그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에 관한 고시가 부재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이 불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 거래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중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만 규정하고 있어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지하수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위한 지하층 공사 완료시점 구체화** 신설

-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시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위한 지하층 공사 완료 시점으로 구체화(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의 경우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 공사 완료 시 / 지상 건축물의 경우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시)

심사결과 시설물별 지하층 공사 완료 시점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시점에 대한 혼돈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시설물 준공 전인 지하층 공사 완료 후에 하도록 하여, 이용계획이 설계변경 후 시설물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하수 관련 영업자의 영업실적 등 보고** 신설

- 지하수 관련 영업자는 업 등록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영업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보고는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 입력으로 갈음하도록 함

심사결과 무자격 지하수 관련 영업자로 인한 부실한 지하수 관정 시공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 환경적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국가지하수정보센터)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체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이행 편의를 도모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6개 업종 시설설치·관리기준** 신설

- 1~4차년도 업종(전기업,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업종)에 대한 시설설치·관리기준을 5차년도 업종(도축 등 6개 업종)에도 확대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신설

심사결과 통합허가에 따른 매체 통합적 접근을 통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규정을 규정한 점, 개별법상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체별 허가 통합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 업종별 기술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실태를 반영하고,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6개 업종 오염도 측정조사기준** 신설

- '21년 시행업종(도축 등 6개 업종)의 오염물질 측정·조사기준 신설

심사결과 업종별 배출공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미미하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6개 업종 최대배출기준** 신설

- '21년 시행업종(도축 등 6개 업종)의 최대배출기준 신설

심사결과 업종별 오염배출 특성 및 농도 수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출기준을 설정한 점,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기술을 도입하면 누구든지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배출시설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설정한 점, 업종별 기술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실태를 반영하고, 입법예고 기간('20.12.22~'21.2.1) 동안 제시된 의견은 기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수분측정기 도입** 신설

- 폐지의 정확한 수분함유량 계측값 활용으로 객관적 검수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수분측정기 설치·운영을 규정

심사결과 월평균 국산 폐지의 사용량이 5천 톤 미만이거나 설치 공간이 부족한 제지사의 경우에는 수분측정기 도입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지사의 폐지 수분측정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고시 발령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한 점,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신설

- 법 개정으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도가 도입('21.1.6)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요건(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마련

심사결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규정으로 규제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각종 영향평가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정비** 강화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으로 등급별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환경교육적 소양이 자격 및 교과목에 충분히 반영되고 급수별 기능 분리와 차별화·전문화 등을 도모

심사결과 역량 있는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유사입법례를 준용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연간균등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강화

- 국가자격제도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대상 및 지정요건(교육시설·장비, 교수요원, 운영관리 시설 및 인력, 안전 및 편의 시설 등)·절차(지정신청 및 검토, 지정결과의 알림, 이외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심사결과 환경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관 유형 및 필수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춤으로써 개정되는 자격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미미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지정신청서, 설립 목적, 인력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권자(시·도지사)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처분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심사결과 사회환경교육기관은 국민에게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정·취소절차와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의무 신설** 신설

- 환경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소속기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법인,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교육방법, 교육시간(자격을 취득하여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7시간)) 규정

심사결과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환경 현안, 환경 및 교육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화관리가 필요한 점, 기 배출된 지도사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정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과하지 않은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환경교육 관련 행정제재 처분기준 신설** 신설

-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을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양성기관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기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기후위기 등 환경 현안의 해결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기관,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한 점, 유사 입법례를 준용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 배출시설 추가** 강화

- 비상저감조치 대상 배출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된 배출시설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장 사정을 고려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추가

심사결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 사업장을 TMS 업종 특성, 저감 활동 시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한 점, TMS 부착사업장은 1~3종 중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상저감조치 시 실질적인 저감 효과가 큰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마련 및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추가** 신설

-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을 설정하고, 토양오염 검사수수료를 별표에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동 규제는 다이옥신에 대한 국내 토양 분포실태조사, 선진국의 제도 운영 현황 분석과 위해성 평가 등을 토대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18년에 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지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이 부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 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과하지 않은 점, 기술규제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감리인 평가기준의 구체화 및 정량화** 신설

- 평가제도의 투명성 및 평가대상 감리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인 평가기준을 구체화·정량화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이를 공개

심사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른 감리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나 고시를 통해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개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규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1)

심사내용 **요소수 수급관리 등** 신설

- 요소수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 당일 생산량·구매량·판매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위해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한 정부의 조정 명령이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요소수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을 위반하여 몰수된 요소수를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함

심사결과 동 규제는 '21년 11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 및 국민적 불안감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요소수의 유통 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생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조치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그 긴급성이 인정되고,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점, 이전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사사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 제한** 강화

- 제품의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문구를 고시에서 더욱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해 광고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문구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추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법령은 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 사용 제한' 문구로서 '무독성' 등 4개와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사성 판단을 위한 내용 부족으로 정부의 제도운영 및 산업계의 제도 이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점, 유사입법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규제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미미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하게 반영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공개대상 정보 확대(중점관리물질)** 강화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내분비계 장애 추정, 잔류성·축적성 등이 우려되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관리 중인 '중점관리물질'(672종)을 기본공개 대상에 반영하고, '2020년도 통계조사'('21년 실시) 결과부터 중점관리물질을 기본 공개 하도록 하며, 비공개를 원하는 기업은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중점관리물질(672종) 취급현황의 기본공개가 필요한 점, 기본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공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현저히 우선한다고 판단되며, 사익 침해 보호를 위해 비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비례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녹색혁신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요건으로 녹색산업 등 매출액이 15%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특허 보유 등의 요건을 설정하고 녹색혁신기업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 검토,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며, 시·도지사가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한정된 예산 하에서 선별적 지원을 위해 일반 입주기업과 녹색혁신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마련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과 기업의 성장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표를 설정한 점, 각종 영향평가의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연구소·단체는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사업화 촉진 역량을 갖춰야 하며,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운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함을 규정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및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요건 규정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신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교육과정·내용의 적절성,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보유, 경비 조달 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중소 녹색기업의 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최소한의 신청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경쟁·중기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 신설

- 시행령 제정령안에 규정된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요건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 특허등록증 등) 및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입주기업 중 특별히 육성하려는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 기업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부가 지정서를 발급·관리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고, 지정신청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많은 기업이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신설

- 시행령 제정령안에 규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증빙 서류(연구인력·시설·장비 보유 현황, 관련 운영계획서 등) 및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입주기업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및 심의,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 지정 요건의 부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지정서를 발급·관리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며, 연구기관·연구소·단체의 연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서류 외에 연구개발된 기술 보급·사업화 및 산학연 협조체계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신설

- 시행령 제정령안에 규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증빙서류(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전문교수요원 확보현황 등) 및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

심사결과 녹색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고 지정서를 발급·관리하는 절차 규정이 필요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전문교수요원 현황 외에 교육 운영계획, 운영경비 조달계획, 교육훈련 운영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강화 1)

심사내용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강화

- 방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비용·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 조정(58개 폐기물 종류 중 55개 항목 단가 증가, 3개 항목 단가 동일)

심사결과 폐기물은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기본원칙(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원인자의 비용으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인정되고, '19년 말 기존 고시가 개정된 이후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민불편 해소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102종을 추가 지정하여 수입·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4종의 지정을 해제(생태계교란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상향 지정)

심사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의 국내 반입 단계에서 위해성 심사 등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국내 수입·반입을 차단하여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수입금지 품목 추가** 강화

- 국내 폐기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재활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는 제외), 폐섬유(양모 80% 이상 함유 폐섬유는 제외)의 수입금지를 규정

심사결과 국내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여 재활용시장을 안정화하고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 발생량이 적고 재생 원료 공급을 위해 수입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수입 금지 품목에서 제외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제품 추가** 강화

-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EPR 적용대상 제품에 안전망 등 15개 품목을 추가

심사결과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가 구축되어있는 안전망 등 15개 품목을 EPR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5년 이상 장기간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면서 회수·재활용체계가 정착된 품목의 경우(13개 품목) '23년부터 시행하되, 역회수 등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이 가능하고 업계의 조기 시행 요청이 있었던 2개 품목(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은 '22년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등 시행일에 차등을 둔 점, 2025년까지 매출액 10억 원(수입액 3억 원) 미만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업체에는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 중기 영향평가 결과를 전부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제한물질 신규 지정 및 제한내용 확대·강화** 강화

- 그라우트 용도로는 아크릴아미드를 0.1% 이상 함유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어린이 목재 장난감용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 대하여 납의 함량을 0.009%로 제한하며, 크로뮴(6+)화합물의 함량을 0.1%로 제한하는 용도(제한내용)를 건축용 페인트에서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물질별로 위해도가 높은 용도에서 대체물질·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제한물질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고, 신규 지정되고 제한내용이 확대·강화된 제한물질별로 산업계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조·수입 금지의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점, 기술규제 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밀폐형 공간내 동일시설을 운영 중인 업종에 대한 대표설비 인정요건** 신설

- 반도체 및 표시장치의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대표설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설비로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요건(사고 영향범위를 고려한 별도 안전관리 방안 및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학사고 방지 계획 제시, 유·누출 사전 차단 가능 구조, 밀폐형 구조, 누출확산 커버 설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마련하여 별표에 규정

심사결과 반도체 및 표시장치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표설비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동 규제는 대표설비로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15년 및 '17년부터 정부, 학계, 업계 등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현재의 대표설비 인정요건을 협의하여 기 운영된 제도로 고시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점, 타법 사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변경**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시험방법에 대해 변경 및 삭제·추가(총 11개 항목) 등 최신화 및 현행화(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 정비,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방법 구체화)

심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방법 개선으로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위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는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과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방법,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시험방법 등 공인된 시험방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 달성과 수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후관리 등 제도 보완** 신설

- 자동차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시 검사 의뢰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차량으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기존에 없던 사후관리 시 검사방법을 새롭게 규정

심사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일부 시험 조건 및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행 시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규제 시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술규제 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 보전부담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 추가** 강화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시 종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계수만 반영하였으나, 용도에 따른 지역계수 및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를 함께 반영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생태·자연도 등급별 지역계수를 설정하되 전체 지역계수(용도별 지역계수 + 생태·자연도 등급별 지역계수)의 1/2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적절한 생태·자연도 등급별 지역계수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생태·자연도 지역계수를 입법예고안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한 안에 합의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9)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신설 1)

심사내용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유효기간 연장** 신설

- 국내 촉매제(요소수) 제조사의 원료 재고 부족에 따른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21년1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시장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22년 1월 말까지 한달 연장),

판매처의 구매자에 대한 정보확인·기록 의무 및 구매한 촉매제에 대한 제3자 재판매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규제 완화

심사결과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21.11.11~)으로 요소수의 생산, 유통 등이 비교적 안정화 되었지만, 요소 재고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 재발 시 즉시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점, 비교적 안정화된 요소수의 유통상황으로 불필요해진 일부 규제 관련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일부 규제를 완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신설

-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에 '업무 여유도'를 추가

심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을 예방하고 평가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재대행할 때에 발주자가 해당 업체의 수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기 위해서는 계약현황 및 기술인력 등 업무여유도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미미한 점,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및 평가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강화

- 기초자료 미보존 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경고→업무정지 1개월)하고,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 구분 없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해 동일하게 처분(인정정지 6개월)하고 있어 위반내용의 경중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거짓 작성은 강화, 부실 작성은 현행 유지를 통해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대행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시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모두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행정처분이 '경고'임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및 평가업체의 완화 의견을 수용한 점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강화 1)

심사내용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삭제** 강화

- 식품접객업소(식당,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플라스틱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심사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고,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은 고시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없으며,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약 17%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만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부여점('22년 4월 1일부터 시행)과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강화

-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1차 금속제조업의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T-N 기준을 강화(55이하 → 50이하)하고, 추가 T-N 처리를 위한 유기물이 필요함에 따라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 '음·식료품 제조업(3개), 그 외 업종(6개)'의 별도배출허용기준(BOD, COD, TOC, SS 기준)은 현행유지안보다 완화

심사결과 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현행 유지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 중 전체 오·폐수 배출량의 약74%(폐수량기준 94%) 이상 차지하는 1차 금속제조업체에 대하여 T-N 항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입주업체들의 별도배출허용기준(BOD, COD, TOC, SS 기준)은 현행유지안보다 완화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 점, 규제대상 사업장 및 산단 내 입주업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점, 각종 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수송 목적 포장재 포장기준 신설** 신설

- 제품 수송을 위한 1회용 포장에 대한 포장방법 기준을 마련하여 별표에 규정(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 다만, 최소크기 포장재(우체국 택배 1호)로 수송하는

경우는 포장공간비율 미적용)

심사결과 온라인 시장 확대 및 비대면 소비 증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포장폐기물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 목적 포장에 대한 포장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포장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회 이내 등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추가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며, 관련 업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합의를 도출한 점(유예기간 2년 부여, 사업자 간 수송 목적 포장(B2B) 및 소용량 제품 적용 제외), 기술규제 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기상청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1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상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9)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 4)
(3)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4)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1	신설 10, 강화 1 (비중요 1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규정**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10종(온도계, 강수량계 등)을 명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상측기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를 명확히 하여 기상측기 제작업체 및 사용자인 관측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검정대상 기상측기와 동일하게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를 일치시켜 기상측기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형식승인 대상 측기를 명시하고 있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신설

-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최소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명시

심사결과 개정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상측기에 대한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인력, 설비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타분야 형식승인기관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검정대행기관에 비해서는 '안전성과 내구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 법령에서도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형식승인의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 규정** 신설

-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 형식대행기관의 형식승인 방법 및 형식승인서 발급방법, 변경신청을 받아야 하는 사항 및 그 절차,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 형식승인 처분(시정명령, 효력정지, 취소) 기준

심사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형식승인·변경승인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형식승인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에 대한 절차가 각 조문별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취소 규정** 신설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변경지정 절차 및 지정변경,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설정

심사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이 유사입법례나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 변경 및 내용 추가** 강화

- 기상측기 재검정 신청을 검정유효기간 만료 3일전 신청에서 10일전 신청으로 변경하고, 현장 검정요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기상측기의 검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종이로만 가능했던 신청서를 전자신청서도 인정하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검정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 신청하도록 하는 점, 현장검정시 검정요원 안전보장을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상측기의 검정방법 규정** 신설

- 검정신청을 받으면, 기상측기 검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정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상측기에 대한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한 검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은 시행규칙상 검정방법과 기준에 따라 검정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검정대행기관이 기상측기 검정 시 적용하는 검정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부규정에 비해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신설

- 형식승인대행기관과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최소 형식승인 시설·장비 및 검정설비 요건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중 세부요건에 대해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과 유사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조사** 신설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해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 등 제출 자료들, 출입·조사 시 연 1회 실시 원칙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관계자의 현장참석 의무 등 규정

심사결과 법률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요청자료 및 출입·조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에 비해 요청자료 및 출입·조사의 방법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형식승인 대상측기 세부기준과 형식승인 시험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 신설

-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세부기준, 성능시험 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별표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 대상이 되는 기상측기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형식승인 시험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각 조문별로 적정성을 갖추었으며,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각종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준 규정** 신설

- 일정한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출 것 등)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기준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서도 비영리성, 독립성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형식승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신설

-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고'를 처분기준에서 삭제하고, 법에서 규정한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이 유사입법례의 행정처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8절 교육·문화 분야

1 교육부

집필자 • 이정우 사무관
Tel. 044-200-2436, jwrok64@korea.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5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은 개선권고 하였으며, 2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해산된 학교법인등의 기록물 제출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6.25)	철회권고 1	신설 1 (중요 1)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21.08.13)	개선권고 2, 원안의결 1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계	-	철회권고 1, 개선권고 2, 원안의결 22	신설 24, 강화 1 (중요3, 비중요 2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산된 학교법인등의 기록물 제출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범위 규정** 신설

-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를 정함

심사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내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법인 해산 또는 폐교 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폐교 이후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있음.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기록물 이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경우 자료 유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폐교 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기록물 이관을 도모할 수 있어 입법취지에 적합한 수단이고, 각 호별 세부 항목은 관계기관 및 학교 현장 근무자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6개월

심사결과 현재 감사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통해 제재가 가능하나, 실제 법원 판결은 처벌이 미약(200만 원 이하의 벌금)하여 현행 법령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임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정명령 위반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와 비교 시 처분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됨.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의견은 없었고 경기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다른 규제 수단으로는 감사를 거부하는 극소수 유치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부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강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 보호' 추가
- 학교운동부지도자 급여 및 임용(재임용 포함) 결정 시 고려할 평가항목 추가

심사결과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와 급여 및 임용 결정 시 평가할 사항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사항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 및 임용(재임용 포함)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적은 반면, 기존 '실적과 성과' 위주의 평가로 경시되었던 학생 인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교육현장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신설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 시간,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 (방법)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분리하여 교육 실시
- (시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
- (내용)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그 밖에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심사결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인권교육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인권교육의 시기·방법·내용은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고, 학교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담은 크지 않으며, 교육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안전성평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신설

- 학교 밖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 범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대상

	제정안
〈신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영향범위,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L = H(m) (L=영향범위, H=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높이)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심사결과 도심지 학교시설 주변에 있는 노후건물 환경개선 시 해체공사가 수반되며, 특히 지하층이

있는 기존건물의 경우 위협 요인이 많아 공사과정에서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 및 학교 밖 4m 이내 건설공사의 경우 모두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 경계로부터 4m~50m 범위에서는 교육시설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한정해 안전성평가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고시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공사의 영향범위는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영향범위 산출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유사제도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사 기준** 신설

-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별로 3개의 안전인증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

  ※ ①유치원, ②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③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

- (평가항목) 인증 분야별 평가항목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분야 47개 항목

심사결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지진, 집중호우, 화재, 폭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과 위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한 시설인지 검증하고,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충돌, 끼임,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 및 중금속,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인증 심사기준 제시할 필요성 있음. 인증심사 세부항목 구성이 타 제도(녹색건축인증) 등과 비교 시 타당성이 인정되며, 교육시설 이용자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동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기타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 신설

-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사업비가 지급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 해당 대상자를 3년간 학술지원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그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진흥법상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던 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간 설정할 필요성

있음. 타법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당초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활동을 기재하도록 함

심사결과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활동을 기재하도록 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본 규정은 기존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던 학업중단 예방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 규칙에 기재하여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학교용지법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신설

-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심사결과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 있음.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과 주거용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학교 수요를 발생시키는 주거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하여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타법 사례(오피스텔 건축기준 등)를 적용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용하여 개정안을 수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무시험검정 및 시험검정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 신설

- 교육감 또는 교원양성기관의 장에게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성범죄,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 사회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범위를 '의사의 진단서' 외에 '검진결과 통보서'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법령안에 반영한 점, 타 법령에서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진단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신설

- 현장실습을 표준과 자율로 구분하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경우, 참여 학생의 실습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장학금 형태의 지급 불가

심사결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마련과 지급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직무수행 중심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와 직무교육 중심의 자율 현장 실습학기제를 구분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만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를 적용한 것은 학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실습기관의 직무교육의 요소를 강조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인정하여 실습기관과 대학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됨. 규제 신설에 따른 연간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지만, 발생 비용 모두 정당한 대가로서 학생에게 지급되므로 사회문제 개선효과 등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 실시 시기 및 방법** 신설

- (안전점검 방법) 별지 제2호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교육시설의 장은 연 2회 이상 *(법규정 사항)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별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여 지정된 시설물(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시행령 규정)

- 감독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심사결과 큰 규모의 시설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와 점검항목은 타 법령 및 기존 교육부 지침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하여 설정한 것으로 적정한 수준이고 현재 관련 법령과 관련부처 내규 등에

의해 사립 및 국·공립학교 초중고교와 대학은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성이 인정됨. 약 9.8억 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교육시설 안전 확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방지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 공시항목** 신설

- 유치원 공시정보 항목 중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 '적립금 현황'을 신설하여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연 1회(10월) 공시

심사결과 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 등을 유도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국민 공개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고 사립 대학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신설

-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이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할 때는 9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원소청심사委 결정을 미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개념적으로 선행하는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행기간 설정의 근거가 원상회복 소요기간 및 재임용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되었고, 타법 사례(근로기준법 시행령)와 비교 시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신설

- 교육부 장관 등이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제도 성격상 필수적인 납부기한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납부 의무자가 처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늠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채권미수납 시 후속절차 이행 등 채권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납부기간을 부여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금전납부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사전통지를 실시하는 점, 타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신설

- 교육부 장관 등이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차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부과금액의 상한과 하한이 근로기준법령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이는 교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학등록금 인상률 위반대학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 대학이 법정 등록금 인상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학생 모집정지 및 정원감축 처분

  * (1차 위반) 총 입학정원 3%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심사결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과 그 제재 한도에 대한 개별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하여 피규제자의 행정처분 내용의 예측 가능성, 법 적용의 명확성 및 이해도 등을 높여 규제의 남용과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국내 유사 입법례(유아교육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됨.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협의(안)을 행정처분 기준 수정안으로 개정안에 전부 반영하여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보건교사 배치 기준** 신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대상,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대규모 학교에서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 건강관리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 최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교사 추가배치 필요성이 있음. 보건교사 업무량 분석 결과 37학급 이상·학생수 800명 초과(평균 학급수 36.3)인 경우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므로 '36학급'은 적정한 수준이고, 학급수는 학생수보다 변동성이 적고, 보건수업은 학급을 기준으로 실시되므로 학급수를 기준으로 도출한 점도 적절하며, 해외사례(일본·미국)와도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개정안을 반영하였고, 추가배치 기준 하향 등 규제 강화요구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토의견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시설·설비기준 등** 신설

-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 면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완화 가능

심사결과 공교육 밖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령기의 아동·청소년들의 안전 및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설·설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인정됨. 대안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유사한 대안학교를 기준으로 동일한 교사면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대한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 가능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학생의 안전확보 및 적절한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부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시 제출서류** 신설

-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생정원, 학생명부, 개설연월일, 교사·교지 등본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

심사결과 실질적인 대안교육기관 관리를 위해 학생 및 교지·교사 현황 확인을 위한 정보 확보 필요성 인정됨. 특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취학의무를 위반한 상태일 수 있어, 취학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학생명부 제출이 필요함.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 미운영 중이므로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관할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학생정원, 개설연월일은 유사입법례에서도 요구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됨.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수용하여 제정안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원의 자격요건** 신설

- 교원의 자격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자격과 함께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다양한 자격요건* 제시

* 전문대학 졸업(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1, 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그 외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심사결과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아니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원자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교원의 자질 및 역할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으로 판단되어 적정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재산처분 근거** 신설

-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기본서류(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에 더하여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심사결과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률 위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당 규제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 위원회의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음. 제1호(긴급한 비용 충당 입증 서류)는 교직원 임금 지급, 정상적 학사 운영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 등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임시이사 법인의 특성을 고려, 재량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함. 이에, 긴급한 비용 충당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는 임시이사 법인의 재산처분 허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음. 그러나, 제2호(학교 구성원의 동의 확인 서류)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취지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기 기구가 법인 재산권과 관련된 기본재산 처분을 논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며, 兩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학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률(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기구가 법률상 심의사항이 아닌 기본재산 처분 등 법인업무에 관여하고 동의하는 것은 그 권한 밖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신설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 구체화

①비수도권 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③본인 및 부모 모두가 ①,②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한 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

심사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19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우수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지역 거주 요건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지 못해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부모 모두에게 비수도권(중학교) 및 지방대학 소재지역(고등학교)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거나 규제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서 부모 요건을 제외하거나 부 또는 모에 대해서만 해당 학교 소재지역에 거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지역인재 선발 비율** 신설

※ ①, ②, ③ 모두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 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비율 상향
  (현행) 30% 권고(강원·제주 15%) → (개정) 40% 의무(강원·제주 20%)
- ②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비율 유지**
  (현행) 20% 권고(강원·제주 10%) → (개정) 20% 의무(강원 10%·제주 5%)

*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제주지역의 선발비율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한 10%였으나, 제주대 법전원의 경우 △지원자 수('18년 5명, '19년 2명, '20년 1명, '21년 1명) 자체가 적은 점 △4년제 대학이 2개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 5%로 하향 조정(의전원은 의대로 旣전환)

- ③ 지방 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 선발 비율 신설

*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며,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2개교(부산대, 전남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1개교(부산대)에서 운영 중

(현행) 규정 없음 → (개정안) 40% 의무(강원·제주 20%)

심사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15건의 의견제출이 있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 **중요 규제**로 분류하였음. 지방대학 의·약계열은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현재의 권고비율을 맞추지 않고 있으나, 각 대학이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상향을 통해 의무 선발 비율 충족이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대학 간호계열은 권고비율 충족 여부를 고려할 때 학교별로 규제 준수에 무리가 따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선발 의무 비율을 하향조정 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6개교 중 5개교가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20년 기준)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권고비율 충족 여부 및 지역인재 지원 현황을 고려할 때 학교별로 규제 준수에 무리가 따를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선발 의무 비율을 하향조정 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되며, 학석사통합과정은 3개 전문대학원 모두 '21년 기준 선발비율 40%를 상회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간호계열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지원 및 선발비율 충족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학교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발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것으로 **개선권고**

심사내용 **저소득층 선발방식** 신설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단위별(학과 등)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의 최소 선발인원 신설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신설〉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신설〉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6항――――――

현행	개정안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모집단위별 지역 저소득층등 최소 선발 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심사결과 사회적 취약 계층인 지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의·약학계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입학인원(정원 내·외 포함) 대비 약 2% 수준 이상으로 선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인구 전체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 대비 여전히 낮고, 타법 사례(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규제 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됨.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법령 해석에 따라,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의 반대의견 철회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해소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체육관광부

집필자 • 이정우 사무관
Tel. 044-200-2436, jwrok64@korea.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3	신설 13 (비중요 13)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의무자 지정** 신설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 및 선수관리담당자(체육지도자 포함)와 △체육단체 및 시설

△학생운동부 △학교 및 학원 △의료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 등이 신고의무자에 해당

심사결과 구체적인 신고 의무자의 규정을 통해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필요성 있음. 신고의무자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규정하는 국내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정한 수준으로 판된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수관리담당자 자격요건** 신설

- 법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체육지도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으로 정함

심사결과 무자격 선수관리담당자(일명 팀닥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자격요건 마련할 필요성 있음. 특정한 자격소지자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각 종목·분야·팀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수관리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 확정자 명단공개의 내용 및 방법** 신설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유죄판결 확정자 명단공개의 내용·방법
- (공개 내용)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 (공개 방법) 관보 게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

심사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공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명단공개 내용 및 방법은 경각심 고취라는 규제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명단공개 사실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규제자의 권익보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 정부지원 배제 기간**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독립제작사에 대해 투자와 제작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내외로 규정

심사결과 법률에 신설된 '독립제작사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상위법 위임에 따라 정부지원 및 투자 배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있음. 기간 설정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타법 규정을 참고하되, 방송분야 제작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년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안별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 차등화를 적용한 점 등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내용** 신설

-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내용 규정
- 독립제작사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독립제작사의 시설 및 장비 등

심사결과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시장 성장에 따른 시장 현황 분석 및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책 방향 설정, 업계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독립제작사의 영업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할 필요성 있음. 법 개정으로 '독립제작사 조사'에 대한 특화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의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고, 이를 통해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제작사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됨.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독립제작사 승계 신고** 신설

- 신고 시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

심사결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신고·변경 신고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승계신고 제도 도입, 이에 상위법 위임에 따라 승계 신고의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음. 영업의 승계 신고 도입으로 승계 사유 발생 시 변경 신고 또는 신규 신고, 폐업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고 서류도 승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규정하고 타법 규정과 비교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독립제작사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신설

- 거짓 신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등을 행한 독립제작사에 대한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신고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근거'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타법 사례와 비교 시 처분기준이 과도하지 않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관련 협회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용하여 계도기간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 신설

- 선수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선수들이 훈련 이후에 거주·생활을 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기준 마련할 필요성 있음.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합숙소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없으며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간접 유도할 계획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 합숙소 관리를 위해 일부 비용 발생이 있으나, 그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 신설

- 직장운동경기부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작성하고, 일부 내용에 대하여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심사결과 직장운동경기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도자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마련할 필요성 있음. 상위법 위임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훈련 계획 등의 사전 공지, 단체장과 선수·지도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징계에 관한 사항 등 최소한의 조치사항을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규제로 판단됨. 또한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관련 제재 조항은 없으며, 향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이행을 간접 유도할 계획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가 재교육** 신설

-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2년 주기 6시간 이상의 재교육 의무화
- (재교육 대상 범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교육시간 등)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교육내용, 연기 사유 등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재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재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음. 체육계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피규제집단을 한정하고, 재교육은 2년 주기로 6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육계 폭력 예방 및 인권 의식 향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피규제집단 및 규제내용을 설정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재교육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학교 및 체육 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의 행정처분

심사결과 체육 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재교육 필수 이수를 위한 제재 조치 마련 필요하고,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재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재교육 이수율 제고 추진할 필요성 있음. 피규제집단을 한정하여 체육 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만 재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고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고,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 체육지도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신설

- 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인공암벽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규정

심사결과 '인공암벽장업'을 체육시설법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법에 따른 규제 적용을 위해 시행규칙에 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인공암벽장업에 대한 규제 신설은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체육시설에 대해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온·오프라인 실태조사와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피규제자들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지원금·융자금 회수 사유 추가 및 지원·융자 제한 기간 규정** 신설

- (회수 사유)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로 법률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
- (제한 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는 3년, 나머지 사유는 2년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심사결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규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타법 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청

집필자 • 김성수 사무관
Tel. 044-200-2447, kss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9	신설 8, 강화 1 (비중요 9)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규정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신설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에 신설

심사결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신설

심사결과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 신설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신설

심사결과 시행령에 위임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비구역에서의 허가·신고절차 및 허가사항 등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법의 내용과 동일·유사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강화

- 전문교육 이수대상 확대
- 전문교육 시간·주기 확대

심사결과 업체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는 점, 정기교육의 시간이 증가하나, 원격·자율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며, 자율교육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는 점,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규교육을 자격증 발급 후 1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단축시키는 것은 적정하며, 교육주기에 대한 혼란방지를 위해 정기교육을 5년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도 적정하다는 점,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작성** 신설

- 동산문화재 조사·분석 준비
- 보존과학업자의 동산문화재 조사·분석 수행
- 보존처리계획서의 내용

심사결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절차의 체계화 및 보존과학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고려 시 사전 단계인 조사·분석 및 보존처리계획서 내용과 관련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존과학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19.4월)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同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바, 이해관계자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하여금 실측설계를 하도록 규정하며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신설

- 보존처리 착수 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보존처리 예정 금액별 배치기준 규정

심사결과 보존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보존처리의 전문성 제고, 문화재의 안정적 보존 및 가치 계승, 국민의 문화 향유권 등 고려 시 同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존과학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19.4월)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同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바,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에 대해 同 규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旣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

심사결과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보존과학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화재수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던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다는 점,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던 행정처분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부기준을 정비하였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집필자 • 김이석 사무관
Tel. 044-200-2425, kim2seok2@opm.go.kr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등 총 3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5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0건 중 50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5	신설 4 강화 1 (비중요 5)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위원회 (2021.03.2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8)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21.06.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중요 1, 비중요 1)
(15)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 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9	신설 4, 강화 5 (비중요 9)
계	-	원안의결 50	신설 34, 강화 18 (중요 2, 비중요 48)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수에 상관없이 상담실과 재활훈련실 설치,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 설치, 입원실 면적과 병상수,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 진료실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 설치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일반의료기관 수준으로 개선

심사결과 정신의료기관은 감염관리에 취약한 시설환경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쉬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준용하고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을 두는 등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안전담인력 배치** 강화

-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

심사결과 보안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폭행, 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등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우수한약 등 확인조사** 신설

- 소속 공무원이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 등에 대해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

심사결과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사업이 보조금 목적에 맞도록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내역만으로 실제 친환경 한약재를 원료로 한 우수한약이 시장에 공급되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고 우수한약 사업단은 공모 과정에서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우수한약 사업 승인 취소 등**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한약을 제조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보조한 예산 반환 등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함

심사결과 우수한약에 대한 정책적 육성·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조금 사업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고, 사업승인 취소, 보조한 예산 반환 등을 명문화한 것은 보조금 유용 방지뿐만 아니라 우수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국민 건강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은 규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1)

심사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와 평가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위탁 취소 근거를 정함

심사결과 위탁계약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와 보육서비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규제는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위탁계약시 부정계약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운영 위탁계약의 당연 취소 규정 마련은 국내 유사입법 사례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취소 규정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 강화

- 영유아 2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 단독배치 의무를 두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어린이집은 영양사 단독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심사결과 안산시 소재 유치원 식중독 사건('20.6월) 등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유아 200명이상 보육 어린이집의 영양사 1명 단독배치 및 어린이집 공동활용 배치기준 강화(인접 시군구 5개→2개) 사안은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유사입법 사례인

아동복지법의 영양사 배치기준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제공·관리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 보존식 보관 의무** 신설

- 21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화

심사결과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어린이집 내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급식 관리 규정이 필요하며, 소규모어린이집에 보존식 보관을 위한 냉동고·식기 구입비용을 정부지원으로 보존식 보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했으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관리의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신설

- 어린이집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영유아 등원 중단 및 보육교직원 휴직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규정

심사결과 긴급히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 진단을 우선할 경우, 선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등원 중단 및 보육교직원 휴직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긴급한 감염병 상황시 어린이집이 즉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신설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영유아보육법 개정, '20.12.29)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의 격리의 방법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고, 또한, 감염병 또는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에 따른 피규제 집단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며, 국내 유사입법례나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적정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관리** 신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등하원시 보호자 또는 담당 보육교직원에게 안전하게 인계됨을 확인하는 의무 신설

심사결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등하원시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어린이집원장에게 영유아 등하원시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재원아동의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확보하면서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규제가 필요하며, 신설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영유아보육법 개정, '20.12.29)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등하원시 안전관리 및 인계 확인 수단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사안으로 규제 전보다 미칠 영향은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최소합격 기준** 강화

- 레지던트 임용시험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퍼센트에 미달하는 전공의는 임용하지 않도록 정함

심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공의에게 레지던트 수련기회를 제공하고 레지던트 임용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도별 시험결과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경우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타법사례를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 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일반기준에서 처분기간의 가중·감경 기준을 제시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했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체의 일부 제공 절차 및 준수사항** 신설

- 시체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이용 목적 등이 포함된 이용계획서를 시체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시체제공기관은 지침을 마련하여 공개, 지침에 따른 시체

제공 현황을 연4회 이상 기관위원회에 보고, 시체 제공 내역 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함

- 기증자 등의 식별정보와 제공되는 시체의 일부를 분리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익명화하고 식별정보 보호 방법이 포함된 식별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이 도입 단계로 안정적 추진이 중요한 만큼 제공기관과 연구자가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가 연구계획서에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업무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연구의 적절성 심의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자료이고 타법사례인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에도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절차 등에 있어서 동 규제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및 절차** 신설

- 부검실, 검사실, 시체실, 시체의 일부 보관실, 기록보관실,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도록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함
- 시체 해부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을 책임자로 두고, 병리 전문의로 진단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인력 기준을 정함
-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명칭 등 변경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시체제공기관이 시체 일부를 수집·보관·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부패나 감염병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등 허가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시체제공기관의 현황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관리를 위해 변경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에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의 경우 동 규제 수준의 시설 등 기준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인력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강화

-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64개 항목 공개에서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확대

심사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공개의 대상을 병원급에서 병원급 및 의원급으로, 항목을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급여 표준화와 합리적 의료 선택 보장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8)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 요건 마련** 신설

-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고시 주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후견법인 요건을 신설하여 참여할 수 있는 법인 범위를 폭넓게 설정

심사결과 지역사회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견법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후견법인의 인정 요건 마련은 치매환자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치매공공 후견법인의 사무수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치매공공 후견법인에 대한 기준은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류광고 금지의 기준** 강화

-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방송매체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 기준 확대, 교통 시설 및 수단에서의 광고 금지 확대, 건물 외벽 또는 옥상을 통한 동영상 광고 시간 제한

심사결과 광고매체 등 다변화를 반영하여 주류광고의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류광고 매출 감소에 비해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프랑스 등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감염 예방 교육 내용** 신설

- 손위생, 개인보호구 착탈의, 세탁물 취급 주의사항,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세탁 시설설비의 위생관리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관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손위생 등 교육내용이 감염사고 예방 목적과 부합하고 기존 교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세탁물 운반 기준** 강화

- 세탁물 운반 시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밀폐한 후 운반, 의료기관 내 청결세탁물 운반 시 소독된 운반용기 사용, 운반용기를 덮개로 덮거나 밀폐 등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감염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 특성 상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 세탁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운반 수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과 처리업자에게 세탁물 운반 시 밀폐 등 조치토록 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 규제이고 동 규제 준수를 위해 별도 인력 채용이 필요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인식개선교육 실시 점검결과 매년 공표** 신설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점검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표

심사결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표 방법 규정의 신설은 저조한 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을 유사 의무교육 수준으로 높일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 법률처럼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의 수단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점검 결과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강화

-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 제공으로 인한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 대상 매체에 인터넷 매체 추가

심사결과 대국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포함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라는 면에서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과 차별성이

없으면서 오히려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서 사회적 영향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보육료 수납 시 보호자 설명사항 등 세부내용** 신설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의 권리,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심사결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보호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의 적정한 운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보호자의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이해도 제고 및 보육 서비스 향상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및 보육교사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보육료 또는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 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중상해시 운영정지 또는 폐쇄)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강화(보육료 또는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 시 원장 1년 이내 자격정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영유아 사망·중상해시 원장 및 보육교사 2년 이내 자격 정지)

심사결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한 보육 교직원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로서 보육료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및 어린이집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항목 신설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안전 관리책임 의무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과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기관의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 신설

- 어린이집에서 아래 기준금액 이상의 보육료 또는 필요경비를 부정수급 하거나 보육목적 외로 사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① 1회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 원 이상)

심사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규칙에 해당 기준 신설이 필요하고, 보육료의 부정수급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위반 사실 공표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국내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횟수** 신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심사결과 의료기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급여 현황을 연 2회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현행 연 1회 '자료 제출' 방식으로는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비급여 현황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초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연 2회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심사내용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대상, 인력 기준** 강화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기준에 맞추어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 정비

심사결과 계속되는 의료기관 집단감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할 때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규제자에게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용과 환자 안전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동 규제가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반영된 과제로 피규제자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중앙치매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마련** 신설

-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 조치

심사결과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법적인 설치·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센터의 역량을 유지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정명령 도입은 필요하며, 국내 유사입법례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시정명령 외에는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기준** 신설

-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해 시설, 인력, 조직, 장비 등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각 센터는 암생존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단위 효율적인 암관리사업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업무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합병원 등 상위법에서 정한 각 센터별 기준을 고려할 때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설이나 장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 신설

-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관(법인·단체·시설·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 등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청지원기관 지정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신청지원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세부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신청권자에게 적절한 신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과 기존의 시설·장비도 활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 기준을 설정하여 신청지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및 신청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신청지원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으로 취소하도록 함

심사결과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가 신청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신청지원기관이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청권자에게 적절한 신청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신청지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추진'이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구급차등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에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구급차는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이송수단이므로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실효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등 타법사례에 비해 처분강도가 높지 않고 재허가 신청의 용이성, 감면 규정 등 법률이나 행정처분 일반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정보관리기관 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신설

-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보관·분석할 수 있는 전담인력 확보, 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구비
-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시 복지부장관에게 통보

심사결과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 등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확한 현황 관리와 업계 편의를 위해 변경내용 통보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전담인력 확보와 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은 전문성이 필요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관리, 통합정보포털과 같은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기준이며,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 시 통보하고 지정서를 재교부받도록 한 것은 해당 정보가 기관의 기본현황이라는 점에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강화

- 업무정지 처분 기준의 부당비율 최저선을 0.5%에서 0.1%로 강화

심사결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소규모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부당금액 최저 기준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완화한 점, 복지부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율점검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인 점, 연간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 대비 1%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제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기준** 신설

-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 및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응급의료 인력으로 확보하고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을 1대 이상 배치

심사결과 대규모 행사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갖추도록 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이송수단의 세부기준을 정한 필요성이 있으며, 응급구조사와 의사, 간호사는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응급의료 종사자로 자격이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점, 정기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응급의료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점,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의 경우 개별법 등에 따라 동 규제 수준의 인력과 이송수단을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응급구조사시험 응시제한 기준** 신설

- 응급구조사시험 응시를 1회에서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는 행위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시험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과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하여 동 규제 수준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 법령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2년 간 시험응시를 제한한 반면 개정 법령은 위반의 경중을 반영해 경미한 경우 1회부터 최대 3회까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므로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가 있는 행사 범위** 신설

- 국제박람회, 국제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 지역축제,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는 공연·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등 중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갖추도록 정함

심사결과 대규모 행사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갖추도록 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 행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안전기본법 등 개별법과 혼란이 없도록 행사 규모를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으로 정한 점, 지역축제나 국제경기 등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에서 개별법 에 따라 이미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등** 신설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6의 지정기준인 시설기준(위치, 구조 및 설비, 소방시설 등) 및 인력기준(배치기준, 자격기준 등) 등 을 정함

심사결과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하고 의미있는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적절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춘 제공기관을 지자체가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지정기준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질 높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 확대**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신축·별동증축·전부개축·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 의무 대상 확대

심사결과 장애인 등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 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민간 BF인증 의무 대상 적용 시설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규제 준수에 따른 인증심사 비용 추가 발생(1개소당 약 9백만 원)이 크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안전성 개선 및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마련** 신설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 요건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어린이집으로 기본적 요건을 정함
- 행정제재 처분(보조금 반환, 지원비용 환수명령 처분 등) 또는 벌칙을 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형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지자체장의 조사 시에 어린이집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조, 보육수요, 어린이집 공급,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시 운영비 지급중단 절차 등에 대해 정하고, 지정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규정

심사결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지정 취소 및 운영기준 등 관련 제도의 원만한 시행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으며, 어린이집 폐쇄,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정지, 기타 영유아보육법상 벌칙·과태료를 부과할만한, 중대한 수준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제외·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별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선도하도록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취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전자 검사기관 변경신고 대상** 강화

- 변경신고 대상에 검사목적, 목적에 따른 항목을 추가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목적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검사목적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대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정 인력기준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신규 검사기관의 경우 최초신고 과정에서 변경신고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했고 경미한 사항을 고려해 시정명령 처분을 두어 의무준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조건부 사용 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 강화

-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록 유지, 위해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술 사용 중단,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술 사용 중단 가능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거나 일정 조건에서만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부작용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선진입을 확대하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를 위해 '부작용 보고 의무', '중대한 부작용의 경우 의료기술 사용중단 조치', '미보고 시 기술사용 중단 검토'는 필요최소한의 사후 규제 수단이고 이미 고시나 지침 등에서 부작용 보고 의무 등 일부가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5)

심사내용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신설

- 유전자검사 목적 및 항목에 따른 설명 및 동의, 검사대상물 처리의 적절성 등 숙련도 평가 사항과 대체 가능한 실적 제출자료 규정
-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 요청과 제출기한 통보, 불응 시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신고된 목적별 검사항목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제도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검사 목적 및 항목에 따라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평가 면제 조항을 두어 평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점, 종전에도 정확도 평가를 받고 있어 준수 가능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기준 및 절차** 신설

- DTC 유전자검사 인증 대상, DTC 유전자검사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인증을 위한 유전자검사기관 역량평가 기준, 인증 및 재인증 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DTC 유전자검사 제도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 재인증의 기준과 절차,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숙련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항목 관리** 신설

- 검사항목 허용 및 임시허용, 검사대상자 제공정보 사전 제출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

심사결과 DTC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항목 오도 우려 여부, 미성년 검사대상자의 관리 및 보고방안 등 최소한의 심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항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 심의의 특례를 둔 점, 조건부 임시허용과 재평가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내용 및 방법** 신설

- 유전자검사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업무 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함

심사결과 법률에서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를 정한 만큼 교육대상과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업무의 종류에 따라 교육주기를 2년과 3년으로 차등화한 점, 비의료기관의 경우 그 간 지속적으로 교육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아생성의료기관 준수사항** 강화

-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를 신설하고 정자 기증자 보호방안 및 배아·난자 및 정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절차와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배아생성 목적이 다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배아를 생성할 시기 전에 미리 생식세포를 보관하는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자 기증자 보호방안 마련 등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아생성 동의권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법정 인력기준을 갖춘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관위원회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

- 등록 시 연구자·연구공간·연구실적 확인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정하고 기관위원회의 유형, 운영방법, 기관 담당자 변경 시 30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시 연구대상자에 미칠 위험 방지, 안전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연구계획 심의기관으로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바, 원활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관위원회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관위원회 설치 대상이 대부분 행정인력이 있는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이고 질병관리청의 e-IRB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또는 변경사항 보고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기준** 강화

-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임상유전자검사,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 질병 예측성 검사,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 등에 관한 검사, 유전적 혈통에 관한 검사 등 유전자검사 목적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차등화하여 정함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목적별 신고' 방식으로 변경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검사목적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검사기관은 시행 후 2년 내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도록 한 점, 종전 규정이 구체적인 장비 명칭을 열거한 반면 개정 규정에서는 보관, 처리, 분석 등 필요한 장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기존 유전자검사기관이 보유한 장비가 개정 규정의 장비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은 점, DTC유전자검사 시범사업에서 동 인력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정한 점, 대부분 검사기관이 두 가지 이상 목적으로 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시설 등 공동활용과 인력겸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전자검사 서면동의 범위** 강화

- 검사대상물 채취 전 또는 검사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 사항을 추가함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가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검사대상자 의사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전에도 검사목적 등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고 규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전자검사기관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 폐기 등 절차** 강화

- 폐기 또는 이관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고지하고 처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물과 기록을 폐기 또는 이관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검사대상물과 기록의 이관 및 폐기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휴·폐업 시 검사대상물과 기록 처리에 대한 입법공백이 보완됨으로써 피규제자 불편과 질병관리청 행정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여성가족부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출국금지 요청 대상 기준** 신설

- 출국금지 요청 대상 기준 마련(① 양육비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② 양육비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심사결과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규제는 아동을 양육하는 채권자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경제적 고통에서 아동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에서 양육비 채무액이 ① 5천만 원 이상 ②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자로 한정하는 등 규제 차등화로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사업목적이나 국외 거주 존·비속의 사망 등 출국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어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성폭력 고충처리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신설

- 성폭력 방지 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서 내에 공식창구 마련과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심사결과 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조치의 효과적 이행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상담·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폭력 고충처리 창구와 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항목 추가** 신설

- ①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 증감, ②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 증감, ③ 정원의 변경, ④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면적의 변경, ⑤ 수련시설 명칭 변경

심사결과 수련시설의 변경등록 중요항목에 제외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 의무 변경등록 법적 근거가 없어 등록관리 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제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설치운영자가 변경등록 사항으로 확대 요구한 항목들을 반영하는 등 변경등록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변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마련** 신설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배치, 시설 및 장비 기준
- 광역지원센터 관련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중요 변경사항

심사결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5.19)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제공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광역지원센터 중요사항 변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사업참여 여부는 공모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의사가 없는 기관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고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필자 • 김이석 사무관
Tel. 044-200-2425, kim2seok2@opm.go.kr
집필자 • 김기철 사무관
Tel. 044-200-2399, coolstar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안 등 총 3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6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3 (비중요 5)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20)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0)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2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8)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29)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본위원회 (2021.11.12)	원안의결 1, (부대권고)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 2)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3)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66, 개선권고 1	신설 30, 강화 35 (중요 2, 비중요 65)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확대** 강화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유형 61개 추가 확대

심사결과 소비자들이 영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정확한 영양정보(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등)를 식품에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에서 영양성분 분석을 위해 자사분석, 영양성분 산출프로그램 이용, 유사제품 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발생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인증(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 취소** 신설

- 수입식품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하고, HACCP 인증 및 변경인증 요건·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중국산 김치의 위생불량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유사규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HACCP 인증'과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해외사례에서도

수입식품에 대해 HACCP 및 안전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서류검토만으로 실시하는 GMP 심사의 제출자료 추가** 강화

- 생산국 정부 또는 생산국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증서 사본을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확대하고, 제출 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신설

심사결과 서류검토만으로 실시하는 모든 GMP심사에서 제조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고,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며,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기기 GMP심사가 현장조사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업체부담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유지하되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서류검토만으로 실시하는 GMP 심사의 제출자료 추가** 강화

- 생산국 정부 또는 생산국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증서 사본을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확대하고, 제출 자료가 제조소에서 또는 제조소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모든 심사의 첨부자료로 신설

심사결과 서류검토만으로 실시하는 모든 GMP심사에서 제조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고,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며, 미국 등 해외의 경우 모든 의료기기 GMP심사가 현장조사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업체부담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유지하되 제출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양념 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 행위 금지** 신설

-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세척 등 재처리하여 사용 시 금지규정 및 처분기준(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 신설

심사결과 현행 법령에서 양념고기 등에 대해 세척을 통해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행위의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부패한 원료 등을 재처리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준수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차단과 식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료의 온도 및 해동기준 처분기준 강화 강화

-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 위생적으로 해동, 해동 후 조리 시까지 냉장보관, 재냉동 금지 위반시 종전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각각 영업정지(7일) 및 영업정지 기간을 확대

심사결과 최근, 온수 해동 등 비위생적인 식재료 관리에 대한 논란 발생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미생물의 오염 방지,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필요하고, 법령 위반 시 기존 1차 시정명령 처분하는 수준에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그 규제가 다소 강화는 되지만 식품접객업소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접객업 조리식품 유통·판매 금지 명확화 신설

-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에게 판매 금지하고,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제조한 식품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준수사항 신설 및 처분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조리식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 유통될 경우 식중독, 교차오염 등 식품위해 발생 우려가 높아 식품접객업 조리식품에 대해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본 규제는 식품접객업 조리식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금지규정과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위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 제출 대상 확대** 신설

- 식약처장이 정한 의료기기의 경우 매 반기별 기록을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일까지 기록을 제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생명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사용 이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폐업의 경우 추적이 힘든 점을 감안할 때 폐업 신고전까지 사용기록 제출을 규정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식약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작성과 제출이 용이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공동책임대상 추가** 신설

-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변경 제작에 따른 책임대상에 제조·수입업자를 추가함

심사결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의사의 임상경험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제조기술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제작 시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해 의사 소견과 환자 동의를 전제로 제조·수입업자에게 변경허가 등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면제요건 중 하나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추가** 강화

- 프탈레이트류를 사용·함유한 경우 제조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

심사결과 프탈레이트류의 부작용, 국제적인 규제강화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직·간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에 프탈레이트류 사용 제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기관 용역결과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는 프탈레이트류로 인한 위험성이 크고 업계로 수용성이 높으며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수출 목적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등 요건 강화** 강화

-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시 감염병 대유행 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품목은 첨부자료 제출과 심사 이행을 의무화

심사결과 수출기업이 신종 감염병 진단 등과 같이 제품 특성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 범위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기업은 제조허가 신청 시 자료제출 면제와 별개로 제조업자로서 의무이행과 수출국의 인허가를 위해 성능 및 품질관리체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했고 경미한 사항을 고려해 1차 경고 처분을 두어 의무준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리적 규제수준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관리 강화** 강화

-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 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정기적으로 검·교정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함
- 생물학적 제제 등 소송 시 검증된 수송설비 사용, 수송용기 외부에 내부 온도 관찰용 온도계 설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온도기록 조작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외부 환경에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을 감안해 보관과 수송의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EU나 WHO 등 해외사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백신 품질관리에 경각심이 높아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신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훈련 수료증을 거짓의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규제로 인한 부담 수준은 높지 않고, 국내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교육훈련 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심사결과 총리령으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첨가물에 '아질산나트륨' 추가** 강화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수산화암모늄 등 13품목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추가

심사결과 식품첨가물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영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직접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취급상 주의사항 정보가 없어 직접 섭취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식품안전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주의사항 표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서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주의문구 표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미미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 강화

- 식용곤충 적용대상을 4종에서 식용곤충으로 변경 및 통합기준을 적용하고, 총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심사결과 식용곤충의 중금속은 최소량의 원칙에 따라 오염도 자료를 기반으로 중금속 통합기준(납·카드뮴·무기비소)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성 인정되고, 중금속은 자연환경에서 비의도적으로 오염되는 물질로서 기준 설정·관리 이외는 대체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없어 식약처 및 농진청의 오염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부적합률을 고려하여 과학적·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유통과정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거나 증가율이 낮아지게 되어 사육농가들의 편익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강화

- 국내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사용하는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기준인 0.01mg/kg 적용 근거 마련

심사결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에 대한 현행 3단계 기준 설정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PLS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었으며, 국내 유사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내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삭제** 강화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뉴트리아 삭제

심사결과 합법적인 도축이 불가한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여 안전성이 미확보된

식품원료 섭취를 방지하는 것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합법적인 도축이 불가능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에 이용되지 않는 식품원료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식품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강화

-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

심사결과 병·해충 발생 방제에 필요한 양만 사용·관리가 되도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바,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일부 강화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더라도 농약관리법과 해당 농약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방법에 따른 자발적인 농약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신설

- 자율심의기구는 자신이 심의한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자율심의기구는 사전심의 권한만 있고 심의 후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처분 권한이 없어 심의의 실효성과 심의기구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 결과의 제출주기와 기한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법에서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제출주기와 기한을 동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율심의기구가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율심의기구 요건 규정** 신설

- 의료기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기기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3명 이상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도록 정함

심사결과 자율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의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운영기준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심의업무 수탁기관 현황과 비교하여 요건이 과도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요건을 동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강화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알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한 식용 목적의 모든 달걀에 선별·포장 처리 의무부과(가정용 → 가정용 + 업소용(음식점·급식소 등))

심사결과 최근에 선별유통 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현행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업소용(음식점·급식소 등) 달걀을 포함하여 국민이 안전한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가 필요하고,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정부·업계·관련 협회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4월부터 가정용 달걀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이미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시 의무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도 있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 발급 및 보관 의무화** 신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처리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 확인서를 수령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 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심사결과 달걀 추적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포장 처리 확인서의 작성·보관·발급 의무를 부여하여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달걀의 위생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수사항으로서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용란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써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생화 착용하고 외부 출입한 경우 처분 강화** 강화

- 현재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 영업정지 3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총리령으로 위임된 행정처분의 위반행위를 신설하여 고질적인 작업장의 위생악화요인 차단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위해 처분기준 항목 신설은 필요하고, 위생화 착용은 작업장 위생 악화 방지를 위한 종업원 위생절차 준수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미준수에 따른 규제 도입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부담 수준도 높지 않으며, 국내 유사입법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 식생활과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편익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물 작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

- 현재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 영업정지 3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축산물 작업장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억제 및 축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을 추가하는 규제는 필요하며,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감염병 사전 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 보건을 위한 사회적인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세부기준 근거 마련** 신설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품목별로 검사하고,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은 고시에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2.29)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과되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영업자별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 준수는 규제 수단의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포장육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지정** 신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어린이 급식소 종류 및 그 범위를 정함

심사결과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의무등록 대상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무등록 대상 급식소는 일정 인원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로 범위를 한정하는 등 위생·영양 지원 강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국내 유사 입법례와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급식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 신설

- HACCP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근거 신설

심사결과 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6개월 내 수료할 것을 요건으로 인증을 받고 기한 내 수료하지 않을 경우 HACCP 운영 내실이 저하될 수 있어 시정명령 조치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HACCP 교육 수료는 HACCP 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교육 수료 유예를 인정받은 영업자가 기한 내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받는 조치로써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HACCP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라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수료증 거짓·부정 발급 시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강화

- HACCP 교육훈련기관이 교육 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교육훈련기관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 2차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 3차위반시 지정 취소이던 것을 1차 위반시 지정 취소하도록 함

심사결과 교육훈련기관의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교육훈련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지정 취소 처분기준 강화는 필요하며, HACCP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교육훈련기관의 법령 준수의식을 높이고 교육훈련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추적조사 및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신설

- 추적조사 내용과 결과의 제출주기 및 기한, 추적조사 의료제품의 이상사례 보고 기한 및 내용을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개발·도입되는 조건부 품목허가 의료제품에 대하여 이상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적조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추적조사 지정 기간에만 적용되고 보고(제출) 주기와 기한에 예외를 두어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조건부 허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이상사례 관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 내역 등록** 신설

-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기관 정보시스템에 사용내역을 등록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을 판매·공급할 때마다 추적조사 실시기관 정보시스템에 판매·공급 내역을 등록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조건부 품목허가 의료제품과 관련한 이상사례 발생 시 공급 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판매·공급 및 사용 내역 등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추적조사 지정 기간에만 적용되고 추적조사 실시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등록의 편의성, 첨단재생바이오법 사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공급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의사·치과의사·약사의 경우에도 투여내역 등을 기록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긴급 생산·수입 명령 절차** 신설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생산·수입 계획 제출 및 결과 보고 절차를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적시적소 공급이 중요한 만큼 긴급 명령의 실행력 확보와 수급 상황 관리를 위해 생산·수입 계획 및 결과를 제출(보고)하도록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에서 식약처장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사실과 관리계획을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피규제자가 긴급 명령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통개선조치 절차** 신설

-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 범위와 결과 보고 절차를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국민들에게 원활하고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규제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에서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사실과 향후 관리계획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교육기관 지정 기준** 신설

- 강의실 및 강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하고 교육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정함
- 교육강사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 기관에서 최근 5년 간 50시간 이상 관련 강의 경력으로 정함

심사결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강의실 면적이나 장비 사양 등 구체적 조건을 두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 기 지정된 교육기관 현황과 비교해 준수 가능한 수준인 점,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교육내용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강사 자격 기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물품 범위 신설** 신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학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추가

심사결과 생활화학제품(구두약, 매직펜, 딱풀 등)과 유사한 식품 유통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표시·광고 금지 대상 범위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고, 식품 등이 아닌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도입 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제 범위를 최소화한 점,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국민의 식생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_1 기준** 신설

-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_1 기준을 0.50 ㎍/kg 이하로 함

심사결과 산양유는 유당불내증 또는 알레르기를 가진 영아, 소화력이 낮은 노인 등 민감계층에서 주로 섭취 중이며, 국내 산양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원유·우유류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_1 기준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플라톡신 M_1의 오염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부적합률을 고려 과학적·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제기준 수준에 맞도록 하고, 규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아 피규자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은 없어 보이는 점, 해외사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 점 등 국민 식생활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국내 미등록 농약(노르플루라존 등 95종, 1,105건)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여 불검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하고, 농산물 중 농약(글루포시네이트 등 58종, 184건)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병·해충 발생 방제에 필요한 양만 사용·관리가 되도록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바,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및 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농약의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도록 하여 농약 오·남용 농산물 유통 차단 및 잔류농약에 의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공유주방 운영업자 위생교육**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에게 위생교육(신규교육 8시간, 매년 보수교육 3시간) 이행 의무 부여

심사결과 공유주방의 식품 안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공유주방 운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을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 있으며,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신규 8시간, 보수 3시간)과 동일하게 정한 점,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공유주방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및 교육훈련 등 신설**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시에는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기록 의무, 교육훈련 신설

심사결과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절차, 직무수행 내역 등의 기록·보관 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및 직무기록 의무 부과로 위생관리책임자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점,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의무는 공유주방 내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1호, 2호, 3호, 7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3가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서는 식품의 제조·가공·소분·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가공·소분·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준수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공유주방은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교차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공유주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행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유사한 수준 내에서 공유주방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공유주방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유주방 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차수별로 영업정지 7일/15일/1개월을 두도록 하고,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1일/15일/1개월의 영업정지, 별표 17 제9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5일/10일/15의 영업정지, 기타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로 정함

심사결과 본 규제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유주방 운영업자를 대상으로 법 이행 제고와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공유주방 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공유주방 운영업체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이행강제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다른 영업자 준수사항에 비해 영업정지 5일~7일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 등 절차**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추가하고,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공유주방을 임대하려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도록 함

심사결과 공유주방의 경우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업체가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교차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영업 등록 등 관리가 필요하며, 공유주방 운영자의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절차를 마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으며, 공유주방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유주방 운영업자 위생교육 및 준수사항 이행 의무** 신설

- 식품위생 교육의 대상에 공유주방 운영업자를 추가하고,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적용 대상자에도 추가하도록 함

심사결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공유주방에서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주방 운영업자도 다른 식품 영업자와 같이 식품위생교육과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가 필요하며,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규제를 도입하여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유주방에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실현을 통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으로 위생사 등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1호),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등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2호),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사람(3호)를 정함

심사결과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위생 수준을 높이고,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유주방 시장의 산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하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유주방 운영업자 책임보험의 종류 및 보상규모** 신설

- 책임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에 대해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업지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로 하고,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1호). 부상을 입은 경우(2호),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3호),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4호)별로 금액을 정함

심사결과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으로 공유주방에서 교차오염 등 식품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책임보험의 종류 및 보상 규모 등 의무 가입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가 있으며,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운영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 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안전사용조치 등의 절차 및 방법** 신설

- 첨부문서에 안전성 정보 등 안전사용 조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사용 조치 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기한,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현황 작성 내용,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결과 적성 및 보고기한, 의료제품의 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 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개발·도입되는 조건부 허가 의료제품에 대하여 사용 단계에서 위해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회수·폐기 등 절차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건부 허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규제이자 조건부 허가 기간에만 부여되는 한시적 규제이고, 개별법에 따라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어 별도 인력 채용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위반 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에서부터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을 시의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약품안전규칙 등 개별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적용대상을 해당품목으로 한정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위해성평가 요청 조건** 신설

-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요건을 5명 이상으로 정함

심사결과 공익적 목적의 소비자 위해성평가 요청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 소비자단체 이외에 법률에서 위임한 개별 소비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무분별한 요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 강화

- 이소토니타젠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
- 디페니딘 등 10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
- 페니부트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파목)으로 지정

심사결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와 국내 신규허가 예정인 의약품의 주성분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취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마약과 화학구조 및 효과 유사성 등을 고려한 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점, 17개 물질 모두 국제연합이나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국가에서 규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체계 강화** 강화

-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기준으로 외국 의약품집 수재 불인정

심사결과 자료 신뢰성 등 우려가 제기된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면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해당국의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는 8개국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사례가 없고, 최근 5년 간 일반의약품 허가품목 중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여 허가한 품목의 비중이 2.3%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문의약품 제조방법 허가 후 변경관리 강화** 강화

-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허가(신고)한 품목의 제조방법은 CTD 자료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세부항목으로 정함
- CTD 허가(신고) 품목의 제조방법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연차보고 또는 시판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되 서방형제제 용출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 규격 변경은 연차보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
- CTD 허가(신고)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 시 제출자료 신설

심사결과 전문의약품 신규허가 시 입증한 안전성·유효성이 제조방법 변경 시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의 경우 허가 시 제출한 CTD로 허가사항을 총괄관리하고 변경허가 신청 시에도 CTD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 CTD 허가(신고) 품목에 한해서만 제조방법 변경허가 시 CTD 중 해당 자료를 변경(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한 점, 제출자료 범위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 제한 기준 신설** 강화

- 일회용 점안제의 포장단위를 0.5ml 이하로 정함

심사결과 일회용 점안제를 한번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현행 규제가 실제 이행력이 약한 만큼 제조·수입 단계에서 1회 사용 용량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업체가 0.5ml 이하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 0.5ml 초과 제품의 경우에도 기존 용기에 충전량 조절을 통해 규제 준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장용성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기준 강화** 강화

- 장용성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를 위해 식후 시험을 추가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장용성제제는 일반제제에 비해 흡수되기까지 체내에 오래 머무는 점이 서방성제제와 비슷하므로 서방성제제와 동일하게 식이가 의약품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동등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장용성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시 식후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출용 장용성제제의 경우 이미 식후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교용출시험 동등성 판정기준 강화** 강화

- 모든 구간의 유사성인자 값으로 동등성을 판정하고 장용성제제와 서방성제제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 평균용출률 차이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용출양상이 다를 경우 인체 내 작용이 달라져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구간에서 용출양상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등성 판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용출양상의 동등성을 유사성인자로 판정하고 있고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위생물수건 형광증백제 기준규격 신설** 강화

- 위생물수건 위생처리 시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을 정함

심사결과 위생물수건 위생처리 시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하고 최종제품에 형광증백제 불검출 규격을 신설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형광증백제 유해성 근거가 불명확하고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동의**하였으나, 식약처는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업계와 소통, 위생적인 물수건 사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시행일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심사내용 **키친타월 제조기준 개정** 강화

- 키친타월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금지

심사결과 키친타월 제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데 대해 이해관계인 이견이 첨예하여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정책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활용 원료의 유해성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내용이 포괄적인 점 등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식약처는 재활용 원료나 키친타월의 유해물질 검출 모니터링과 국제 기준 검토 등을 거쳐 원료 단계의 재활용 기준 설정, 최종제품의 유해성분 규격 특정 등 업계가 따라야 할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국내 미등록 농약(멥틸디노캅 등 39종, 660건)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여 불검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 농산물 중 농약(이미녹타딘 등 33종, 72건) 잔류허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및 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의 재설정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농약의 관리기준을 현행에 맞도록 하여 농약 오·남용 농산물 유통 차단 및 잔류농약에 의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능성 원료 7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등 강화** 강화

- 인삼, 홍삼 등 7종 기능성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중금속 기준 강화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정성과 기능성 재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20년에 인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강화

-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을 함유한 의약품의 경우 이상반응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해열진통제의 소아 사용제한 연령을 만2세로 상향

심사결과 국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최신 안전성 정보를 표준제조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품목신고를 통해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허가를 받은 피규제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최신 안전성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이고 허가 품목의 경우 이미 동 규제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자 등록취소 기준** 신설

- 영업소에 출입·검사·수거 및 위해 수입식품 등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 시 등록취소 사유 추가
- 위해 수입식품 회수·폐기 등 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사유 추가

-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회수조치 미이행 또는 회수계획 미보고 시 등록취소 사유 추가

심사결과 수입식품법에는 수입업자가 위해물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해 회수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고,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유통단계 행정질서 유지 제고와 국민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농산물 중 농약(이미녹타딘 등 30종, 50건) 잔류허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소비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과학적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재평가를 통한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 유사 입법례 및 해외사례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편익 고려 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신청 요건** 강화

-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자료에 한해 제출을 면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완제약 품목허가 신청 시 원료약 심사자료의 면제 범위와 심사대응 주체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의약품 심사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의약품 품질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목적에 부합하고, 미등록 원료약을 사용한 완제약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 시 원료약과 완제약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품질심사를 완료약 제조·수입업체가 대응하고 있어 규제 순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운송업무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냉장·냉동 의약품 운송 시 운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온도조작 금지, 온도기록 보관 등 의무를 정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에서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의약품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보관·유통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등은 저장온도 준수 여부 확인·점검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인 점,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로 정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점, 의약품 품질관리에 업계의 공감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 도매상 의무교육 대상 확대** 강화

- 모든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반면, 도매상에 대한 법정 교육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의무 신설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격업소(매년)와 비적격업소(격년) 간 교육 주기를 차등화한 점, 시행시기가 '23년으로 준비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질병관리청

집필자 • 김이석 사무관
Tel. 044-200-2425, kim2seok2@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7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계	-	원안의결 7	신설 5, 강화 2 (비중요 7)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예방접종 실시 시 의무** 강화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예방접종 시행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예진표 작성 권유만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예진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예진표 작성을 위해 인력, 장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상연구기록 보고기한 설정** 신설

- 재생의료기관은 임상연구 기록을 임상연구 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 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최초 등록하고 기록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시 등록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국내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가 도입 단계로 연구대상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연구의 시작과 진행상황이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상연구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의 편의성과 첫 환자 등록 후 21일 이내 최초 등록하도록 한 미국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신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추가

심사결과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고 경미하더라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시예방접종까지 이상반응 신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시예방접종인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상반응 감시 시스템이 운영 중이고 인력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방역지침 위반 시 종전 1차 '경고' 처분을 삭제하고, 종전 2~5차 처분을 개정 1~4차 처분으로 앞당김

심사결과 국민의 방역 피로도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전파나 집단발생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동안 경고나 계도, 홍보를 통해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점,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한 후 처분하는 점, 방역지침 준수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점,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주기** 신설

- 선임교육 후 2년 마다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가 주기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피규제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주기를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피규제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의료인과 의료기사 면허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점, 원자력안전법 등 타법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의료 방사선에 대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여야 할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관의 자격** 신설

- 기관·단체 범위를 의료방사선 분야 전문인력과 교육역량을 보유한 협회·학회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 강의실 및 강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인력 기준으로 교육관리자 1명 지정, 과목이나 분야별 대표강사 1명과 교육강사 3명 이상 확보, 강사는 의료방사선 및 보건의료 분야 학력 또는 경력을 보유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신설된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 범위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등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타법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종전 선임교육 기관이 갖추고 있는 요건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기관 지정의 변경신청** 신설

- 교육기관의 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교육기관 지정 방식이 1개 기관 특정에서 신청에 의한 심사·지정으로 바뀐 만큼 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관리와 교육대상자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신청 대상과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갖춘 교육기관이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수입식품 등 영업자 교육기관의 경우 동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외교부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여권법 시행령 등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내용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신설

-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되는 국위손상자의 구체적 범위와 발급 제한 기간 규정

심사결과 기존에 외교부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외공관의 지침 미숙지에 따라 조치에 차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 시행중인 규제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추가되는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규제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여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가보훈처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7	신설 7 (비중요 7)
(2) 5·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12)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2)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5	신설 35 (비중요 35)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7)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신설

- 수익사업을 신규로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수익금 사용계획, 수행자 지정 등 주요 승인사항 규정
-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승인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관련 단체 간의 과잉 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 질서 훼손의 방지 및 수익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5·18민주유공자단체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됨
- 승인 또는 승인된 내용 중 변경승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무효, 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으면, 변경승인도 효력이 없음
- 5·18 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의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기한을 규정(△변경사항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신규로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승인사항, 승인조건 및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실효성 및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 보훈단체 규칙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승인의 취소 등** 신설

-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규정(△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자금조달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및 투자 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절차 등 규정
-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명령 관련 세부 기준 등 설정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단체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체 간의 과잉 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 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단체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함은 타당. 사후적으로도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명령의 세부 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수익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타 보훈단체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계감사 대상 사업 및 감사 기간 규정** 신설

-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는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인회계기관은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 연장 가능

심사결과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 보훈단체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규정** 신설

- 실태조사 사항(△직원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승인기준·승인조건 준수에 관한 사항,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자적 방식 사용 가능

심사결과 동 규제는 각 단체 수익사업의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운영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유재산·공유재산 처분 시 보고의무** 신설

-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계약의 내용과 조건, △계약의 경위 및 이유, △처분재산의 처분 이후 사용 용도, △처분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처분재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 의무

심사결과 국가는 각 단체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가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대리매매 또는 편법 매입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시정조치** 신설

- 단체가 수익사업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시정조치 명령 가능

심사결과 수익사업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일정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수익사업 승인조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사업 운영상 과잉 경쟁 및 운영 질서의 훼손 방지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신설

- 국가보훈처장이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가능한 사항 규정 및 제출기한은 제출 요구한 때로부터 4일 이상의 범위로 하며,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제출 외에도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심사결과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기에,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 요구사항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여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였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5·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회계 규칙 (신설 6)

심사내용 **회계연도, 출납기한 정의, 회계처리 원칙 규정** 신설

-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며, 회계의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원칙 규정
- 수입 및 지출의 출납기한을 회계연도 일치시킴
-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 구분

심사결과 5·18민주유공자단체 등이 공법 단체로서 설립되고 직접적인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특성상 회계처리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 절차와 더불어 단체별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신설

- 수입과 지출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 편성 후,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 고유목적사업회계는 수입·지출 예산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규정
- 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
- 준예산 및 예비비 규정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 전용 시 필요사항 규정
- 적립금의 보고·사용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에게 보고하며, 적립금은 적립목적에만 사용하고, 보훈처장은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조치 가능

심사결과 단체 운영 및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상당 부분 지원됨에 따라 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며 단체별 상황에 맞는 운영상 탄력성 확보도 필요한 상황인바 동 규제 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 및 지출 사무 규정** 신설

-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장은 단체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가능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 담당을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 불가
-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며, 수입금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며 법인통장 사용기록부 작성 의무
-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며 지출원이 행하고,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며, 상용 또는 소액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함

심사결과 재무·회계의 원인행위가 되는 수입·지출에 관한 최소한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산의 확정 및 제출** 신설

-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수입·지출 내용 확정 후,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 보훈처장에게 보고
- 결산보고에 필요한 첨부서류 종류 규정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및 사용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기부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회계감사보고서

심사결과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에 맞는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산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해당 결산보고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단체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에는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통제** 신설

- 지정기부금 및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물품을 기부금으로 보며,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 확보 의무
- 단체의 회장은 기부금을 받은 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함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 전용계좌등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은 기부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
- 후원자 지정 용도 외 기부금 사용금지 및 기부금 수입·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함

심사결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입 및 지출 운용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사 연한 설정 및 감사 결과 보고의무 신설** 신설

- 5·18민주유공자단체의 본부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감사 실시 및 지부·지회에 대한 최대 3년의 자체감사 연한 설정
-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 관련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 시 동일 방법으로 보고

- 감사보고서에는 단체의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심사결과 일부 보훈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감사의 연한 및 감사 결과 보고의무를 규정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 매입한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계약을 하려는 경우 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심사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 제공 및 단체운영·회원복지 보장이라는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계약 내용 및 재산 상태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부정 매입·매각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동 규제 신설을 통해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단체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기준, 유효기간, 신청 방법 등** 신설

- 제대군인 우수고용 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제대군인 고용실적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인증신청 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 △제대군인 고용실적 및 현황,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군 복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그 인력 개발·활용의 측면에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증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 신설로 인증기업으로 신청하려는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이 가능하고, 미국의 제대군인 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신설 4)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변경신고 사항** 신설

- △보훈단체의 회장 변경,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보훈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는 경우 등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밟는 대신 신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수익사업 관련 승인사항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가능하고,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부관 부과 및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실태조사 사항** 신설

- 국가보훈처장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 운영, 단체 간 과잉 경쟁 방지 또는 운영 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승인조건 부과 가능

- 국가보훈처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 규정(△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승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심사결과 승인조건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를 통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동 규제 신설은 필요.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부관 준수 및 실태조사 이행에 따른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전자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사업 승인취소 또는 정치 처분기준 등** 신설

-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 규정

심사결과 법에 따라 위임된 수익사업 승인 취소 또는 정지명령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수익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5·18민주유공자단체 등의 수익사업 승인취소 또는 정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엽제전우회의 국·공유재산 처분 시 보고 기한** 신설

- 우선 매각 제도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 보훈단체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우선 매각의 취지를 고려하고 처분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며, 보훈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고,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보고하도록 함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회계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적용 범위 확대** 신설

현행	개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 좌동
	•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각 보훈단체

심사결과 보훈단체 전반의 수익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무·회계 기준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만 적용되면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범위를 보훈단체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취지로서, 단체별 수익사업 운영 등 관련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훈단체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행정안전부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3) 행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0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4.3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9)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27)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30	신설 21, 강화 9 (비중요 30)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보험의 종류 등** 신설

- 책임보험의 종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
-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동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광고물(벽보 및 전단 제외)과 그 게시시설로 함
- 책임보험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 또는 재개업할 때,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 또는 재가입하여야 함
-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 원 이상으로 함

심사결과 최근 옥외광고물의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피해액이 고액화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해당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및 보상한도액 등을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하여 별도 이견이 없으며 다른 규제 대안이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행정사법 시행령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추가 및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 신설** 강화

-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 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기준으로 대한행정사회 가입을 추가함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규정(△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법인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하였을 것)

심사결과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사의 의무가입을 통해 단일 단체로서의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리고 행정사의 윤리 의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 규제 관련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고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임 제한 대상 행정기관 범위** 신설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은 수임 제한 대상 기관임
- 다만,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행정기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 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행정기관은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음

심사결과 행정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상위법상 수임 제한 규정 신설에 따라 기관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사 연수 교육 대상자 및 시기 등 규정** 강화

-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와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 및 소속 행정사 등은 업무 신고 이후,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함

심사결과 상위법에 따라 연수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행정사의 범위 및 연수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이수 및 기회비용 발생 등으로 규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동영상 교육 등으로 실시하여 기회비용을 줄이고 향후 실시현황 파악을 통한 부처의 제도개선 계획이 있다는 점, 타법 사례에서 규정하는 교육 주기 및 시간 등과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사법인 설립 절차 규정** 신설

-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관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필요 기재 사항 이외 △행정사의 권리·의무 제한에 관한 사항, △총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함
-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등기에는 목적, 명칭,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을 포함하여야 함
- 법인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

심사결과 행정사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등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사법인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 신설

- 행정사법인은 법인 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소속된 행정사 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법인당 1억 원 이상의 △보험 가입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여야 함

심사결과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 신설을 통해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세무사법 등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한행정사회 총회 보고의무** 신설

- 대한행정사회는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하려는 취지로서, 동 규제 신설에 따라 행정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책임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공인회계사법 등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행정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준 개정** 신설

- 행정사에 부과하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감독관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행정사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행정사법인에게도 동일 적용하여 처분에 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등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위법행위의 예방 및 행정사 제도의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민원 처리 기간 현행화** 강화

- 현행 제도상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즉시였던 사항을 15일로 현행화

심사결과 행정사 자격증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바, 이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처리 기간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부처는 현실과 부합하도록 15일이라는 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신청 절차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신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함

- 현장 점검 결과가 설치규격 등에 맞지 않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정정하도록 요청
- 정정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심사결과 소유자 등이 자유롭게 제작·설치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경우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표시사항 오류가 없도록 행정청이 관리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정 요청이 있을 시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행정청에 결과를 알려야 하는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위치 표시 정확성 제고 및 우편 전달 등 주소 생활 편익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민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기준 규정** 신설

-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최소 재무 건전성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가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이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주민 복리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강화 2)

심사내용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 기준** 강화

- 중앙회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정
- (보장성공제) 합리적인 사업비를 유도하고, 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이 균등 배분되도록,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장성공제를 신고 기준에 추가
- (갱신·재가입) 갱신·재가입 시점에서의 계약체결 비용이 최초 계약체결 비용의 70% 수준을 초과하는 공제를 신고 기준에 추가

심사결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균등 배분하지 않은 보장성공제와 갱신·재가입 시의 계약 비용이 최초비용 대비 70%를 초과하는 공제에 대해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이며, 국제협정 사항 반영을 통한 공제상품의 감독 일원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상품의 공시** 강화

- (공시사항) 공제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제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
- (기재사항)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및 공제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불완전판매비율 추가

심사결과 계약자의 알권리 확대 및 공시상품의 완전 판매 문화 조성 등을 위해 공제금의 부지급률, 소송 비율 등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제도상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시 내역에 추가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 신설

-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갖출 것
- (조치요구 사항) 인증기관이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요구, 결과보고, 조사협조 등 요구 가능
- (서식규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인증신청서, 인증서 등 서식 규정

심사결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는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비이며, 장애·오작동 등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되므로 체계적인 민방위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장비 인증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필요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용역을 통해 동 규제안을 마련하고 피규제자와 지속 협의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 등과 관련된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통보** 신설

-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 후 관리주체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철거상태를 확인한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심사결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중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으로 하여금 현실 적합성 높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철거 사실의 통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또는 장비 철거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와 관련된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신설

-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로서 법에 규정된 훼손, 야영, 취사, 상행위 이외 △흡연·음주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그 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심사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위임된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고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금지행위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사항** 강화

- 관리주체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항목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실태 현황 추가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를 지고 있으며, 위험이 존재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측면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관리주체의 자료 제출 및 보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설의 안전 유지·관리와 관련된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단층 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단층 통보사항 및 방법** 신설

- (통보사항) 단층 발견 위치 및 일시, 단층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이름, 연락처, 입력기관, 발주처명

- (통보방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활성단층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심사결과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명·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재해의 관측 분석·대응 등 적극적인 사전 조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통보 의무 및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전문가 및 피규제자와 동 규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취소 범위 확대** 신설

-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승강기 산업의 안전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등록 및 등록취소를 통한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며, 동 규제는 사실상 영업상태가 아닌 승강기 관련 업자 등에 대한 등록취소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승강기 운영실태 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통보기한 단축** 강화

-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심사결과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승강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임 사실 미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고려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및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유사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승강기 사고 조사 시 CCTV 열람 근거 신설** 신설

- 승강기 사고조사 시 CCTV 영상정보 등을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심사결과 최근 승강기 사고가 지속되고 원인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고 당시의 CCTV 열람을 통한 사고조사 및 원인 판정이 중요하기에 분석 자료로서 CCTV 열람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수행상황 점검 및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 가능

심사결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를 위한 경보단말장비 의무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인증을 통한 경보단말장비의 보안성 및 호환성 등 검증이 필수인바, 인증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인정됨. 자료준비 및 제출 등에 따른 부담이 일부 예상되나,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고, 피규제자의 별도 이견이 없으며,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규정** 신설

- △종류(설치형, 비치형),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설치,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 △내부 치수, 안내 표시 ,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등,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설치 후 품질 수준, △정기·수시점검 및 시험·검사 방법,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등

심사결과 편의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공중화장실등의 남성·여성 화장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규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및 안전규격 미달로 인한 위협 요소 발생 예방을 통한 국민 신뢰성 강화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며, 해외 및 타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용품 안전기준과 비교하여도 동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주민등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채권채무관계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기준 상향** 강화

- 채권·채무 관계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준 상향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관계에도 상향 기준 동일 적용
- (채무금액) 50만 원 → 100만 원, (통신요금) 3만 원 → 10만 원

심사결과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 해결에 있어,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법인 등의 채권채무관계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피규제자 의견수렴을 통해 동 규제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채권자의 추심권과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확보 측면에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지방공무원 임용령 (신설 1)

심사내용 **채용 비위 관련 합격 및 임용취소** 신설

- 채용비위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 주는 행위를 통칭한다는 정의 규정 신설
- 합격 또는 임용취소 절차 규정

심사결과 공무원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근절하는 등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체계적인 인사행정 제도 강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신분상 이득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합격·임용 취소에 앞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취소를 규정한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이용기관의 승인기준** 신설

- 서비스 창구 구비 및 본인 인증수단 마련, 설비 구축, 보안관리 등 이용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심사결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이용기관에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예방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신뢰성 측면에서 승인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 제외** 신설

- 부품안전인증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 제외 및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 제외

심사결과 안전회로의 변경은 제품 작동과 직결되는바 사전 검증을 거친 뒤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재산과 연관된 사항으로 판단됨.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동 규제 신설은 필요하며,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 신설

- 관리주체 등에 대해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 시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승강기의 사고·고장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 부과

심사결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된 자이며,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결함기록을 보존하려는 동 규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판단됨.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었으며, 건축물 사고 조사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책임보험 가입 사실 입력기한 규정** 강화

- 보험회사 등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가입 사실을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심사결과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상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있던 책임보험 가입 여부의 입력기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관리주체의 보험 가입 여부 입증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피규제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고장의 범위 추가** 신설

-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의 중대한 고장 범위에 '운반구 또는 균형추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및 그 부속품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한 경우' 추가

심사결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일시, 장소 등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는바 현행 제도상 중대한 고장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고, 입법 미비로 인한 부품 추락사고 발생 등의 예방을 고려할 때 동 규제 신설은 필요. 동 규제 관련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이견이 없다는 점, 철도차량 및 장치 고장 보고 관련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법무부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9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5)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3) 변호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4) 난민법 개정안	본위원회 (2021.07.12)	원안의결 3	신설 3 (중요 2, 비중요 1)
(5)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21.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변호사법 개정안	심사일 (2021.11.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일 (2021.12.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9	신설 12, 강화 7 (중요 2, 비중요 17)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신설

-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방법 및 건물 전체의 전유부분 중 이전등기를 마친 전유부분의 비율 등 통지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통지의무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거·영업환경 개선의 이익이 큰 점, 각종 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임신고 및 회계감사 등 관리인에 대한 의무 부과** 신설

- 관리인 선임신고, 회계감사 대상 건물의 범위, 회계감사 결과보고 의무, 감사인 선임 의무 규정

심사결과 집합건물 관리비 징수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 투명한 관리비 징수·집행이라는 법적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으로 판단되고, 각종 영향평가 등 의견이 없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공익법인의 인정 등** 신설

- 공익법인 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익법인의 인정요건, 공익법인이 아닌 자에 대한 공익법인명 사용 금지의무, 공익법인 인정취소 사유 규정

심사결과 현재 공익법인은 각 행정부처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등 폐해가 우려되므로 통일된 기준하에 공익법인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같이 주무관청이 수행토록 하면서 보충적으로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정 및 인정취소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최소화 한 점,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익법인의 감독 등** 신설

- 공익법인에 대한 검사·감독 주체를 공익위원회로 규정, 공익법인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해임명령·직무집행정지 기준 규정,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 및 공익성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가 기존 주무관청에서 공익위원회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의 수준이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로 적절한 수준인 점, 규제의 성격상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신설

-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계획을 공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공익법인의 인정을 공익위원회가 하도록 함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관리·감독 사무수행 주체도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부금품 모집계획을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등록의무는 면제한 점,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 결격사유 등** 강화

-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를 추가하고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지 의무 부과

심사결과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 부과를 통해 공익법인 임원선임 과정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공익법인의 신뢰 제고에 따른 편익이 더 크고,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신설

- 정관의 변경 및 공익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및 해산을 사원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 정비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부담에 비해 법률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익법인의 합병** 신설

- 공익법인은 합병을 위해 사원총회 3/4 이상의 동의, 이사회 의결, 공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병 후 3주내에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공익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인의 해산 및 신설이라는 우회적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합병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합병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사원총회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타법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변호사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대상 확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와의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심사결과 전관특혜 가능성을 억제하고,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위해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사무로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피규제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에 전관 특혜 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큰 점, 규제의 성격상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 강화

- 공직퇴임변호사 퇴직 시 수임 제한 기간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그 외 공직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전관 특혜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퇴직시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규정한 점,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기간 연장** 강화

- 공직퇴임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의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상향 조정(2년→3년)

심사결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에 따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 기간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수임제한 의무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수임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규제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난민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난민인정심사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신설

- 난민인정심사 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심사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내 체류연장을 위한 난민인정심사 재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심사지연 및 적체를 해소하여 보호필요성이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대한 사정변경'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다는 이해관계자 이견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해외사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개별·구체적 판단 실익이 큰 점, 절차적 보완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간주 기준 마련** 신설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후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 등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간주 기준 규정

심사결과 단순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 후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등의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것을 철회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중요규제로 검토한 결과, 해외사례 및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난민인정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으로써 발생하는 무용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에게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이 큰 점, 입법예고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철회간주 관련 사항을 난민신청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보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제한** 신설

- 난민인정심사 재신청자 중 부적격결정을 받은 자,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한 규정

심사결과 현행 난민법상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적격결정을 받은 자, 불회부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허용치 않고 있으므로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명문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해외사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재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 기회가 기보장되어 있는 점, 예비심사의 성격을 가진 적격심사·회부심사에서 당사자 지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로 원안의결

(5)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인권교육 실시 의무**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각급학교 교직원·학생, 구금·보호시설의 종사자·수용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유엔의 인권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교육 제도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엔에서 전체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을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수단으로서 유사입법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 의무** 신설

- 의료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출생아동의 신고 누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대·유기·방치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고, 의료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관련 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 가능하므로 부담을 최소화한 점,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변호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수정·보완의무** 신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대해 연수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하여 합격자의 연수기관 선택권 및 실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관별 연수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각 연수기관은 연수 운영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의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체계적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연수를 도모하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정연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지정취소 등** 강화

- 지정연수기관의 연수 현황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연수기관에 대한 개선·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지정 연수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연수 운영실태를 개선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법률사무종사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상 지정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개선·시정명령, 지정취소 규정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연수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강화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중 법인사업자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심사결과 종이어음은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추가 확대를 통해 종이어음 발행 감소를 유도하고 어음거래의 투명성·안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계부처 합동으로 '23년 종이어음 폐지 계획을 발표한 점(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21.6월), 최근 종이어음 발행량이 급감하고 전자어음이 기업 간 거래에서 상용화된 점,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인사혁신처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1개 법령에 대해 1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03.19)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14)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23)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15)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10)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 1)
(1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졸업생 추천기준 강화** 강화

- '23년 선발심사부터 지역인재 7급 시험의 졸업자 추천기준을 졸업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

심사결과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및 수험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졸업 후 1년 경과시 지역인재 추천 제한 필요하다는 점, 행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2)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신설

-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복직 등을 신청한 자가 해직공무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신청자가 해직공무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신청인만의 고유식별정보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개인정보침해평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신설

- 양육의무 미이행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유족급여 제한기준 마련(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재해유족급여 감액비율)

심사결과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액비율은 개별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도록 하여 적정하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신설

- 양육의무 미이행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유족급여 제한기준 마련(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퇴직유족급여 감액비율)

심사결과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순직공무원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감액비율은 개별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신설

-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현행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근로기준법과 결합하여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대체공휴일 수 확대

심사결과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경일 중 공휴일로 지정된 4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확대** 강화

- LH 임직원 취업심사 대상확대(임원 → 2급이상), 취업승인시 기관업무기준 판단대상 확대(임원 → 1급이상)

심사결과 LH의 부동산 관련 발주·심사·관리 분야에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타 공직유관단체와 비교하더라도 취업심사대상 범위가 적정하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지정** 신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고시에 명확히 규정

심사결과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하다는 점,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 신설

- 채용비위로 합격·임용된 자의 합격·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채용비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채용비위를 통해 채용·임용된 자에 대한 엄격하고 합당한 조치를 단행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이 특별히 없었던 점, 합격취소에 앞서 심의위원회 개최, 의견제출기회 보장 등 법령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강화

-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심사결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을 감액하여 급여 수급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규제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지급 합리화** 신설

-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심사결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을 감액하여 급여 수급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규제자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1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강화

- 1,547개의 비영리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

심사결과 불공정한 공무집행, 공공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민관유착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포괄적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형식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경찰청

집필자 • 현대경 사무관
Tel. 044-200-2442, hyun422678@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강화 2, 신설 2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문신 규정 신설** 신설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과도한 문신 기준' 개선

심사결과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경찰청 내부규정으로 운영된 문신 기준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예규)하는 것으로 문신 기준 중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여지가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

심사결과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 채무 미이행 시 양육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규제 부담이 적고 미국 등 해외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 확대** 강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을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에서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확대
-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1회 한 경우 12시간, 2회 한 경우 16시간, 3회 이상한 경우 48시간 의무교육 확대

심사결과 음주운전으로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별안전교육을 병행하는 해외 유사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경비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강화

-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

  * (위임내용)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자

심사결과 국가중요시설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결격사유 중 정신적 제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치매·뇌전증 등에 대해 전문의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해외 및 타법의 유사 입법사례가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소방청

집필자 • 김성수 사무관
Tel. 044-200-2447, kss94@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총 2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소방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개정안	예비심사 (2021.02.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안	예비심사 (2021.03.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개정안	예비심사 (2021.06.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개정안	예비심사 (2021.07.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8.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21.09.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21.09.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0.0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1)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0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3)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2021.12.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1.12.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2021.12.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2	신설 25 강화 7 (비중요 3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신설

-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대상(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및 제품형태(분리형/단독형)에 따른 세부적 설치기준 마련

심사결과 가스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고 및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과 유사하며, 일본의 기술기준과도 동일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강화 1)

심사내용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 신설** 강화

-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펌프의 내식성 재질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과 유사하며,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도 유사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진설계 세부기준** 강화

- 스프링클러 주요 설비인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정비

심사결과 배관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횡방향과 종방향 버팀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진하중으로 인한 배관의 파손·뒤틀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에 따른 버팀대 설치 간격을 규정하고, 가지배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간격, 설치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신설 1)

심사내용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 신설** 신설

-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함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펌프의 내식성 재질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과 유사하며,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도 유사하게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강화 1)

심사내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개선** 강화

- 건축물 안에서 소방대원 상호간 무전교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 옥외안테나를 설치하여 여러 대의 무전기가 상호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심사결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대원들이 소방무전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선 필요성이 인정됨. 당해 규제는 국민의 안전·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로 입법목적 타당하며, 규제수단이 피규제자의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나,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렵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소방공사 감리방법 위반, 방염·시공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 하도급 제한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으로 추가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타법(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 신설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규정
-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을 적발일로 규정

심사결과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가중처분 판단기준이 모호하거나 미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권익위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점,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강화 1)

심사내용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 강화

-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의 통로유도등은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
- 3선식 유도등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심사결과 어떤 위치에서도 출입자들이 출입구의 위치를 쉽게 볼 수 있고, 화재시 유도등이 미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안전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국민의 안전·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안전사고 보고 의무 대상으로 신설

심사결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 중 비상구 추락사고의 사상자 수는 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비상구 추락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필요성이 인정됨. 비상구 추락사고에 대해서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라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타법(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재현장,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 발견시, 중대재해 발생시,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신설

-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기간 및 공개 내용 신설

심사결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특별조사 항목 중 영업장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사항을 한정하였다는 점, 공개기간을 최대 60일로 한정하였으며,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신설 1)

심사내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신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신설 1)

심사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신설

-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신설 1)

심사내용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신설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신설 1)

심사내용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신설

-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신설 1)

심사내용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신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신설 1)

심사내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신설

- 물분무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신설 1)

심사내용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신설

- 소화수조 및 저수조설비 가압송수장치인 소방펌프 부속품 중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으로,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심사결과 현재 소방펌프의 재질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식성 재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타 기준 및 해외사례의 기술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소공간용소화용구 품목의 기술기준 신설** 신설

- 소공간용소화용구의 구조를 규정
- 소공간용소화용구의 성능에 관한 시험기준을 규정
- 소공간용소화용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 규정

심사결과 지하구 내 제어반, 분전반에서의 화재방지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공간용소화용구 기술기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10) 제정** 신설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본 화재안전기준 제정

심사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야 하므로,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에 대한 설치방법·설치장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등을 동등수준으로 준용하였다는 점, 미국 소방안전규정인 NFPA 기준(Standard for Fixed Aerosol Fire-Extinguishing Systems)을 동등수준으로 준용하였다는 점, 화재감지기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과 신뢰도가 높은 화재감지기 2가지만 설치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신설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설치범위를 확대하고, 고체에어로졸발생기 가속노화시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정

심사결과 소공간 및 대공간에서도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사용수명까지 품질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속노화 시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 및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설 3)

심사내용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신설

-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를 하려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의무 부과

심사결과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를 하려는 자의 알권리 증진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총괄재난관리자 권한 강화 및 불이익한 처우 금지** 신설

- 총괄재난관리자는 법령 위반사실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의무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따라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 처분 금지
- 총괄재난관리자는 관리주체가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통지할 의무

심사결과 초고층 건축물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관리주체의 조치의무, 총괄재난관리자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신설** 신설

-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이 유사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피난안전구역 등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관리주체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초고층 건축물 이용자 등의 안전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이 관리주체에게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소방시설공사업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금지** 신설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 금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에서 입찰에 참여한 법인, 대표자, 상업 사용인, 임원,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제공 금지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를 통해 관행화된 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발주자, 수급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행하는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 등에서 업체선정시 입찰에 참가한 소방시설업자가 심사위원에게 행하는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강화

-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관리 감독의 사각을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편익이 크며, 타법사례에서도 법인의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 사용기간 연장 및 검사방법 개선** 강화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재검사를 통해 계속해서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경과연수 20년 미만: 3년 △ 경과연수 20년 이상: 1년
- 성능확인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성 및 공정성 확보

심사결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에 대한 성능확인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항목, 시료발취방법 및 검사시료 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성능이 정상인 소화기의 무분별한 폐기로 자원 및 비용 낭비 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상 성능 소화기에 대한 연장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됨. 강화된 성능확인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소화기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자원 및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평상시 사용되지 않는 소화기 특성상 내압 확인만으로는 실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방사시험을 통해 실제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현재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직접 검사대상 소화기를 추출하도록 되어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방산업기술원이 통보한 소화기를 추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검사시료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산제품검사 시와 동일한 수량을 추출하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인증시험시설 심사 교정조항 신설** 강화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자의 시험시설에 대해 교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시행규칙)에 근거조항 신설

심사결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에 대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체의 시험시설에 대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시험시설 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소방장비 인증품목 추가(공기호흡기)** 강화

-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소방장비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공기호흡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함
- 다만 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는 민간용 공기호흡기는 사용빈도가 낮아,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하여 인증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형식승인 대상(법정 의무제도)으로 적용될 예정

심사결과 품질 높은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생산함으로써 소방대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소방장비 인증대상 품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기호흡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인증신청자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현재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시 제출해야 하는 수량과 동일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견본품이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소방용 공기호흡기 표준규격*은 유럽규격 수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시험시설 일부가 추가되나, 표준규격으로 생산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유사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신설

-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 규정
- 공사대금지급 보증시기 및 방법 규정

심사결과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 시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을 통한 거래안전 확보 및 분쟁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공사대금지급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발주자의 부도 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수급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악화 및 연쇄부도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 신설

-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 확보
- 전담조직과 인력,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25% 이상은 실습교육

심사결과 소방기술자 교육내실화를 통한 소방기술력 발전 및 양질의 소방기술자 양성으로 소방시설의 신뢰성과 화재발생 시 국민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 대상 인원을 고려할 때 교육받는 자의 접근성을 위해 최소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화,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병행, 전담조직과 인력, 교재 및 강사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에 대해서는 35시간 이상, 설계·감리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35시간 이상 7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공종(건설·전기·정보통신) 교육시간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교육훈련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교육이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수 소방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 타법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신설

- 전기저장시설 내부에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설치장소,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저장시설 내부에 배출설비 설치 및 전기저장장치의 설치장소, 방화구획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 인정됨. 전기저장시설 내부에 설치된 배출설비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연소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여, 폭발현상 및 시야확보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제도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저장장치의 설치높이(지상 및 지하) 제한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연소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제도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저장장치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다른 공간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 제도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국민권익위원회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8.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21.11.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21.12.0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설 1)

심사내용 **징계권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 신설

-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관련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
-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강제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대한 징계권자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공익 침해행위의 예방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익 침해행위 예방 및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범위, 부동산 개발 업무 범위,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설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범위 명시
-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여도, 사업 절차상 공공기관의 수행 역할을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업무 규정
- 각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부동산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신고 대상으로 지정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

심사결과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공직사회 관련 국민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동 규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또는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범위를 구체화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동 규제가 시행된 날 이전 지구 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부동산 사업 정보가 대외로 공개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는 바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부패신고 보상금 하한액 설정** 신설

- 부패 신고로 산정된 보상금의 하한액을 20만 원으로 규정

심사결과 보상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수단이기에, 보상금의 적정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를 예방하고 보상금 관련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 시행 전에 부패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유사 타법 사례 대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패행위 관련 취업제한 기관 범위 확대** 신설

현행	개정안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임직원으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출자·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출자·출연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심사결과 사회 전반에 청렴한 풍토를 확립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며, 동 규제 시행 전 취업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타법 사례 대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필자 • 손채연 사무관
Tel. 044-200-2445, codus6847@opm.go.kr

가.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21년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총 2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4건 중 1건에 대하여서는 개선권고하였으며, 13건은 원안대로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본위원회 (2021.04.0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2	신설 6, 강화 7 (비중요 11, 중요 2)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예비심사 (2021.05.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3	신설 7, 강화 7 (비중요 12, 중요 2)

나. 2021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 6, 강화 7)

심사내용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 추가** 강화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 추가

심사결과 감염병 위기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필요에 따른 긴급한 사유 등의 발생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신설

-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촬영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의 경우 규정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촬영 사실을 표시하되 사전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후에 이를 알리거나 공지함

심사결과 일상화된 이동형 영상기기를 활용한 촬영에 대한 관리상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 보장 및 불필요한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며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적용** 강화

-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 수탁자에 관하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 법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검사 규정, 법 위반 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부과 규정 준용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역시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의무 규정을 준수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파기 의무 적용** 강화

-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에서 파기 의무 조항 삭제

심사결과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파기하는 것이 최소처리 원칙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에 동 규제는 유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이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등의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신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지침 준수 여부,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려고 노력한 정도 등에 대해 평가한 후 기간을 정해서 개선권고 가능

심사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절차적·내용적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역량을 높일 수 있음. 동 규제는 현행 제도상 사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전송요구 준수 의무** 신설

-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 요구 가능
- 전송요구 요건으로는 △개인정보가 동의나 계약에 따라 처리,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가공한 정보가 아닌 경우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 가능

심사결과 전송의무자 판단기준 및 유예기간의 충분성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자 지정기준은 수용성 제고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시행령상에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개위에서 **개선권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송의무 대상자 기준에 산업별 특성을 추가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재심사 요청. 이에 산업별 정보의 종류·성격, 시스템 구축 등의 정도가 상이하고,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규제 적정성을 인정하고 수정안에 동의

심사내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규정** 신설

-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정보주체 지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수행 가능

심사결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통해 데이터의 활발한 확산 속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보장이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화 의사결정 배제 등 요구 준수 의무** 신설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이의제기권, 설명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고, 정보주체의 대응 요구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준수 의무 부여

심사결과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신설이 필요하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 형성 및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라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및 중지명령** 신설

-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 등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국외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이전받는 자가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동 법상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국외이전하는 경우)
- 국외이전이 계속되거나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국외이전의 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 요건 규정(△국외이전 시 적법처리 요건 위반, △보호수준이 취약한 국가 등으로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로써 국외이전의 중지명령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이 보이지 않는바,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사회적 편익 및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석 관련 해설서 등 제공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 강화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해야 하는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분쟁 관련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며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과 관련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
-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심사결과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사실조사의 권한 수준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 이에 대해 규개위는 다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지원하고 분쟁당사자 간 신속한 합의 등을 위하여 동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으며, 유사 입법례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 및 당초 장부·서류 등의 복사까지 가능하였던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제안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강화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및 국민의 이해도 및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정보 침해 시정명령 강화**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

현행	개정안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가능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가능	

심사결과 현행 제도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에서만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하나,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보관 등 처리되며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에 시정조치 명령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표사유 추가 및 공표명령**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 공표 대상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추가하고 공표대상자에 대하여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과징금 처분을 공표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 처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표 명령을 통해 수범자에게 경각심을 심을 필요가 인정되며, 법규 준수 유도라는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 1)

심사내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설

-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지정취소 가능

심사결과 데이터의 활발한 확산 속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에서 정보 열위에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자격 유지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며, 해외 및 타법 사례와 비교하여도 지정취소 요건과 관련한 동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기에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집필자 • 오민준 사무관
Tel. 044-200-2913, mj@opm.go.kr

1 제도 개요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1)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 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2)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규제부담만 양산하여 민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과적인 규제의 사전 방지한다.

(3)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비규제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대안을 설계하는 규제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4)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롯한 각종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통과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제공한다.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성요소	세부항목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비용관리제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규제의 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비용·편익분석
Ⅲ.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의 집행 가능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경과, 향후 평가계획, 종합결론

3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는 간이형으로 작성하고 그 이외는 표준형으로 작성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 2),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19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법 제5조의2)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령 제8조의2)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평가의뢰(국무조정실 → 작업단), ② 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③ 검토의견 제출(작업단 → 국무조정실), ④ 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부):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21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697개 법령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14건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14건 중 9건이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었고, 5건이 심사 진행중이다.

(6) 2021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주류광고 금지 기준 강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간판, 디지털광고물, 교통수단에 광고하는 행위"는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옥외 대형 디지털광고물의 경우 전면금지보다는 광고시간대를 제한하는 방법 등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행사 후원시 주류제품 광고행위 금지"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 검토 필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유료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의 이용약관(이용요금과 이용조건으로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수용의무까지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 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수용의무는 삭제할 필요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이용자위원회 설치등	이용자위원회의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수용 의무까지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 결정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수용 의무는 삭제할 필요
4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능인증대상 보안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
5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고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경제적 가치 3만 원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고, 더불어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

다. 중소기업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 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21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739개 법령의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32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3건이 반영(반영률 71.9%)되었다.

(6) 2021년도 중소기업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요건	시설물관리 전문업체 등록시 기술인력 20명을 의무 확보하는 기준은 관리대상 시설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야기하므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기술인력기준 완화(20명→10명) 필요
2	환경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분리 작업자에게 1년 주기의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사 법령 교육주기(3년 이상)에 비해 과도하여,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완화 필요
3	환경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 즉시 신고 세부기준 및 내용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인명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사후대응 절차를 거치게 하여 과도한 행정력 소요가 발생하므로 화학 경미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자체대응 사후보고서 작성·제출의무 삭제 필요
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주류광고 금지의 규정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한 주류광고 금지시, 소형간판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 가중 우려, 옥외광고물 제한 범위 축소(자영업자 사용 소형간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필요
5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요건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일반요건을 신설하면서 중소 택배운송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자본금 기준(8억 원 이상)을 요구, 자본금 기준 삭제 필요
6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리 조선소 경비, 검색인력 기준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비·검색인력 1명 추가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수리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리조선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추상적 요건에 따른 법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시기 1년 유예 필요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조사 공지 시기를 구체적 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아 '미리'에서 '30일 전'으로 조사 공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8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입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입력정보 사항을 규정하면서 컨테이너별로 사진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의 특성상 불필요한 업무중복이 발생하므로 컨테이너별 사진 제출 의무 삭제 필요
9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간 분쟁 발생 시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성명·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무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플랫폼참여 감소 및 개인정보 허위 취득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아닌 제3의 분쟁 해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0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 표시 및 도안추가	포장재 등에 기타 재질이 혼합 또는 부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 '도포·첩합표시'를 하는 대상에 '멸균팩'을 포함하여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종이팩 배출함과 같은 재활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인프라가 구축되는 추세에 역행하며, X자 모양의 새로운 표시()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음. 멸균팩을 새로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X자 표기를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는 도안(빗금,)으로 변경 필요

라. 기술영향평가

(1) 개념

기술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2) 추진경과

'12.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14.1월 '기술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15.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기술규제 기업애로개선지원단(舊,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21년 15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개선을 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8.12월에는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국가표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19년부터 범부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9년 28개(개선 21개, 폐지 7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0년 27개(개선 20개, 통합 3개, 폐지 4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21년 33개(개선 30개, 통합 1개, 폐지 2개 / 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정비대상 제도를 발굴하는 등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대상

기술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15개 부처(청)의 196개 법령, 341개 규제사무의 기술영향평가를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토완료·회신하였고, 총 131건(38.4%)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5) 2021년도 기술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택시앱미터 검정신청 의무 부과	택시 앱미터는 3개월 주기로 사용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시요금제도의 변경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코드의 변경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수리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3개월마다 사용검정도 받아야 할 경우 앱미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고급택시 앱미터는 연 1회 이상 상시검정, 택시전가식미터는 최소 1년마다 사용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시 앱미터 사용검정 주기 완화 필요
2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안전성평가 재실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상 증가된 경우 당초 건물의 높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건물 높이가 10m 이상 증가하여 교육시설에 직접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범위 한정 필요
3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두피관리기성능출력부'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온도요구사항을 적용할 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연번	부처명	법령(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4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대상 물질 추가	동 개정안의 시행일이 7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합성수지가 포함된 모든 어린이용품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업들이 시행일 전까지 DIBP 시험을 완료하고 원자재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
5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폐배터리의 수집·운반시 전용운반상자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용운반상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전용운반상자'의 개념이 없어, 피규제자의 혼란이 없도록 '전용운반상자'에 대한 규정 필요
6	환경부	재활용지정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폐지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수분측정기 도입	자동수분측정기로 폐지의 수분측정시, '대기수분 12%는 포함하고'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산폐지 거래 표준계약 검수시 준수하는 단체표준(SPS-KPRA 1501-6237, 재활용제지 원료)과 일치되도록 수정 필요
7	산업통상자원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동 개정안 적용범위에서 마스크를 '섬유, 합성수지, 가죽 또는 모피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록 A의 세부표시방법(예시)에는 모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예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모피재질 제품에 대한 예시 추가 필요
8	환경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지정 고시 (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진주상평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별도배출 허용기준 설정	피규제자가 동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의 시설 및 처리공법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한이 부족하므로, 사업장으로부터 규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1년간 단속을 유예하는 등 시행유예 방안 모색 필요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가. 도입배경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규제로 인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작용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영향분석은 피규제자 집단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규제 집단에 대한 규제영향 이외에 집단간 영향이나 일반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반영하였다.

나. 개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피규제 집단(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은 물론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피규제자 이외 집단 + 정부)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비용·편익분석 작성 구분

<table>
<tr><th colspan="2">영향집단</th><th>비용</th><th>편익</th><th>순비용</th></tr>
<tr><td rowspan="2">피규제 기업·소상공인</td><td>직접</td><td colspan="2">비용 관리제</td><td></td></tr>
<tr><td>간접</td><td colspan="2" rowspan="2">피규제자 비용·편익</td><td></td></tr>
<tr><td colspan="2">피규제 일반국민</td><td></td></tr>
<tr><td colspan="2">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td><td colspan="2" rowspan="2">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사회적 비용편익)</td><td></td></tr>
<tr><td colspan="2">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td><td></td></tr>
<tr><td colspan="2">정부</td><td colspan="2">행정비용</td><td></td></tr>
<tr><td colspan="2">총 합계</td><td></td><td></td><td></td></tr>
</table>

다. 주요내용

- **(분석원칙)**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비용절감, 영업이익 등 2차적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전체·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생명·안전·환경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분석을 실시한다.
- **(분석방법)**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집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규제의 분야별 또는 수단별 유형을 구분한 후 비용·편익에 대한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유사한 분석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게시판에 등록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를 찾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국내외 사례를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분야와 진입, 가격, 품질, 거래 등 규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비용과 편익 항목별로 색인표를 구성(사례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분석서게시판〉 사회적비용편익분석사례' 게시)

구 분		유형 및 항목내용
비용/편익	비용 (9)	• 행정부담, 노동,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 기타
	편익 (18)	• 시장안정성제고, 산업육성, 경쟁촉진, 공정거래, 비용절감, 매출증가, 환경오염예방, 자원재활용, 안전사고예방, 자연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 질병예방·건강증진, 사회적 약자보호, 일자리확대, 비용절감, 소득(매출)증가
분야/부분	분야 (10)	•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금융, 농림·어업, 건설·에너지, 산업일반
	부문 (10)	• 자격, 입지, 가격, 생산관리, 경영관리, 교육훈련, 기업간 거래, 기업·소비자간 거래, 행정, 지배구조

- **(심사검증)** 각 부처는 규제심사관 사전 협의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정량적 분석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에 반영하고 규제연구센터, 규제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분석의 색인 사례를 활용하여 심사·검증시 확인하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분석이 가능한데도 누락된 경우, 분석을 보완하여 재심사·검증한다.

PART

05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21년 규제혁신 평가 668
제2절 2022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673

PART 05

규제혁신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21년 규제혁신 평가

집필자 • 윤나라 사무관
Tel. 044-200-2452, nemo1934@korea.kr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2021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발맞춘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규제혁신 핵심분야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등 주요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성과 및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홍보 노력, 규제개혁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지속하였다. 또한, 규제일몰제,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여 신설·강화·존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 상 정비과제수, 규제심사 건수, 부처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10개(외교부,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를 제외한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35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21개)과 차관급 기관(14개)로 구분하였으며, 2개 분과(장관급, 차관급)로 나누어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혁신 노력·성과 60%, 규제혁신 제도운영 30%, 규제혁신국민체감도 10%으로 구성하였다. 규제혁신 노력·성과 항목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수용실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실적 등 신산업 혁신성과와 민생분야 규제정비 성과 등이 포함되었다. 규제혁신 제도운영 항목에는 국민소통

노력과 규제챌린지 추진성과 및 규제비용관리제, 일몰규제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제 전주기 관리 실적을 평가하였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규제혁신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2 2021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2021년 규제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자율주행차 로드맵 2.0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들 수 있다.

2021년 규제혁신의 또다른 주요과제는 국민불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민과 지역기업의 건의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애로 253건을 해소하였으며. 공장입지 규제개선,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으로 인해 체감도조사 결과가 작년대비 상승하였으나, 국민과 기업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서 규제샌드박스와 로드맵 분야 확대 등 신산업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갈등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5년 이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아왔다. 기관별로 정책수요자·전문가·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올해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1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만족도 조사결과, 35개 기관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72.65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1.04점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0.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80.1점), 해양수산부(7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60.8점), 여성가족부(63.2점) 등의 순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관세청의 만족도가 8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82.6점), 국세청(8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기상청(67.8점), 원자력안전위원회(70.5점) 등의 순이었다.

종합만족도는 2019년 하락하였다가, 2020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도 상승추세를 이어 갔다. 조사대상자별로 비교해보면, 2017년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던 일반인과 전문가의 경우 2019년부터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2019년, 2020년 비슷한 점수를 보이던 내부고객 만족도가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2019년에 소폭 하락이 있었으나,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차관급 기관의 경우 2018년 이후 만족도가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2021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 부처별 평가결과(직제순)

2021년 부처별 평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 챌린지 등 각 제도별 성과를 확대하고, 신산업 핵심규제 및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신산업·민생 핵심분야 규제 정비(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신산업·민생 핵심분야 규제 정비(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 샌드박스 성과창출 지원(조달청, 특허청),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해양경찰청)을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등 규제전주기 관리가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차관급 기관으로는 소방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4 분야별 평가결과

가. 규제혁신 플랫폼 내실화 및 규제 관리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 개별 규제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021년까지 총 632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136건은 신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전면 허용하였다. 또한,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총 29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였다. 29개 특구 운영 및 10건 과제 임시허가 전환으로 지역의 혁신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래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차 2.0)을 수립하였으며,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132건)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다. 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한 규제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였으며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등 9건의 중요 규제를 개선하였다.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적극행정 노력도 지속되었다. 2020년까지는 적극행정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21년에는 적극행정이 핵심분야에 직접 적용되고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탄소 중립 등 국가 주요정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집중관리하였다.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도입 노력과 함께 규제 비용감축 관리, 일몰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규제 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약 2,700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69건을 폐지·개선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실증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규제혁신의 체계가 신산업·국정 성과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분야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핵심분야별 규제혁신

기업부담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로 핵심규제를 선정·집중 개선하고, 현장 중심 소통 및 지역현안에 대한 규제혁신도 강화하였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확대,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 유망 분야 핵심규제를 집중정비하였으며,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ICT 융합, 의료기기 등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부담 해소를 위해 공장입지 규제개선(11건), 중기·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27건) 등을 추진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주요 협·단체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기업애로(131건)도 함께 해소하였다. 국민생활 속 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불편을 해소(253건)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61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기업·지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정비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고, 방역관리 일상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2절 2022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집필자 • 강보람 서기관
Tel. 044-200-2397, gelsomino@opm.go.kr

2022년은 기업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플랫폼·핵심규제·적극행정의 양적·질적 성과를 높이고 확실한 국민체감을 도출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플랫폼 성과를 확대한다. 또한 기업활동·국민생활 핵심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2 세부 추진방향

가. 규제혁신 플랫폼 성과 확대

신산업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과로 확산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신규지정을 통해 규모가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확실한 성과창출을 위해 특구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은 기존에 수립된 로드맵 및 수립될 예정인 로드맵이 기술과 현장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그간의 공급자 중심 추진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핵심 분야와 과제 중심으로 전면적인 규제 재설계를 추진한다. 규제비용관리제는 도입('16.7월) 이후 성과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나. 핵심규제 개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핵심분야 규제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기업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신산업 핵심분야별(DNA 산업, 비대면 산업, 탄소중립 등) 주요 규제애로를 개선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진흥·촉진·지원제도 등 영업제한규제 정비, 소부장 산업 등 주력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인구 변화, 건강·안전 이슈, 자원순환 이슈 등 생활·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역현장에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는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다. 적극행정 전방위 확산

공직 일상으로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면책확대, 소극행정 관리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일선 현장으로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현장 적극행정 확대 등 현장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를 추진한다. 적극행정 문화의 착근을 위해 적극행정 교육·마일리지 도입 등 확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민소통을 확대한다.

REGULATORY REFORM BOOK

PART

06 부록

REGULATORY REFORM BOOK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678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681

PART 06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본 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김지성 사무관
Tel. 044-200-2414, jiseongkim@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68회 ('21.1.8)	국조실	2020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보고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0	1	0	1
제469회 ('21.1.22)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 활동결과	보고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70회 ('21.2.18)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2	0	2	2	6
	국조실	2021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보고					
제471회 ('21.2.26)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의결	1	0	0	0	1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0	1	0	1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0	1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1	0	2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72회 ('21.3.12)	국조실	2020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20년 주요 활동실적	보고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기재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73회 ('21.3.26)	기재부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의결	1	0	0	0	1
	해수부	선원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74회 ('21.4.9)	산업부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결과 정비실적 및 이행계획	보고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결	1	0	1	0	2
제475회 ('21.4.23)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76회 ('21.5.14)	국조실	2021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 및 개선방안	보고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77회 ('21.5.28)	국조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0	1	0	0	1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78회 ('21.6.11)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의결	0	0	1	0	1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79회 ('21.6.25)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0	1	1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0회 ('21.7.9)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의결	2	0	0	0	2
제481회 ('21.8.13)	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2	0	2
제482회 ('21.8.27)	국조실	제6차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국조실	2021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3회 ('21.9.10)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21년 상반기 주요활동실적	보고					
	국토부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0	0	0	1
	고용부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0	0	0	2
	환경부	중대재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0	0	1	0	1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84회 ('21.10.8)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85회 ('21.10.22)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2	0	2
제486회 ('21.11.12)	국조실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국조실	2021년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0	0	0	1
	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0	1	1	0	2
제487회 ('21.11.26)	고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과기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8회 ('21.12.10)	산업부	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의결	1	0	0	0	1
	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89회 ('21.12.22)	국조실	2022년 규제 정비지침(안)	보고					
계	**안건수: 52(의결안건 39건, 보고안건 13건)**			**17**	**6**	**23**	**3**	**49**

나. 경제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 신동일 사무관
Tel. 044-200-2398, ichpack@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제529회 ('21.2.26)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안건수: 1				**1**	**0**	**0**	**0**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1. 2.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다.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 8. 23.] [국무조정실훈령 제111호, 2017.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16.]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 8. 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2. 11.] [국무총리훈령 제643호, 2015. 2. 11.,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선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규제개선건의"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제정보시스템(규제정보의 제공,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의 요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접수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제3조(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 규제개선건의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개선건의의 처리) 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을 정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건의 처리의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은 답변 기한 내에 규제개선건의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각 처리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재답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⑥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개선건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건의의 처리 실적,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만족도 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11.] [국무총리훈령 제789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의 면제·유예 등에 관한 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사를 위하여 각 작업단에 소관 분야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작업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각 작업단은 국무조정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22. 3.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집·인쇄 :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